

연구총서 12-AA-03

K O R E A N I N S T I T U T E O F C R I M I N O L O G Y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의 활용방안

A Study on the Effective Use of Videoconferencing
System in Criminal Proceedings

윤지영

■ 윤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법학 박사

발간사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한때 미래에나 실현 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던 일들을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종래 공상과학영화에서나 다루어지던 원격화상시스템도 지금은 교육·행정부문은 물론이고, 민간부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형사사법 분야에서도 진보된 과학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가 이어져 왔는데, 특히 원격화상시스템은 형사사법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나아가 원격화상시스템은 참고인 또는 증인 등의 보호 및 실제적 진실 발견이라는 측면에서도 그 활용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될 것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물론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이 이용될 경우, 형사소송법상 직접주의 원칙에 반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상충한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첨단정보통신 기술이 일상화·보편화된 오늘날, 과학기술의 성과와 무관하게 전통적인 사법시스템의 운용만을 고수하는 것은 자칫 사법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의 도입 필요성과 법적 쟁점에 대해 고찰하고 있으며, 관련 입법례와 우리나라의 운영 현황을 살펴본 후, 동 제도의 발전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진보된 과학기술이 인간의 삶을 문화화하고 있는 지금, 형사절차 전반에서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정비 방안을 제시한 이 연구가 사법의 공정성과 과학기술의 유용성을 적절하게 융합시켜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2012년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김 일 수

CONTENTS

국문요약	11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목적	19
1. 문제의 제기	19
2. 연구의 필요성	2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3
1. 연구의 범위	23
2. 연구의 방법	24
제2장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의 필요성과 법적 쟁점	27
제1절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의 필요성과 문제점	29
1.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의 필요성	29
가. 실체적 진실의 발견	29
나. 증인 등의 보호	33
다. 형사사법 효율성의 제고	35
2.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의 문제점	37
가. 형사소송법상 직접주의에 반할 우려	38
나.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우려	39
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	42
제2절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을 위한 법적 쟁점	42
1.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을 위한 선결 쟁점	43

가. 출석의 개념	43
나. 직접주의와의 관계	49
다.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우려	52
2.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을 위한 논의의 방향 설정	59

제3장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제1절 국내적 활용에 관한 입법례

1. 미 국	63
가. 사법 분야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도입	63
나.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에 관한 구체적 내용	70
다.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 현황	76
라.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에 대한 평가	86
2. 독 일	89
가. 사법분야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의 도입	89
나.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에 관한 법 규정	90
다.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 현황	97
라.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에 대한 문제점	99
3. 프랑스	100
가. 사법분야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의 도입	100
나.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에 관한 법 규정	102
다.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 현황	108
라.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에 대한 문제점	109
4. 일 본	110
가. 사법분야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의 도입	110
나.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에 관한 구체적 내용	113
다.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 현황	117
라.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에 대한 평가	118

제2절 국제적 활용에 관한 입법례

1. 국제형사사법기관에서의 활용	121
가.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121

나.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124
다. 국제형사재판소	128
라. 국제형사사법기관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 현황	132
2. 유럽연합 내 회원국 간의 활용	135
가. 사법분야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의 도입	135
나. 사법분야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	136
다. 사법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의 구체적 내용	137
라. 사법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 현황	142
제4장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의 활용 현황	149
제1절 수사과정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	151
1. 수사기관의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현황	151
가. 경찰	151
나. 검찰	152
2. 국내거주인에 대한 수사에서의 활용	153
3. 국외거주인에 대한 수사에서의 활용	156
가. 재외선거사범에 대한 인터넷화상조사제도의 도입	156
나. 재외선거사범에 대한 인터넷화상조사제도의 구체적 내용	158
다. 재외선거사범에 대한 인터넷화상조사제도의 운영 및 평가	161
4. 유치인에 대한 원격화상면회제도	162
제2절 재판과정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	163
1.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제도 도입	163
2. 형사소송법상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제도의 구체적 내용	164
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의 대상	164
나. 중계방법 및 증언실의 위치	166
다. 심리의 비공개	167
라. 증인을 위한 배려	167
3.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제도의 운영 및 평가	168
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제도의 운영	168

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제도에 대한 평가	170
제3절 교정단계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의 활용	171
1. 원격화상접견제도	171
2. 원격화상진료제도	173
제5장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방안	175
제1절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을 위한 법적 정비 방안	177
1.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이 가능한 형사절차	177
가. 수사 단계	178
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등	179
다. 증인신문	180
라. 유치인과 수용자 등에 대한 접견	183
2. 법적 정비 방안	184
가.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을 위한 입법 형태	184
나. 형사소송법 정비 방안	185
제2절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을 위한 제도적 정비 방안	189
1.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을 위한 망 구축	189
가. 관련부처의 독립망 연계 방안	189
나. 인터넷 기반 원격화상시스템 운용 방안	190
2. 장비의 개선 및 설비의 표준화	192
가. 장비의 개선	192
나. 설비의 표준화	193
3. 국제형사사법공조	194
4. 가이드라인 구비	196
제6장 결 론	197
참고문헌	203
Abstract	219

표 차례

〈표 1-1〉 아동증인의 증언 특례를 규정한 미국의 주 입법	72
〈표 1-2〉 일본에서 비디오링크 방식 및 차폐시설을 이용한 증인신문 실시 횟수	117
〈표 2-1〉 국제형사사법기관에서의 증인보호 규정	131
〈표 3-1〉 전국 경찰서의 원격지 화상조사 실시 횟수	154
〈표 4-1〉 원격화상진료를 받은 인원과 치료비 집행내역	173
〈표 4-2〉 원격화상진료 과목별 현황	174

그림 차례

〈그림 1-1〉 독일에서의 비디오신문 장면	99
〈그림 1-2〉 프랑스 보르도 항소법원 수사부의 원격화상심리 장면	109
〈그림 2-1〉 경찰청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원리	152
〈그림 2-2〉 검찰청 원격화상회의 시스템 구성도	153
〈그림 3-1〉 법원의 원격화상신문 시스템 구성도	169
〈그림 4-1〉 원격화상접견 진행 모습	172
〈그림 5-1〉 형사사법 관련 부처별 독립망 연계 방안	190
〈그림 5-2〉 인터넷 기반 원격화상시스템 운용 방안	191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이를 반영한 형사절차의 선진화 방안들이 다각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서구의 선진 각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진보된 과학 기술을 형사절차에 적극적으로 접목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두 개 이상의 분리된 장소에서 쌍방향 비디오·오디오 전송을 통해 실시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원격화상시스템을 형사절차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원격화상시스템은 증거수집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근접할 수 있고, 참고인이나 증인 등을 보호할 수 있으며, 절차 진행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형사사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그러나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하는 피고인의 권리는 경제적 효율성이나 사법적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간과될 수 없다. 또한 형사절차에서 원격영상시스템이 이용될 경우, 형사소송법상 직접주의에 반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제도의 실효성 자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수 있다.

형사절차 전반에서의 원격영상시스템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형사법상 출석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고, 직접주의 원칙 및 피고인의 방어권과의 관계를 어떻게 규명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쟁점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출석은 “보이거나 들리는 범위 내”가 아닌 “물리적 출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용어의 근본적 의미나 일반적·상식적 이해에 부합한다. 또한 형사절차상 원격영상시스템의 활용은 모든 절차관계인들이 매체를 통해 시각적·청각적으로 대면한 상태에서 구두로 진행되고, 사전에 녹화된 영상물을 방영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는 점에서, 직접주의의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친화적이다. 다만, 원격영상시스템이 이용되려면 동 시스템의 활용으로 인한 이익과 직접주의 원칙 내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의 이익을 비교衡量한 후, 전자가 후자보다 우세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후자의 근본적인 가치

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형사사법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의 이용은 연방이 아닌 주 차원에서 먼저 시행되었고, 이후 동 제도의 활용이 확대되면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통일적 규범을 마련하고자 관련법을 개정하였다. 미국 연방법은 아동피해자와 아동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 외에서 비디오 중계 장치를 통해 증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의 취지를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노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성인이 증언하는 경우 등에도 확대 적용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모든 단계의 형사절차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죄사건에서 피고인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기소인부절차나 유죄답변 및 공판이나 형의 선고를 원격영상시스템에 의해 진행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증인이 공판정에 참석한 사람들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될 경우 중대한 불이익이 초래될 긴급한 위험이 있고, 피고인을 법정에서 배제시키거나 신문을 비공개하는 등의 다른 방법으로는 이 위험을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은 증인으로 하여금 법정 외의 장소에서 신문을 받도록 명할 수 있고, 이때 증인신문 상황은 비디오화면과 스피커를 통해 공판정에 생중계되어야 한다. 프랑스에서는 종래 공판 전 예심단계와 증인의 증언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 원격화상시스템이 이용되었고, 피고인의 법정 출두를 동 시스템에 의한 출석으로 대체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 전원과 지방법원 검사장의 합의하에 이미 구금된 피고인이 재판을 받기 위해 경죄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원격화상시스템을 통해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의 경우 피해자보호입법의 일환으로 원격화상시스템을 이용한 증인신문제도가 형사소송법에 도입되었는 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아동 피해자 등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진술함으로써 정신적 평온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비디오링크 방식에 의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한편 원격화상시스템은 형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차원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는 피해자나 증인 또는 그들과 관련된 자들의 신원이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상이나 음성을 변조하는 장치를 이용하거나 폐쇄회로 TV를 통해 증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도 증인이 증언으로 인해 위험에 처하거나 신원이나 소재가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상이나 음성을 변조하는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거나 비

디오컨퍼런싱 등을 통해 증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의 경우, 현행 유럽연합법이 비디오컨퍼런싱을 통해 증인이나 전문가 심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럽연합 이사회는 회원국 간 사법절차에서 비디오컨퍼런싱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을 지속적인 추진 과제로 상정하였다. 대부분의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이미 사법분야에 원격영상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비디오컨퍼런싱의 신청과 심리과정은 물론이고 설비의 배치나 비용부담에 관해서도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거주인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경찰청이 자체 지침에 근거하여 원격지 화상조사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기술적 문제와 보안상의 우려로 인해 사용률이 저조하였고, 수사촉탁제도가 활성화되면서 동 제도는 사실상 활용되지 않고 있다. 국외거주인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서는 2012년 2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재외선거사범에 대한 인터넷화상조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2012년 10월 현재 화상조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물론이고 시스템조차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한편, 공판단계에서는 증인이 피고인 등과의 대면으로 인해 정신적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을 이용해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 제도는 형사소송 관련자들이나 방청객과의 직접적 대면으로 인해 증인이 받을 정신적 고통이나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고, 보복범죄의 우려 등으로 인해 법정 출석을 기피하는 증인의 진술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허위증언의 가능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실제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법정에서 직접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통상의 증거조사 방법에 비해 심증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취약한 부분이 있으며, 모니터의 선명도가 떨어지는 등의 기술적 문제로 인해 증인신문 과정의 집중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화상증언실에 실물화상기가 지원되지 않음으로써 서류에 대한 진정성립 및 증거제시 과정에 번거로움이 수반되고 있다.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은 수사단계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및 증인신문 등에 활용될 수 있고, 유치인과 수용자 등에 대한 접견에 이용함으로써 대국민 형사사법 서비스를 증진시킬 수 있다.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각에서는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물론이고 수사 및 공판 전 과정에서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하는 데 필

요한 사항과 절차상의 특례를 규정하는 특별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으나,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의 도입 취지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통일적인 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이라는 입법방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을 위한 형사소송법 정비 방안으로는 첫째,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원거리에 있거나 보복의 우려 등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못할 경우에 이들의 동의하에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재외국민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나 참고인 등에 대한 인터넷화상조사의 규정은 가능한 형사소송법에 체계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 둘째, 구속전 피의자 심문이 지체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피의자의 동의를 전제로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후 원격화상시스템을 통해 동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증인신문과 관련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은 증인이 피고인 등과의 대면으로 인해 정신적 평온 상태를 현저히 잃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더하여 증인이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해당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원격화상증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증인이 피고인과의 대면만을 두려워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화상증언실에서 재판과정을 청취하도록 하고,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을 것인데, 이처럼 증인보호의 요청 정도에 따라 원격화상시스템을 이용한 증인신문이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을 위한 제도적 정비 방안으로는 첫째, 관련 부처들 간에 실시간 통신이 가능한 망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현재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 부처의 망을 연계하는 방안이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운용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둘째,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에 있어서 기술적 측면은 제도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노후된 기존의 장비는 새로운 기술이 반영된 장비로 교체할 필요가 있고, 오디오 시스템에 음성변조의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음성변조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정확한 심증 형성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나, 증인보호를 위

해 피고인을 퇴정시키는 것보다 음성으로라도 피고인이 재판진행 과정을 파악한 후, 반대신문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만 헤드폰을 통해 증인의 변조된 음성을 듣게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카메라나 마이크 등 장비의 질적 차이에 따라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의 이용 결과가 현격히 다르게 도출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종류의 장비를 동일한 방식으로 설치하는 설비의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형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재외국민은 물론이고 해외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으로 인해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이 법제화되더라도, 해당국의 사법주권 침해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면서 동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제형사사법공조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원격화상방식에 의한 수사 및 증인신문이 가능하도록 국제형사사법공조를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형사절차에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운용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구비되어야 한다. 원격화상 장치를 이용해서 수사 및 재판 등을 주재하는 측에서는 사전에 절차 참여자들에게 해당절차의 진행 과정 및 유의사항 등이 적시된 서면지침을 배부하여야 한다. 또한 수사 및 재판절차에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하기에 앞서 반드시 장비 조작에 관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나아가 원격화상시스템을 통한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사건 관련자들의 공간적 위치에 대한 지침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 모색된 방안들을 실천에 옮기기에 앞서 이는 어디까지나 원칙이 아닌 예외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사법정은 단순한 논의의 장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유무죄를 평가하는 엄숙한 장이고, 형사소송법상 직접주의 원칙이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은 편의주의라는 제단에 쉽사리 희생물로 바쳐질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1. 문제의 제기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이를 반영한 형사절차의 선진화 방안들이 다각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서구의 선진 각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진보된 과학기술을 형사절차에 적극적으로 접목해왔는데, CAT(computer-aided transcription equipment)를 이용하여 실시간 공판정기록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 그래픽이나 애니메이션 등의 입체영상매체 또한 공판과정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형사절차상 원격화상회의시스템의 활용이 주목받고 있는 바, 동 제도는 기소인부절차에서부터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고, 도입이 본격화된 2000년대부터 이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원격화상회의(teleconferencing, video-conferencing)시스템이란 두 개 이상의 분리된 장소에서 쌍방향 비디오와 오디오 전송을 통해 동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상호적 의사소통 기술을 일컫는다.¹⁾ 기술의 핵심은 CODEC인데, 이는 특정 장소에서 비디오 신

1) Fredric I. Lederer, "Courtroom Practice in the 21th Century", 35-JUL Trial 38, the Association of Trial Lawyers of America, 1999, p. 40; Merriam-Webster, Merriam-Webster's Collegiate

호를 부호화해서 전송하면, 다른 장소에서 전송받은 신호를 해독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서,²⁾ 각기 다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보고 말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³⁾

1990년대 중반, 우리나라에서도 발전된 과학기술을 반영할 수 있는 사법선진화 방안을 모색하던 가운데, 교통이 불편한 도서·산간벽지의 주민이 원거리에 있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서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원격화상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에 1995년 12월 6일, 민사소액사건과 화해·독촉·조정사건 등을 대상으로⁴⁾ 원격영상재판을 진행하는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이 법률 제 5004호로 제정되었고,⁵⁾ 동법 시행에 따라 1996년 2월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과 춘천지방법원 양구·인제군법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과 대구지방법원 울릉등

Dictionary, 11th edition, Merriam-Webster Inc., 2003, p. 1392. 쌍방향 비디오·오디오 전송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다양한 용어들이 이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텔레컨퍼런싱이나 비디오컨퍼런싱이라는 용어가 그대로 사용되는가 하면, 원격화상시스템 또는 원격영상시스템이라는 용어가 혼재되어 쓰이기도 한다.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 의사소통 구조에 기술의 핵심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비록 ‘회의’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쓰이는 하지만 ‘영상회의’라는 용어보다는 ‘화상회의’라는 용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된 동 시스템에 기반한 조사제도를 인터넷화상조사라고 칭하고 있다는 점 등에 근거하여 이 보고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원격화상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다만 종래에 민사소액사건과 화해·독촉·조정사건 등을 대상으로 제정된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이 있고, 외국 입법례를 논함에 있어서 ‘회의’라는 의미가 강조되는 비디오컨퍼런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으므로, ‘원격영상시스템’과 ‘비디오컨퍼런싱’이라는 용어도 혼용하도록 한다.

- 2) CODEC은 COder/DE-Coder의 약칭으로, 음성 또는 영상의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코더(Coder)와 디지털 신호를 음성 또는 영상으로 변환하는 디코더(Decoder) 즉, 부호기와 복호기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장치를 일컫는다. Michael D. Roth, “Laissez-Faire Videoconferencing: Remote Witness Testimony and Adversarial Truth”, 48 UCLA L. Rev(UCLA Law Review) 185,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2000, p. 189.
- 3) Carole Basri/Irving Kagan, Corporate Legal Departments: Practicing Law in a Corporation, Practicing Law Institute, 2005, Chapter 6. Law Department Technology § 9; Michael D. Roth, Id., p. 189.
- 4)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적용 범위)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만 원격영상재판을 할 수 있다.
 1.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사건(같은 항 제3호의 사건은 즉결심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원격영상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의 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시법원(市法院) 또는 군법원(郡法院)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 5) 동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원격영상재판이란 재판관계인이 교통의 불편 등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원격지의 법정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재판을 말한다(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제2조).

기소 사이에 영상회의시스템이 설치되었다.⁶⁾ 그러나 경주지원과 울릉등기소 사이의 원격영상재판은 월 5회 미만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하였고, 1998년 11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신설되어 울릉군의 관할이 포항지원으로 옮겨지면서 설비이전에 따른 비용부담의 문제가 발생하자 영상재판 시스템의 사용이 중단되었다. 홍천군법원과 양구·인제군법원 사이의 영상재판 시스템 역시 과도한 운영비 지출과 장비 노후화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2001년 4월경 폐지되었다.⁷⁾ 이처럼 원격영상재판은 설비의 한계와 운영비용의 벽에 부딪혀 시행 초기 단계에서 실패하였으나,⁸⁾ 지난 10여 년 간 IT기술을 필두로 한 과학기술 전반의 비약적 발전이 거듭되어 온 결과, 이러한 기술 발전이 반영된 고사양의 카메라와 모니터는 현장의 생동감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비용 고효율의 시스템 구축도 가능하게 만들었다. 보복 등을 우려한 범죄피해자나 목격자가 형사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해외에 있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에 대한 조사가 요청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 형사사건의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증인 등의 보호 및 사법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원격화상시스템의 활용 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2. 연구의 필요성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제도는 2003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6)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때 원격영상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장치가 갖추어져야 하는 바, ① 동영상 및 음성의 송수신 장치는 양쪽에 모두 갖추어져 서로 상대방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어야 하고 ② 동영상 및 음성의 전송은 양쪽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③ 전송되는 동영상 및 음성은 권한이 없는 자가 송수신할 수 없도록 보안장치를 갖추어야 할뿐만 아니라, ④ 그 밖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진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동법 제5조). 그리고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당사자 또는 피고인과 서로 다른 법정에 출석하여 원격영상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 법원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당사자 또는 피고인과 비공개로 대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동법 제6조), 재판의 진행상황은 전부 녹화되어야 한다(동법 제7조). 이러한 요건들이 모두 충족된 상황에서 진행된 원격영상재판은 재판관계인이 동일한 법정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재판으로 본다(동법 제4조).

7) “이르면 내년 ‘사이버 법정시대’ 열린다”, 법률신문, 2010년 12월 17일자.

8)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법은 원격영상재판을 정의하고 그 효과 및 필요 장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판에서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최초로 도입되었다. 비단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피고인의 면전에서 증언할 경우에 심리적 압박이나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증인에 대해서는 신문 과정에서 피고인과 격리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그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 또한 2009년 공직선거법상 재외국민선거제도가 도입되면서 해외에서 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 사실상 법 집행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2012년 공직선거법에 재외선거사범에 대한 인터넷화상조사 규정이 신설되었다. 요컨대, 증인의 보호 또는 수사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자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제도와 재외선거사범에 대한 인터넷화상조사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제도는 도입된 지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재외국민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나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화상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는 하였으나, 제도 시행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미처 구비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반설비조차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동 제도들의 법적 의의와 운영현황 및 문제점 등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가 요청된다.

한편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의 활용에 관해서는 형사사법의 비용 절감과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탁월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물론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형사법상 출석의 개념과 직접주의와의 관계 및 피고인의 방어권 등과 같은 쟁점들이 선결되어야 함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첨단정보통신기술이 일상화·보편화된 오늘날, 과학기술의 성과와 무관하게 전통적인 사법 시스템의 운용만을 고수하는 것은 자칫 사법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효율성은 과학기술의 유용성과 편리성이 사법의 공정성과 적절하게 융합될 때,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도 형사절차와 과학기술의 접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바,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의 활용 필요성과 법적 쟁점에 관한 고찰을 시작으로 이에 관한 외국 입법례와 우리나라의 운영 현황을 살펴본 후 동 제도의 발전적 활용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제1장 서론에 이어지는 제2장에서는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해야 할 필요성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동 시스템을 제도화했을 경우에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에 대해 검토하도록 한다. 우선, 형사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증인 등의 보호 및 형사사법 효율성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을 기술하고,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의 활용이 형사소송법상 직접주의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반한다는 비판 및 동 제도의 실효성 자체를 두고 제기된 의문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특히, 형사절차에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법적 쟁점이 선결되어야 할 것인 바, 형사법상 출석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필두로 원격화상시스템과 직접주의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의 활용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이 이루어질 것인데, 국내적 활용과 국제적 활용에 관한 입법례를 나누어 검토하도록 한다. 국내적 활용에 관해서는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4개국의 입법례를 살펴볼 것인데, 원격화상시스템이 사법 분야에 도입된 과정을 소개하고,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에 관한 법 규정을 상세히 기술할 것이다. 또한 각 국가들이 형사절차에서 원격화상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의 다각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데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한편, 국제적 활용과 관련해서는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 등 국제형사사법기관과 유럽연합이 동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입법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의 활용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현황에 관해 상세히 고찰할 것인데, 수사과정과 재판과정 및 교정과정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우선 수사과정에서는 국내거주인에 대한 수사에 원격화상시스템이 활용되고 있는 현황을 검토하고, 2012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국외거주인

에 대한 인터넷화상조사제도에 대해 서술한 후, 유치인에 대한 원격화상면회제도를 소개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재판과정에서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제도가 도입된 배경을 고찰하고, 그 구체적 내용과 운영 현황을 파악한 후 문제점을 분석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교정단계에서 원격화상시스템이 활용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볼 것인바, 수형자 가족의 편의를 고려해서 운영 중인 원격화상접견제도와 수형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원격화상진료제도를 중심으로 기술하겠다.

제5장에서는 앞서 논의되었던 외국 입법례를 토대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나아가 형사절차 전반에서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우선,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의 활용이 가능한 분야를 조명하고, 형사소송법을 중심으로 한 법적 정비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다음으로 제도적 정비 방안도 모색할 것인 바,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을 위한 망 구축, 장비의 개선과 설비의 표준화, 국제형사사법공조 강화 및 가이드라인 구비 등에 관해 논의하도록 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 활용과 관련된 국내외 단행본과 논문 및 보고서를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를 주된 방법으로 택하였다. 또한 형사절차에서 원격화상시스템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는 바, 운영현황 및 그 효과와 관련하여서는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각종 설문조사와 통계 및 분석 자료 등을 활용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경험적 실증연구를 겸하기로 한다. 제2장에서는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이 활용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논할 것인데, 대표적인 순기능 중 하나인 형사사법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앞서 동시시스템을 제도화시킨 서구 국가의 조사 자료들을 분석하도록 한다. 또한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법적 쟁점 중 하나인 출석의 개념 정의와 관련해서는 국내에서의 논의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외국의 논의 및 판례를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제3장에서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

템 활용에 관한 입법례를 연구함에 있어서는 동 시스템이 도입된 배경은 물론이고 관련 법조문의 제·개정과정을 연혁적으로 고찰하도록 한다. 또한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의 도입 및 운용과 관련된 기관들의 웹사이트를 활용하고, 다양한 사법통계 자료들을 분석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의 활용 현황을 살펴볼 것인데, 현행 제도들에 관한 법조문과 각종 예규 등이 검토될 것이다. 또한 수사기관과 법원에 구축되어 있는 원격화상회의 시스템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도를 제시할 것이고, 나아가 형사사법 전반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이용 현황을 기술함에 있어서는 통계자료와 사진자료 등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5장에서 형사절차 전반에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방안을 모색할 것인 바,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전제되어야 할 망 구축 방안들을 도식화하여 기술하도록 한다.

제2장

형사절차상 원격화상 시스템 활용의 필요성과 법적 쟁점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의 필요성과 법적 쟁점

제1절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의 필요성과 문제점

1.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의 필요성

가. 실체적 진실의 발견

형사사법절차에서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순기능 중의 하나는 증거수집이 용이해짐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근접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형사소송의 최고이념인 실체진실의 발견은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는 것으로서 공판절차에서는 물론이고 수사절차에서도 적용되는, 즉 형사소송의 모든 단계에 걸쳐 적용되는 이념이다.⁹⁾ 특히 공판단계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법원은 증인과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제296조의2),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동법 제295조), 형사소송법은 합리적 사실인정을 통하여 실체진실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증거재판주의(동법 제307조)와 자유심증주의(동법 제308조)를 증거법의 기본원칙으로 규정

9)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2, 23면, 25면.

하고 있다.¹⁰⁾ 이 중 증거재판주의는 형사소송에서 사실의 인정은 법관의 자의에 의할 수 없고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요컨대, 형사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사안의 진상을 명확하게 밝혀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인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에는 물적증거¹¹⁾와 증거서류¹²⁾ 외에 사람의 진술 내용이 증거가 되는 인적 증거가 있다.¹³⁾ 대표적 인적 증거인 증인은 과거 자신이 직접 체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바, 증인신문은 이를 통해 증언을 확보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법관의 면전에서 현출되는 증인의 표정이나 진술태도가 법관의 심증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증거조사 방법이 된다.¹⁴⁾ 이로 인해 형사소송법은 증인에게 출석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¹⁵⁾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일정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¹⁶⁾ 증인거부권¹⁷⁾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상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은 모두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여야 하고, 해당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즉시 법원에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68조의2). 객관적 사실이 문제되는 물적증거나 증거서류와 달리 인적증거는 진술자의 주관적 사정이 증거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출석의무 위반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 규정을 마련하는 것 못지않게, 이들의 자발적인

10) 실제진실주의는 오판의 방지는 물론이고 오판의 시정도 그 내용으로 하므로, 상소와 재심제도 또한 실제진실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이다.

11) 물건의 존재 또는 상태가 증거가 되는 것으로 범행에 사용된 흉기 또는 절도의 장물 등이 이에 해당한다.

12) 서면의 의미내용이 증거가 되는 것으로 공판조서나 검증조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13) 증인의 증언이나 감정인의 감정이 인적 증거에 해당한다.

14) 이재상, 앞의 책, 480면.

15) 출석의 의무는 공판기일의 증인신문에 소환받은 증인은 물론이고, 공판준비절차나 증거보전절차의 증인신문에 소환받은 증인에게도 인정된다.

16)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 증인이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동조 제2항).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할 수도 있다(동법 제152조).

17) 형사소송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공무상 비밀에 대하여 증인신문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증인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는데(형사소송법 제147조), 이는 증인의무의 이행은 거절할 수 있으나 출석을 거부할 수 없는 증인의 증언거부권과 구별된다.

출석과 성의 있는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욱이 수사의 협조자에 불과한 참고인¹⁸⁾의 경우에는 출석과 진술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¹⁹⁾ 이들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보다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참고인의 진술은 피의자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데 의미 있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고자 방문조사²⁰⁾와 우편·전화를 통한 조사²¹⁾ 및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조사²²⁾ 등이 부분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중요범죄를 수사

- 18)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21조), 이때 피의자 아닌 제3자를 참고인이라 한다. 참고인은 제3자라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증인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법원 또는 법원에 대하여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증인과 달리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술하는 자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이재상, 앞의 책, 237면.
- 19) 증거보전(형사소송법 제184조)이나 증인신문의 청구(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를 통해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절차들을 통해서는 수사기밀을 유지하기 어렵고 또 그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다. 박상식, “참고인진술의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참고인 강제구인을 중심으로”, 한양법학 제21권 제4집(통권 제32집), 한양법학회, 2010, 208면.
- 20) 2008년 2월 17일 BBK 특별검사팀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방문하여 참고인 조사를 하였고(“특검,李당선인 무혐의 결론낸 듯”, 매일경제신문, 2008년 2월 19일자; “38일짜리 특검 ‘태생적 한계’”, 동아일보, 2008년 2월 22일자), 2009년에는 장자연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참고인을 방문조사하였으며(“경찰 ‘장자연 술집대 강요 공범 혐의 6명 조사’”, 동아일보, 2009년 4월 6일자), 검찰은 진해시장을 방문하여 진해시금고 유치 및 각종 인허가와 관련하여 관내 기업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의 대가성에 대하여 참고인 조사를 하기도 하였다(“시장 군수님 어디 갔소? 단재장 10여명 비리 구속수사 중”, 경향신문, 2009년 1월 15일자). 통상 참고인 방문조사는 고위공무원이나 기업대표 등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박상식, 앞의 글, 217면.
- 21) 2004년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 관련 사건에서 신고인이나 참고인 등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편으로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편진술제는 우편진술서의 회송불응, 우편문답을 통한 참고인 진술 확보의 어려움, 진술의 신빙성 등의 문제로 인해 잘 이용되지 않고 있으며, 실무상 출석하지 못하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주로 전화통화를 통해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 한편 전화통화를 통해 취득한 참고인 진술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를 전문증거로 보고, 진술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대법원 1999. 2. 26. 98도2742).
- 22) 2006년 6월 26일 전부개정되어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인권보호수사준칙 제52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를 비롯한 수사업무 종사자는 참고인에 대하여 정황이나 정상을 간단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자우편(e-mail)이나 전화 청취서 등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법무부 홈페이지 법정책정보 인권보호수사준칙 전면개정 참조, http://www.moj.go.kr/HP/COM/bbs_03/ShowData.do?strNbodCd=noti0039&strWrtNo=100&strAnsNo=A&strFilePath=moj/&strRtnURL=MOJ_40202000&strOrgGbnCd=100000 (2012년 10월 20일 최종접속); 박미숙/도중진, 피의자·피고인·참고인·증인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114-115면. 실제로 검찰은 인권보호수사준칙이 개정되기 전인 2001년에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사이트인 ‘소리바다’의 저작권 침해 사건을 수사하면서 회원 3백여명을 무작위로 선별해서 이메일로 참고인조사를 했던 적이 있다(“[검찰] ‘소리바다’ 회원300명 e-메일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바,²³⁾ 이에 대한 대안으로 원격화상시스템의 활용을 모색할 수 있다. 쌍방향 비디오와 오디오 전송을 통해 동시에 소통할 수 있는 상호적 의사소통 기술인 원격화상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증인이나 참고인의 시간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직접대면과 유사한 방법으로 증인신문이나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한편 재외국민²⁴⁾이 관련된 사건에서도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하여 진술을 확보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에 한층 가까워질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내지 진술서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거주 내지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서류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²⁵⁾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진술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아무런 언급이 없다.²⁶⁾ 우리나라의 사법기관이 재외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조사를 진행할 경우, 사법주권의 침해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는바, 이 경우 인터넷화상조사를 활용한다면 보다 용이하게 증거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법의학자나 과학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심리에 원격화상시스템을 이용한다면,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

로 조사”, 한국일보, 2001년 3월 13일자). 일반적으로 참고인의 수가 많은 경우에만 수사 편의를 위해 전자우편 방식에 의한 참고인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참고인을 직접 소환하여 조사한다.

23) 박상식, 앞의 글, 208면

24)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며, 이는 재외동포의 개념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의미하는 ‘외국국적동포’를 제외한 개념이지만, 선거권과 관련한 재외국민은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지는 않았지만 해외이주의 목적으로 외국에 장기체류하는 경우는 물론 해외이주의 목적이 없이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국외여행자, 재외공무원, 상사주재원, 유학생 등 단기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호원, “재외선거범죄에 대한 법적 쟁점”, 형사법의 신통향 제24호, 대검찰청, 2010, 323-324면.

25) 형사소송법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또는 제313조(진술서등)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26) 2012년 2월 29일에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는 재외선거사법에 대한 영사조사제도(제218조의32)와 함께 인터넷화상조사제도(제218조의33)가 도입되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보다 쉽게 청취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인적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²⁷⁾

나. 증인 등의 보호

참고인이나 증인 등은 형사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고소·고발한 자나 범죄목적자로서 진술한 참고인 또는 증인 등에 대한 보복사건이 발생하면서,²⁸⁾ 범죄피해자나 목격자 등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 또는 증언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²⁹⁾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피고인의 인권 보호와 방어권 보장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에 반해,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은 것이 사실이다. 종래 형사절차상 피고인은 소송의 주체로서 자신의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와 소송절차에의 참여권을 보장받아온 반면, 피해자 증인은 수동적 위치에서 소송절차의 객체, 즉 증거방법 중 하나로 치부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 ‘도덕

27) General Secretariat of the Council, Videoconferencing as a part of European e-Justice: the essentials of videoconferencing in cross-border court proceedings, European E-Justice, 2009, pp. 13-14.

28) 1990년 6월 13일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앞에서 법정증언을 마치고 나오던 증인 임모씨가 폭력조직 행동대원들로부터 칼에 찔려 죽은 소위 동아파 보복살해사건(“증인 보호 못하는 법정” 일대 경중, 경향신문, 1990년 6월 14일자), 1994년 10월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의 가족을 보복살해한 김경록 사건 등(“증언보복…누가 바른 말 하나”, 동아일보, 1994년 10월 16일자)을 그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한편, 2008년 4월에 성폭행 피의자가 자신을 고소한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하였고(“보복범죄서 증인을 지켜라…檢 ‘美 프로그램’ 이르면 내년 도입”, 경향신문, 2008년 7월 22일자), 2009년 5월에는 폭력사건 피의자가 경찰 치안센터에서 참고인 진술 증인 목격자를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치안센터 연행 폭력 피의자 경찰 보는 앞에서 참고인 살해”, 동아일보, 2009년 6월 1일자)이 일어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다.

29) 1973년 미국의 한 연구에 의하면 증범죄(살인, 강간, 강도, 상해, 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조사된 1,547건의 사건 중 약 23%가 증인의 비협조로 기소되지 못하였고 비협조한 증인의 28%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그 이유로 들고 있었다. 정진수, “미국의 증인보호제도”, 형사정책연구 제7권 제3호(통권 제27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131면. 동아파 보복살해사건 직후 법정증인들이 출석을 기피하거나 법정에 출석하더라도 증언을 번복하는 경우가 속출하였으며(“법정증인 「폭력 무방비」 보복 두려워 출석기피 잇따라”, 동아일보, 1991년 1월 13일자), 김경록 사건 직후에도 범죄피해자와 증인들이 법정 출석을 피해 중책을 감추거나 피해사실을 부인하는 일들이 일어났다(“증인 「법정공포증」 확산”, 경향신문, 1994년 10월 13일자).

적 피고인'이 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다.³⁰⁾ 이로 미루어 볼 때, 형사절차상 증인 등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이들이 형사절차에서 경험하게 되는 열악한 지위와 무관하지 않다.

증인 등에 대한 특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과 관련하여 자주 거론되는 참고인 또는 증인의 유형으로는 아동피해자나 성폭력범죄 피해자 및 범죄조직 등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자 등이 있다. 아동피해자 또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죄사실을 진술할 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일이 종종 있고, 조직범죄 등과 관련하여 진술하는 참고인이나 증인 등은 자신과 가족에 대한 보복 가능성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참고인이나 증인 등을 보호해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중의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형사절차에서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다.³¹⁾ 보복범죄의 우려 등으로 인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출석하는 것을 기피하는 참고인이나 증인에게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제시된다면, 이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줄여줌으로써 진술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불안·공포 등의 부정적 심리상태에 기인한 허위진술이나 허위증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³²⁾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원격화상시스템은 아동학대 또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면함으로써 느끼게 될 정신적 고통은 물론이고 수사 및 재판 담당자와 방청객 앞에서 진술함으로써 받게 될 심리적 압박감이라는 2차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이다. 이에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사소송법」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³³⁾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30) 예컨대, 강간죄와 같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증인은 범행현장에서의 반항여부나 과거의 성경험에 대한 사실까지 진술할 것을 요구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기소된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다. 안경옥, “비디오 등 영상매체를 이용한 증인신문”, 민주법학 제18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0, 230-231면.

31) 원격화상시스템은 심약하거나 위협을 받아서 겁에 질린 증인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General Secretariat of the Council, Id., p. 13.

32) 정신적 스트레스와 공포 등으로 심리적 위축상태에 있는 참고인이나 증인이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소환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심리적 부담감을 느낀 나머지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소환에 응하여 일단 출석을 하였다 하더라도, 미처 해소되지 않은 심리적 위축 또는 긴장으로 인해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진술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3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범죄피해자를 비롯한 증인 등의 인권 및 사생활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상의 요청이다.³⁴⁾ 실제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는 참고인이나 증인 등이 단순히 절차의 객체로 취급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사법적 배려가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인 바,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의 활용은 이러한 맥락에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 형사사법 효율성의 제고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의 활용은 절차 진행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형사사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요청된다.³⁵⁾ 미국에서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의 이용이 시간과 비용을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가에 관한 대표적 사례로는 뉴저지 주 연방 법원에서 진행된 유나바머(Unabomber)의 일급 살인 혐의에 대한 기소인부절차를 들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뉴저지 주 연방 법원의 기소인부절차에 소환된 피고인 Theodore J. Kaczynski(유나바머의 본명)가 캘리포니아 주 새크라멘토 카운티 교도소(Sacramento County Jail)에 구속된 상태이고, 피고인을 뉴저지 주까지 호송하는 데 예상되는 소요비용은 무려 3만 달러에 달한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뉴저지 주 연방 법원은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단 45달러만으로 기소인부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³⁶⁾ 또한 델라웨어 주의 경우 교정시설에서 법원으로 범죄자를 이송시키는 데 평균 83달러가 소요되었으나, 교정시설에 구금 중인 형사피고인에 대한 기소인부절차에 화상전화를 사용함으로써³⁷⁾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이 절약된

34) 박광민,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지위강화”, 형사법연구 제10호, 한국형사법학회, 1998, 208면

35) Courts Use Video to Conduct Hearing, FED. CT. MGMT. REP(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S. Courts, Office of Pub. Affairs, Washington, D.C.), April 2000, pp. 5-6 참조

36) John T. Matthias/James C. Twedt, “TeleJustice - Videoconferencing for the 21st Century”, 5th National Court Technology Conference, 1997, 미국 국립 주법원 센터(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NCSC) 홈페이지 참조, http://www.ncsconline.org/d_tech/ctc/showarticle.asp?id=92 (2012년 10월 20일 최종접속).

37) 델라웨어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Delaware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System) 홈페이지, Delaware Case Study 참조, <http://deljjs.delaware.gov/pdfs/CaseStudy.pdf> (2012년 10월 20일 최종접속). A Report of the National Task Force on Court Automation and Integration: The Evolution of Integration, p. 3

다고 추정하였다.³⁸⁾ 하와이 주에서도 제1순회 법원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으로 사건처리 시간이 절반정도 감소하였고, 요구되는 보안 인력의 수도 줄어들면서 연간 45,000 달러 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보고되었다.³⁹⁾ 형사절차상 개인은 자신의 자유를 위협당하는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놓이기 일쑤이고, 또 실제로 개인의 자유에 제약이 가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민사절차에 비해 원격화상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시스템의 활용은 호송비용과 시간을 절감시킴으로써 형사사법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⁴⁰⁾

우리나라도 구속전 피의자신문 등에 원격화상재판을 도입할 경우, 피의자의 호송에 소요되는 인력과 경비 등이 절감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호송 중 피의자의 도주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⁴¹⁾ 또한 증인의 경우에 있어서도, 원거리에 있는 법정에 의무적으로 출석하게 되면 시간적·경제적 불이익의 감수가 불가피할 것이지만, 원격화상재판이 도입된다면 이러한 문제가 수월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미국이나 독일 등에 비해 국토면적이 좁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 필요성이 약화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그러나 지구촌이라는

38) 델라웨어 주는 연방 Edward Byrne Memorial State and Local Law Enforcement Assistance Program에서 수령한 보조금 150만 달러로 이 화상전화장치를 구입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벌금을 1 달러 인상함으로써 한 달에 14,000 달러의 수익을 거뒀으며 이를 전화선 설치와 유지비용으로 지출하였다. 이 장치들은 모든 경찰서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주 검찰, 국선변호기관 그리고 모든 형사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고, 모든 교도소와 일부 사회서비스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다. 델라웨어주에서 화상전화는 여러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화상 기소인부절차의 진행과 보석심리를 위해 사용될 뿐만 아니라, 영장승인을 위해서도 사용되고 있다. 또한 국선변호기관과 주 검찰은 화상회의를 위해 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법원은 행정적인 목적은 물론이고 호주와 이스라엘과 같이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사는 증인이 델라웨어 주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위해 증언할 수 있도록 이를 광범위하게 사용해 오고 있다. 델라웨어 형사 사법 정보 시스템(Delaware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System) 홈페이지, Delaware Case Study 참조, <http://deljjs.delaware.gov/pdfs/CaseStudy.pdf> (2012년 10월 20일 최종접속). A Report of the National Task Force on Court Automation and Integration: The Evolution of Integration, p. 4.

39) Roland T.Y. Moon, "1995 State of the Judiciary Address", 1996-JAN Haw. B.J.(Hawaii Bar Journal). 25, Hawaii State Bar Association, 1996, p. 28.

40) Gerald G. Ashdown/Michael A. Menzel, "The Convenience of the Guillotine?: Video Proceedings in Federal Prosecutions", 80 Denv. U. L. Rev. 63, University of Denver College of Law, 2002, p. 65.

41) 강민구, "21세기 첨단 전자법정에 관한 연구", 법조 제51권 제1호(통권 제544호), 법조협회, 2002, 57면.

말이 무색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해 검토를 요하는 외국(인)과 연관된 형사사건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과학적 지식이나 정보의 공유로 인해 특정 전문분야의 이슈와 관련해서는 단지 국내적 논의로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국외의 저명한 전문가들의 증언을 직접 듣고자 하는 요청이 생기게 되었다.⁴²⁾ 이 경우 국외에 있는 사건관련자나 전문가를 불러서 국내의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에 있는 자들을 출석시킬 때에 비해 훨씬 큰 규모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요컨대,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해서 증인이나 전문가들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면 소송경제적 측면에서 상당한 효율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2.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의 문제점

형사소송절차에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하면 형사사법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소송관계자의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상 보장되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는 경제적 효율성이나 사법적 편의를 증진시킨다는 이유로 간과될 수 없다.⁴³⁾ 또한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상 직접주의 원칙에 반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제도의 실효성 자체도 의문스럽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42) 최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국내 법의학자와 피고인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캐나다 법의학자 사이에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지면서 세인의 관심을 모은 바 있다(“만삭 의사부인 ‘피살이냐 사고사냐’ 국내외 법의학자 ‘법정 공방’”, 한겨레, 2011년 7월 21일자).

43) Gerald G. Ashdown/Michael A. Menzel, Id., p. 66; Patricia Raburn-Remfry, “Due Process Concerns in Video Production of Defendants”, 23 Stetson L. Rev. 805, Stetson University College of Law, 1994, p. 827.

가. 형사소송법상 직접주의에 반할 우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원의 심리를 공판절차에 집중시킴으로써 공판중심주의를 확립하고 있다.⁴⁴⁾ 공판기일에 양 당사자의 공격과 방어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공판절차에 있어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본원칙이 요구되는 바, 공개주의·구두변론주의·직접주의·집중심리주의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원격화상시스템이 활용될 경우 해당 공판절차는 공개주의⁴⁵⁾나 구두변론주의⁴⁶⁾ 및 집중심리주의⁴⁷⁾에는 부합할 수 있으나, 직접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직접주의란 법원이 공판정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에 의해서만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⁴⁸⁾ 직접주의는 법관으로 하여금 정확한 심증을 형성하게 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증거에 관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실현시키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⁴⁹⁾ 직접주의에 의할 때 법원은 스스로 조

44) 이재상, 앞의 책, 417면.

45)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헌법 제27조 제3항), 공개주의란 일반 국민에게 심리의 방청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국민으로 하여금 법원의 심판절차를 감시하게 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배종대/이상돈/정승환/이주원, 신형사소송법, 홍문사, 2012, 401-402면;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11, 687면; 신양균, 형사소송법, 화산미디어, 2009, 534-535면; 이영란, 한국 형사소송법, 나남, 2008, 497면; 이재상, 앞의 책, 418면; 정용석/백승민, 형사소송법, 대명출판사, 2011, 428면; 차용석/최용성, 형사소송법, 21세기사, 2008, 334면.

46) 공판기일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75조의 3), 특히 판결의 경우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구두변론에 의거하여야 한다(동법 제37조 제1항).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구두변론주의를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중 하나로 채택하고 있는 바, 법원은 당사자의 구두에 의한 공격 및 방어를 근거로 하여 심리 또는 재판을 하여야 한다. 배종대/이상돈/정승환/이주원, 앞의 책, 405-407면; 신동운, 앞의 책, 696-699면; 신양균, 앞의 책, 531면; 이영란, 앞의 책, 501-503면; 이재상, 앞의 책, 420-421면.

47) 심리에 2일 이상이 요구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연일 계속하여 심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집중심리주의 혹은 계속심리주의라고 한다. 집중심리주의는 법관으로 하여금 신신하고 확실한 심증에 의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재판이라는 형사소송의 이념을 실현시키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 배종대/이상돈/정승환/이주원, 앞의 책, 408면; 신동운, 앞의 책, 693면; 신양균, 앞의 책, 538면; 이영란, 앞의 책, 505-506면; 이재상, 앞의 책, 422-423면.

48) 배종대/이상돈/정승환/이주원, 407면; 손동권, 형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10, 425면; 신동운, 앞의 책, 699면; 신양균, 앞의 책, 533면; 이영란, 앞의 책, 503-504면; 이재상, 앞의 책, 422면; 임동규, 형사소송법, 법문사, 2011, 335면.

49) 배종대/이상돈/정승환/이주원, 407면; 손동권, 형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10, 425면; 신동운, 앞의 책, 699면; 이영란, 앞의 책, 504면; 이재상, 앞의 책, 422면; 임동규, 앞의 책, 335면.

사한 증거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하고(직접심리주의 또는 형식적 직접주의), 범죄 사실에 가장 근접한 직접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직접증거주의 또는 실질적 직접주의).⁵⁰⁾ 공판정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있는 증인에 대하여 원격화상시스템을 이용한 신문이 진행될 경우, 법관은 증인의 증언태도나 표정 등을 세밀하게 살필 수 없고, 이로 인해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증인은 원격화상시스템이라는 매체를 통해 증언함으로써 공판정에 물리적으로 출석했을 때에 느끼는 강도 높은 심리적 부담감을 덜게 되는데, 이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위증의 부담감 또한 경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공개석상에서 거짓말을 하는데서 오는 양심의 가책이 원격화상시스템이라는 매체가 활용됨으로써 감소될 수 있는 바, 증인으로 하여금 법정의 엄숙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우려

당사자주의를 대폭 도입한 현행 형사소송법 하에서 공판절차는 검사와 피고인의 공격과 방어에 의해 진행되는 바, 피고인은 형사소송의 주도권을 갖는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다만 피고인은 검사의 공격에 대하여 자기를 방어하는 수동적 당사자이기 때문에 검사를 공소권의 주체라고 한다면, 피고인은 방어권의 주체라고 할 수 있다.⁵¹⁾ 이에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검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소송절차참여권과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다. 피

50) 배종대/이상돈/정승환/이주원, 407면, 손동권, 형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10, 425면, 신동운, 앞의 책, 699면, 신양균, 앞의 책, 534면, 이영란, 앞의 책, 504면, 이재상, 앞의 책, 422면, 임동규, 앞의 책, 335면

51) 이에 대해서는 순수한 당사자주의를 채택하지 않은 형사소송법에서 소송주체에 지나지 않는 피고인을 당사자라고 지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바, 피고인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부정하면서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를 적극적 소송주체로서의 지위와 소극적 소송주체로서의 지위로 파악하는 입장도 있다. 배종대/이상돈/정승환/이주원, 앞의 책, 325면, 신동운, 앞의 책, 672면, 김일수,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고시연구 제124호, 대명고시연구회고시연구사, 1984. 7., 151면. 그러나 당사자의 지위가 순수한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에서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순수한 직권주의 소송구조를 취하고 있는 독일 형사소송법과 달리 현행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를 대폭 강화한 소송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바, 피고인은 단순히 소송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이나마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재상, 앞의 책, 110-111면.

고인은 법원구성에 관여하는 권리,⁵²⁾ 공판정출석권,⁵³⁾ 증거조사참여권,⁵⁴⁾ 강제처분절차 등의 참여권⁵⁵⁾ 등을 통해 당사자로서 소송절차 전반에 참여하여 소송절차를 형성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참여권은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전제가 된다. 피고인에게 보장되고 있는 방어권의 내용으로는 방어준비를 위한 권리,⁵⁶⁾ 진술거부권과 진술권,⁵⁷⁾ 증거조사에 있어서의 방어권,⁵⁸⁾ 방어능력의 보충⁵⁹⁾ 등을 들 수 있다. 형사절차에 원격화상시스템이 활용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즉, 피해자 증인과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
- 52) 피고인은 법원의 구성과 관할에 관여하는 권리를 가진다. 피고인의 기피신청권(형사소송법 제18조), 관할이전신청권(동법 제15조), 관할위반신청권(동법 제320조) 및 변론의 분리·병합·재개신청권(동법 제300조, 제305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 53) 피고인은 공판정에 출석할 권리를 가진다(형사소송법 제276조). 즉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개정하지 못하지만, 이러한 피고인의 출석권은 동시에 출석의무가 되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할 수 있다.
- 54) 피고인은 증인신문과 검증·감정 등에의 참여권을 가지고(형사소송법 제145조, 제163조, 제176조, 제183조), 공판준비절차에서의 증거조사(동법 제273조)와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증거조사(동법 제184조)에도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55) 피고인은 강제처분절차에 대한 참여권을 가지는 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대한 참여권을 보장받고 있다(형사소송법 제121조). 또한 피고인의 상소의 제기과 포기 및 취하권(동법 제338조, 제349조) 및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제453조)도 피고인에게 보장된 참여권이라 할 수 있다.
- 56) 피고인에게 방어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방어준비를 위한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이에 형사소송법은 공소장의 기재사항을 법정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공소장변경에 일정한 절차를 요구(동법 제298조)하도록 함으로써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있고,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동법 제269조)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공소장부분을 송달받을 권리(동법 제266조)와 공판기일변경신청권(동법 제270조) 및 공판조서열람당사권(동법 제55조)을 규정함으로써 피고인이 방어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57)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아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또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권리(동법 제286조 제2항)와 최후진술권(동법 제303조)을 보장하고 있는 것도 무기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이다.
- 58) 증거조사과정에서도 피고인에게 방어권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의 증거신청권(형사소송법 제294조), 의견진술권(동법 제293조), 이의신청권(동법 제296조) 및 증인신문권(동법 제161조의2) 등을 인정하고 있는 것도 피고인의 방어권의 내용에 속한다.
- 59) 피고인이 방어능력을 보충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검사와 피고인 사이의 실질적인 무기평등은 피고인이 수사의 주재자가 될 때에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나, 피고인이 검사와 같은 권한을 가질 수는 없다. 이에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피고인 사이의 무기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줄 뿐만 아니라, 검사에게도 객관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다. 즉, 변호인의 선임권과 의뢰권(형사소송법 제30조, 제90조), 접견교통권(동법 제34조, 제89조)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선변호(동법 제33조)와 필요적 변호제도(동법 제282조, 제283조)를 두고 있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능력을 보충하여 그 방어권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의 대면을 통해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진술자의 태도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이러한 기회가 박탈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⁶⁰⁾ 미국의 경우 피고인의 증인대면권이 헌법상 권리로 인정되고 있는바, 1988년 *Coy v. Iowa* 사건⁶¹⁾에서 연방대법원은 증언이 이루어지는 동안 증인과 피고인이 서로를 볼 수 없도록 고안된 스크린은 피고인의 대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⁶²⁾ 요컨대, 공판정이라는 동일한 물리적 공간 내에서 피고인과 증인이 대면하는 것을 원격화상시스템이라는 매체로 대체하는 것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60) Anne Bowen Poulin, "Criminal Justice and Videoconferencing Technology: the Remote Defendant", 78 Tul. L. Rev. 1089, Tulane Law Review Association, 2004, pp. 1113 ff 참조. 피해자의 참여권 보장이 피고인의 방어권 훼손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참여는 소송참여인들의 공격과 방어라는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실제진실 발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해져야 한다. 이상돈, "형사사법의 세 가지 지층과 피해자의 지위", 피해자학연구 제17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9, 41면 이하 참조.

61) *Coy v. Iowa*, 487 U.S. 1012(1988). John Avery Coy는 이웃집의 뒤뜰에서 캠핑하던 13세 소녀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985년 8월에 체포되었다. Coy에 대한 공판이 시작될 무렵인 1985년 11월, Iowa 주는 피해자인 아동 증인이 폐쇄회로 TV를 통해서 또는 차폐시설(스크린) 뒤에서 증언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하였고 동 법안은 1987년에 성문화되었다(Iowa Code § 910A.14(1987)). 사실심 법원은 아동 증인이 증언하는 동안, 피고인과 2명의 소녀 사이에 커다란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승인하였는데, 이 스크린으로 인해 피고인은 증인들을 어렵게 알아볼 수 있었으나, 아동 증인들은 피고인의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었다. 피고인 John Avery Coy는 수정헌법 제6조의 대면권을 근거로 스크린의 사용에 맹렬히 반대하였으나, 사실심 법원은 피고의 헌법상 권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Iowa 주 대법원 또한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가능성이 스크린으로 인해 손상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면권 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고 피고인의 유죄판결을 확인하였다(397 N.W.2d 730(1986)).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1) 대면권 조항은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형사피고인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이 행해지는 중에 피고인과 아동 성폭행 피해자 사이에 스크린(차폐막)을 설치하는 것은 피고인의 대면권에 위배된다고 판결하면서, Iowa 주 대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62) *Coy v. Iowa*, 487 U.S. 1012(1988), at 1016; Matthew J. Tokson, "Matthew J. Tokson, 'Virtual Confrontation: Is Videoconference Testimony by an Unavailable Witness Constitutional?'", 74 U. Chi. L. Rev. 1581, University of Chicago, 2007, p. 1589. 이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는 John A. Mayers, "Coy v. Iowa: A Constitutional Right of Intimidation", 16 Pepp. L. Rev. 709, Pepperdine University School of Law, 1989 참조. 연방대법원의 동 판결에 대해서는, 폐쇄회로 TV의 이용과 같은 절차적 대안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아동 성범죄 피고인에 대하여 증언하는 아동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고안된 많은 주 법령들을 좌절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

원격화상시스템의 구축에는 상당한 초기 투자비용이 필요하나, 동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비용절감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불명확하다. 더구나 1990년대 중반 원격영상재판을 도입하였지만, 시스템 유지비용에 대비하여 사용률이 현저히 떨어짐으로써 해당 장비가 폐기되었던 종래의 경험으로 인해 동 제도의 실효성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교통이 불편한 도서·산간벽지의 주민이 원거리에 있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서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1995년 12월 6일 법률 제5004호로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으며, 동법이 시행됨에 따라 1996년 2월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과 춘천지방법원 양구·인제군법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과 대구지방법원 울릉등기소 사이에 영상회의시스템이 설치되었고, 민사소액사건, 화해·독촉·조정사건, 즉결심판 및 협의이혼사건 등을 대상으로 원격영상재판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경주지원과 울릉등기소 사이의 원격영상재판은 월 5회 미만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하였고, 1998년 11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신설되어 울릉군의 관할이 포항지원으로 옮겨지면서 설비이전에 따른 비용부담의 문제가 발생하자 영상재판 시스템의 사용이 중단되었다. 홍천군법원과 양구·인제군법원 사이의 영상재판 시스템 역시 과도한 운영비 지출과 장비 노후화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2001년 4월경 폐지되었다.⁶³⁾ 이처럼 원격영상재판은 설비의 한계와 운영비용의 벽에 부딪혀 시행 초기 단계에 실패하였던 것이다. 국토가 광대하여 소송관계인이 해당 법정에 출석하는데 상당한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미국과 달리 전국 대부분 지역이 일일생활권의 범위 안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격영상재판을 실시할 만한 실익이 없다는 논의도 제기된다.

제2절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을 위한 법적 쟁점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지 17여 년이 지난 지금, 과학기술은 이

63) “이르면 내년 '사이버 법정시대' 열린다”, 법률신문, 2010년 12월 17일자.

전과 비교하여 한층 더 눈부시게 발전하였고, 법원에서는 전자소송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초창기 원격영상재판이 실패로 돌아갔던 때와는 달리 제반사정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사문화되어 있는 동 법률을 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기도 하였다. 이에 한걸음 더 나아가 형사절차 전반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는 바,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형사법상 출석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고, 직접주의 및 피고인의 방어권과의 관계를 어떻게 규명할 것인지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1.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을 위한 선결 쟁점

가. 출석의 개념

법률상 출석(presence)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원격화상시스템의 사법적 활용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쟁점이다. 미국의 경우 수정헌법 제5조(적법절차)와 제6조(대면권) 및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3조(피고인의 출석)⁶⁴⁾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연방법원에 출석할 것을 요구한다. 미국 연방법원에 의할 때,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절차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근간이 되고,⁶⁵⁾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그 어떤 절차도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이 형사소송 전반을 지배하는 주된 원칙이다.⁶⁶⁾ Smith v. Mann 사건⁶⁷⁾과 Cuoco v. United

64) 연방형사소송규칙 제5조(최초출석)와 제10조(기소인부절차)도 피고인의 출석과 관련된 규정이나, 출석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3조이다.

65) United States v. Washington, 705 F. 2d 489, 497(District of Columbia Circuit, 1983).

66) Wayne R. LaFare/Jerold H. Israel/Nancy J. King/Orin S. Kerr, 6 Criminal Procedure § 24.2(a) Origins and scope of the right to be present (3d ed.); Lewis v. United States, 146 U.S. 370, 372(1892); Illinois v. Allen, 397 U.S. 337(1970).

67) Smith v. Mann, 173 F.3d 73(2d Cir. 1999). 피고인 Todd Smith는 유통할 목적으로 코카인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어 1988년 12월 22일 뉴욕 주 Broome County 법원에서 기소인부절차를 밟았으며, 15만 달러에서 1만 5천 달러로 감해진 보석금을 납부하고 1989년 3월 8일 보석되었다. 보석으로 석방될 때, Smith는 자신의 거주지를 법원에 알렸고, 사실심 판사는 Smith에게 그의 거주지가 변경될 때에는 그의 변호사에게 알릴 것과 법원의 허가 없이 Broome County를 떠날 수 없다는 것 등을 고지하였다. 또한 법원은 Smith에게 그의 공판이 1989년 5월 8일 오전 9시 30분에 열린다고 고지하였고, Smith는 지정된 공판기일에 출석하겠다고 대답했다. 나아가 법원은 Smith에게 그가 공

States 사건⁶⁸⁾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제1심 재판은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와 대면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항소하였다. 그러나 두 사건에 대하여 연방항소법원은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출석을 전제로 한 헌법상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므로 결석재판을 여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⁶⁹⁾ 다만, 해당사건의 결석재판이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지만, 이와 별도로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3조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언급하였는바,⁷⁰⁾ 이는 일정한 경우에 피고인이 출석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피고인의 부재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 헌법에 비해 연방형사소송규칙은 보다 많은 절차에서 피고인의 연방 법원 출석을 요하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⁷¹⁾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출석권은 포기될 수 있는 바, 미국 연방형사소송규

판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결석재판을 진행하겠노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Smith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그가 공판 시간과 장소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런 다음 법원은 Smith가 불출석함으로써 공판정 출석을 전제로 하는 수정헌법 제6조상의 대면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법원은 Smith가 부재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였고, Smith는 결석재판에서 1급 규제약물소지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Smith의 소재 파악은 1992년에 Smith가 교정부(Department of Correctional Services)에 의해 구금된 뒤에야 이루어졌다.

68) *Cuoco v. United States*, 208 F.3d 27(2d Cir. 2000). 피고인 John A. Cuoco는 미국 우정공사(United States Postal Service) 지점에 대한 총 4건의 강도죄로 기소되었다. 당초 계획되었던 1992년 5월 9일의 증거배제심리 및 배심원선정절차가 피고인측 변호인의 와병으로 1992년 5월 13일로 연기되자, 피고인 Cuoco는 구금시설(Otisville Correctional Facility)로 되돌려 보내졌다. 이후 Cuoco는 연기된 날짜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보안관들(marshal)이 재판을 위해 Cuoco를 법정에 세우려 시도하였으나 Cuoco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측 변호인의 요청에 의해 법원은 보안관에게 필요하다면 Cuoco를 강제로 법정에 데려오라고 지시하였으며, 이로써 법원은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할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보안관들은 1992년 3월 16일에 Cuoco를 법정에 데려갔고, 판사는 Cuoco에게 그가 계속 협조를 거부한다면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정에 서지 않게 될 것이며, 법원은 그의 부재를 법정 출석권에 대한 자발적 포기로 간주하겠다고 고지하였다. Cuoco가 증언하는 동안, 증거배제심리가 수행되었으며, 증거배제심리 뒤에 있을 배심원선정절차에 앞서 법원은 Cuoco에게 죄수복을 갈아입고 싶은지 의향을 물었다. Cuoco는 ‘차라리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게 낫겠다’고 대답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결국 결석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69) *Smith v. Mann*, 173 F. 3d 73(2d Cir. 1999) at 76; *Cuoco v. United States*, 208 F. 3d 27(2d Cir. 2000) at 30.

70) *Smith v. Mann*, 173 F. 3d 73(2d Cir. 1999) at 76; *Cuoco v. United States*, 208 F. 3d 27(2d Cir. 2000) at 30-32.

71) Gerald G. Ashdown/Michael A. Menzel, Id., p. 71.

칙 제43조는 피고인이 연방법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경우와 출석권을 포기할 수 있는 경우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원칙상 피고인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소인부절차, 유죄답변, 배심원 선정과 평결을 포함하는 공판의 전(全) 단계 및 형선고 절차에 출석할 것이 요구된다.⁷²⁾ 만약 출석을 “보이거나 (말하는 것이) 들리는 범위 내(within sight or call)”⁷³⁾로 정의한다면,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한 소송절차는 거의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이용될 것이다.⁷⁴⁾ 그러나 미국 연방법원은 이러한 정의를 만장일치로 거부하면서,⁷⁵⁾ 출석이란 가까이에서 보거나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특정장소에서의 행위·사실·상태라고 정의하였다.⁷⁶⁾ 원격화상시스템이 문제된 *Valenzuela-Gonzalez v. United States* 판결⁷⁷⁾과 *United States v. Navarro* 판결⁷⁸⁾ 및 *United States v. Lawrence* 판결⁷⁹⁾에서 미국의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3조상의 “출석”이라 함은 물리적 출석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였다.⁸⁰⁾ *Navarro* 사건과 *Lawrence* 사건에서는 형선고 동안의 피고인 출석을 다루었고, *Valenzuela-Gonzalez* 사건에서는 기소인부절차 동안의 피고인 출석을 다루었는데, 각각의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물리적 출석이 아닌 원격화상시스템을 이용해서 소송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3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⁸¹⁾ *Navarro* 판결에서는 출석을 “보이거나 들리는 범위

72)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 43. Defendant's Presence (a).

73) “보이거나 들리는 범위 내(within sight or call)”는 Black's Law Dictionary(6th ed. 1991, p. 820)상의 “출석(presence)”에 대한 정의 중 하나이다. Gerald G. Ashdown/Michael A. Menzel, Id., p. 72.

74) Missouri Revised Statutes Title 38. Crimes and Punishment; Peace Officers and Public Defenders § 561.031 참조.

75) *United States v. Lawrence*, 248 F.3d 300, 304(4th Cir. 2001); *United States v. Navarro*, 169 F.3d 228, 236(5th Cir. 1999); *Valenzuela-Gonzalez v. United States*, 915 F. 2d 1276(9th Cir. 1990).

76) Black's Law Dictionary (6th ed. 1991, p. 820).

77) *Valenzuela-Gonzalez v. United States*, 915 F. 2d 1276(9th Cir. 1990).

78) *United States v. Navarro*, 169 F. 3d 228(5th Cir. 1999).

79) *United States v. Lawrence*, 248 F. 3d 300(4th Cir. 2001).

80) *United States v. Lawrence*, 248 F. 3d at 304; *United States v. Navarro*, 169 F. 3d at 236; *Valenzuela-Gonzalez v. United States*, 915 F. 2d at 1280.

81) *United States v. Lawrence*, 248 F. 3d at 302; *United States v. Navarro*, 169 F. 3d at 237; *Valenzuela-Gonzalez v. United States*, 915 F. 2d at 1281.

내”로 정의하는 경우, 비디오 텔레컨퍼런싱에 참여한 사람은 출석한 것이 된다고 지적한 반대의견이 있었으나,⁸²⁾ Black's Law Dictionary 상의 출석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는 용어의 “근본적 의미”와 “일반상식적 이해”에 따라 물리적 출석으로 파악된다는 것이 다수의견이었다.⁸³⁾ 요컨대, 형사절차상 피고인의 출석은 물리적 출석을 요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격화상시스템을 통한 출석이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그러나 2002년 12월 1일 개정된 미국 연방형사소송규칙은 경죄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서면동의를 전제로 일정한 형사절차를 원격화상시스템에 의해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⁸⁴⁾ 동 개정에서는 경죄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형사절차상 출석권을 포기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있다는 점,⁸⁵⁾ 법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경죄 피고인은 장거리 이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피하기 위해⁸⁶⁾ 자신의 출석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⁸⁷⁾ 또한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제43조⁸⁸⁾에 근거하여 활용되고 있

82) United States v. Navarro, 169 F. 3d at 241-42(Politz, J., dissenting).

83) United States v. Lawrence, 248 F. 3d at 304; United States v. Navarro, 169 F. 3d at 236; Valenzuela-Gonzalez v. United States, 915 F. 2d at 1281.

84)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 5(Initial Appearance); § 10(Arraignment); § 43(Defendant's Presence).

85)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 43, note of Advisory Committee(1944) (2002 amendment).

86) 유죄판결(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피고인이 형사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 186조가 사실상 사문화되어 그 운용이 저조한 우리나라와 달리, 수사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당사자주의 구조를 취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비롯하여 그 비용의 지출에 책임을 지는 자가 형사재판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원칙의 준수에 힘쓰고 있으며, 피고인이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의 범위도 상대적으로 넓다. 따라서 유죄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죄사건의 피고인으로서의 형사절차에 출석하는 데 드는 각종 고비용을 감당하기 보다는 출석권을 포기하여 본인의 비용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윤지영, 형사소송비용 부담과 절차보장, 법원행정처, 2012, 21면 이하 참조

87)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 43, Advisory Committee' note 3(1944), (2002 amendment); Gerald G. Ashdown/Michael A. Menzel, Id., p. 74.

88)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 43. (a) In Open Court.

공판에서 증인의 증언은, 연방법령, 연방증거규칙, 연방민사소송규칙의 규정들, 기타 연방대법원이 채택한 규칙들이 이와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 한, 공개법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적절한 보호 장치가 수반된다면, 법원은 다른 장소로부터의 동시적 전송에 의한 공개법정에서의 증언을 허용할 수 있다.

던 원격화상시스템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형사정책적인 측면에도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⁸⁹⁾ 요컨대, 경죄의 경우 피고인에게 원격화상시스템에 의한 형사절차 진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3조의 개정은 경죄 피고인이 자신의 출석권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원격화상시스템을 이용해서 물리적 출석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의 권리 보호는 물론이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있어서도 유용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경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에 한정될 뿐이고, 중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의 경우에는 최초출정을 한 바 있는 피고인이나 유죄답변을 한 피고인 또는 불항쟁답변을 한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권을 포기하는 특정한 경우가 아닌 한⁹⁰⁾ 물리적으로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원격화상시스템을 이용한 출석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3조 입안자들의 의도라 사료된다.⁹¹⁾

우리 형사소송법도 피고인의 출석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출석은 공판개정의 요건이 된다.⁹²⁾ 즉, 피고인의 공판정출석은 피고인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⁹³⁾ 또한 미국 연방형사소송규칙과 마찬가지로 경미사건 등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편의보호 및 불필요한 재판지연 방지를 위해 피고인의

89) Gerald G. Ashdown/Michael A. Menzel, Id., p. 74.

90)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 43. (c) Waiving Continued Presence (1) In General 참조 최초출정을 한 바 있는 피고인, 유죄답변 및 불항쟁답변(nolo contendere)을 한 피고인이 (A) 재판이 시작된 뒤, 자발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 (B) 형선고 동안 자발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사형에 해당하는 사건 제외), (C) 법원이 피고인에게 법정 소란으로 퇴정당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으나, 피고인이 피고인의 퇴정을 정당화하는 법정 소란 행동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출석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Karl Oakes, 11 Cyclopedia of Federal Procedure(3rd ed.) § 39:60. Right of, and necessity for, accused to be present in court, Database updated April 2012; Karl Oakes, 12 Cyclopedia of Federal Procedure § 48:13. Presence of defendant—Waiver of right, Database updated April 2012 참조

91) Gerald G. Ashdown/Michael A. Menzel, Id., p. 74.

92)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76조). 한편, 항소심 심판에 있어서는 제1심 공판절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인의 출정과 관련해서는 특칙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이다(제365조).

93) 배종대/이상돈/정승환/이주원 앞의 책, 448면; 신동운 앞의 책, 730면. 피고인에게 출석의무는 물론이고 재정의무도 있으므로 출석한 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81조 제1항).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⁹⁴⁾ 한편 경미사건이 아닌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서도 형사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결석재판을 허용하고 있다. 즉,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77조의2 제1항).⁹⁵⁾ 이에 대해서는 교도관에 의한 강제출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중죄 피고인이 출석권을 포기하는 것을 쉽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론상 부당하다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⁹⁶⁾ 그러나 구속피고인이 법정투쟁의 일환으로 출정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법원이 숙고하여 결석재판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⁹⁷⁾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동 규정 자체가 부당하다고 사료되지는 않는다.⁹⁸⁾

현행 형사소송법상 출석은 “보이거나 들리는 범위 내”가 아닌 “물리적 출석”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이는 용어의 근본적 의미와 일반적·상식적 이해에 부합한다. 다만 2009년 6월 9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통해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제도가 도입됨으로써 형사소송법상 출석의 개념이 “보이거나 들리

94) 형사소송법 제277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2. 공소기간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3.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 다만, 제284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4. 제453조제1항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95) 이와 같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77조의2 제2항).

96) 배종대/이상돈/정승환/이주원 앞의 책, 452면.

97) 구속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교도소장은 즉시 그 취지를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4). 법원이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가 존재하는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동 규칙 제126조의 5 제1항),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도관리 기타 관계자의 출석을 명하여 진술을 듣거나 그들로 하여금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동조 제2항).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재판장은 공판정에서 소송관계인에게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동 규칙 제126조의 6).

98) 이재상, 앞의 책, 459면.

는 범위 내”로 확대된 것은 아닌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증인에게는 출석의 의무가 있고, 피고인에게도 충분한 증인신문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증인신문은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은 증인보호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범죄의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법원은 증인의 연령·직업·건강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법정외에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65조).⁹⁹⁾ 요컨대, 현행 형사소송법상 증인신문은 증인의 공판정 출석을 전제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정한 경우에 증인의 공판정 출석이 요구되지 않는 공판정 외의 증인신문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 “물리적 출석”이라는 출석의 개념 자체가 “보이거나 들리는 범위 내”로 확대된 것은 아니다. 비디오 등 증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제도 또한 아동 등 일정한 범위의 범죄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경우에 입게 될 심리적 압박과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증인신문에 공판정 출석을 요구하지 않는 것일 뿐이지, 동 제도로 인해 출석의 개념 자체에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라 하겠다.

나. 직접주의와의 관계

직접주의란 공판정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는 원칙으로서 법원에서의 증거조사를 통하여 태도증거에 의한 정확한 심증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¹⁰⁰⁾ 구두주의와 함께 직접주의는 법관의 심증 형성에 기여하

99)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결정으로 지정한 장소에 증인의 동행을 명할 수 있고,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동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구인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66조). 또한 법원은 합의부원에게 법정외의 증인신문을 명할 수 있고 또는 증인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그 신문을 촉탁할 수 있다(동법 제167조 제1항). 한편 수탁판사는 증인이 관할구역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고(동조 제2항),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증인의 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에 속한 처분을 할 수 있다(동조 제3항).

100) 직접주의에는 법원이 스스로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한다는 직접심리주의 또는 형식적 직접주의(formelle Unmittelbarkeit)와 법원은 범죄사실에 가장 접근한 직접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직접증거주의 또는 실질적 직접주의(materielle Unmittelbarkeit)가 포함된다. Claus Roxin/Bernd Schünemann, Strafverfahrensrecht, 26. Auflage, C.H. Beck., 2009, S. 359; Gerd Pfeiffer/Rolf Hannich(KK-StPO), Karlsruher Kommentar zur Strafprozessordnung und

는 공판절차의 기본원칙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의 실현에 이바지한다. 또한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판과정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원의 심증형성에 합리성이 갖추어지도록 만든다.¹⁰¹⁾ 요컨대 직접주의는 심증형성의 합리성 또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이념 실현에 기여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며,¹⁰²⁾ 공개주의를 실현하는 바탕이 된다.

구체적으로 직접주의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형사사건에 관하여 심증을 형성하는 주체는 법원이어야 하고,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심증이 형성되어야 한다. 공판정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있는 증인에 대하여 원격화상시스템을 이용해서 신문이 진행될 경우에는 법원이 공판기일에 심증을 형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장소가 법정이라는 점에서 형식적 직접주의에 배치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일정한 경우에 형식적 직접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바, 수소법원이 아닌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에 의한 증거조사(형사소송법 제167조)와 공판정 밖에서 행하는 법원의 증거조사(동법 제165조) 및 공판기일 전에 행하는 법원의 증거조사(동법 제273조) 등이 그것이다. 특히, 피고인의 증인신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신중한 고려가 전제된다면, 증인을 공판정이 아닌 장소에 소환하여 신문할 수 있다. 즉 현행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증인의 연령·직업·건강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법정 외에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사용은 피고인에게 증인신문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직접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접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한편 법원은 범죄사실에 가장 근접한 직접증거를 토대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실질적 직접주의는 진술증거에 관해서는 증인을 신문할 것을 요하고,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한다. 이로 인해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

zum Gerichtsverfassungsgesetz, 6. Auflage, Beck Juristischer Verlag, 2008, Einl. Rn. 9; Karl Heinz Gössel, Strafverfahrensrecht, Kohlhammer, 1977, S. 168; Karl Schäfer, Strafprozeßrecht: eine Einführung, Walter de Gruyter, 1976, S. 252.

101) 배종대/이상돈/정승환/이주원, 앞의 책, 408면

102) 이재상, 앞의 책, 422면; 신동운, 앞의 책, 699; 신양균, 앞의 책, 533면.

협적 사실을 경험자가 법원에 대하여 직접 진술하지 않고 다른 제3의 매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고한 전문증거는 증거가 아니며,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전문증거배제의 법칙도 직접주의를 근간으로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¹⁰³⁾ 진술증거에 관하여 직접증거주의를 관철할 경우에 전문법칙과 유사한 결론이 도출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영미의 증거법에서 유래한 전문법칙은 대륙법계, 특히 독일법의 직접주의와 그 연혁 및 원리를 달리하는데,¹⁰⁴⁾ 전문법칙에 의하여 배제되지 않는 전문증거라 할지라도 법원에서 진술하지 아니한 증거는 직접주의에 배치될 수 있는 반면, 전문증언은 직접주의에 부합될 수 있는 것이다.¹⁰⁵⁾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이 직접주의에 배치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전문법칙과의 관계는 논외로 한다. 요컨대, 법원에서의 증거조사를 통해 태도 증거에 의한 정확한 심증을 얻는 것이 직접주의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동일한 공간 내에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심증을 얻을 수 있는 기술적 장치가 마련되는 경우에는 직접주의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공판참여자들의 모습과 소리를 보다 현장감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이러한 예외의 인정은 한층 더 용이해질 것이다.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한 공판정 신문의 경우, 모든 절차관계인들이 매체를 통해 대면한 상태에서 구두로 절차가 진행되고, 사전에 녹화된 영상물을 방영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는 점에서, 원격화상시스템은 직접주의에 친화적인 장치라 하겠다.

103) 배종대/이상돈/정승환/이주원, 앞의 책, 408면; 신동운, 앞의 책, 702면.

104) 이재상, 앞의 책, 583면; 차용석/최용성, 앞의 책, 547면.

105) 독일 형사소송법의 경우, 증언과 서증의 관계에서만 직접증거주의가 규정됨으로써 간접적인 증언이란 개념이 존재할 수 없고 그 결과 전문증인에 대한 신문은 직접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Karl Heinz Gössel, a.a.O., S. 238; Lutz Meyer-Goßner, Strafprozessordnung: mit GVG und Nebengesetzen, 54. Auflage, C.H. Beck, 2011, § 250 Rn. 4; Claus Roxin/Bernd Schünemann, a.a.O., S. 368; Karl Schäfer, a.a.O., S. 253.

다.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우려

헌법은 제12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적정절차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적 원리는 형사소송의 가장 중요한 지주가 되므로, 형사소송에서는 국가형벌권을 실현함에 있어서 실체진실주의와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물론이고 적정절차의 원칙 또한 구현되어야 한다. 적정절차는 공정한 재판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 및 피고인보호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하는바,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공정한 재판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할 것이 요구되고, 그 중에서도 특히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여부에 논의의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¹⁰⁶⁾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적정절차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은 소송의 주체로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¹⁰⁷⁾ 원격화상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피고인이 증인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반대신문권 행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 수정헌법 제6조에서 피고인의 증인 대면권(the right of confrontation)을 규정하고 있는바, 형사피고인은 자기에 불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과 물리적으로 직접 대면할 권리와 함께 교차신문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¹⁰⁸⁾ Crawford v. Washington 판결¹⁰⁹⁾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법정 밖에서

106) 공정한 재판의 전제로서 갖추어져야 할 것이 공평한 법원의 구성이다. 공평한 법원은 독립성이 보장되는 법원에 의하여 구성될 것을 요구하며, 편파적인 재판을 할 위험이 있는 법원에 의한 재판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형사소송법은 제척·기피·회피제도(형사소송법 제17조 내지 제24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의 활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 보인다.

107) Lutz Meyer-Goßner, a.a.O., Einl. Rn.24; Claus Roxin/Bernd Schünemann, a.a.O., S. 9; Karl Schäfer, a.a.O., S. 95; Hinrich Rüping, “Der Schutz der Menschenrechte im Strafverfahren”, ZStW 91, 1979, S. 351. 이러한 의미에서 피고인의 소송주체로서의 지위는 당사자주의의 결론이 아니라 적정절차 내지 법치국가원리의 결론이라 할 수 있다. 이재상, 앞의 책, 28면.

108) 미국 연방수정헌법 제6조는 “모든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고인은···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대면할 권리를 향유한다(In all criminal prosecutions, the accused shall enjoy the right ... to be confronted with the witnesses against him)”라고 규정하고 있다. Joseph G. Cook, 3 Constitutional Rights of the Accused 3d § 23:1, Database updated July 2012; Wayne R. LaFave/Jerold H. Israel/Nancy J. King/Orin S. Kerr, 6 Criminal Procedure § 24.3(a) Constitutional grounding (3d ed.), Database Updated November 2011.

의 증언적 진술(testimonial statements)은 증인의 증언이 불가능하고 피고인이 이전에 증인을 반대신문할 기회를 가졌다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이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반대신문의 기회 제공은 증언적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¹¹⁰⁾ 즉 재판 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증인을 반대신문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다면 그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¹¹¹⁾ 반대신문이 행해지지 않은 증언적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

109) *Crawford v. Washington*, 541 U.S. 36, 124 S.Ct. 1354(2004). 1999년 8월 5일 Kenneth Lee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Michael D. Crawford의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고인 Crawford는 피해자가 자신의 아내 Sylvia를 강간하려고 했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찾아가 싸우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흉부를 찔렀고 자신의 손에도 자상을 입게 되었음은 인정하였으나, 자신의 행동은 피해자인 Kenneth Lee가 먼저 흉기로 추정되는 무언가를 꺼내든다고 생각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Crawford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사건현장에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Crawford의 아내 Sylvia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손에는 아무 것도 들러 있지 않았다. 워싱턴 주 검찰은 Crawford를 폭행 및 살인미수로 기소하였고, Crawford는 공판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하였으며, Crawford의 아내 Sylvia는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증언하는 것을 금지하는) 워싱턴 주법상의 배우자 증언면책특권에 따라 증언하지 않았다. 그러나 워싱턴 주에서의 이러한 배우자 증언면책특권은 전문법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배우자의 법정외 진술에까지 미치지 않는기에, 검사는 피고인이 Kenneth를 칼로 찌른 것이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증거로서 Sylvia의 녹음된 진술(tape-recorded statements)을 제출하고자 하였다. Sylvia가 Crawford를 피해자의 아파트로 데려갔다는 것 그림으로써 폭행이 일어나도록 조장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자, 검사는 형사상 이해관계에 반하는 진술에 대해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워싱턴 증거규칙 제804(b)(3)를 적용하였다. 이에 피고인 Crawford가 워싱턴 주법이 자신의 아내 Sylvia의 녹음된 법정외 진술을 증거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인정되는 자신의 대면권을 침해한 것이란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검찰은 배심원에게 Sylvia의 진술이 녹음된 테이프를 들어주었고, 배심원들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후, 워싱턴 주 항소법원은 Sylvia의 진술에 있어서 신빙성이 특별히 보장되는지 여부를 9가지 요인을 들어 검토한 뒤, 그 진술에 신빙성의 특별한 보장이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다. 그러나 워싱턴 주 대법원은 Sylvia의 진술이 확고하게 자리잡은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신빙성의 보장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의 유죄판결을 유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rawford는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기를 신청하였으며, 연방대법원은 워싱턴 주가 Sylvia의 증언을 피고인의 재판에 이용한 것이 수정헌법 제6조의 대면권 조항에 위배된 것이 아닌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였다.

110) 수정헌법 제6조의 대면권 조항의 수립 배경 및 이와 관련된 중요사건들의 맥락을 짚어볼 때, 증인 대면권을 헌법상 보장하는 목적은 피고인의 참여가 배제된 일방적 신문(ex parte examination)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이용하는 폐해를 막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한다. *Crawford v. Washington*, Id., at 50.

111) W. Jeremy Counsellor/Shanon Rickett, “The Confrontation Clause after *Crawford v. Washington*; Smaller Mouth, Bigger Teeth”, 57 *Baylor L. Rev.* 1, Baylor Law Review, 2005, p. 3.

정했던 Ohio v. Roberts 판결¹¹²⁾을 파기한 것이다.¹¹³⁾ 반면, 비증언적 전문진술에 대해서는 Ohio v. Roberts 판결에서와 같이, 수정헌법상의 대면권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¹¹⁴⁾ Crawford v. Washington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증언적” 진술의 정의를 내리는 것을 후일로 미루었으나,¹¹⁵⁾ 최소한 예심절차(preliminary hearing), 대배심(grand jury), 이전 재판(former trial), 경찰 수사단계

112) Ohio v. Roberts, 448 U.S. 56, 100 S.Ct. 2531(1980). 1975년 1월 7일 Herschel Roberts는 Bernard Isaacs 명의의 수표 위조와, Bernard Isaacs과 그의 아내 Amy Isaacs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동년 1월 10일에 Roberts에 대한 예심(Preliminary Hearings)이 열렸다. 검찰이 세운 증인 중에는 Bernard Isaacs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Roberts의 변호인은 Bernard Isaacs의 딸 Anita Isaacs을 Roberts의 유일한 증인으로 세웠다. Anita는 자신이 Roberts와 알고 지내는 사이이며, 자신의 부재 중에 자신의 아파트를 사용하도록 허용했다고 증언했다. Roberts의 변호인은 Anita를 면밀히 신문하면서, 그녀가 수표와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Roberts에게 알리지 않은 채 수표와 신용카드를 Roberts에게 주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려고 하였으나, Anita는 이를 부인했다. Roberts의 변호인은 Anita를 적대적 증인으로 선언하지도 그녀에 대한 반대신문의 허용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검찰 또한 Anita를 신문하지 않았다. Ohio 주 Lake County 대배심은 Roberts를 수표 위조 (신용카드 등) 장물 취득 및 헤로인 소지 혐의로 기소하였다. Roberts의 예심을 담당했던 변호사는 지방법원 판사직을 맡기 위해 변호사직을 사임했고, Anita는 공판이 시작되기 전에 거주지를 옮겨 연락이 끊겼다. 1976년 3월에 시작된 공판에서 Roberts는 Anita Isaacs이 자신에게 수표책과 신용카드를 교부하였으며 이를 사용해도 좋다는 양해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를 반박하고자 검찰은, ‘모종의 이유로 공판에 출석하지 못하는 증인’의 예비신문증언을 허용하는 Ohio 주법 제2945.49조에 의거하여 Anita의 증언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헌법상의 대면권 조항 위반을 주장하며 Roberts가 Anita의 증언 서류를 거부하자, 사실심 법원은 그 진술의 증거능력 인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예비신문(voir dire hearing)을 수행하였으며 Anita의 어머니 Amy Isaacs이 증인으로 소환되어 딸의 소재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증언하였다. 사실심 법원은 Anita의 진술을 증거로 받아들였고, Roberts는 모든 혐의 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Ohio 주 항소법원은 예비신문을 검토한 뒤, 검찰이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의 출석을 확보하려는 “성실한 노력”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Ohio 주 대법원 또한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의 예심 증언을 증거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증언 대면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하여, Ohio 주 항소법원의 판결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연방 대법원은 피고인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의 예심증언(Preliminary hearing testimony)을 피고인의 재판에서 증거로 제시하는 것은 (1) 예심에서의 증인의 증언이 반대신문에 상당한 심문에 의해 확인되고, (2) 증인이 헌법적 견지에서 볼 때 공판에 출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정황이 밝혀진 경우에, 헌법상 허용된다고 판시하면서 Ohio 주 대법원 판결을 파기하였다.

113) Crawford v. Washington, 541 U.S. 36, 124 S.Ct. 1354(2004). at 36, 60 ff.

114) Crawford v. Washington 판결은 비증언적 전문증거가 문제가 된 경우에 있어서는 개별 주들에게 전문법칙을 규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 초안자들의 의도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Crawford v. Washington, Id., at 1374.

115) Ohio v. Roberts 판결의 파기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Rehnquist 대법원장은 “증언적” 진술에 대한 정의를 후일로 미루는 데 대하여 과도기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우려를 표하였다. Crawford v. Washington, Id., 1378.

(police interrogations)에서의 사전 증언(prior testimony)은 어떠한 기준에 의하더라도 증언적 진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¹¹⁶⁾ 따라서 이러한 진술들은 피고인이 반대신문의 기회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것이 금지된다.¹¹⁷⁾ 이후 연방대법원은 “증언적” 진술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확립하기 위해 진통을 겪고 있는바, Crawford v. Washington 판결에서 증언적 진술의 예시로 든 경찰의 신문에 대하여 “그 신문의 주요 목적이 현재 진행중인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 그러한 경찰의 신문과정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비증언적 진술이라고 판시한 2006년의 Davis 및 Hammon 판결¹¹⁸⁾과 2011

116) Crawford v. Washington, Id., at 1374.

117) 금태섭, “미국 헌법상 증언대면권과 전문법칙과의 관계”, 형사법과 헌법이념 제2권, 공법연구회 편, 박영사, 2007, 72면.

118) 2006년 Davis v. Washington 및 Hammon v. Indiana 사건에 대한 병합 판결(Davis v. Washington, 547 U.S. 813, 126 S.Ct. 2266(2006))에서, 연방대법원은 (1) 911 전화교환원의 질문에 대한 피해자의 답변은 비증언적 진술이며, 따라서 대면권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Davis v. Washington), (2) 경찰에 제출된 진술서(affidavit)상의 가정폭력 피해자의 서면진술은 증언적이므로, 대면권조항의 적용을 받는다(Hammon v. Indiana)고 판결하였다. 똑같이 경찰관을 상대로 한 진술이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경찰관이 질문을 하는 주요목적이 현재 진행 중인 위기상황에 대처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비증언적”인 반면, 현재 진행 중인 위기상황이 없고 질문의 주요목적이 차후 예상가능한 형사재판과 관련된 과거의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면 “증언적”이라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Davis v. Washington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2001년 2월 1일, 911 전화 교환원은 첫 번째 비상전화가 응답 없이 끊기자 역발신으로 전화를 걸어 Michell McCottry로부터 그녀가 전남 자친구인 Adrian Martell Davis로부터 폭행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Davis는 McCottry가 911 전화 교환원과 전화통화를 하는 사이에 집을 떠났고 911의 출동요청을 받은 경찰이 몇 분 뒤에 도착하여 McCottry가 입은 부상과 그녀의 겁에 질린 상태 등을 목도하였다. Davis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접근금지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경찰들은 McCottry가 최근에 부상을 입은 데 대해서는 증언하였으나, 그 부상의 원인에 대해서는 증언할 수 없었고, McCottry는 Davis에 대한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사실심 법원은 헌법상의 대면권 조항을 이유로 한 Davis의 이의에도 불구하고 911 전화기록을 증거로 받아들였다. Davis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Washington 주 항소법원은 원심을 확인하였다. Washington 주 대법원 또한 McCottry가 Davis를 가해자로 지목한 911 대화기록 부분은 “비증언적(not testimonial)”이라고 결론내리고 원심을 확인하였다. 연방대법원은 McCottry가 현재 진행중인 위기상황에 있었고, 유도된 진술은 현재의 위기상황을 경찰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것이었으므로 비증언적 진술이라고 보았다.

Hammon v. Indiana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2003년 2월 26일 밤 늦은 시각에, 가정폭력(domestic disturbance) 신고를 받은 경찰이 Amy Hammon과 Hershel Hammon 부부의 집에 출동하였다. 현관 앞에서 만난 Amy Hammon은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했으나, 다소 겁에 질려 있었고, 경찰들이 집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였다. 경찰은 가스 히터가 부서져 있고 유리조각이 바닥에 흩어져 있는 광경을 목격하였다. 부엌에 있던 Hershel Hammon은 ‘부부 사이에 언쟁이 있었으나, 지금은 다 괜찮아졌고, 논쟁이 폭력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 한 명은 Hershel

년의 *Mychigan v. Bryant* 판결¹¹⁹⁾ 등은 그 과정에서 나온 산물이다. 요컨대, 헌법

과 함께 부엌에 남고, 다른 경찰은 거실에서 Amy Hammon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다시 질문하였다. Hershel은 Amy와 경찰의 대화에 개입하고자 수차 시도하였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Amy의 사건설명이 있는 후에, 경찰은 Amy로 하여금 폭력사건 진술서(battery affidavit)를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했다. Amy가 작성한 진술서에 따르면 Hershel은 “가스 히터를 부수고 Amy를 깨진 유리조각이 흩어져 있는 바닥 위로 밀쳤으며, 그녀의 가슴을 때리고 그녀를 집어던졌다. 램프와 전화기를 부셨고, 그녀가 집을 떠나지 못하게 그녀의 차량을 부수고 팔을 폭행했다”. Hershel은 가정폭력(domestic battery)과 보호관찰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Amy는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그녀가 작성한 진술서와 그녀를 신문한 경찰의 증언은, 자신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없었다는 Hershel의 이의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인정되었다. Hershel은 유죄판결을 받았고, Indiana 주 항소법원 또한 1심을 확인하였다. Indiana 주 대법원은 Amy의 진술서가 ‘증언적’이고 또 잘못 인정된 것이기는 하나,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무해하다고 보아(it was harmless beyond a reasonable doubt) Hershel의 유죄판결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Hammon v. Indiana* 사건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위기상황이 없고, 신문의 주된 목적이 추후 예상되는 형사소추와 관련된 과거 사건을 확인하거나 입증하기 위한 것이므로 “증언적”이며 따라서 대면권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 119) *Michigan v. Bryant*, 131 S.Ct. 1143(2011). 2001년 4월 29일 오전 3시 25분경, 한 남자가 총에 맞았다는 긴급보고를 받고 출동한 Michigan 주 Detroit 경찰은 주유소 주차장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Anthony Covington을 발견하였다. 복부에 총상을 입은 Anthony Covington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힘겹게 경찰의 사건경위 질문에 대하여 “오전 3시경 Bryant의 집 후문에서 Bryant의 총에 맞은 뒤 주유소까지 차를 몰고 왔다”고 대답하였다. 경찰과 Covington 사이의 대화는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약 5분~10분 정도 이어졌으며, Covington은 병원으로 옮겨지고 나서 몇 시간 뒤에 사망하였다. Covington과의 대화를 마치고 지원을 요청한 경찰은 주유소를 떠나 Richard Perry Bryant의 집으로 향하였다. 경찰은 Bryant의 집에서 Bryant를 찾지는 못하였으나, 뒷자국과 후문 현관에 떨어져 있는 총알 자국을 발견하였으며, 집 밖에서는 Covington의 지갑과 신분증을 찾아냈다. Bryant는 California 주에서 체포되어 Michigan 주로 인도되었다. 연방대법원의 Crawford v. Washington 판결(2004. 3. 8.) 및 Davis v. Washington(2006. 6. 19.) 판결이 있기 전에 행해진 Bryant의 제1심 공판에서 Covington의 진술을 들은 경찰관들이 Covington의 진술에 대해 증언하였고, 배심원들은 Bryant의 (총기소지로 중죄가 되는) 2급 살인죄 및 증범죄 수행중 총기휴대(Michigan Compiled Laws Annotated §§ 750.224f, 750.227b, 750.317) 혐의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내렸다. Michigan 주 항소법원 또한 Bryant의 유죄판결을 확인하였으나(2004. 8. 24.), Michigan 주 대법원은 그 뒤에 나온 Davis v. Washington 판결(2006)을 고려하여 재심리할 것을 명하며 사건을 Michigan 주 항소법원으로 환송하였다. Michigan 주 항소법원은 Covington의 진술은 비증언적 진술이므로 이를 증거로 받아들인 것은 적법하다고 하여 재차 유죄판결을 확인하였다. 이에 Michigan 주 대법원은 Covington의 경찰신문에 대한 진술은 Crawford v. Washington 판결 및 Davis v. Washington 판결에 의거하여 “증언적”이며 따라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유죄판결을 번복하였다.

연방대법원은 Covington의 진술을 인정하는 것이 대면권 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상고를 받아들였으며, 이 사안은 최초의 피해자인 Covington을 넘어서 경찰 및 공중에 대한 위협 가능성을 수반한 “현재 진행중인 위기상황”이고, 경찰의 신문은 “경찰이 현재 진행중인 위기상황에 대처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이므로, Covington의 진술은 비증언적 진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대면권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다수의견이 대면권 조항의 범리를 왜곡하였으며, *Ohio v. Roberts* 판결과 같은 우를 범하였다는 비판을 제기하면서 Crawford v. Washington 판결의 대면권 조항 범리를 고수할 것을 주장한 Scalia 대법

상 증인대면권이 보장되고 있지만, 피고인과 동일한 공간에서 물리적으로 대면한 상태에서의 증언만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방어권과 증인보호 등의 다른 이익을 비교했을 때 분리증언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원격화상시스템을 이용한 증언이 허용된다. 즉, 대면권은 헌법상의 권리로 규정되어 있으나 절대적 권리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절박한 공익상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제한이 가능한 것이다.

형사피고인의 증인심문권이 헌법상 권리로 규정되어 있는 일본과 달리,¹²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헌법상 증인심문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신문의 방식이 규정되어 있을 뿐인데,¹²¹⁾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형사피고인의 대면권은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며, 입법자의 재량영역에 속하는 문제라고 파악하였다.¹²²⁾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마

관의 반대 의견이 있다(Michigan v. Bryant, Id., at 1168 ff 참조).

120) 일본국헌법 제37조 제2항은 「형사피고인은 모든 증인에 대하여 심문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으며, 공비로 자신을 위해 강제적 절차에 의한 증인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형사피고인의 증인심문권과 증인소환권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국헌법 제37조 제2항 전단에 규정된 형사피고인의 증인심문권은 피고인에게 심문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 경우 증인의 증언에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직접심리의 원칙을 보장한다. 그러나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는 본 조항이 직접심리를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으며, 또 반드시 영미법적 교호신문의 채용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最大判昭和 23年 7月 19日 刑集 2卷 8号 952頁; 最判昭和 25年 3月 6日 刑集 第4卷 3号 308頁). 芦部信喜/高橋和之, 憲法, 岩波書店, 2011, 243頁; 野中俊彦/中村睦男/高橋和之/高見勝利, 憲法 I, 有斐閣, 2012, 434-435頁.

121)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증인신문의 방식)

- ① 증인은 신청한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이를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한다.
- ② 재판장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 ③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신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 ④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이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문할 증인의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⑤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122) 헌법재판소 1998. 9. 30. 선고, 97헌바51. 「적법절차에 의한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는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이므로, 헌법은 제12조 제1항에서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를, 제27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법관의 법률에 의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재판청구권)를, 제4항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기본권들의 실현을 위하여 형사소송법은 제161조의2에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포함한 교호신문권을 명문으로 규정하였고, 제310조의2에서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진술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내용을 규정하여, 모든

련되어 있으나,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형평을 맞추고 있다. 증인신문과 관련하여서도 형사소송법 제163조는 피고인의 신문 참여를 규정하고 있으나,¹²³⁾ 동법 제164조는 피고인이 신문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¹²⁴⁾ 피고인의 방어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예외 없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이익형량의 대상이 된다. 특히, 일정한 요건 하에 증인보호라는 이익을 위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제약되고 있는 바,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퇴정후의 증인신문¹²⁵⁾과 차폐시설을 통한 증인신문 및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을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퇴정 후의 증인신문에 비해 차폐시설을 통한 증인신문은 시각적 접촉만이 제한될 뿐 반대신문권은 인정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충실하다. 또한 차폐시설을 통한 증인신문에 비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은 원격화상시스템을 매체로 할 뿐, 피고인이 시각적·청각적으로 증인과 대면한 상태에서 반대신문을 할 수 있다는

증거는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심리되어야 하는 직접주의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에 대하여는 반대신문할 수 있는 권리를 원칙적으로 보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는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진술되어야 하고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 이러한 권리보장은 적법절차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공개재판을 받을 기본권 실현을 위한 여러 방법 중의 한 방법일 뿐이고,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된 권리는 아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 권리를 부여하고 이 권리를 인정하는 근거를 배제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예외와 예외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입법권자가 규범체계 전체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정할 문제로서 적법절차에 의한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이를 형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123) 형사소송법 제163조(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

-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 ②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단,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124) 형사소송법 제164조(신문의 청구)

-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참여없이 증인을 신문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예기하지 아니한 불이익의 증인이 진술된 때에는 반드시 그 진술내용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25) 형사소송법 제297조(피고인등의 퇴정)

- ① 재판장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피고인 또는 어떤 재정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도 같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퇴정하게 한 경우에 증인, 감정인 또는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종료한 때에는 퇴정한 피고인을 입정하게 한 후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게 하여야 한다.

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한층 더 친화적인 제도라고 하겠다.

2.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을 위한 논의의 방향 설정

형사절차상 출석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고, 직접주의나 피고인의 방어권과의 관계를 어떻게 규명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모두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출석은 “보이거나 들리는 범위 내”가 아닌 “물리적 출석”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이는 용어의 근본적 의미와 일반적·상식적 이해에 부합한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나 증인은 관련절차 진행을 위해 공판정에 출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정한 경우 그 예외가 인정되고 있을 뿐, “물리적 출석”이라는 출석의 개념 자체가 “보이거나 들리는 범위 내”로 확대된 것은 아니다. 한편, 공판정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직접주의와 피고인의 방어권과 관련해서는 원격화상시스템을 통해 얼마나 생동감 있게 현장에 서와 같은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지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의 활용은 모든 절차관계인들이 매체를 통해 대면하여 구두로 진행되고, 사전에 녹화된 영상물을 방영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는 점에서, 직접주의의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친화적이다. 그러나 원격화상시스템이 이용되려면 동 시스템의 활용으로 인한 이익과 직접주의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비교형량하였을 때 전자의 이익이 후자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효용성이 입증될 수 있을 정도로 커야 한다. 그러므로 향후 논의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비롯한 증인 등의 보호 및 사법의 효율성 제고 등의 이익과 직접주의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으로 인한 이익을 비교형량한 후 전자의 이익이 우월한 것으로 평가되는 형사절차단계에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제3장

형사절차상 원격화상 시스템 활용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형사절차상 원격화상 시스템 활용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제1절 국내적 활용에 관한 입법례

1. 미 국

가. 사법 분야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도입

미국의 경우 1972년에 일리노이 쿡 카운티의 순회법원(Cook County Circuit Court)이 보석심리절차에서 화상전화(videophone)를 사용한 것을 시초로,¹²⁶⁾ 기소 인부절차를 위한 피의자 호송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1974년 필라델피

126) G. V. Coleman, Video Technology in the Courts, National Institute of Law Enforcement and Criminal Justice(U.S. Department of Justice), 1977, p. 7;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Briefing Papers: Videoconferencing, 1995, 미국 국립 주법원 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홈페이지 참조, <http://cdm16501.contentdm.oclc.org/cdm/ref/collection/tech/id/532> (2012년 10월 20일 최종접속); Shari Seidman Diamond/Locke E. Bowman/Manyee Wong/Matthew M. Patton, "Efficiency and Cost: the Impact of Videoconferenced Hearings on Bail Decisions", 100 JCRLC(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869,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2010, p. 877. 시카고 경찰지서에 유치된 피고인이 2.5마일 떨어진 쿡 카운티 순회법원에 화상전화를 통해 출석하였다.

아 시의 22개 경찰서 중 15개 경찰서에서 폐쇄회로 TV를 이용한 기소인부절차¹²⁷⁾ 및 보석심리절차가 시작되었다.¹²⁸⁾ 1982년 플로리다 주 데이드 카운티(Dade County)에서 경범죄 사건의 최초출정을 위해 쌍방향 TV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로 원격지의 기소인부절차에 비디오컨퍼런싱이 사용되었으며,¹²⁹⁾ 이후 아동학대 또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면할 때 받을 수 있는 정신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에 원격화상시스템이 활용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미국의 형사사법절차에서 원격화상시스템의 이용은 연방이 아닌 주 차원에서 먼저 시행되었고, 이후 동 제도의 활용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통일적 규범을 마련하고자 연방정부 차원에서 관련법을 개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연방대법원은 1990년 *Maryland v. Craig* 판결¹³⁰⁾에서 아동 학대 피해자가 일방

127) 기소인부절차(arraignement)란 공소가 제기된 후 공판절차가 정식으로 개시되기 전에 피고인에게 유죄인정 여부를 확인하여 이후 심리의 방향을 결정하는 절차를 일컫는다. 통상 공소 제기 후 판사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기소된 사실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배심원에 의하여 정식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한 다음 기소사실에 대한 인정여부를 묻는 것이 기소인부절차인데, 이 때 피고인이 유죄답변을 하게 되면 증거조사가 생략된 채 곧바로 양형절차를 거쳐 사건이 종결된다. 피고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심리방식을 차별화하는 등 절차는 다수의 사건들을 신속하고 간이하게 처리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확보된 시간과 인력을 다른 분쟁 사건들에 투입함으로써 심도 있는 심리가 이루어지게 한다. 윤지영, “경미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제12권 제1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0, 395면.

128) Ray Surette/W. Clinton Terry III, “The Case for Videotaping Misdemeanor Defendants”, 30 No. 3 Judges Journal 20,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1991, p. 22; Ronnie Thaxton, “Injustice Telecast: The Illegal Use of Closed-Circuit Television Arraignments and Bail Bond Hearings in Federal Court”, 79 Iowa L. Rev. 175, The University of Iowa(Iowa Law Review), 1993, p. 177.

129) Fredric I. Lederer, “Technology Comes to the Courtroom, and...”, 43 EMORYLJ(Emory Law Journal) 1095, Emory University School of Law, 1994, p. 1102; Jeffrey M. Silbert/Una Hutton Newman/Laurel Kalser, “The Use of Closed Circuit Television for Conducting Misdemeanor Arraignments in Dade County, Florida”, 38 U. Miami L. Rev. 657, University of Miami(Miami Law Review), 1984; Ray Surette, The Media and Criminal Justice Policy: Recent Research and Social Effects, Charles C Thomas Pub Ltd., 1990, p. 243 참조.

130) 1986년 10월, Howard County 대배심은 Sandra Ann Craig가 경영하는 유치원에서 일어난 성범죄 및 폭행, 학대 등의 혐의로 Sandra Ann Craig를 기소하였다.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기 전인 1987년 3월 Maryland 주는 아동 학대 사건의 경우 법원이 일방향 폐쇄회로 TV를 통해 피해아동의 증언을 받는 것을 허용하는 소송절차를 시행하고자 하였다(Courts and Judicial Proceedings Article of the Annotated Code of Maryland(1989) § 9-102). 이와 같은 일방향 폐쇄회로 TV 증언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판사가 “피해아동의 법정 증언이 피해아동에게 적절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정서적 스트레스를 야기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요구되었다. 피고인 Craig는 대면권 조항을 근거로 하여 이러한 일방향 폐쇄회로 TV 증언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였으

향 폐쇄회로 TV를 통해 증언하는 것을 허용하였다.¹³¹⁾ 동 판결에서 법원은 증인이 일방향 폐쇄회로 TV를 통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측에서 증인을 관찰하고 반대신문을 할 수 있었고, 배심원 역시 증인의 태도를 살필 수 있었으므로 대면권의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였다.¹³²⁾ 동 판결 이후 미국 의회는 “아동 피해자 및 아동 증인의 권리법(Child Victim's and Child Witnesses' Right act)”¹³³⁾을 제정하였는데,¹³⁴⁾ 법정 내에서의 실제 증언과 유사하도록 일방향

나, 사실심 법원인 Howard County 순회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판결을 내렸다(피해아동, 검사와 피고인측 변호인은 피해아동의 증언 및 반대신문을 위해 다른 방으로 물러나고, 판사와 배심원 및 피고인은 증언이 중계되는 법정에 남았다). Maryland 주 항소법원(Maryland Court of Sepcial Appeals)은 원심을 확정하였으나(76 Md.App. 250, 544 A.2d 784), Maryland 주 대법원(Maryland Court of Appeals)은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다(316 Md. 551, 560 A.2d 1120).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1) 대면권 조항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아동 증인이 공판정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물리적으로 출석한 장소의 외부에서 일방향 폐쇄회로 TV를 통해 증언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2) 일방향 폐쇄회로 TV 절차 이용의 필요성 인정은 사안의 구체적인 근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3) 피고인 앞에서의 아동의 행동 관찰 및 일방향 폐쇄회로 TV 절차의 이용이라는 덜 구속적인 대안에 대한 연구는, 연방 헌법상 일방향 TV 절차를 이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판결했다(Maryland v. Craig, 497 U.S. 836 (1990)).

131) Maryland v. Craig, 497 U.S. 836 (1990), at 860. 연방 대법원은 사실심 법원이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한, 대면권 조항은 어떤 주가 아동 학대 사건에 있어서 피해아동이 증언을 하는 데 일방향 폐쇄회로 TV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132) Maryland v. Craig, 497 U.S. 836 (1990), at 842, 850, 852.

133) 18 U.S.C § 3509 - 아동 피해자 및 아동 증인의 권리(Child victims' and child witnesses' rights).

(b) 실제 법정 증언에 대한 대안

(1) 아동의 쌍방향 폐쇄회로 TV 증언

(A) 아동에 대한 범죄혐의가 포함된 소송절차에 있어서, 검사, 아동의 변호인 또는 소송후견인은 동조 (h)항에 따라 아동이 법정 밖에서 증언하고 그 증언이 쌍방향 폐쇄회로 TV를 통해 방송되도록 하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그와 같은 명령의 필요성이 합리적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는 한, 그러한 명령을 요청하는 자는 적어도 공판기일 7일 전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B) 법원은 아동이 피고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인해 공개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 위 (A)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아동이 폐쇄회로 TV를 통해 증언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i) 아동이 두려움 때문에 증언할 수 없는 경우

(ii) 아동이 증언을 함으로써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게 되리라는 상당한 가능성이 전문가의 증언으로 인정된 경우

(iii) 아동이 정신질환 기타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iv) 피고인 또는 피고인측 변호인의 행동이 아동에게 증언을 속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C) (생략)

(D) (생략)

아동의 증언은 피고인, 배심원, 판사 및 공중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폐쇄회로 TV를 통해 전송되

이 아닌, 쌍방향 폐쇄회로 TV를 통해 아동증인이 증언을 하거나 영상녹화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¹³⁵⁾ 그러나 동 규정은 아동증인에 한정된 것이었고, 성인을 포함한 증인 일반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1996년 이후,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연방민사소송규칙을 통해 원격 증인신문이 허용되었으나,¹³⁶⁾¹³⁷⁾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의 대면권 침해 우려로 인하여 원격지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이 입법화되지 못하였다.¹³⁸⁾ 종래 미국 연방대법원은 피고인의 대면권과 관련하여서는 종종 입장을 밝혀왔으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원격지에 있는 증인의 증언을 일반적으로 허용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판시한 바가 없다.¹³⁹⁾

1999년 12월, 연방형사소송규칙 자문위원회(the Advisory Committee on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는 일정한 요건 하에 비디오컨퍼런싱을 통한 원격지

어야 한다. 피고인에게는 증언 중에 피고인측 변호인과 개인적·동시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폐쇄회로 TV는 아동이 증언하는 장소로 피고인의 영상과 판사의 음성을 중계하여야 한다.

134) Pub. L. 101 - 647, Title II(Victims of Child Abuse Act of 1990), § 225(a), 1990년 11월 29일, 104 Stat. 4798.

135) L. Christine Brannon, "The Trauma of Testifying in Court for Child Victims of Sexual Assault v. The Accused Right to Confrontation", 18 Law & Psychol. Rev. 439, Law and Psychology Review, 1994, p. 455.

136)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 43. Taking Testimony (a) In Open Court.

공판에서 증인의 증언은, 연방법령, 연방증거규칙, 연방민사소송규칙의 규정들, 기타 연방대법원이 채택한 다른 규칙들이 이와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 한, 공개법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적절한 보호 장치가 수반된다면, 법원은 다른 장소로부터의 동시적 전송에 의한 공개법정에서의 증언을 허용할 수 있다.

137) 1996년 연방민사소송규칙 제43조의 개정에 관한 자문위원회의 주석에 따르면, 다른 장소로부터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증언은 부득이한 사정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제시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단지 증인이 공판에 출석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증언의 전송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한다. 부득이한 사정 및 타당한 이유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예시로는 증인이 사고나 질병과 같은 예기치 못한 이유로 공판에 출석하지는 못하나 다른 장소에서 증언하는 것은 가능한 경우를 들 수 있고, 또한 재판일정이 변경되면 그 변경일자에 증인의 공판정 증언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어 원격화상시스템을 통해 증언을 동시적으로 전송하는 것이 재판일정을 다시 잡는 것보다 합리적인 것이 요구된다.

138) 증언 취득에 관한 연방민사소송규칙 제43조에 대응하는 연방형사소송규칙은 제26조로 현재 "모든 공판에서 증인의 증언은 28 U.S.C. §§ 2072 - 2077에 의해 채택된 법령 또는 규칙에서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 한, 공개법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방민사소송규칙 제43조가 1996년 개정 당시 구두 증언을 할 수 없는 증인을 감안하여 필기나 수화 또는 기타 기술적 진보가 반영된 수단을 통해 증언할 수 있도록 "구두" 증언에 관한 부분을 삭제한 반면, 연방형사소송규칙은 2002년에 와서야 "구두" 증언을 법문에서 삭제하였다.

139) Fredric I. Lederer, Id., p. 1119.

증인신문이 가능하도록 연방형사소송규칙 제26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¹⁴⁰⁾ 이는 *Maryland v. Craig* 판결의 단편적인 확대를 피하면서,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한 증인신문의 요건과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에 의한 증인신문의 기준을 일치시키고자 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¹⁴¹⁾ 수정헌법 제6조의 대면권 침해 가능성으로 인해 개정되지 못하였다.¹⁴²⁾ 또한 동 위원회는 피고인의 동의하에 최초출정(initial appearances)이나 기소인부절차(arraignments)에서 비디오 텔레컨퍼런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방형사소송규칙 제5조와 제10조를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¹⁴³⁾¹⁴⁴⁾ 끊임없이 증가하는 업무량으로 인해 사법절차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요청되었는바,¹⁴⁵⁾ 공판전 소송절차를 비디오컨

140)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 26 Committee note(Committee on Rules of Practice & Procedure 2000). 연방형사소송규칙 자문위원회는 연방형사소송규칙 제26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b)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연방형사소송규칙 제26조 (b) 사법 정의의 요구에 부응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다른 장소에 있는 증인의 증언이 공개법정에서 동시적 비디오 진술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 (i) 신청한 당사자가 이러한 동시적 비디오 진술에 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음을 밝힐 것
- (ii) 비디오 진술 전송을 위해 적절한 보안장치가 사용될 것
- (iii) 연방증거규칙 제804조 (a)에 규정된 바에 따라 증인이 대화를 나눌 수 없을 것

Michael D. Roth, "Laissez-Faire Videoconferencing: Remote Witness Testimony and Adversarial Truth", 48 UCLA L. Rev(UCLA Law Review) 185,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2000, pp. 196-197.

141) Michael D. Roth, Id., p. 197.

142) Molly Treadway Johnson/Elizabeth C. Wiggins, "Videoconferencing in Criminal Proceedings: Legal and Empirical Issues and Directions for Research", 28 Law & Policy 211, John Wiley & Sons Ltd., 2006, p. 214.

143)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 5 advisory committee's note(2002 amendments);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 10 advisory committee's note(2002 amendments).

144) 형사규칙자문위원회는 동 수정안이 "사법 절차의 중요한 요소에 대한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기소인부절차가 원격화상시스템에 의해 진행될 경우에 제기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우려 사항들을 거론하였다. ① 원격화상시스템에 의하여 기소인부절차를 진행할 경우 기소사실의 낭독이 줄 수 있는 영향력을 반감시킨다. ②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 기소인부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직접 피고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 ③ 피고인이 원격화상시스템을 통해 출석하고, 변호인이 법정에서 물리적으로 출석할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 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형사규칙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염려에도 불구하고 원격화상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소요되는 비용을 넘어서므로 일정한 요건 하에 법원과 피고인은 원격화상시스템을 통해 기소인부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 5(2002 amendment).

145) Michael D. Roth, Id., pp. 190-192.

퍼런상을 통해 진행하는 것은 탄력적인 일정 조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간적·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부각되었다.¹⁴⁶⁾ 더욱이 1980년대부터 1990년대에 구축되었던 사법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들은 그 품질이 형편없었고, 시간지연 등으로 인해 원활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였으나, 이후에 개발된 원격화상시스템 설비는 원격지와 법정 간에 실시간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물리적 출석에 한층 더 가까워졌다¹⁴⁷⁾ 이러한 요인들에 기반하여 2001년 10월 1일, 미국 연방사법협의회(Judicial Conference of the United States)는 연방법원이 피고인의 동의하에 최초출정이나 기소인부절차에 원격화상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방형사소송규칙 제5조와 제10조의 수정안을 통과시켰다.¹⁴⁸⁾ 2002년 5월 1일, 연방대법원은 이 수정안을 승인하였고,¹⁴⁹⁾ 이를 의회로 보냈다.¹⁵⁰⁾ 연방 형사

146) 2001년 상원의원인 Storm Thurmond는 비디오 텔레컨퍼런싱의 사용 증가가 법원의 안전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의사소통으로서의 많은 이점을 유지하면서도, 적은 비용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동의 없이 최초출정과 기소인부절차가 원격화상시스템에 의해 수행될 수 있도록 연방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하는 입법안을 제출하였다. 미국 의회도서관 홈페이지, Bill Summary & Status 107th Congress(2001-2002), S. 791(Video Teleconferencing Improvements Act of 2001) 참조, <http://thomas.loc.gov/home/LegislativeData.php?&n=BSS&c=107> (2012년 10월 20일 최종접속). 형사규칙자문위원회가 작성했던 연방형사소송규칙 제5조와 제10조에 관한 수정안도 피고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았으나, 이후 사법협의회는 피고인의 동의를 전제로 한 규정을 통과시켰다.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 5 advisory committee's note(2002 amendments);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 10 advisory committee's note(2002 amendments) 참조.

147) Gerald G. Ashdown/Michael A. Menzel, "The Convenience of the Guillotine?: Video Proceedings in Federal Prosecutions", 80 Denv. U. L. Rev. 63, University of Denver College of Law, 2002, p. 76; Michael D. Roth, Id., pp. 189-190.

148) Advisory Committee on Criminal Rules, Doc. No. 1276 참조.

149) 미국 연방대법원 홈페이지 Orders of the Court, October Term 2001, p. 836 참조 <http://www.supremecourt.gov/orders/jnl01.pdf> (2012년 10월 20일 최종접속).

150) 연방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사법협의회가 형사규칙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the Criminal Rules)와 시행 및 절차 규칙에 관한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the Rules of Practice and procedure)의 구성원을 임명한다. 양 위원회의 구성원들은 연방형사법원 및 지방법원 판사와 개업 변호사들로 구성된다. 형사규칙자문위원회는 개정안을 작성한 후 의견수렴을 위해 이를 공표한다. 동 자문위원회는 제안된 의견 중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수정안을 시행 및 절차 규칙에 관한 상임위원회에 송부한다. 동 상임위원회는 수정안을 수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고, 변경을 가할 수도 있다. 수정안을 수용할 경우, 상임위원회는 이를 사법협의회에 송부하고, 다시 사법협의회가 수정안의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사법협의회가 수용한 수정안 또는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변경을 가한 수정안은 연방대법원으로 송부된다. 연방대법원이 수정안을 받아들이면, 수정안이 발효될 수 있도록 그해 5월 1일까지 의회로 송부한다. 의회의 승인은 형사규칙 개정의 마지막 단계인데, 만약 의회가 연방대법원이 보낸 형사규칙 수정안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재판에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하자는 종래의 제안들은 의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였으나, 동 수정안은 최초출정이나 기소인부절차와 같은 공판전 단계에서 피고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사법협회의 기술 친화적(pro-technology) 정책¹⁵¹⁾에도 부합한다는 점, 그리고 주 법원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사용이 증가하였다는 점에서¹⁵²⁾ 무난하게 의회의 승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었다. 그러나 2002년 11월 20일에 연방 상원의회가 무기한 연기되고,¹⁵³⁾ 이어 2002년 11월 22일에 연방 하원의회가 무기한 연기되었는바,¹⁵⁴⁾ 연방대법원이 보낸 연방형사소송규칙에 대한 수정안을 의회가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동 규칙 제5조, 제10조, 제43조의 수정안¹⁵⁵⁾¹⁵⁶⁾은 2002년 12월 1일에 자동 발효되었다.¹⁵⁷⁾

동 수정안은 국회에 회부된 그해 12월 1일부로 법률이 되어 자동 발효된다. Geoffrey C. Hazard/Colin C. Tait/William A. Fletcher/Stephen M. Bundy, *Cases and Materials on Pleading and Procedure: State and Federal*, Foundation Press, 2009 참조.

151) 법정에서 기술은 사건처리와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하고, 공판시간과 소송비용을 줄이며, 증거제시·사실인정·배심원의 집중도와 이해력 및 법원 절차에 대한 접근성 등을 향상시킨다. Leonidas R. Meham, Report to Congress on the Optimal Utilization of Judicial Resources, Administrative Office of U.S. Courts, 2000, p. 9, <http://host4.uscourts.gov/optimal00/optimal2000.pdf> (2012년 10월 20일 최종접속).

152)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최초출정이나 기소인부절차에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수정안 제5조 (f)는 주 법원들이 초기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원격화상시스템을 사용하는 관행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 5 advisory committee's note(2002 amendment). 즉, 대부분의 주 법원이 공판이전 단계에서 원격화상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공판이전 단계에서는 중요한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법절차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Shari Seidman Diamond/Locke E. Bowman/Manyee Wong/Matthew M. Patton, Id., p. 880.

153) 148 CONG. REC. S11801: Order for Adjournment Sine Die or Recess(2002년 11월 20일).

154) 148 CONG. REC. H9126: Sine Die Adjournment(2002년 11월 22일).

155)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 43 피고인의 출석(Defendant's Presence).

(a) 피고인의 출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

피고인은 이 조항과 규칙 제5조 또는 제10조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절차에 출석하여야 한다.

- (1) 최초출정, 최초 기소인부절차 및 유죄답변
- (2) 배심원 선정 및 평결을 포함한 공판의 전(全) 단계
- (3) 형 선고 공판

(b)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출석할 필요가 없다.

- (1) 피고인이 단체인 경우
- (2) 경범죄의 경우
- (3) 법률문제에 관한 공청회의 경우

나.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에 관한 구체적 내용

(1) 증인신문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

미국 연방형사소송규칙 제26조에 의할 때 증언은 원칙적으로 공개된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법률에 규정된 경우 일정한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¹⁵⁸⁾ 또한, 미국 연방법전 제18편 제3509조는 아동피해자와 아동증인을 위해 법정 외에서 비디오 중계 장치를 통한 증언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18세 미만의 아동이 신체학대·성적학대 및 착취의 피해자이거나 제3자에 대한 범죄의 목격자인 경우,¹⁵⁹⁾ 법원이 ① 아동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증언할 수 없을 때, ② 전문가의 증언에 의하여 아동이 증언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을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 ③ 아동이 심신미약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을 때, ④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아동이 더 이상 증언하기 어렵게 된 경우와 같은 사유로 아동증인이 공개법정에서 피고인을 대면한 상태에서 증언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증인으로 하여금 법정 외에서 폐쇄회로 TV를 통하여 증언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⁶⁰⁾

미국 연방대법원도 아동학대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공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원격화상시스템을 이용한 출석이 허용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¹⁶¹⁾ Maryland v. Craig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성적·신체

(4) 형의 정정

(c) 지속적 출석의 포기

156) 연방형사소송규칙 자문위원회는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3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들 외에도, 법원이 연방형사소송규칙 제5조와 제10에 의한 비디오 텔레컨퍼런싱 소송절차를 허용하는 경우 또는 피고인이 연방형사소송규칙 제10조에 의거하여 기소인부절차에 출석하는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출석을 필요로 하지 않도록 한 개정안을 인정하였다.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 43 advisory committee's note(2002 amendments).

157) Geoffrey C. Hazard/Colin C. Tait/William A. Fletcher/Stephen M. Bundy, Id. 참조

158) 연방형사소송규칙 제26조는 미국 연방법전 제28편(사법 및 사법 절차, Judiciary and Judicial Procedure) 제2072-제2077조에 의거하여 채택된 규정 또는 법령이 동 규칙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 공개법정에서의 증언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 26).

159) 18 U.S.C. § 3509 Child victims' and child witnesses' rights. (a)(2).

160) 18 U.S.C. § 3509 (b)(1)(B).

161) Maryland v. Craig, 497 U.S. 836 (1990).

적 학대를 받은 여섯 살짜리 소녀가 법정에서 피고인과 대면하면서 받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여, 일방향 폐쇄회로 TV를 이용한 진술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동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원격화상시스템을 이용한 출석을 인정하기 위한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첫째 원격화상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한 공공정책을 발전시켜나가는 데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증인의 진술에 대한 신뢰성이 다른 방식으로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¹⁶²⁾ 요컨대, 연방대법원은 동 사건에서 한 쪽에서 발언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발언을 전송받는 일방향(one-way)의 비디오컨퍼런싱 기술을 이용한 증인신문을 허용하였다. 동 판결 이후 미국 의회는 “아동피해자 및 아동증인의 권리법(Child Victim's and Child Witnesses' Right Act)”을 통해 쌍방향 폐쇄회로 TV를 통해 아동증인이 증언을 하거나 영상녹화물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아래의 <표 1-1>과 같이 일리노이주, 애리조나주, 텍사스주, 인디애나주, 플로리다주 등 대부분의 주 의회가 이와 유사한 법규를 제정하였는데, 많은 하급법원들은 연방대법원의 Maryland v. Craig 판결을 아동학대 사건에서 아동증인의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방지하기 위해 쌍방향 비디오 증언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¹⁶³⁾

162) Maryland v. Craig, Id., p. 850; Riley A. Williams, “Videoconferencing: Not a Foreign Language to International Courts”, 7 Okla. J. L. & Tech. 54, Oklahoma Journal of Law & Technology, 2011 참조

163) Michael D. Roth, Id., pp. 194-195; Rodney R. Moy, “Unavailable Witnesses Allowed to Testify via Videotaped in Criminal Proceedings: Technology in the Courtroom”, 29 MCGLR(McGeorge Law Review) 611, McGeorge School of Law, University of the Pacific, 1998, p. 615.

표 1-1 이등증인의 증언 특례를 규정한 미국의 주 입법¹⁶⁴⁾

1	Alabama	Ala. Code § 15-25-3(a) (2000)
2	Alaska	Alaska Stat. § 12,45,046(a)(2) (Michie 1999)
3	Arizona	Ariz. Rev. Stat. Ann. § 13-4253(A) (West 2000)
4	Arkansas	Ark. Code Ann. § 16-43-1001(a)(1) (Michie 2000)
5	California	Cal. Penal Code § 1347(b) (West Supp. 1999)
6	Colorado	Colo. Rev. Stat. § 18-3-413.5(1)(a) (1999)
7	Connecticut	Conn. Gen. Stat. § 54-86g(a) (1999)
8	Delaware	Del. Code Ann. tit. 11, § 3514(a)(1) (1999)
9	Florida	Fla. Stat. Ann. § 92.54(1) (West 1999)
10	Georgia	Ga. Code Ann. § 17-8-55(a) (1999)
11	Hawaii	Haw. Rev. Stat. Ann. § 801D-7 (Michie 1999)
12	Idaho	Idaho Code § 19-3024A (Michie 1999)
13	Illinois	725 Ill. Comp. Stat. Ann. 5/106B-5(a) (West 1999)
14	Indiana	Ind. Code Ann. § 35-37-4-8(c) (Michie 2000)
15	Iowa	Iowa Code § 915.38(1) (1999)
16	Kansas	Kan. Stat. Ann. § 22-3434(a) (1999)
17	Kentucky	Ky. Rev. Stat. Ann. § 421.350(2) (Michie 1998)
18	Louisiana	La. Rev. Stat. Ann. § 15:283(A) (West 1999)
19	Maryland	Md. Ann. Code art. 27, § 774(a) (1999)
20	Massachusetts	Mass. Gen. Laws Ann. ch. 278, § 16D (West 2000)
21	Michigan	Mich. Comp. Laws Ann. § 660.2163a (West 2000)
22	Minnesota	Minn. Stat. Ann. § 595.02 subd. 4(2) (West 1999)
23	New Jersey	N.J. Stat. Ann. § 2A:84A-32.4(a) (West 2000)
24	New York	N.Y. Crim. Proc. Law § 65.10(1) (McKinney 1999)
25	Ohio	Ohio Rev. Code Ann. § 2937.11 (Anderson 1999)
26	Oklahoma	Okla. Stat. Ann. tit. 22, § 753(b) (West 1999)
27	Oregon	Or. Rev. Stat. § 40.460(24) (1997)
28	Pennsylvania	42 Pa. Cons. Stat. Ann. § 5985(A) (West 1999)
29	Rhode Island	R.I. Gen. Laws § 11-37-13.2(a) (2000)
30	South Dakota	S.D. Codified Laws § 26-8A-30 (Michie 2000)
31	Tennessee	Tenn. Code Ann. § 24-7-120(a) (1999)
32	Texas	Tex. Code Crim. Proc. Ann. art. 38.071 (Vernon 1999)
33	Utah	Utah Code Ann. § 77-15-5(2) (1999)
34	Vermont	Vt. Rules of Evidence § 807
35	Virginia	Va. Code Ann. § 18.2-67.9 (Michie 2000)
36	Washington	Wash. Rev. Code Ann. § 9A.44.150(a) (West 2000)
37	Wisconsin	Wis. Stat. Ann. § 972.11(2m)(a) (West 1999)

164) Michael D. Roth, Id, note 43 참조

나아가, 이러한 취지의 규정은 비단 아동증인에 한정해서 적용할 것이 아니고, 강간범죄로 인한 성인피해자¹⁶⁵⁾와 노인피해자¹⁶⁶⁾ 및 장애인피해자¹⁶⁷⁾의 증언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¹⁶⁸⁾ United States v. Gigante 사건¹⁶⁹⁾에서, 연방항소법원은 건강이 좋지 않은 증인을 원격화상시스템을 이용해 신문하는 것은 연방 헌법상의 피고인의 증인대면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쌍방향(two-way)의 비디오컨퍼런싱 기술이 활용되었는데, 법원은 ① 증인이 선서를 하였고, ②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이 가능하였으며, ③ 피고인을 비롯해서 배심원과 판사 및 피고인의 변호인이 모두 보는 앞에서 증인이 증언을 하였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서의 증인신문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2) 피고인에 대한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

연방형사소송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은 최초출정·기소인부절차·유죄답변·배심원단 선임절차·배심원단의 평결 및 형의 선고절차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¹⁷⁰⁾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이 처리되는 모든 소송단계에 출석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다. 물론 재판에 출석할 피고인의 권리가 연방헌법상 적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피고인의 권리는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연방수정헌법 제6조상의 증인 대면권에 근거하여 인정되고 있다. 나아가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3조가 이러한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를 구체화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절차와 그렇지 않은 절차를 구분하고 있다. 이에 의할 때 벌금형이나 1년 이하의 구금형에 처해지거나 양자가 병과되는

165) Lisa Hamilton Thielmeyer, "Beyond Maryland v. Craig: Can and Should Adult Rape Victims Be Permitted to Testify by Closed-Circuit Television?", 67 INLJ(Indiana Law Journal) 797, Trustees of Indiana University, 1992, pp. 797-798.

166) J. Steven Beckett/Steven D. Stennett, "The Elder Witness - The Admissibility of Closed Circuit Television Testimony After Maryland v. Craig", 7 Elder L.J. 313, Board of Trustees of the University of Illinois, 1999, 참조

167) J. Steven Beckett/Steven D. Stennett, Id. 참조

168) Michael D. Roth, Id., p. 195.

169) United States v. Gigante, 166 F.3d 75 (2nd Cir. 1999).

170) Karl Oakes, 11 Cyclopedia of Federal Procedure § 39:60;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 43(a).

경죄(misdemeanor offense)의 경우에 피고인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법원은 피고에게 물리적 출석을 요구하는 대신에 기소인부절차 또는 유죄답변 및 공판이나 형의 선고를 원격화상시스템에 의하거나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하도록 허용한다.¹⁷¹⁾

피고인에 대한 형사절차 중에서 원격화상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는 단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공판전 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격화상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다. 비디오컨퍼런싱 기술의 발달과 장비의 보편화로 인하여 2002년 개정된 연방형사소송규칙 제5조¹⁷²⁾ 및 제10조¹⁷³⁾는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최초출정과 기소인부절차에서 원격화상시스템이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⁷⁴⁾ 나아가 United States v. Burke 사건¹⁷⁵⁾에서 연방항소법원은 재판 전 증거배제신청에 대한 심리 과정에서도 원격화상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¹⁷⁶⁾ 다음으로 형의 선고절차에서 원격화상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다. 종래 연방항소법원은 United States v. Lawrence 사건¹⁷⁷⁾과 United States v. Torres-Palma 사건¹⁷⁸⁾에서는 쌍방향의 비디오컨퍼런싱 기술을 활용한 형의 선고절차가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3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2002년 12월 1일에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3조가 개정됨으로써 현재는 경죄의 경우에 피고인의 동의가 있다면 비디오컨퍼런싱 기술을 활용해서 형 선고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¹⁷⁹⁾ 한편 경죄에

171)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 43. Defendant's Presence (b)(2).

172)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 5(f). Video Teleconferencing.

173)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 10(c). Video Teleconferencing.

174) Wayne R. LaFave/Jerold H. Israel/Nancy J. King/Orin S. Kerr, 6 Criminal Procedure § 24.2(f) Video conferencing(3d ed.).

175) United States v. Burke, 345 F.3d 416, 62 Fed. R. Evid. Serv. 1271, 2003 FED Appl 3049P (6th Cir. 2003).

176) 법정에 지방법원판사를 비롯한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있고, 증인이 원격지에 있을 때 쌍방향의 비디오컨퍼런싱 기술을 활용하여 증거배제신청에 대해 심리할 수 있다. Karl Oakes, 11 Cyclopaedia of Federal Procedure § 39:60; Lester Bernhardt Orfield, 6 Orfield's Criminal Procedure under the Federal Rules § 43:11. Motion to suppress evidence, Database updated June 2012.

177) United States v. Lawrence, 248 F.3d 300 (4th Cir. 2001).

178) United States v. Torres-Palma, 290 F.3d 1244 (10th Cir. 2002).

179) Wayne R. LaFave/Jerold H. Israel/Nancy J. King/Orin S. Kerr, 6 Criminal Procedure § 24.2(f).

대해서는 피고인의 답변도 원격화상시스템을 통해 진행될 수 있으나,¹⁸⁰⁾ 유죄답변에 관한 심리과정에까지 동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은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다.¹⁸¹⁾ 또한 피고인이 중죄로 기소된 경우에는 피고인과 검사가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원격화상시스템을 통해 유죄답변을 할 수 없고, 유죄답변에 관한 심리 또한 비디오컨퍼런싱을 통해 진행될 수 없다.¹⁸²⁾

(3) 피고인과 변호인의 면담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

형사절차상 어떤 단계이건 피고인은 변호인과의 면담에 원격화상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강제될 수 없다. Van Patten v. Deppisch 사건¹⁸³⁾에서, 연방항소법원은 유죄답변 심리에서 변호인이 법정에서 물리적으로 출석하지 않고 스피커폰을 통해 참여한 데에는 소송구조상의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실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면서,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의 면담이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이루어졌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첫째,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의 대화가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피고인이 변호인에게 개별적인 법적 조언을 구할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거나 확인을 구할 수도 없으며, 자신이 느끼는 불안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바, 연방수정헌법 제6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둘째, 물리적으로 피고인과 한 공간에 있지 않았던 변호인은 법정에서 발생한 일이나 피고인의 행동을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절차에 대한 피고인의 이해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없는바, 변호인의 업무수행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셋째, 형사절차와 참여자들에 대한 판사의 관리·감독은 오류 발생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보장

180)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인이 유죄답변을 하는 것도 인정된다. 이에 대해서는 검사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검사가 불합리한 이유로 동의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불출석에 대한 타당한 이유 또한 당연히 제시되어야 한다. Lester Bernhardt Orfield, 6 Orfield's Criminal Procedure under the Federal Rules § 43:8. Plea.

181) Lester Bernhardt Orfield, 6 Orfield's Criminal Procedure under the Federal Rules § 43:8. Plea.

182) United States v. Wise, 489 F. Supp. 2d 968 (D.S.D. 2007); Lester Bernhardt Orfield, 6 Orfield's Criminal Procedure under the Federal Rules § 43:8.

183) Van Patten v. Deppisch, 434 F.3d 1038 (7th Cir. 2006).

하기 위한 것인데, 변호인의 물리적인 부재로 인해 판사가 변호인을 관리·감독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¹⁸⁴⁾

다.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 현황

(1) 뉴욕 주의 활용 현황

2009년 뉴욕 주 항소법원은 *People v. Wrotten* 사건¹⁸⁵⁾에서 나이가 많고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쌍방향의 원격화상시스템을 통해 증언을 하도록 하였다. 동 사건에서 피고인은 노인을 폭행하고 재물을 강탈한 죄로 기소되었는데, 재판 당시 피해자는 85세로 혼자 일어서는 것도 안정적이지 않고, 관상 동맥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고 있었다. 검사는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쌍방향의 원격화상시스템을 이용한 증언을 신청하였고, 제1심법원은 검사로 하여금 피해자가 실시간으로 법정과 연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 방법 이외에 피해자가 증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였다. 이에 검사는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제출하였고, 제1심법원은 피해자가 원격화상시스템을 통해 증언하는 것을 허용하였다.¹⁸⁶⁾ 이어 항소법원은 이 사건 제1심법원이 관련법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재량권을 행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즉, 제1심법원은 해당사건을 적절하게 해결하였고, 뉴욕 주까지 올 수 없는 증인의 건강도 보호하였으며, 이로 인한 피고인의 증인대면권 침해는 필요최소한에 그치고 있다고 판시하였던 것이다. 다만, 항소법원은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한 증언이 법정에 물리적으로 출석해서 이루어진 증언과 동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증인의 물리적인 불출석을 허용하는 결정은 개별 사건별로 그 필요성을 따져서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¹⁸⁷⁾

184) Wayne R. LaFave/Jerold H. Israel/Nancy J. King/Orin S. Kerr, 6 Criminal Procedure § 24.2(f).

185) *People v. Wrotten*, 14 N.Y.3d 33, 896 N.Y.S.2d 711, 923 N.E.2d 1099 (2009).

186) 피고인 측에서도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제1심법원이 검사 측 전문가 의견을 더 신뢰함으로써 비디오컨퍼런스를 활용한 피해자의 증언이 이루어졌다.

187) *People v. Wrotten*, 14 N.Y.3d 33, 896 N.Y.S.2d 711, 923 N.E.2d 1099 (2009) at 1103.

(2) 뉴저지 주의 활용 현황

뉴저지 주의 경우 교정단계에서 원격화상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미국연방은 교도소 소송 개혁법(Prison Litigation Reform Act of 1995)¹⁸⁸⁾을 통해 수감자의 교도소 소송을 제한하고 수감자가 공판전 소송절차를 위해 교정시설에서 벗어나는 것을 “실현가능한 범위까지(to the extent practicable)” 막도록 법원에 요구하면서,¹⁸⁹⁾ “전화나 비디오컨퍼런스를 비롯한 기타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통한 절차 진행을 인정하였다.¹⁹⁰⁾ 1995년 뉴저지 주 교정국은 증가하는 수감인원에 대한 대책으로서 Essex County 법원과 Essex County 국선변호인, 그리고 3곳의 주 교정시설(Northern State Prison, Southern State Correctional Facility, Bayside State Prison)에 원격화상시스템을 설치하여 활용하는 등의 원격화상시스템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이는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검찰청, 가석방위원회, 교정국, 국선변호인사무국(Office of the Public Defender) 등과의 협조 하에 이루어졌다. 이후 원격화상시스템은 교정시설뿐만 아니라 법원, 검찰청, 가석방위원회, 청소년선도위원회, 국선변호인사무국 등에 설치되었다. 법원의 경우에는 기소인부절차와 같은 공판전 절차와 공판에서의 전문가 증언 및 법관회의 등에 원격화상시스템이 활용되고 있다. 또한 검찰의 경우에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나 증인의 진술을 듣는데 이용하고 있고, 가석방위원회는 가석방의 심의 및 심리평가 등의 절차에서 활용하고 있다.¹⁹¹⁾

188) 18 U.S.C. § 3626.

189) Molly Treadway Johnson/Elizabeth C. Wiggins, Id., p. 213; Seidman Diamond/Locke E. Bowman/Manyee Wong/Matthew M. Patton, Id., p. 878.

190) 42 U.S.C. § 1997e - Suits by Prisoners.

(f. 심리(Hearings))

- (1) 구치소, 교도소, 기타 교정시설에 구금된 재소자들에 의해 동법 제1983조 또는 기타 다른 연방 법에 의거하여 연방 법원에 제기된 교도소 환경 문제와 관련된 소송에 있어서 재소자의 참여가 요구되거나 또는 허용되는 공판전 소송절차는, 실현가능한 범위까지, 재소자가 구금된 시설에서 떠나는 일 없이, 전화, 비디오 컨퍼런스 및 기타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술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 (2) 재소자의 구금에 대한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여, 심리는 재소자가 구금되어 있는 시설에서 수행될 수 있다. 실현가능한 범위까지, 법원은 변호사가 전화, 비디오 컨퍼런스 및 기타 통신기술에 의하여 구금시설에서 열리는 심리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191) 뉴저지 주 교정국 홈페이지 참조, http://www.state.nj.us/corrections/pdf/vtc_information/History_Impact_Future.pdf, http://www.state.nj.us/corrections/pdf/vtc_information/VTC_Overview.pdf (2012년

(3) 미시건 주의 활용 현황

미시건 주의 형사소송법이 허용하는 경우에 피고인은 전화나 음성 및 비디오컨퍼런싱 기술, 또는 쌍방향 비디오컨퍼런싱 기술을 이용하여 형사절차에 출석할 수 있다. 즉 제1심법원은 예비심문절차, 기소인부절차, 심리 전 혐의절차, 유죄답변, 경범죄에 대한 형의 선고절차, 상당한 이유 제시에 관한 예심, 외국인 범죄자의 인도 포기 및 연기, 적격성에 관한 과학수사 의뢰, 예비조사의 포기 및 연기절차 등에서 쌍방향의 비디오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¹⁹²⁾ 또한 피고인이나 검사의 신청에 따라, 제1심법원은 예비심문에서 쌍방향의 비디오 기술을 이용하여 전문가 증인의 증언을 허용할 수 있고, 타당한 이유가 제시된다면 일반 증인의 증언에도 동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¹⁹³⁾ 나아가 증거에 관한 심리, 적격성(능력)에 관한 심리, 형의 선고, 보호관찰 철회 절차, (미성년 감독대상자와 같이)¹⁹⁴⁾ 유죄 선고를 수반하지 않은 선고의 철회 절차 등에 대하여 타당한 이유가 제시된다면, 그리고 이에 더하여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판에 있어서도 비디오 기술을 이용한 원격지 증인의 증언이 허용된다.¹⁹⁵⁾ 한편, 미시간 주 항소법원은 *People v. Buie* 사건¹⁹⁶⁾에서 당사자는 변호인과 피고인을 모두 의미하지만, 피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쌍방향의 비디오 기술을 활용한 증인의 증언에 동의한 경우에는 유효한 동의라고 볼 수 없으며, 당사자 중 일방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거

10월 20일 최종접수).

192) Michigan Court Rules § 6.006 Video and Audio Proceedings (A).

193) Michigan Court Rules § 6.006 (B).

194) Glenn C. Gillespie/Timothy A. Baughman, 2 Gillespie Michigan Criminal Law and Procedure with Forms § 22:162. Holmes Youthful Trainee Act (2d.), Database updated October 2012. 미시간 주법상, 최고형이 사형인 중죄 및 기타 중범죄를 제외한 범죄를 만 17세 이후 만 21세 이전에 행한 자가 유죄답변을 한 경우, 기록법원(court of record)은 유죄판결에 들어가지 않고, 유죄답변을 한 자에게 미성년 감독대상자(youthful trainee) 지위를 부과할 수 있다. 미성년 감독대상자 지위가 부과된 대상자가 행한 범죄가 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보호감독을 위한 교정시설에 미성년 감독대상자를 보내어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교육받도록 하거나,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호관찰 하에 두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법원이 유죄판결에 들어가지 않는 한, 형사기소 처분 및 미성년 감독대상자 지위 부과에 관한 모든 절차는 공개 열람이 금지된다.

195) Michigan Court Rules § 6.006 (C).

196) *People v. Buie*, 2011 WL 93003 (Mich. Ct. App. 2011); *People v. Buie*, 285 Mich. App. 401, 775 N.W.2d 817 (2009).

나 비디오 기술의 활용에 명확히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이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¹⁹⁷⁾

(4) 미주리 주의 활용 현황

미주리 주의 경우, 원칙상 피고인은 형사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 출석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State v. Kinder 판결 이후 신설되어 수차례에 걸쳐 개정된 미주리 주법 제561.031조¹⁹⁸⁾에 따라, 수감되어 있는 피고인은 폐쇄회로 TV나 컴퓨터화된 비디오컨퍼런싱 등과 같은 쌍방향의 음성·영상 대화기술을 이용하여 형사재판에 출석할 수 있다.²⁰⁰⁾

1987년 State v. Kinder 판결²⁰¹⁾에서, 미주리 주 대법원은 미주리 주 법원들이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한 형사소송절차, 특히 비디오 연결을 통한 유죄답변 및 예비심문 등을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숙고하였다.²⁰²⁾ 동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유죄답변을 포함하여 자신의 소송절차가 비디오로 연결되어 행해지는 것에 대해 반대하면서 법정에 물리적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하였으나,²⁰³⁾ 순회법원은 피고인들의 요청을 거부한 채, 원격화상시스템에 의한 절차진행을 강제하였다.²⁰⁴⁾ 미주리 주 대법원은 관련 조항상의 출석 요건에 대한 해석에 초점을 맞추었는바,²⁰⁵⁾ 예비심문 및 유죄답변을 다루는 주 법령의 초안이 원격화상시스템이 고려

197) 5 Mich. Pl. & Pr. § 37:143 (2d ed.).

198) Missouri Revised Statute, Title 38. Crimes and Punishment; Peace Officers and Public Deffenders, Chapter 561. Collateral Consequences of Conviction § 561.031. Physical appearance in court of a prisoner may be made by using two-way audio-visual communication including closed circuit television, when requirements.

199) L.1988, H.B. No. 1344, § 1, eff. March 17, 1988. Amended by L.1990, H.B. No. 974; L.1990, S.B. No. 558, § A, eff. July 1, 1991; L.1999, H.B. No. 257, § A; L.2009, H.B. No. 62, § A; L.2009, H.B. No. 481, § A.

200) 19 Mo. Prac., Criminal Practice & Procedure § 20:4 (3d ed.).

201) State ex rel. Turner v. Kinder, 740 S.W.2d 654, 656 (Mo.1987) (전원합의체).

202) Gerald G. Ashdown/Michael A. Menzel, p. 84.

203) State ex rel. Turner v. Kinder, 740 S.W.2d at 655.

204) Id. at 655.

205) Id. at 656.

되기 전에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²⁰⁶⁾ 이어 미주리 주 대법원은 법령상 원격화상시스템과 관련된 아무런 언급이 없으므로 출석은 물리적인 출석을 의미하는 것이고, 비디오출석은 출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²⁰⁷⁾

State v. Kinder 판결 이후인 1988년 3월 1일, 미주리 주 의회는 신속하게 미주리 주법 제561.031조를 통과시켰으며,²⁰⁸⁾ 이러한 입법적 조치를 통해 형사절차에서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동법이 통과된 직후, 미주리 주에서는 피고인이 유죄판결 이후 심리(post-conviction hearing)에서 폐쇄회로 TV를 사용한 것에 대해 항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²⁰⁹⁾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청각적·시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쌍방향 비디오장치를 통해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자신의 대면권과 평등권 및 효과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적법절차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하였다.²¹⁰⁾ 이에 대해 미주리 주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변호사와 개인적으로 상의할 수 있었고, 증인과 조사관을 비롯해서 소송 기간 동안 출석해 있던 사람들에게 대한 선명한 영상이 제공되었으며, 카메라는 증언하는 사람들의 행동과 증언내용을 분명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소송절차에서 원격화상시스템을 이용하였다고 해서 공정한 재판에 대한 전통적인 기준이 축소되지는 않는다고 밝히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하였다.²¹¹⁾ 요컨대 미주리 주의 경우, 미주리 주법 제561.031조에 근거하여 공판과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판 전·후의 절차에서 원격화상시스템을 이용한 출석이 물리적 출석을 대체할 수 있게 된 것이다.²¹²⁾

현행 미주리 주법 제561.031조에 의하면, 수감되어 있는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① 최초출정, ② 예비심문의 포기과 피고인이 동의한 예비심문, ③ 기소인

206) Id. at 656.

207) 동 판결에서 Blackmar 판사는 다수의견에 동의하였으나, 비디오 소송절차가 사법 시스템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였고, Welliver 판사는 비디오 소송절차를 지지하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Gerald G. Ashdown/Michael A. Menzel, pp. 84 ff 참조.

208) Patricia Raburn-Remfry, "Due Process Concerns in Video Production of Defendants", 23 Stetson L. Rev. 805, Stetson University College of Law, 1994, pp. 821-822 참조.

209) Guinan v. State, 769 S.W. 2d 427, 429-30 (Mo. 1989) 참조.

210) Guinan v. State, 769 S.W. 2d. at 430.

211) Id. at 431.

212) Id. at 431.

부절차(무죄답변을 하는 경우 및 피고인이 물리적 출석권을 포기하고 유죄답변을 하는 경우), ④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허용하지 않는 심리 전 또는 심리 후 형사 절차, ⑤ 피고인이 물리적 출석권을 포기한 재판에서의 유죄판결 뒤에 행해지는 형 선고절차, ⑥ 유죄답변이 제기된 후의 형 선고절차, ⑦ 유죄답변협상에 의한 유죄인정 후의 형 선고절차, ⑧ 배심재판 외의 민사 소송절차(Any civil proceeding other than trial by jury), ⑨ 기록이 요구되지 않는 민·형사절차, ⑩ 당사자의 동의에 의한 형사절차 등에 원격화상시스템을 이용하여 출석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헌법상의 증인대면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한 출석이 허용되지 않는다.²¹³⁾

(5) 캘리포니아 주의 활용 현황

1995년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캘리포니아 형법 제977.2조를 새로 개정하여 캘리포니아 교정국이 5개의 주 행형 기관에서 비디오 시스템을 통한 기소인부절차 시범 사업을 수행하도록 허용하였다.²¹⁴⁾ 1997년에 175개 주 법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11개 카운티 소속의 22개 법원이 원격화상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¹⁵⁾ 동 조사에서 국선변호인사무국과 보호관찰국은 시설 간 이동의 필요성이 감소하여 상당한 이익을 보았다고 대답하였는데, 실제로 알라메다 국선변호인 사무소(Alameda Public Defender Office)에서는 25마일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주 교정시설(Santa Rita Jail)에 방문하는 대신에 원격화상시스템을 연

213) 19 Mo. Prac., Criminal Practice & Procedure § 11:3 (3d ed.).

214) A. James Kachmar, "Review of Selected 1995 California Legislation, Criminal Procedure; Arraignments - Use of Audiovideo Communications. Penal Code § 977.2 (new). SB 840 (Beverly); 1995 Stat. Ch. 367", 27 PACLJ(Pacific Law Journal) 606, the McGeorge School of Law, University of the Pacific, 1996, p. 607; Court Technology Advisory Committee, Report on the Application of Video Technology in the California Courts, Judicial Council of California,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Courts, 1997, p. 6. 캘리포니아 주에서 비디오를 통한 기소인부절차가 시행된 것은 주 의회가 캘리포니아 주 형법에 제977.2조를 신설한 1983년부터였다. 형법 제977.2조는 법원에 피고를 호송하는 비용을 줄이고, 안전 문제를 제거하며, 기소인부절차 전 구금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에서 입안되었다.

215) Court Technology Advisory Committee, Id., p. 8. 설문조사는 1995년도부터 시작되었으며, 캘리포니아 주에 소재한 175개 법원 중 105개 법원이 설문에 응하였다.

간 405회 활용함으로써 많은 재정적·시간적 이익을 거두었다고 밝혔고,²¹⁶⁾ 리버사이드 법원(Riverside Courts)에서는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연간 23,000달러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안전과 관련된 무형적 이익도 얻었다고 보고되었다.²¹⁷⁾ 그러나 관련 공문서 전달이 용이하지 않았고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변호인의 반대가 컸으며,²¹⁸⁾ 데이드 카운티 보안국(Dade County Sheriffs' Department)의 경우에는 원격화상시스템이 사용됨으로써 기소인부절차나 보석심리절차를 담당하던 직원이 40% 정도 감축되었고, 그로 인한 직무재배치 등의 불편 때문에 동 시스템의 활용에 대하여 거부감이 있었다고 보고되었다.²¹⁹⁾ 현행 캘리포니아 주 형법에 따르면, 경범죄 및 중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쌍방향 원격화상시스템을 통하여 최초출정·기소인부절차·(유·무죄)답변이 행해질 수 있으나,²²⁰⁾ 경범죄 및 중죄로 기소되어 현재 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 주 교정국이 예심, 공판, 판결과 형 선고를 제외한 캘리포니아 주 상급법원에서의 피고인의 모든 법정 출석을 원격화상시스템을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²²¹⁾

(6) 펜실베이니아 주의 활용 현황

펜실베이니아 주는 1998년부터 6개 카운티와 3개의 주립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기소인부절차 등의 형사절차 일부분에 원격화상시스템을 도입한 후 점진적으로 원격화상시스템의 활용을 확대하였다.²²²⁾ 동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평

216) Court Technology Advisory Committee, Id., p. 13.

217) Court Technology Advisory Committee, Id., p. 13.

218) Court Technology Advisory Committee, Id., p. 14.

219) Court Technology Advisory Committee, Id., p. 15.

220) California Penal Code §§ 977. (a)(1), 977. (b)(1), 977. (c).

221) California Penal Code § 977.2. (a).

222) CONSAD Research Corporation, Final Report: Evaluation of Video Conferencing Demonstration Projects, Concurrent Technologies Corporation, 2000, p. 4, pp. 10 ff. 1998년 펜실베이니아 주 범죄 및 비행에 관한 위원회(Pennsylvania Commission on Crime and Delinquency)는 Berk, Lancaster, York, Montgomery, Cumberland, Schuylkill 등 6개 카운티와 Green 카운티, Graterford 카운티와 Camp Hill에 위치한 3개의 주 교정시설에 원격화상시스템을 설치하여 예심, 기소인부절차, 변호인 접견 등 다양한 절차에 이용하도록 하였다.

가가 이루어졌는바, 2000년에 실시된 평가에 의하면, 첫째 비용편익과 관련해서는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평가대상 카운티들이 원격화상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분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충분한 규모로 운영될 경우에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둘째, 4개 카운티의 경우는 계획보다 7개월 늦게 운영이 시작되었고, 1개의 카운티는 1년 반이 지나서야 운영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형사사법절차 종사자들의 즉각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상 절차의 선정 합의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던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²²³⁾ 셋째, 원격화상시스템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조사결과, 대다수가 운영의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예비신문 후 기소인부절차에 원격화상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은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시켜 타업무에 대한 집중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수감되어 있는 피고인의 인식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는바, 기소인부절차나 변호인 접견에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나 직접 대면방식에 의하는 것 양자 모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²²⁴⁾ 이후 2004년에 시행된 평가에 의하면, 첫째 전체 카운티의 약 60%가 원격화상시스템을 운영한 지 채 2년이 지나지 않았고, 주로 기소인부절차와 같은 체포 직후의 절차에 사용되었다. 전체 체포사건 중 약 25%의 사건에 원격화상시스템이 이용되었고, 중범죄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대면방식이 많이 활용되었다.²²⁵⁾ 둘째, 대다수의 카운티가 전면적으로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밤 시간대와 주말 시간대에는 원격화상시스템의 사용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²²⁶⁾ 셋째, 소요시간의 측면에서는 원격화상시스템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대면방식에 의해 기소인부절차를 밟은 경우 응답자 중의 41.2%가 10분~20

223) CONSAD Research Corporation, Id., pp. 71-72.

224) CONSAD Research Corporation, Id., p. 3.

225) Karen Shastri/Holly Wald, Evaluation of Video Preliminary Arraignment Systems in Pennsylvania Final Report, Pennsylvania Cmssn on Crime and Delinquency, 2004, p. 39. 미국 형사사법 참고문헌 서비스(National Criminal Justice Reference Service; NCJRS) 홈페이지 참조 <https://www.ncjrs.gov/App/Publications/abstract.aspx?ID=243> 124 (2012년 10월 20일 최종접속).

226) Karen Shastri/Holly Wald, Id., p. 40.

분이 소요되었다고 답하였으나, 원격화상시스템을 이용해서 기소인부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는 응답자 중의 45.9%가 소요시간이 10분 이내였다고 답하였다.²²⁷⁾ 넷째, 기술적 측면(장비사용의 능숙함, 시스템 이용에 관한 교육 여부, 기술지원 수준, 장비의 안정성 및 관리상황 등)이 원격화상시스템의 활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동 시스템 운영자들은 대부분 2시간 이내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²²⁸⁾ 다섯째, 전체 응답자 중 18.6%는 화상의 질에 대해, 16.8%는 음성의 질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14%는 통신망의 안정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²²⁹⁾ 마지막으로 업무처리방식도 원격화상시스템의 이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동 시스템보다는 전통적인 대면방식에 의할 때 문서관련 업무를 보다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었고, 관련자들이 통제권 하에 있다는 느낌을 받음으로써 업무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²³⁰⁾

(7) 플로리다 주의 활용 현황

플로리다 주의 경우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의 활용이 소년범죄자들에 대한 절차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1999년 플로리다의 일부 순회 법원 판사들은 ① 플로리다 형사소송규칙상 성인들의 경우에는 최초출정과 기소인부절차에 원격화상시스템을 통해 출석할 수 있고, ② 소년구금심리에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이송 시간을 줄임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상담이나 수업에 참석할 시간을 더 부여할 수 있으며, ③ 법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툼도 예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²³¹⁾ 소년구금심리에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 플로리다 주 청소년 소송절차 규칙(Florida Rules of Juvenile Procedure) 제8.100(a)의 수정을 제안하였다.²³²⁾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① 본질적

227) Karen Shastri/Holly Wald, Id., p. 40.

228) 작동방법의 편의성으로 인해 장비이용에 관한 교육시간은 2시간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Karen Shastri/Holly Wald, Id., p. 23.

229) Karen Shastri/Holly Wald, Id., p. 40.

230) Karen Shastri/Holly Wald, Id., p. 22.

231) Amendments to Florida Rule of Juvenile Procedure § 8.100(a), 753 So. 2d. at 542. (이하 Fla. Amendments 1999).

으로 증거주의·당사자주의적 성격이 강한 소년구금심리는 최초출정이나 기소인 부절차와 유사하지 않고, ② 피고인측 변호사가 피고인과 있는 동안 검사가 법정 에 있게 될 경우, 상대적으로 검사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으며, ③ 원격화상시스템 을 이용해서 소년구금심리가 진행될 경우, 청소년인 피고인은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부모나 보호자와 접촉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²³³⁾ 국선변호 인들을 필두로 플로리다 주 변호사회의 소년법원규칙위원회(Juvenile Court Rules Committee of the Florida bar) 및 플로리다 주 국선변호인협회의 청소년사법위원회(Juvenile Justice Committee of the Florida Public Defenders Association) 등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²³⁴⁾ 수정안과 관련된 주장들을 검토한 뒤, 플로리다 주 대 법원은 비디오 구금심리의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고안된 시범사업의 결과 보 고서를 조사하였다.²³⁵⁾ 동 시범사업 기간 동안 약 2,900명의 소년이 비디오 구금 심리에 참석했고,²³⁶⁾ 그 결과 비디오 구금심리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 졌다.²³⁷⁾ 이에 근거해서 플로리다 주 대법원은 청소년들이 원격화상시스템을 통 해 소년구금심리에 참석하는 것을 허용하는 청소년 소송절차 규칙 제8.100(a)조 수정안을 임시적으로 채택하였다.²³⁸⁾ 또한 플로리다 주 대법원은 모든 국민은 공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그 권리가 소송절차에서의 기술적 변화 에 의해 침해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법원은 소송절차에서의 기술적 진보를 지

232) Fla. Amendments 1999, 753 So. 2d. at 541.

233) Fla. Amendments 1999, 753 So. 2d. at 542.

234) Fla. Amendments 1999, 753 So. 2d. at 542.

235) 플로리다 주 제5, 제9, 제13, 제17, 제19 순회 법원 판사들은 1996년에도 영상음향 기기(audio-video device)를 사용하여 소년구금심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플로리다 주 청소년 소송절차 규칙 제 8.100(a)의 수정을 청원한 바 있다. 이 수정안을 평가하기 위하여 플로리다 주 대법원은 수정안을 제출한 순회법원들 뿐만 아니라 제6 순회법원에 대해서도 1년을 기한으로 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도 록 하였다. 이 시범 사업의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Amendments to Florida Rule of Juvenile Procedure § 8.100(a), 667 So. 2d 195, 197(Fla. Amendments 1996) 참조.

236) Fla. Amendments 1999, 753 So. 2d. at 544.

237) Fla. Amendments 1999, 753 So. 2d. at 543. Albarez 수석 판사는 비디오 구금심리로 인해, 대 상 청소년은 더 이상 교통이 혼잡한 시간대에 붐비는 호송차로 이동하지 않아도 되고, 수감과 족쇄 를 찬 채로 법정에 나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되며, 비디오 구금심리로 절약된 시간을 수업 및 여가활동에 쓸 수 있다고 보고했다. Gerald G. Ashdown/Michael A. Menzel, Id., p. 79.

238) Fla. Amendments 1999, 753 So. 2d. at 545.

지한다고 밝혔다.²³⁹⁾

이후 2001년에 플로리다 주 대법원은 소년구금심리에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하였다.²⁴⁰⁾ 특히, 원격화상시스템을 이용했을 때 ① 청소년들이 부모나 보호자 등과 사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는 점, ② 청소년들은 절차 진행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 ③ 물리적 출석에 비해 재판부의 위엄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미비점들이 언급되었다.²⁴¹⁾ 주 대법원은 소년구금심리에 임시로 도입되었던 원격화상시스템은 실질보다는 절차를 중시한 것으로서²⁴²⁾ 시간적·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인 제도이기는 하지만, 경제성이나 편의성에 밀려 형사절차상 적법절차의 권리가 경시될 수는 없다고 밝히면서, 임시 수정안을 영구적으로 채택하는 것을 거부하였다.²⁴³⁾ 요컨대, 소년구금심리를 진행하는 과정에 원격화상시스템의 활용을 제도화하는 것에는 실패하였지만, 플로리다 주에서도 최초출정 및 기소인부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동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다.²⁴⁴⁾

라.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에 대한 평가

미국에서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 활용과 관련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던 사건으로 빌 클린턴(Bill Clinton) 대통령과 관련된 지퍼게이트(zipper gate)²⁴⁵⁾가 있다. 1998년 8월 17일, 미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폐쇄 회로 TV를 통해 대배심 증언을 하였는바, 그로부터 나흘 뒤 국민들은 TV방송을 통해 대통령의 증언 영상을 시청하였고, 원격증인의 증언 개념이 대대적으로 소개

239) Fla. Amendments 1999, 753 So. 2d. at 543.

240) Amendments to Florida Rule of Juvenile Procedure § 8.100(a), 796 So. 2d 470. (이하 Fla. Amendments 2001).

241) Fla. Amendments 2001, 796 So. 2d. at 473.

242) Fla. Amendments 2001, 796 So. 2d. at 474.

243) Fla. Amendments 2001, 796 So. 2d. at 474.

244) Florida Rules of Criminal Procedure § 3.130. First Appearance (a); Florida Rules of Criminal Procedure § 3.160. Arraignment (a). 최초출정 및 기소인부절차는 법원의 재량으로 원격화상시스템(audiovisual device)을 통해 행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45) 미국의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과 관계된 일련의 섹스 스캔들을 일컫는 말이다.

되었다.²⁴⁶⁾ 그러나 당시 이용되었던 일방향 원격화상시스템은 증언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고,²⁴⁷⁾ 이후의 법제화 논의는 쌍방향 원격화상시스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은 사건의 처리 및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하고,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키며, 법원의 소송절차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는 평가²⁴⁸⁾를 기반으로 연방 차원에서 입법화되었고, 상당수의 주들도 공판 전·후 절차의 진행에 동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동 제도와 관련해서는 향후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보완될 것이 요청된다.

첫째, 원격화상시스템의 장비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²⁴⁹⁾ 사용가능한 장비들 사이에 질적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연방법원에서 사용되는 원격화상시스템 장비의 유형과 그 품질을 표준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 비디오 소송절차를 수행하는 주 법원들도 단순히 2개의 카메라를 사용하는 곳에서부터 피고인에게 법원의 다양한 조망을 보여주고자 6개의 복합 카메라 시스템을 사용하는 곳이 있고,²⁵⁰⁾ 모니터의 사이즈도 9인치에서부터 45인치까지 다양한 실정이다.²⁵¹⁾ 원격화상시스템의 장비를 표준화하지 못할 경우, 동 시스템을 활용한 형사절차의 효과는 극적이리만큼 다양할 수 있다.²⁵²⁾ 그러므로 ① 모든 법원은 표준화된 품질의 비디오 기록 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② 장치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 법원 소송절차가 중단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충분한 오디오 및 비디오 백업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③ 오디오-비디오 조작자의 전문화를 위해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함과 동시에 인증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④ 동 장치를

246) Michael D. Roth, Id., p. 186.

247) 워싱턴 포스트지의 평론가인 Tom Shales는 카메라가 정지 상태로 클린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한편, 대통령 입장에서는 영상을 통해 다른 참가인들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검사의 목소리만 들게 되었는바, 동 절차에서 클린턴 대통령은 마치 프란츠 카프카의 “심판”에서 소추당하는 주인공 Joseph K처럼 보였다고 평가했다. Tom Shales, “The Only Show in Town”, Washington Post, Sept. 22, 1998, at E1; John F. Harris, “Playing Many Roles, Assuredly”, Washington Post, Sept. 22, 1998, at A1.

248) Leonidas R. Mechem, Id., p. 9.

249) Gerald G. Ashdown/Michael A. Menzel, Id., p. 89.

250) Fredric I. Lederer, Id., p. 1102.

251) Ronnie Thaxton, Id., p. 181.

252) Patricia Raburn-Remfry, Id. 참조

사용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⑤ 비디오 소송절차에 앞서 변호사에게도 서면지침이 제공되어야 하며, ⑥ 훈련받은 오디오-비디오 관리자가 고용되어야 한다.²⁵³⁾

둘째, 비디오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판사와 검사 및 피고인 측 변호인의 공간적 위치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²⁵⁴⁾ 대부분의 주 법원에서는 비디오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검사는 판사와 함께 법정에 있는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과 함께 비디오를 통해 참석할 것인지 물리적으로 직접 법정에 참석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적으로 결정한다.²⁵⁵⁾ 검사 또는 피고인 측 변호인의 물리적 위치는 소송절차의 공정성이나 불편부당한 사법부의 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²⁵⁶⁾ 피고인 측 변호인이 피고인 옆에서 비디오를 통해 소송절차에 참여할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 간의 의사소통 능력은 향상될 것이나 판사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피고인 측 변호인의 능력은 약화될 것이다.²⁵⁷⁾ 한편 피고인 측 변호인이 물리적으로 법정에 출석할 경우에는 이와 반대되는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요컨대, 검사나 피고인 측 변호인의 공간적 위치에 따라 비디오 소송절차의 질은 다양각색일 수 있을 것인 바, 이들의 위치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 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가 제안한 표준화안에 의하면 한 명의 변호사가 단독으로 피고인을 변호하는 경우에는 그 변호사는 피고인 옆에서 비디오를 통해 출석할 것이 요구되고, 검사 또한 검찰청과 같은 제3의 장소나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사가 있는 동일한 장소에서 비디오를 통해 출석해야 한다고 한다.²⁵⁸⁾ 한편, 플로리다 주 데이드 카운티에서 행해진 경범죄에 대한 공판전 소송절차에서처럼 복수의 변호사를 이용한 구도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데이드 카운티에서 있었던 본 사안은

253) Committee on Court Reporting (Stenographic and Electronic), Final Report,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Jersey, 1991; Patricia Raburn-Remfry, Id. pp. 832-833.

254) Gerald G. Ashdown/Michael A. Menzel, Id., p. 94.

255) Anne Bowen Poulin, "Criminal Justice and Videoconferencing Technology: the Remote Defendant", 78 Tul. L. Rev. 1089, Tulane Law Review Association, 2004, pp. 1128 ff.

256) Gerald G. Ashdown/Michael A. Menzel, Id., p. 94.

257) Anne Bowen Poulin, Id., pp. 1130-1132.

258) ABA Standards for Criminal Justice, Proceedings In and Outside the Courtroom § 6-1.8(d)(1999); Gerald G. Ashdown/Michael A. Menzel, Id., p. 95.

피고인의 비디오 기소인부절차를 인정하는 플로리다 주 형사소송규칙 제3.160조에 의거하여 비디오 기소인부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한 명의 국선 변호인이 피고인과 함께 교도소에 마련된 회의실에 있으면서 피고인에게 조언을 하고 다른 국선 변호인은 법정에서 판사 및 검사와 의사소통을 나누는 구조로 수행되었다.²⁵⁹⁾

2. 독일

가. 사법분야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의 도입

독일에서 처음으로 원격영상기술(video technology)이 공판에서 사용된 것은 1995년, 보름스(Worms)에서 일어난 아동 성학대 사건²⁶⁰⁾을 담당한 마인츠 지방법원(LG Mainz)에서였다.²⁶¹⁾ 마인츠 지방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성적 학대로 인한 소송에 있어서는 영상녹화 수단을 사용하여 법정 밖에서 피해자인 아동 증인을 신문하는 것이 허용되며, 이는 직접주의 원칙에 대한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

259) Gerald G. Ashdown/Michael A. Menzel, Id., p. 95; Jeffrey M. Silbert/Una Hutton Newman/Laurel Kalser 참조

260) 보름스 아동 성학대 사건은 16명의 아동에 대한 성학대 혐의로 아동들의 가족 및 친족, 지인 등 25명이 기소된 사건으로 독일 사법사상 최대 규모의 아동 성학대 사건으로 기록된다. 사건의 발단은 전남편인 Kurt A와 전처 Marion B의 이혼 및 자녀양육 문제와 관련된 불화에서 시작되었으며 (Marion B가 Kurt A를 자녀들에 대한 성학대 혐의로 고소), 이들 사이의 적대감에 A 가족과 B 가족, 그리고 전처 Marion B의 현재 남편과 그 가족들까지 얽혀 들어갔다. 정신의학 전문가가 성기 묘사가 두드러진 인형들을 사용하여 아이들로부터 얻어낸 성학대 증언 등을 토대로, 1993년 말부터 아이들의 친족 및 지인에 대한 체포, 수사가 전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마스크를 이들을 아동 성범죄자 일당으로 몰고 갔다. 마인츠 지방법원에서는 A 가족 7명이 기소된 사건(보름스 I)과 B 가족 13명이 기소된 사건(보름스 II), 그 외 5명이 기소된 사건(보름스 III)으로 나누어 판결하였으며, 아이들의 증언이 암시에 의한 주입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등,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25명 전원이 1996년과 1997년 사이에 무죄판결을 받았다(Kurt A의 70세 모친은 구금 중에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오히려 성학대 여부 문제로 물의를 빚은 것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Marion B가 3명의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4자녀 및 기타 기소된 친족들의 자녀들이 수용되어 있던 “Spatzennest”라는 보호시설의 원장 Stefan S.였다. Stefan S는 카이저스라우테른 지방법원(LG Kaiserslautern)에서 아동 성학대 혐의로 5년 8개월 형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에 대해서 현재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상고를 제기한 상태이다.

261) Gabriele Jansen, Zeuge und Aussagepsychologie, C.F. Müller, 2012, S. 82-83; Maike Scheumer, Videovernehmung kindlicher Zeugen: Zur Praxis des Zeugenschutzgesetzes, Niedersächsische Staats- und Universitätsbibliothek, 2007, S. 20.

하였다.²⁶²⁾ 또한 동 판결에서 법원은 피해자인 아동 증인이 비디오중계를 통해 법정 밖에서 신문받을 것을 결정하면서, ① 아동에 대한 신문은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방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② 이러한 신문과정은 2 × 2 m 크기의 스크린 위에서 영상으로 전송되어야 하며, ③ 촬영은 고정된 카메라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④ 법정에 있는 사건 당사자가 언제든지 신문자에 대하여 특정 사항에 관한 신청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법정과 신문실 사이에는 지속적인 전화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고, ⑤ 아동을 심문하는 동안, 법정에서의 재판장의 의무는 구법원(Amtsgericht) 판사가 대신 수행하며, ⑥ 재판장의 대리인으로서 구법원 판사가 사건 당사자들의 신청 및 이의를 전화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제시하였다.²⁶³⁾ 동 판결로 인해 법관이 공판과정 중 법정 밖에 설치된 별도의 공간에서 피해자를 신문하고, 이러한 신문이 원격화상시스템을 통해 법정에 전송되는 형태를 “마인츠 모델(Mainzer Modell)”이라 부르게 되었다.²⁶⁴⁾ 요컨대, 마인츠 지방법원의 동 판결은 독일에서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의 도입과 관련된 법규를 제정하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²⁶⁵⁾

나.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에 관한 법 규정

독일사회민주당(SPD)과 독일 연방상원은 법관이 법정 밖에서 아동을 신문하도록 하는 이른바 마인츠 모델에 법적 토대를 마련해 주고자 1995년 11월과 1996년 6월에 각각 법률안을 제출하였다.²⁶⁶⁾ 그러나 마인츠 모델에 입각한 동 법률안들에

262) LG Mainz (1995) Beschl. v. 26. 06. 1995 - 302 Js 21307/94 jug. 3 A Kls; NJW, 1996, S. 208 - 209(sog. Wormser Kinderschänderverfahren).

263) LG Mainz (1995) Beschl. v. 26. 06. 1995 - 302 Js 21307/94 jug. 3 A Kls; NJW, 1996, S. 208.

264) Gabriele Jansen, a.a.O., S. 83; Gerd Pfeiffer/Rolf Hannich(KK-StPO), Karlsruher Kommentar zur Strafprozessordnung und zum Gerichtsverfassungsgesetz, 6. Auflage, Beck Juristischer Verlag, 2008, S. 1413; Löwe-Rosenberg(StPO Grosskommentar), Die Strafprozessordnung und das Gerichtsverfassungsgesetz. Grosskommentar, § 247a Rn. 3.

265) Jürgen Wolter(SK-StPO), Systematischer Kommentar zur Strafprozessordnung: Mit GVG und EMRK, Band V, Heymanns Verlag GmbH, 2011, S. 49.

266) BT-Drucks. 13/3128; BT-Drucks. 13/4983.

대해서는 입법정책상 판사와 검사 및 법원사무국 서기가 상시 임석한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독일 형사소송법 제226조에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²⁶⁷⁾ 이에 기민당-기사당 연합(CDU/CSU)과 자유민주당(FDP) 다수파는 1997년 3월에 신문을 받는 증인만이 법정 밖에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제출하였고,²⁶⁸⁾ 이 법률안은 마인츠 모델과 대비되어 영국식 모델(Englisches Modell)이라 불렸다.²⁶⁹⁾ 마인츠 모델과 영국식 모델의 또 다른 두드러진 차이는 그 적용범위로, 마인츠 모델이 아동, 청소년, 그리고 성범죄 관련 피해자 등 특별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규정한 반면, 영국식 모델은 그 적용범위를 아동, 청소년과 특정범죄의 희생자에 국한하지 않았다. 이후 독일에서는 영국식 모델의 입법화가 이루어졌으며,²⁷⁰⁾ 1998년 4월 30일 “형사소송절차상 신문에 있어서 증인의 보호 및 피해자 보호 개선에 관한 법률(Gesetz zum Schutz von Zeugen bei Vernehmungen im Strafverfahren und zur Verbesserung des Opferschutzes: Zeugenschutzgesetz(ZSchG))”, 즉 증인보호법(ZSchG)이 통과됨으로써 관련 형사소송법 규정이 개정되어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²⁷¹⁾ 증인보호법(ZSchG)

267) Jürgen Wolter(SK-StPO), a.a.O., S. 49; Löwe-Rosenberg(StPO Grosskommentar), a.a.O., § 247a Rn. 3.

268) BT-Drucks. 13/7165.

269) Jürgen Wolter(SK-StPO), a.a.O., S. 49; Maike Scheumer, a.a.O., S. 20 ff; Sabine Swoboda, Videotechnik im Strafverfahren, Duncker & Humblot, 2002, S. 58 ff.

270) 연방의회는 영국식 모델에 입각한 법률안을 포괄적으로 받아들였으며, 사법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증인의 복리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독일 형사소송법 제251조 제1항 2, 3, 4호(독일 형사소송법 제251조는 2004년 8월 24일 통과된 사법현대화법(Justizmodernisierungsgesetz)에 의해 개정되었으며, 이전 독일 형사소송법 제251조 제1항의 내용은 현재 제251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의 전제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도 화상신문(audiovisuelle Vernehmung)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입법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연방상원은 조정위원회에서 최소한 16세 미만의 증인에 대해서는 마인츠 모델을 관찰하고자 하였으나, 미성년 증인에 대해서 그 사정을 보다 더 참작해 주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는 마인츠 모델 대신 독일 형사소송법 제255조에 제2항을 추가하는 것에 그쳤다. Jürgen Wolter(SK-StPO), a.a.O., S. 49. 이후 2009년 7월 29일에 통과되어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와 증인의 권리 강화를 위한 법률, 즉 제2차 피해자권리개혁법(Das Gesetz zur Stärkung der Rechte von Verletzten und Zeugen im Strafverfahren: 2. Opferrechtsreformgesetz(OpferRRG))에 의해 보호대상 증인의 연령이 16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상향됨으로써 미성년 증인에 대한 보호범위가 확대되었다. Jürgen Peter Graf, Strafprozessordnung (StPO): mit Gerichtsverfassungsgesetz und Nebengesetzen, C.H. Beck, 2010, S. 1007.

271) Bundesgesetzblatt(BGBl, 독일연방법률관보) Teil I Nr. 25(1998. 5. 8), S. 820.

독일연방법무부관보 홈페이지 참조 http://www.bgbl.de/Xaver/start.xav?staerbk=Bundesanzeiger_

의 주요 골자는 원격화상시스템 기술을 형사소송절차에 도입하는 것이었다. 즉, 동법에 의해 독일 형사소송법에 제58조a,²⁷²⁾ 제255조a²⁷³⁾와 함께 제168조e와 제247조a를 신설함으로써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증인을 신문하는 경우에 법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원격화상시스템의 활용을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²⁷⁴⁾

증인신문은 증인과 신문자가 동일한 공간에서 직접 대면한 상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1998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상이한 공간에 있는 증인에 대해서도 원격화상시스템을 이용한 생중계를 통해서 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유형의 신문을 화상신문(audiovisuelle Vernehmung)이라고 한다.²⁷⁵⁾ 현행 독일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다양한 단계에서 원격화상

BGBI (2012년 10월 20일 최종접속).

272) 독일 형사소송법 제58조a(동시녹화)

- (1) 증인신문은 영상음향기기로 녹화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이러한 증인신문은 녹화해야 한다.
 1. 범행으로 피해를 입었고 그 보호할 만한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녹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18세 미만의 자들
 2. 증인을 공판에서 신문할 수 없는 사정이 있고 녹화가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 (2) 영상-음성-녹화의 이용은 형사소추의 목적에만 국한되고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허용된다. 제101조 제8항에 따라 적용된다. 녹화 복사본이 서류열람 권한이 있는 자에게 넘겨질 수 있다는 단서와 함께, 제147조와 제146조e가 준용된다. 사본은 복제하거나 배포되어서는 아니된다. 녹화 복사본을 이용할 더 이상의 정당한 이익이 없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검찰에 넘긴다. 녹화 물이나 복사물을 상기한 기관 이외의 곳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증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 (3) 제2항 제3문에 따른 신문의 녹화 복사본을 송부하는 데 대하여 증인이 이익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녹화물을 서면 조서로 작성하여 제147조와 제406조e의 규정에 의거하여 열람 권한이 있는 자에게 송부할 수 있다. 서면조서로 옮겨 작성한 자는 그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보증과 함께 서명을 해야 한다. 제147조와 제406조e에 따른 열람권에 대한 법은 그대로 둔다. 증인에게 제1문에 따른 이익 제기 권한이 있음을 주지시킨다.

273) 독일 형사소송법 제255조a(녹화물의 상영)

- (1) 증인신문의 영상-음성-녹화의 현출에 대해서는 제251조, 제252조, 제253조 및 제255조에 따른 신문에 대한 조서낭독 규정이 적용된다.
- (2)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죄(형법 제174조 내지 제184조의g) 또는 생명에 대한 죄(형법 제211조 내지 제222조)로 인한 소송절차, 피보호자에 대한 학대(형법 제225조) 또는 형법 제232조 내지 제233조와 같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죄로 인한 소송절차 있어서, 18세 미만의 증인에 대한 신문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참여할 기회를 갖는다면, 그 이전에 법원에 의해 행해진 신문의 영상-음성-녹화로 대신할 수 있다. 증인에 대한 보증신문은 허용된다.

274) Löwe-Rosenberg(StPO Grosskommentar), § 58a, § 168e, § 247a, § 255a Entstehungsgeschichte; Peter Caesar, "Noch stärkerer Schutz für Zeugen und andere nicht beschuldigte Personene im Strafprozeß?", NJW(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Heft 32, 1998, S. 2314-2316; Sabine Swoboda, a.a.O., S. 56 ff; Werner Beulke, Strafprozessrecht, 11. Auflage, C.F. Müller, S. 125.

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선 수사판사에 의한 원격영상신문이 규정되어 있다(독일 형사소송법 제168조e).²⁷⁶⁾ 증인이 다른 방법으로 보호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수사판사는 단독으로 증인과 한 방에 들어가서 신문할 수 있고(동조 제1문), 그 신문 상황은 참석권한이 있는 자들에게 영상과 음성으로 실시간 중계되어야 한다(동조 제2문). 이때 참석권한이 있는 자들은 스피커 또는 판사를 통하여 질문을 할 수 있다(동조 제4문 및 동법 제241조a).²⁷⁷⁾ 한편 심리과정에 피의자가 참석함으로써 조사목적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판사가 피의자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는데, 특히 피의자의 참석으로 인해 증인이 진실을 말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가 그러하므로 피의자는 화상신문이 생중계되는 곳에 참여하는 것도 배제될 수 있다(독일 형사소송법 제168조c).²⁷⁸⁾ 요컨대, 독일 형사소송법상에는 피의자와의 대면접촉으로 인해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독일 형사소송법은 영상기기 등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법정 이외의

275) Klaus Volk, Grundkurs StPO, 7. Auflage, Beck Juristischer Verlag 2010, S. 240; Jürgen Wolter(SK-StPO), a.a.O., S. 50.

276) 독일 형사소송법 제168조e(증인신문의 분리)

출석권한이 있는 자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될 경우 증인의 복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당면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이를 방지할 수 없다면, 판사는 출석권한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증인을 분리시켜 신문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신문은 영상과 음성으로 실시간 중계되어야 한다. 그 밖의 출석권한이 있는 자의 참여권은 그대로 둔다. 제58조a와 제241조a가 준용된다. 제1문에 의한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277) 독일 형사소송법 제241조a

(1) 18세 미만의 증인에 대하여는 재판장이 단독으로 신문한다.
(2) 제240조 제1항과 제2항 제1문에서 지정하고 있는 자들은 재판장이 증인에게 다른 질문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증인의 복리를 해할 것이 우려되지 않는 경우 재판장은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라 상기한 자들에게 증인에 대한 직접 질문을 허용할 수 있다.
(3) 제24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78) 독일 형사소송법 제168조c

(1) 피의자에 대한 판사의 신문시 검사와 변호인의 참석을 허용한다.
(2) 증인이나 감정인에 대한 판사의 신문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의 참석을 허용한다.
(3) 심리에 있어 피의자의 참석이 조사목적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판사는 이를 배제할 수 있다. 특히 피의자의 참석 하에서는 증인이 진실을 말하지 않을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4) 인신구속중인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의자는 자신이 구금된 장소의 법원에서 진행되는 신문기일에의 참석만을 청구할 수 있다.
(5) 신문기일은 참석권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통지로 인하여 조사성격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통지하지 않는다. 참석권자의 장애를 이유로 신문기일의 연기를 청구할 수 없다.

장소에 있는 증인²⁷⁹⁾의 진술을 법정에서 동시에 현출하는 영상증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독일 형사소송법 제247조a).²⁸⁰⁾ 증인이 공판정에 참석한 사람들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될 경우, 증인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초래될 긴급한 위험이 있고, 이 위험을 피고인을 법정에서 배제시키거나 신문을 비공개하는 등의 다른 방법으로 방지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은 증인이 신문을 받는 동안 다른 장소에서 머물 것을 명할 수 있고, 이때 증인신문 상황은 비디오화면과 스피커를 통해 공판정에 생중계된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증인신문은 공판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고, 공판정 외의 장소에서 원격화상시스템을 이용하여 증인을 신문하는 것은 보충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한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247조a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이 충족되면 피고인이 아닌 증인을 공판정에서 격리하여 신문할 수 있고, 이때 피고인이 증인을 물리적으로 대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포기되어야 한다.²⁸¹⁾ 이는 생명·신체 등에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증인이나 성범죄 관련 피해자인 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을 일시적으로 퇴정시킨 후에 이루어지는 증인신문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변호인이나 방청객을 대면함으로써 느끼는

279) 독일 형사소송법은 증인의 개념을 우리 형사소송법과는 달리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적증거(人證, Personliche Beweismittel)로서 자기 자신과 관련이 없는 형사절차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3자로 파악하므로 증인과 참고인을 개념상 구별해서 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독일 형사소송법상 ‘증인(Zeuge)’의 개념은 공소제기 후에 법원에 채택된 피고인 이외의 자에 국한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의 참고인까지 증인으로 규정되고 있다. 정용석, “형사절차에서 원격화상시스템의 도입에 관한 연구”, 형사법의 신통향 제25호, 대검찰청, 2010, 27면.

280) 독일 형사소송법 제247조a(증인의 화상신문)
증인이 공판에 참석한 사람들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면, 증인의 복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당면한 위험이 있는 경우, 법원은 증인이 다른 장소에 머무르면서 신문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한 한, 그러한 명령은 독일 형사소송법 제251조 제2항의 허용을 전제로 한다. 위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증언은 영상과 음성으로 법정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향후 공판에서 계속 신문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해야 하고, 진실 규명을 위하여 녹화가 필요한 경우에 이러한 증언은 녹화되어야 한다. 제58조 제1항에 위 규정이 준용된다.

281) BGH NSZ 2001, 261; 2002, 608. 특히 이 규정으로 인하여 조직범죄의 경우 조직의 이탈자나 수사정보원 등의 증인들을 신문할 때 그들이 선호하는 법정 외의 장소에서 신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으로, 이는 독일 입법자가 현행 독일 형사소송법 제238조(심리의 지휘), 제250조(증거조사의 직접성), 제261조(자유심증주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인보호를 위하여 이러한 ‘분리된 본안 재판(Gespaltene Hauptverfahren)’을 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음을 의미한다. 다만 비디오신문이 보충적으로 실시된다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증인에 대한 법정외 신문의 실시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생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0조 제1문의 취지에 따라 증인을 법정에서 신문해야 할 것이다.

증인의 심리적 부담감도 덜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²⁸²⁾ 한편, 독일 형사소송법 제247조a는 그 적용대상을 특정 범죄나 특정 범위의 증인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모든 증인에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성폭행을 당한 피해아동의 경우는 물론이고, 독일 형사소송법 제251조 제2항에 규정된 보호가 필요한 증인²⁸³⁾에

282) 최초 독일 정부의 입법안에는 증인이 법원 내의 다른 장소에서 신문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제안되었으나, 이후 심의과정에서 법원 내의 다른 장소뿐만 아니라 법정외의 장소에서도 비디오, 즉 폐쇄회로 TV를 직접 연결하여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정용수, “독일 형사소송법상 증인보호제도 - 수사 및 공판절차에 비디오 기술의 도입문제와 관련하여 -”, 해외연수검사연구논문 제15집, 법무연수원 1999, 345면

283) 질병, 노쇠 기타 제거할 수 없는 장애를 이유로 증인, 감정인 또는 공동피고인이 공판정에 출석하는 것이 장기간 또는 불확정 기간 동안 불가능한 경우(독일 형사소송법 제251조 제2항 제1호), 증인 또는 감정인의 진술 중요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거리에서 있는 공판정에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판단되는 경우(동법 동조 제2항 제2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Löwe-Rosenberg(StPO Grosskommentar), § 247a Rn. 8 ff; Jürgen Wolter, SK-StPO Band V, S. 57 ff.

※ 사법현대화법(Justizmodernisierungsgesetz)에 의하여 개정되기 이전과 이후의 독일 형사소송법 제251조 조문 비교

개정 전 독일 형사소송법 제251조	개정 후 독일 형사소송법 제251조
(1) 다음의 경우 증인, 감정인 또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이들에 관한 과거 신문조서의 낭독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증인, 감정인 또는 공동피고인이 사망하였거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그의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 2. 질병, 노쇠 기타 제거할 수 없는 장애를 이유로 증인, 감정인 또는 공동피고인의 공판정에 출석이 장기간 또는 불확정기간 동안 불가능한 경우 3. 증인 또는 감정인의 진술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원격으로 인하여 이들의 공판정에 출석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 4. 검사, 공판피고인 및 변호인이 낭독에 동의한 경우 (2) 공판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검사, 변호인, 공판피고인이 동의한 때에는 증인, 감정인 또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이들의 서면진술을 포함하는 기록이나 이들에 대한 다른 신문조서의 낭독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 밖에 증인, 감정인 또는 공동피고인이 사망하였거나 다른 사유로 인하여 이들에 대한 법원의 신문이 당분간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만 낭독을 허용한다.	(1) 증인, 감정인 또는 공동피고인의 신문은 다음과 같은 경우 신문을 받아적은 기록이나 증인이 서면으로 작성한 문서의 낭독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존재하고 검사와 변호인 그리고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 2. 증인, 감정인 혹은 공범이 사망하거나 혹은 기타 다른 이유로 예정된 시간에 재판상 신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서 혹은 문서가 재산상 손해의 여부 및 정도와 관련될 경우 (2) 다음의 경우 증인, 감정인 또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이들에 관한 과거 신문조서의 낭독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질병, 노쇠, 기타 제거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증인, 감정인 또는 공동피고인이 공판정에 출석하는 것이 장기간 또는 불확정 기간 동안 불가능한 경우 2. 증인 또는 감정인의 진술의 중요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거리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검사, 변호인 및 피고인이 낭독에 동의한 경우 (3) 직접 판결에 이르기 위한 것과는 다른 목적,

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²⁸⁴⁾ 요컨대, 독일 형사소송법 제247조a는 조직폭력범죄에 있어서 증인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진실규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거방법인 증인에게 법률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증인역할로부터의 도피(Flucht aus der Zergenrolle)”를 방지할 수 있다.²⁸⁵⁾ 다만 원격화상시스템을 이용한 공판정 외 증인신문을 결정할 때에는 적법절차나 반대신문권 등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도 중요한 쟁점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²⁸⁶⁾

한편, 기존의 독일 형사소송법 제168조c와 제247조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에 피고인의 퇴정을 명하고 증인신문을 할 수 있으나, 동 규정들은 피고인의 공판정 출석이 증인의 증언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영향력을 배제함으로써 실제적 진실 발견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증인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동법 제168조e와 제247조a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며, 바로 이 점에서 형사소송법에 동 조항들을 신설함으로써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하여 증인보호, 나아가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려는 입법자의 의지가 명백하게 부각된다고 할 것이다.

(3) 직접 판결에 이르기 위한 것과는 다른 목적, 특히 어떤 자에 대한 소환과 신문 수행 여부에 관한 판단의 준비를 위해 낭독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신문조서, 기록 기타 증거방법으로 사용되는 문서를 낭독하는 것도 허용된다. (4)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낭독명령 여부는 법원이 결정한다. 낭독의 근거를 고지한다. 법관의 신문조서를 낭독하는 경우 피신문자의 선서 여부를 확인한다. 선서가 필요하다고 법원이 인정하거나 아직 선서 가능한 경우 이를 추원한다.	특히 어떤 자에 대한 소환과 신문의 수행 여부에 관한 판단의 준비를 위해 낭독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신문조서, 기록 기타 증거방법으로 사용되는 문서를 낭독하는 것도 허용된다. (4)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낭독명령 여부는 법원이 결정한다. 낭독의 근거를 고지한다. 법관의 신문조서를 낭독하는 경우 피신문자의 선서 여부를 확인한다. 선서가 필요하다고 법원이 인정하거나 아직 선서 가능한 경우 이를 추원한다.
---	---

284) Löwe-Rosenberg, StPO Grosskommentar, Band 6/Teil 1, S. 888 ff; Jürgen Peter Graf, a.a.O., S. 972; Jürgen Wolter(SK-StPO), a.a.O., S. 57 ff.

285) 정용수, 앞의 글, 347면.

286) Klaus Volk, a.a.O., S. 241.

다.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 현황

2007년 기준으로 독일 니더작센주에서의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의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괴팅겐(Göttingen)에서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협박을 받아 공판정에서의 증언을 거부하고 이에 대해 검사가 비디오신문을 신청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측의 강력한 항의를 받아들여 원격화상시스템을 이용한 증인신문을 거절하였는바, 2007년 기준으로 단 한 건의 원격영상신문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힐데스하임(Hildesheim)의 경우, 2001년 이후 지방법원에 원격영상신문을 위한 설비가 마련되었으나 2007년 기준으로 단 한 건의 원격영상신문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하노버(Hannover)·오스나브룩(Osnabrück)에서도 기술적 장치는 구비되었으나 실제 원격영상신문이 행해지지 못하였다. 유일하게 원격영상신문이 실시되었던 곳은 브라운슈바이크(Braunschweig)이었는데, 재판장이 공판정을 떠나서 증인과 같은 공간에서 직접 증인신문을 하는 마인츠모델(Mainzer Modell)이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²⁸⁷⁾ 한편 2007년 9월, 헤센 주는 연방상원에 “재판 및 소추절차에 있어서 비디오컨퍼런스 기술의 도입 강화(Intensivierung des Einsatzes von Videokonferenztechnik in gerichtlichen und staatsanwaltschaftlichen Verfahren)”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여²⁸⁸⁾ 민사소송·행정법원소송·사회법원소송·재정법원소송·형사소송절차 등에 원격화상시스템을 폭넓게 활용하는 길을 열고자 하였으나, 이러한 헤센 주의 제안은 제16대 연방의회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²⁸⁹⁾ 그러나 2010년 3월 24일 연방의회가 “재판 및 소추절차에 있어서 비디오컨퍼런스 기술의 도입 강화를 위한 법안(Gesetzes zur Intensivierung des Einsatzes von Videokonferenztechnik in gerichtlichen und staatsanwaltschaftlichen Verfahren)”²⁹⁰⁾을 제기하였는바, 2007년 헤센 주가 제기했던 개정 요청이 다시금 논의되고 있으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송절차 수행과 비용 감축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²⁹¹⁾

287) Maike Scheumer, a.a.O., S. 161-163.

288) BR-Drs. 634/07 vom 19.09.07.

289) Werner Leitner, a.a.O., S. 122-123.

290) BT-Drucks. 17/1224 vom 24. 3. 2010. 독일 연방의회 홈페이지 참조, <http://dipbt.bundestag.de/extrakt/ba/WP17/230/23003.html> (2012년 10월 20일 최종접속).

또한 독일은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서 유럽연합 회원국간 형사사법공조 협약(Übereinkommens vom 29. Mai 2000 über die Rechtshilfe in Strafsachen zwischen den Mitgliedstaaten der Europäischen Union; EURhÜbk)²⁹²⁾ 제10조 및 형사소송 절차에 있어서 피해자 지위에 관한 유럽연합 이사회 결의안(Rahmenbeschluss des Rates vom 15. März 2001 über die Stellung des Opfers im Strafverfahren(2001/220/JI))²⁹³⁾ 제11조 등을 준수하여 유럽연합 회원국간의 원격화상시스템 심리 및 이를 통한 피해자 보호에 동참하고 있다.²⁹⁴⁾ 2008년 11월에 유럽연합 이사회는 비디오 컨퍼런싱과 전자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사법부와 회원국 사이의 의사소통 구조를 간소화하고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고, 특히 국경을 넘어서 원격화상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은 해당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장치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유럽연합 이사회는 2009년도부터 2013년도 까지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프로젝트 중의 하나로 “비디오컨퍼런싱의 보다 적절한 활용”을 거론하였고, 독일도 동 프로젝트 시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특히, 독일에서는 비디오컨퍼런싱 설비에 동시 통역 장치를 삽입함으로써, 외국어로 말하는 다수의 피고인이 포함된 소송절차에서도 통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²⁹⁵⁾

291) “Videokonferenz im Gericht”, Die Spiegel Nr. 48/2010(29. 11. 2010), S. 17; Werner Leitner, a.a.O., S. 123-124. 다만 독일판사협회(Deutsche Richterbund, DRB)는 소송절차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행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시행을 위한 기술적 장비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에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92) ABl. C 197 vom 12. 7. 2000, S. 24.

293) ABl. L 82 v. 22.3.2001, S. 1 ff.

294) Löwe-Rosenberg, StPO Grosskommentar, Band 6/Teil 1, S. 886; Werner Beulke, “Empirische und normative Problems der Verwendung neuer Medien in der Hasptverhandlung”, ZStW 113, 2001, S. 728; Werner Beulke, a.a.O., S. 276; Werner Leitner, Videotechnik im Strafverfahren: Ein Petition für mehr Dokumentation und Transparenz, Nomos, 2012.

295) General Secretariat of the Council, Videoconferencing as a part of European e-Justice: the essentials of videoconferencing in cross-border court proceedings, European E-Justice, 2009, p. 24.

그림 1-1 독일에서의 비디오신문 장면²⁹⁶⁾

라.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에 대한 문제점

종래 독일에서는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던바, 동 시스템을 이용한 절차 진행이 형사절차상 기본원칙인 직접주의와 구두주의에 반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마인츠 지방법원의 판결로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의 활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위한 입법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결과 독일 형사소송법에 원격화상시스템이 도입되는 성과를 가져왔으나, 원격화상시스템에 대한 법관의 이해와 경험 부족 및 잘못된 절차진행이 상고(Revision)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법관들의 우려로 인해 동 시스템은 활발하게 이용되지 못하였다.²⁹⁷⁾ 그러나 독일에서 원격화상시스템을 이용한 증인신문은 음성과 화상을

296) 바덴바덴(Baden-Baden) 주, Rastatt 시에서 행해진 비디오신문. “Hören und Sehen”, Der Spiegel Nr. 43/1995(23. 10. 1995). <http://www.spiegel.de/spiegel/print/d-9223297.html> (2012년 10월 20일 최종접속).

297) Maike Scheumer, a.a.O., S.170.

쌍방향으로 전송하는 기술에 기초한 것이므로 구두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녹화물이 아닌²⁹⁸⁾ 실시간 생중계로 진행되므로 직접주의 원칙에도 배치되지 않는다고 평가된다.²⁹⁹⁾ 또한 물리적 대면이 아닌 원격화상시스템이라는 매체를 통해 대면하고 있지만, 소송관계인들은 시청각적 접촉에 기반하여 증인을 신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도 침해하지 않는다.³⁰⁰⁾ 최근 들어 독일에서는 국내외적 요인에 의해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원칙이 아닌 예외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한다는 점도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

3. 프랑스

가. 사법분야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의 도입

2000년 11월 22일, 프랑스에서 비디오컨퍼런싱을 이용한 첫 원격화상재판이 시행되었다.³⁰¹⁾ 서로 약 4,600km의 거리를 두고 있는 파리 항소 법원(la Cour d'Appel de Paris)과 생뵘에르에미끌롱³⁰²⁾ 항소법원(le Tribunal Supérieur d'Appel de Saint-Pierre-et-Miquelon) 사이에 비디오컨퍼런싱 시스템을 이용한 원격화상재판이 진행된 것이다.³⁰³⁾ 생뵘에르에미끌롱에서 한 노조를 변호하던 변호사 Grégoire Lafarge는 동 지역은 프랑스 영토 중에서 유일하게 제1심과 제2심이 동일한 판사에 의해 심리되기 때문에³⁰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서 재판관 제척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원격화상시스템이 검토되었다.

298) 녹화물이 나중에 다시 상영되는 경우에만, 전통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서는 Klaus Volk, a.a.O., § 27 Die Unmittelbarkeit der Beweisaufnahme, Rn. 3 ff. 참조

299) Klaus Volk, a.a.O., S. 240

300) Ulrich Eisenberg, Beweisrecht der StPO, 6. Auflage, Beck Juristischer Verlag, 2008, Rn. 868 이하 참조

301) “Un premier « télé-procès » convaincant”, <Le Figaro>, 2000년 11월 28일자.

302) <http://fr.wikipedia.org/wiki/Saint-Pierre-et-Miquelon> (2012년 10월 20일 최종접속)

생뵘에르에미끌롱(Saint-Pierre-et-Miquelon)은 캐나다 뉴펀들랜드 섬 남쪽에 위치한 프랑스령 지역이다.

이에 대해 1998년에 “교체 판사가 현지에서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텔레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결정³⁰⁵⁾이 내려짐으로써 비디오컨퍼런싱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원격 화상재판이 시행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초창기 사법절차상 원격화상재판은 생뎐에르에미끌롱과 같은 해외영토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사법적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예외적이고 한정적인 조치로 강구되었으나, 2000년대 이후 프랑스 정부와 사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법절차에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프랑스가 사법분야에서 비디오컨퍼런스의 이용을 강화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프랑스 법무부의 강력한 의지 외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전자정부 구축 권고 및 국경을 넘어선 소송절차에서 비디오컨퍼런싱을 보다 적절하게 활용



- 303) Christian Licoppe/Laurence Dumoulin, “L'ouverture des procès à distance par visioconférence: activité, per formativité, technologie”, *Reseaux* Vol. 25, N° 144(De la rue au tribunal - Études sur la visiocommunication), Hermes Science Publications, 2007, p. 104.
- 304) Saint-Pierre-et-Miquelon에는 사법관료 인원 부족으로 인해 1인의 사법관료가 제1심과 제2심(예심과 본심, 제1심과 항소심)을 겸임하여 주관할 수 있도록 하는 관례가 있었다. Laurence Dumoulin, “Presentes, distants ou absents? Les justiciables et le développement de la visioconférence dans la justice française”, *Conférence des Présidents des cours d'appel de l'Union européenne: Les Technologies de l'Information et de la Communication(TIC) au service de la justice du XXIe siècle*, 2011. 10, p. 3.
- 305) Ordonnance n° 98-729 du 20 août 1998 relative à l'organisation juridictionnelle dans les territoires d'outre-mer et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de Mayotte et de Saint-Pierre-et-Miquelon.

하고자 하는 유럽연합(European Community: EU)의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³⁰⁶⁾

나.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에 관한 법 규정

프랑스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비디오컨퍼런싱 이용과 관련해서 주목할 부분은 해당 법조문의 지속적인 개정과 이에 따른 비디오컨퍼런싱의 활용 확대이다. 프랑스 형사소송절차에 원격화상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이 도입된 것은 2001년 11월 15일 법률 제2001-1062호로 개정된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706-71조를 통해서이다.³⁰⁷⁾ 이에 따라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청취나 신문 및 대질신문은 송신의 비밀이 보장되는 텔레커뮤니케이션 수단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고, 통역인의 참여도 텔레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³⁰⁸⁾ 이후 2002년 9월 9일 법률 제2002-1138호로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706-71조가 개정되면서 원격화상시스템은 경찰유치(garde à vue)³⁰⁹⁾나 사법유치(retenu judiciaire)의 연장을 위한

306) OECD, L'administration électronique: un impératif, Rapport du groupe de travail sur l'administration électronique, OECD, 2004; Secrétariat Général du Conseil, La Visioconférence dans le Cadre de la Justice en Ligne Européenne: L'Essentiel sur la Visioconférence dans les Procédures Judiciaires Transfrontières, Dictus Publishing, 2011 참조

307)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23편 소송절차 중 텔레커뮤니케이션 수단의 사용(De l'utilisation de moyens de télécommunications au cours de la procédure).

308) 2001년 11월 15일 법률 제2001-1062호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706-71조

① 수사 또는 예심수사에 있어 정당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프랑스의 다수 지역에 있는 다수 사람들에 대한 진술청취, 신문, 대질신문을 통신의 비밀이 보장되는 텔레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치가 실시된 장소에서 그 조치에 대한 조서가 작성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영상녹화물로 녹화 또는 녹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706-52조 제4항 내지 제9항까지의 규정이 준용된다.

② 진술청취, 신문, 대질신문에서 통역인이 필요하고, 통역인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통역인의 참여는 텔레커뮤니케이션 수단에 의한 매개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③ 본조의 규정은 외국 사법당국의 요청에 의한 형사사법공조 또는 프랑스 사법당국의 요청에 의한 외국 사법당국의 형사사법공조에 대한 집행이 프랑스 국내와 국외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④ 필요한 경우 본조의 적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참사원령으로 정한다.

309) 경찰유치(Garde à vue)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사법경찰이 수사상의 필요를 이유로 최고 24시간 동안 구금할 수 있는 조치를 말한다. 경찰유치는 불심검문, 현행범체포, 임의출석 등 이미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취해지는 구금조치로서 적극적인 체포(arrestation)와 구별된다. Annie Beziz-Ayache, Dictionnaire de droit pénal général et procédure pénale, Ellipses Marketing, 2008, pp. 129-131.

출석에도 활용될 수 있게 되었다.³¹⁰⁾ 2004년 3월 9일 법률 제2004-204호로 개정된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706-71조는 판결법원에서의 증인신문, 감정인신문 및 당사자³¹¹⁾ 진술청취와 구금된 자에 대한 예심판사의 진술청취 및 신문, 구속 결정 전 심리, 구속연장 결정을 위한 심리, 석방요청에 대한 항소법원 수사부(la chambre d'instruction) 또는 판결법원(la juridiction de jugement)의 조사는 물론이고 경찰법원에서 구금 중인 피고인³¹²⁾에 대한 신문 등에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변호인의 원격화상시스템 이용에 대하여도 규정하였다.³¹³⁾

310) 2002년 9월 9일 법률 제2002-1138호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706-71조

- ① 수사 또는 예심수사에 있어 정당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프랑스의 다수 지역에 있는 다수 사람들에 대한 진술청취, 신문, 대질신문을 통신의 비밀이 보장되는 텔레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하여 할 수 있다. 같은 요건 하에서 경찰유치 또는 사법유치 연장을 위해 행하는 출석도 영상텔레커뮤니케이션 수단에 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치가 실시된 장소에서 그 조치에 대한 조서가 작성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영상녹화물로 녹화 또는 녹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706-52조 제4항 내지 제9항까지의 규정이 준용된다.
- ② 진술청취, 신문, 대질신문에서 통역인이 필요하고, 통역인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통역인의 참여는 텔레커뮤니케이션 수단에 의한 매개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 ③ 본조의 규정은 외국 사법당국의 요청에 의한 형사사법공조 또는 프랑스 사법당국의 요청에 의한 외국 사법당국의 형사사법공조에 대한 집행이 프랑스 국내와 국외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④ 필요한 경우 본조의 적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참사원령으로 정한다.

311)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는 형사소송에서 범죄로부터 입은 피해의 복구를 주장하기 위하여 공소의 제기를 강제하거나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형사소송에 참여하는 범죄피해자를 지칭하는 사적 당사자(Partie Civile)이다. 형사소송에서의 당사자는 검찰과 피고인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지만 사인소추제도가 발달한 프랑스에서는 범죄의 직접 피해자가 사인소추를 통하여 소송법상의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음으로써 각종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2조는 “중죄, 경죄, 위경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위한 사소(私訴, action civile)는 범죄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개인적 손해를 입은 모든 자가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연인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사회단체 등의 법인도 사적 당사자로서 사인소추의 주체가 될 수 있다. Bernd Boulloc/Haritini Matsopoulou, Droit pénal général et procédure pénale, Dalloz-Sirey, 2009, pp. 197 ff.

312) 이때의 피고인(prévenu)이란 위경죄, 경죄를 범했다는 혐의로 형사법원에 소추된 자를 뜻한다. 예비수사, 예심 등 공판에 선행하는 소송절차가 종결되어 위경죄, 중죄를 재판하는 형사법원에 소추된 자를 의미하며, 따라서 예심대상자(la personne mise en examen), 중죄 혐의로 중죄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중죄 피고인(accusé)과 구별된다. 수사예심판사가 예심을 종결하고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재판을 위한 이송명령을 내리는 때에 예심대상자는 (위경죄, 경죄) 피고인(prévenu) 또는 중죄 피고인(accusé)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Bernd Boulloc/Haritini Matsopoulou, Id., p. 190.

313) 2004년 3월 9일 법률 제2004-204호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706-71조

- ① 수사 또는 예심수사에 있어 정당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프랑스의 다수 지역에 있는 다수 사람들에 대한 진술청취, 신문, 대질신문을 통신의 비밀이 보장되는 텔레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하여 할 수 있다.

2005년 1월 26일 법률 제 2005-47호로 개정된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706-71조는 구금 중인 피의자에 대하여 근린법원³¹⁴⁾에서 행하는 신문에도 원격화상시스템의 활용을 허용하였고,³¹⁵⁾ 2007년 3월 5일 법률 제2007-291호로 개정된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706-71조는 항소법원 수사부 또는 판결법원에서의 구속 소송 관련 심리³¹⁶⁾에도 원격화상시스템의 활용을 허용하였다.³¹⁷⁾ 이후 2009년 11월 24일 법률 제 2009-1436호로 개정된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706-71조는 동법 제272조³¹⁸⁾에 따른

같은 요건 하에서 경찰유치 또는 사법유치 연장을 위해 행하는 출석도 영상텔레커뮤니케이션 수단에 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치가 실시된 장소에서 그 조치에 대한 조서가 작성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영상녹화물로 녹화 또는 녹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706-52조 제4항 내지 제9항까지의 규정이 준용된다.

② 영상텔레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사용하는 데 대한 전항의 규정은 판결법원에서의 증인신문, 감정인신문 및 당사자의 진술청취에도 적용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구금된 자에 대한 예심판사의 진술청취 또는 신문, 다른 이유로 구금된 자에 대한 구속 결정 전 심리, 구속연장 결정을 위한 심리, 석방요청에 대한 항소법원 수사부 또는 판결법원의 조사, 경찰법원에서 다른 이유로 구금 중인 피고인에 대한 신문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④ 제2항 내지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 대상자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때에는 변호인은 관할법원 혹은 대상자 옆에 출석할 수 있다. 관할법원 측에 출석하는 경우에 변호인은 영상텔레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이용하여 대상자와 비밀리에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대상자 옆에 출석하는 때에는 대상자의 구금 장소에 소송기록 일체를 두어 변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통역인이 이동할 수 없어서 통역인을 통한 진술청취·신문·대질신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통역도 텔레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해서 할 수 있다.

⑥ 필요한 경우 본조의 적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참사원령으로 정한다.

314) 시민판사에 의해 운영되는 근린법원(Juridiction de Proximité)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소액사건을 신속하고 간이하게 처리하고 사법예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2002년 9월 9일 법률 제 2002-1138호 「사법부의 방향과 계획에 관한 법률(La loi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pour la justice)」에 의해 설치되었다. Annie Beziz-Ayache, Id., p. 164; Bernd Bouloc/Haritini Matsopoulou, Id., p. 214; Roger Perrot, Institutions judiciaires, Montchrestien, 2010, p. 162.

315) 2005년 1월 26일 법률 제 2005-47호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706-71조

③ 전2항의 규정은 구금된 자에 대한 예심판사의 진술청취 및 신문, 다른 이유로 구금된 자에 대한 구속 결정 전 심리, 구속연장 결정을 위한 심리, 석방요청에 대한 항소법원 수사부 또는 판결법원의 조사, 경찰법원 또는 근린법원에서 다른 이유로 구금 중인 피고인에 대한 신문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316) 여기서 말하는 심리(Audience)는 법원이 당사자들의 주장을 지득하고 소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검사, 당사자, 변호사, 증인 등의 소송관계인의 진술을 듣는 재판단계이다.

317) 2007년 3월 5일 법률 제2007-291호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706-71조

③ 전2항의 규정은 구금된 자에 대한 예심판사의 진술청취 및 신문, 다른 이유로 구금된 자에 대한 구속 결정 전 심리, 구속연장 결정을 위한 심리, 항소법원 수사부 또는 판결법원에서의 구속 소송 관련 심리, 경찰법원 또는 근린법원에서 다른 이유로 구금 중인 피고인에 대한 신문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318)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272조

① 중죄법원 재판장은 피고인이 구치소에 도착하고 서기에게 증거물이 송부된 후 최단기간 내에 피고인을 신문한다.

중죄법원 재판장의 피고인 신문과 합의된 결정 또는 판결 결과를 고지하기 위한 법원 공판에의 피고인 출석 또는 민사상 문제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리는 법원 공판에의 피고인 출석 및 구인영장·체포영장·유럽연합의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자에 대한 검사 또는 검사장의 신문에 원격화상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또한 구속으로 인한 피해보상 청구에 대하여 항소법원장이 주재하는 범죄피해 배상심의위원회·구금피해보상위원회·유죄판결재심위원회·재심 등에 원격화상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하였다.³¹⁹⁾ 2011년 3월 14일 법률 제 2011-267호로 개정된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706-71조는 당사자 전원과 지방법원 검사장³²⁰⁾의 합의가 있는 경우, 구금 상태에 있는 피고인의 경죄법원 출석에 원격

- ②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제272-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
- ③ 재판장은 배석판사 중 1인에게 신문을 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④ 피고인이 프랑스어를 말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통역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319) 2009년 11월 24일 법률 제2009-1436호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706-71조

- ① 수사 또는 예심수사에 있어 정당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프랑스의 다수 지역에 있는 다수 사람들에게 대한 진술청취, 신문, 대질신문을 통신의 비밀이 보장되는 텔레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하여 할 수 있다. 같은 요건 하에서 경찰유치 또는 사법유치 연장을 위해 행하는 출석도 영상텔레커뮤니케이션 수단에 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치가 실시된 장소에서 그 조치에 대한 조서가 작성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영상녹화물로 녹화 또는 녹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706-52조 제3항 내지 제8항까지의 규정이 준용된다.
- ② 영상텔레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사용하는 데 대한 전항의 규정은 판결법원에서의 증인신문, 감정인신문 및 당사자의 진술청취에도 적용된다.
- ③ 전2항의 규정은 구금된 자에 대한 예심판사의 진술청취 및 신문, 다른 이유로 구금된 자에 대한 구속 결정 전 심리, 구속연장 결정을 위한 심리, 항소법원 수사부 또는 판결법원에서의 구속 소송 관련 심리, 제272조에 따른 중죄법원 재판장의 피고인 신문, 합의된 결정 또는 판결 결과를 고지하기 위한 법원 공판에의 피고인 출석 또는 민사상 문제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리는 법원 공판에의 피고인 출석, 구인영장·체포영장·유럽연합의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자에 대한 검사 또는 검사장의 신문, 경찰법원 또는 근린법원에서 다른 이유로 구금 중인 피고인에 대한 신문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구속으로 인한 피해보상 청구에 대하여 항소법원장이 주재하는 범죄피해 배상심의위원회·구금피해보상위원회·유죄판결재심위원회·재심 등에도 적용된다.
- ⑤ 제2항 내지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 대상자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때에는 변호인은 사법관·관할 법원·관할위원회 측에 출석하거나 혹은 대상자 옆에 출석할 수 있다. 사법관·관할법원·관할위원회 측에 출석하는 경우에 변호인은 영상텔레커뮤니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대상자와 비밀리에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대상자 옆에 출석하는 때에는 대상자의 구금 장소에 소송기록 일체를 두어 변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이미 변호인에게 기록이 송부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통역인이 이동할 수 없어서 통역인을 통한 진술청취·신문·대질신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통역도 텔레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해서 할 수 있다.
- ⑦ 필요한 경우 본조의 적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참사원령으로 정한다.

320) 지방법원 검사장(Procureur de la République)은 지방법원의 관할 내에 있는 모든 1심법원에서 공소관을 대표한다(프랑스 법원조직법 제311-15조).

화상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구속 결정 및 구속연장에 대한 심리 공판에 있어서는 구금된 자에게 치안유지를 저해하거나 탈주의 위험이 있지 않은 한, 원격화상시스템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구금된 자의 감정(expertise)에 대한 고지는 원칙적으로 원격화상시스템을 이용하여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³²¹⁾ 나아가 2011년 4월 24일 법률 제2011-392호로 개정된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706-71조는 임시체포 요청, 범죄인 인도 요청 및 인도 목적의 체포 요청에 의해 체포된 자의 검사 또는 검사장의 신문에 원격화상시스템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627-5조,³²²⁾ 제695-28조,³²³⁾ 제

321) 2011년 3월 14일 법률 제2011-267호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706-71조

- ① 수사 또는 예심수사에 있어 정당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프랑스의 다수 지역에 있는 다수 사람들에 대한 진술청취, 신문, 대질신문을 통신의 비밀이 보장되는 텔레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하여 할 수 있다. 같은 요건 하에서 경찰유치 또는 사법유치 연장을 위해 행하는 출석도 영상텔레커뮤니케이션 수단에 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치가 실시된 장소에서 그 조치에 대한 조서가 작성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영상녹화물로 녹화 또는 녹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706-52조 제3항 내지 제8항까지의 규정이 준용된다.
- ② 영상텔레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사용하는 데 대한 전항의 규정은 판결법원에서의 증인신문, 감정인신문 및 당사자의 진술청취에도 적용된다. 피고인이 구금 중에 있다면, 피고인의 경죄법원 출석을 위해 당사자 전원과 지방법원 검사장의 합의로 이 규정이 적용된다.
- ③ 전2항의 규정은 구금된 자에 대한 예심판사의 진술청취 및 신문, 다른 이유로 구금된 자에 대한 구속 결정 전 심리, 구속연장 결정을 위한 심리, 항소법원 수사부 또는 판결법원에서의 구속 소송 관련 심리, 제272조에 따른 중죄법원 재판장의 피고인 신문, 합의된 결정 또는 판결 결과를 고지하기 위한 법원 공판에의 피고인 출석 또는 민사상 문제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리는 법원 공판에의 피고인 출석, 구인영장·체포영장·유럽연합의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자에 대한 검사 또는 검사장의 신문, 경찰법원 또는 근린법원에서 다른 이유로 구금 중인 피고인에 대한 신문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구속 결정 또는 구속 연장을 다루는 심리 공판에 있어서, 구금된 자는 치안유지를 저해하거나 탈주의 심각한 위험 때문에 그 이동을 금지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텔레커뮤니케이션 수단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구속으로 인한 피해보상 청구에 대하여 항소법원장이 주재하는 범죄피해 배상심의위원회·구금피해보상위원회·유죄판결재심위원회·재심 등에도 적용된다.
- ⑤ 제2항 내지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 대상자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때에는 변호인은 사법관·관할 법원·관할위원회 측에 출석하거나 혹은 대상자 옆에 출석할 수 있다. 사법관·관할법원·관할위원회 측에 출석하는 경우에 변호인은 영상텔레커뮤니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대상자와 비밀리에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대상자 옆에 출석하는 때에는 대상자의 구금 장소에 소송기록 일체를 두어 변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이미 변호인에게 기록이 송부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법원의 결정에 반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다른 행위와 동시에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금된 자의 경우, 법원에 의한 감정의 고지는 영상텔레커뮤니케이션 수단의 이용을 통해 행하여야 한다.
- ⑦ 통역인이 이동할 수 없어서 통역인을 통한 진술청취·신문·대질신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통역도 텔레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해서 할 수 있다.
- ⑧ 필요한 경우 본조의 적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참사원령으로 정한다.

696-11조³²⁴⁾ 그리고 제696-23조³²⁵⁾에 따라 구금 중인 자를 석방구급판사, 항소법원장 또는 지명된 사법관 앞에 출석시키는 경우에도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³²⁶⁾ 요컨대, 프랑스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이용은 수차에 걸친 법 개정 과정을 통해 그 대상 범위가 확장되었다.

322)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4권(특별소송절차: De quelques procédures particulières), 제1편(반인도적 범죄 및 전쟁범죄에 적용되는 절차규정: Des règles de procédure applicables aux crimes contre l'humanité et aux crimes de guerre), 제1부(국제형사재판소와의 협력: De la coopération avec la Cour pénale internationale), 제1장(사법적 협력: De la coopération judiciaire), 제2절(체포 및 범죄인 인도: De l'arrestation et de la remise), 제627-5조

① 범죄인 인도를 위한 체포 요청에 따라 체포된 모든 자는 토지관할권이 있는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24시간 이내에 인치되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동법 제63-1조 내지 제63-5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② 체포된 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검사는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가 범죄인 인도를 위한 체포 요청의 대상이며, 최대 5일 안에 파리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출두된다는 사실을 알린다. 검사는 또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이 불가능할 경우 변호사회 회장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지명한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한다. 또한 피체포자가 선임한 변호인과 즉시 상담할 수 있다는 사실도 고지한다.

③ 위와 같이 고지하였다는 사실은 조서에 기재하며, 이 조서는 즉시 파리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된다.

④ 검사는 구치소의 장에게 명하여, 제1항에 정한 자를 구속한다.

323)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4권, 제10편(국제형사사법공조: De l'entraide judiciaire internationale), 제4장(2002년 6월 3일 유럽연합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유럽체포영장 및 회원국간의 범죄인 인도 절차: Du mandat d'arrêt européen et des procédures de remise entre Etats membres résultant de la décision-cadre du Conseil de l'Union européenne du 13 juin 2002), 제3절(외국 사법기관이 발부한 유럽체포영장의 집행: Dispositions relatives à l'exécution d'un mandat d'arrêt européen décerné par les juridictions étrangères), 제695-28조

324)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4권, 제10편, 제5장, 제5절(범죄인 인도: De l'extradition), 제 696-11조

325)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4권, 제10편, 제5장, 제5절(범죄인 인도: De l'extradition), 제 696-23조

326) 2011년 4월 24일 법률 제2011-392호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706-71조

③ 전2항의 규정은 구금된 자에 대한 예심판사의 진술청취 및 신문, 다른 이유로 구금된 자에 대한 구속 결정 전 심리, 구속연장 결정을 위한 심리, 항소법원 수사부 또는 판결법원에서의 구속 소송 관련 심리, 제272조에 따른 중죄법원 재판장의 피고인 신문, 합의된 결정 또는 판결 결과를 고지하기 위한 법원 공판에의 피고인 출석 또는 민사상 문제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리는 법원 공판에의 피고인 출석, 구인영장·체포영장·유럽연합의 체포영장·임시체포 요청·범죄인 인도 요청·인도 목적의 체포요청에 의해 체포된 자에 대한 검사 또는 검사장의 신문, 다른 이유로 구금 중인 자에 대한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627-5조, 제695-28조, 제696-11조 그리고 제696-23조의 적용에 따른 석방구급판사, 항소법원장 또는 지명된 사법관 앞으로의 출석 절차, 경찰법원 또는 근린법원에서 다른 이유로 구금 중인 피고인에 대한 신문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구속 결정 또는 구속 연장을 다루는 심리 공판에 있어서, 구금된 자는 치안방해 및 탈주의 심각한 위험 때문에 그 이동을 금지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텔레커뮤니케이션 수단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 현황

종래 프랑스 형사사법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은 공판전 예심단계와 증인의 증언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 이용되었고, 피고인의 법정 출두를 동 시스템에 의한 출석으로 대체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미한 사건에 있어서, 이미 구금된 피고인이 재판을 받기 위해 경죄법원에 출석할 경우에 당사자 전원과 지방법원 검사장의 합의를 조건으로 원격화상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³²⁷⁾ 2000년대에 들어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원격화상시스템 활용 대상을 확장시킴과 동시에 모든 재판소와 대부분의 교정기관들은 동 시스템 활용을 위한 시설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2003년부터 2009년 사이에 원격화상시스템 설비를 구축하기 위해 약 7백만 유로가 투입된 결과, 2009년 기준으로 모든 1심법원과 항소법원은 최소한 한 개 이상의 화상회의장치를 갖추게 되었고, 대부분의 교정시설도 원격화상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다.³²⁸⁾ 나아가 법무부는 구금자의 이송 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화상회의에 의한 공판비율을 증대하도록 항소법원을 독려하기도 하였다.³²⁹⁾ 프랑스 법무부는 비디오컨퍼런싱 시행으로 인하여 심리를 위해 법원으로 이송해야 할 피구금자의 수와 이송에 필요한 보안요원의 수가 2009년 이래 평균 5% 감축되었고, 2010년에는 피구금자 이송 건수가 7천 건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³³⁰⁾ 한편, 프랑스 사법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의 활용이 증가되기는 하였으나, 대대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2009년 1/4분기에서 3/4분기까지 프랑스 전역(해외 프랑스령 포함)에서 민·형사 사건 처리과정에 화상회의를 활용한 건수는 2,000회가 조금 넘는 수치였다고 한다. 동 시스템의 활용에 관해서는 분야별로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항소법원에서의 집중현상이 특징적이고, 테러범죄의 경우에는 화상회

327) 2011년 3월 14일 법률 제2011-267호로 개정된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706-71조 제2항 참조

328) 2010년도 예산법률에 관한 상원의회보고서 참조

<http://www.senat.fr/rap/a09-106-4/a09-106-44.html#toc25> (2012년 10월 20일 최종접속).

329) 프랑스 법무부 사무총장의 공문(Circulaire du Secrétaire Général du Ministère de la Justice) 참조, http://www.syndicat-magistrature.org/IMG/pdf/cir_sg_visioconference_extractions_judiciaires_20090205.pdf (2012년 10월 20일 최종접속).

330) 프랑스 법무부 홈페이지 참조, <http://www.justice.gouv.fr/actualite-du-ministere-10030/la-dematerialisation-des-echanges-22175.html> (2012년 10월 20일 최종접속).

의가 거의 체계화되어 있다고 한다.³³¹⁾



그림 1-2 프랑스 보르도 항소법원 수사부의 원격화상심리 장면³³²⁾

라.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에 대한 문제점

프랑스 사법절차에 있어서 비디오컨퍼런싱 확대를 주도한 정부와 사법당국은 비디오컨퍼런싱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이유로 이를 정당화하고 있으나, 사법 영역에서의 비디오컨퍼런싱 확대에 관한 공공의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다.³³³⁾ 비디오컨퍼런싱은 물리적인 출석의 편리한 대안에 그치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며, 소송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비디오컨퍼런싱에 대한 일반시민의 이해를 제고하고

331) Laurence Dumoulin, Id., p. 2.

332) 프랑스 법무부 홈페이지 참조, <http://www.justice.gouv.fr/actualite-du-ministere-10030/la-dematerialisation-des-echanges-22175.html> (2012년 10월 20일 최종접속).

333) Marc Janin/Laurence Dumoulin/Christian Licoppe/Jean Danet, Les Cahiers de la Justice, N° : La visio-conférence dans le prétoire, Dalloz, 2011 참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디오컨퍼런싱은 소송 공간을 확장시킴으로써 피해자 등을 배려하고, 사법의 효율성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동 시스템을 형사절차에 이용함에 있어서는 사건 관련자의 선택권과 거부권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수반되어야 한다.³³⁴⁾ 나아가 법률적 조력을 제공할 변호인의 위치와 설비의 배치 등에 관해서도 일정한 기준이 정립될 것이 요청된다.³³⁵⁾

4. 일 본

가. 사법분야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의 도입

일본은 1996년에 민사소송법을 개정함으로써 사법 분야에서 최초로 원격화상시스템을 도입하였다.³³⁶⁾ 1998년 1월부터 시행된 동 개정법은 민사소송의 체계와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정한 것으로서 영상 등의 송수신을 이용한 통화를 통해 원격지에 거주하고 있는 증인 등을 신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였고,³³⁷⁾

334) Laurence Dumoulin, Id., p. 9.

335) Laurence Dumoulin/Christian Licoppe, Justice et visioconférence: les audiences à distance. Genèse et institutionnalisation d'une innovation, Institut des Sciences sociales du Politique, 2009 참조.

336) 민사소송법의 전면개정 작업은 1990년부터 시작되었고, 원격화상시스템의 도입에 관해서는 1991년 3월에 제시된 과제 검토 단계에서 이미 논의되었다. 1993년 12월에 마련된 개정시안에서는 그 적용대상이 증인신문은 물론이고 감정과 당사자신문으로까지 확대되어 있었으나, 실제 입법은 증인신문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法務省民事局參事官室編, 民事調停公手続の検討課題, 民事調停公手続に関する検討事項とその補足説明, 別冊NBL No. 23, 商事法務研究会, 1991, 36頁; 法務省民事局參事官室編, 民事調停公手続に関する改正試案, 試案とその補足説明, 検討事項に対する各界意見の概要, 別冊NBL No. 27, 商事法務研究会, 1994, 24頁; 日本弁護士連合会, 「民事訴訟手続に関する検討事項」に対する意見書, 日本弁護士連合会民事調停公法改正問題委員会, 1992, 122頁 참조.

337) 일본 민사소송법 제204조(영상 등의 송수신에 의한 통화의 방법에 의한 신문)
재판소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는 최고재판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과 음성의 송수신에 의하여 상대방의 상태를 서로 인식하면서 통화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1. 증인이 원격지에 거주할 때
2. 사안의 성질, 증인의 연령 또는 심신 상태, 증인과 당사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및 기타 사정에 의하여, 증인이 재판장 및 당사자가 증인을 신문하기 위하여 재석하는 장소에서 진술할

제도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민사소송규칙에 규정되었다.³³⁸⁾ 민사소송법상 원격 화상시스템이 도입된 데에는 수소재판소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는 증인이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재판정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 증인의 중요성과 출석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격화상시스템이 활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반영되었다.³³⁹⁾ 도입 과정에서 직접주의·공개주의에의 저촉 여부 및 반대신문의 적절한 행사 여부 등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되었으나,³⁴⁰⁾ 증인신문에 원격화상시스템을 이용하는 규정이 거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신설되었다. 민사소송법상 원격화상시스템을 이용한 증인신문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출석이 곤란한 증인에 대한 신문이 가능해졌고, 증인신문기일도 보다 용이하게 조정될 수 있게 되었다.³⁴¹⁾

경우 심리적 압박을 받아 정신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338) 일본 민사소송규칙 제123조(영상 등의 송수신에 의한 통화의 방법에 의한 신문)

① 법 제204조(영상 등의 송수신에 의한 통화의 방법에 의한 신문) 제1호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동 조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신문은 당사자의 의사를 들어 당사자를 수소재판소에 출두시키거나 증인을 당해 신문에 필요한 장치가 설치된 다른 재판소에 출두시켜서 한다.

② 법 제204조 제2호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동 조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신문은 당사자 및 증인의 의견을 들어 당사자를 수소재판소에 출두시키거나 증인을 수소재판소 또는 당해 신문에 필요한 장치가 설치된 다른 재판소에 출두시켜서 한다. 이 경우에 증인을 수소재판소에 출두시킬 때에는 재판장 및 당사자가 증인을 신문하기 위하여 재석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그 증인을 재석시키는 것으로 한다.

③ 전 2항의 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문서의 사본을 송신하여 이를 제시하는 것 기타 신문의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팩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문을 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 및 증인이 출두한 재판소(당해재판소가 수소재판소인 경우를 제외한다)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339) 菅原郁夫, “証人尋問(その二)”, 早稲田法学 第74卷 第2号, 早稲田法学, 1999, 492頁.

340) 직접 대면하여 실시하는 증인신문과 비교하여 효과적인 반대신문이 어렵고, 증인의 표정이나 태도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증인이나 반대신문의 필요성이 적은 증인의 신문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日本弁護士連合会民事訴訟法改正問題委員会, 新民訴訟法改正のポイント: 解釈上および運用上の問題点・留意点, 別冊NBL No. 42, 商事法務研究会, 1997, 125頁. 이외에도 문서의 원본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신문에 관해서는 이용을 자체해야 한다거나, 신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비용 문제 때문에 동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었다(東京弁護士会法友会新民訴訟法実務研究部会編集, 実践新民訴訟法: 民事弁護の在り方とその対応, きょうせい, 1998, 296頁; 仙台地方裁判所新民訴訟法研究会, “研究結果”, 判例タイムズ 第966号, 1998, 38頁 참조). 한편 이러한 비판적인 견해들이 제시한 문제점들은 적절한 시스템의 구축으로 이미 극복되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林道晴, “新民訴訟法の施行に寄せて新しい民事訴訟手続と情報通信機器の利用-電話会議テレビ会議等の勧め”, 自由と正義 第49卷 第2号, 日本弁護士連合会, 1998, 144頁; 小田敬美, “訴訟手続における情報通信機器の利用”, 現代裁判法大系 第13卷 民事訴訟法(西口元 編), 新日本法規出版, 2000, 59頁.

이후 2000년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보호입법의 일환으로 원격화상 시스템을 이용한 증인신문제도가 도입되었다.³⁴²⁾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동 개정법에는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아동성범죄 피해자 등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진술할 경우 피해자의 정신적 평온이 현저히 침해되어 2차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비디오링크 방식에 의한 증인신문(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에 해당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었다.³⁴³⁾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아동성범죄 피해자 등은 재판관과 당사자 등의 소송관계인 및 방청인이 재석한 법정에서 증언할 경우, 강도 높은 정신적 압박을 받음으로써 2차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바, 동 제도는 이와 같은 증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³⁴⁴⁾ 또한 성폭력범죄가 다수인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각 피고인의 공판이 분리되어 이루어질 경우에, 피해자는 각각의 피고인의 공판에서 동일한 피해사실을 반복해서 증언하게 됨으로써 증언할 때마다 수차례에 걸쳐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바, 피해자인 증인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안기는 이러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 이후 증인신문이 또 다시 행해질 가능성이 있다면 비디오링크 방식에 의한 증인신문 상황을 비디오테이프 등의 기록매체에 녹화하여 소송기록의 일부로 다룰 수 있게 된 것이다.³⁴⁵⁾ 한편 2007년에는 이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 민사소송법에도 추가(민사소송법 제204조 제2호)³⁴⁶⁾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아동성범죄 피해자가

341) 종래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하던 증인신문을 담당판사가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菅原郁夫/佐藤達也/村山武彦/浅井千絵, “テレビ会議システムによる証人尋問が証人の信憑性評価に与える影響”, 行政社会論集 第11卷 第4号, 福島大学行政社会学会, 1999, 111頁.

342) 河上和雄/古田佑紀/原田國男/中山善房編, 大コンメンタル刑事訴訟法〈第3巻〉, 青林書院, 2010, 218頁; 高井康行/山本剛/番敦子, 犯罪被害者保護法解説, 三省堂, 2005, 48頁.

343) 참고로 이 개정으로 함께 규정된 제157조의2(付添人: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이나 긴장을 느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증인의 불안 또는 긴장을 완화하기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증인의 진술 중에 증인을 돌보게 할 수 있는데, 이처럼 증인의 진술 중에 증인을 돌보는 역할을 맡은 자를 부첨인이라 하며 이는 우리의 신뢰관계인과 유사하다), 제157조의3(증인신문시의 증인의 차폐)은 2000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344) 河上和雄/古田佑紀/原田國男/中山善房編, 前掲主342, 214-215頁; 田口守一, 刑事訴訟法, 弘文堂, 2009, 228-229頁; 平良木登規男, 刑事訴訟法 II, 成文堂, 2010, 114頁; 松尾浩也, 逐条解説犯罪被害者保護法, 有斐閣, 2001, 81頁.

345) 河上和雄/古田佑紀/原田國男/中山善房編, 前掲主342, 214-215頁; 松尾浩也, 前掲主344, 81-82頁; 三井誠/酒巻匡, 入門刑事手続法, 有斐閣, 2010, 170-171頁.

346) 일본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호가 지리적으로 떨어진 다른 재판소의 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도 증인의 정신적인 불안이나 긴장감을 경감시키기 위해 비디오링크 방식에 의한 증인신문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³⁴⁷⁾

나.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에 관한 구체적 내용

(1) 요건

재판소는 ① 형법상 성폭력피해자³⁴⁸⁾와 ② 특별법상 아동학대·아동성폭력피해자³⁴⁹⁾ 및 ③ 그 외에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재판관 및 소송관계인이 증인을 신문하기 위하여 재석하는 장소에서 진술할 경우 심리적 압박을 받아 정신의 평온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³⁵⁰⁾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찰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재판관 및 소송관계인이 증인을 신문하기 위하여 재석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이들이 재석하는 장소와 동일한 구내에

면, 동조 제2호는 이른바 형사소송법의 “비디오링크 방식”을 취하여 같은 재판소 구내의 별실에서 법정 내의 소송관계인이 TV 모니터를 이용하여 증인을 보면서 마이크를 통하여 신문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형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TV모니터와 차폐시설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한다. 兼子一(ほか, 条解 民事訴訟法, 弘文堂, 2011, 1131頁. 원격화상시스템을 이용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재판장의 재량에 속하나, 당사자 및 증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결정하여야 하고(민사소송규칙 제123조 제2항), 재판소 서기관은 비디오링크 방식을 이용한 신문을 하였다는 취지 등을 구두변론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동조 제4항).

347) 兼子一(ほか, 前掲書346, 1131頁.

348) 형법상 ① 강제외설죄(제176조), 강간죄(제177조), 준강제외설죄·준강간죄(제178조), 집단강간 등의 죄(제178조의2), 이들 4죄의 미수죄(제179조), ② 강제외설 등 치사상죄(제181조), ③ 외설·결혼 목적의 약취·유괴죄(제225조)와 외설·결혼 목적의 인신매매죄(제226조의2 제3항) 및 외설·결혼 목적으로 약취 등을 행한 자를 방조할 목적으로 피약취자에 대하여 수수 등을 한 죄(제227조 제1항), 외설 목적으로 피약취자 등을 수수한 죄(제227조 제3항), 이들 4죄의 미수죄(제228조), ④ 강도강간죄(제241조 전단) 및 동죄의 미수죄(제243조)의 피해자(일본형사소송법 제157조의4 제1항 제1호).

349) 아동복지법상 아동에게 음행을 시킨 죄(아동복지법 제60조 제1항), 아동에 대한 유해지배죄(동법 제34조 제1항 제9호, 제60조 제2항), 아동매춘죄(아동포르노와 관련된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아동매춘주선죄(동법 제5조), 아동매춘권유죄(동법 제6조), 아동포르노 제공 등의 죄(동법 제7조), 아동매춘 등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죄(동법 제8조)의 피해자(일본형사소송법 제157조의4 제1항 제2호).

350) 일본 형사소송법 제157조의4 제1항 제3호

한함)에 그 증인을 재석시켜 영상과 음향의 송수신에 의하여 상대의 상태를 서로 인식하면서 통화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신문할 수 있다(일본 형사소송법 제157조의4 제1항). 일본 형사소송법 제157조의4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족하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나,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제3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비디오링크 방식에 의한 증인신문이 가능하다고 보는 소수설도 있다.³⁵¹⁾ 한편 일본 형사소송법 제157조의4 제1항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범죄피해자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비디오링크 방식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받을 수 있는 상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³⁵²⁾ 그러나 증인이 별실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정신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비디오링크 방식을 취하는 데 대한 상당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³⁵³⁾

(2) 절차

1) 신청

비디오링크 방식에 의한 증인신문은 재판소의 직권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통상 증인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는 검사나 피고인, 또는 증인이 스스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신청방식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대체로 ① 증인의 이름, ② 증인이 일본 형사소송법 제157조의4 제1항 각 호의 어느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 ③ 비디오링크 방식에 의하는 것의 상당성, ④ 증인이 비디오링크 방식에 의한 증인신문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 ⑤ 증인의 출두방법이나 대기 장소와 관련하여 바라는 사항 등과 같이 기타 참고가 되어야 할 사항 등을 기재한다.³⁵⁴⁾

2) 의견청취

재판소는 비디오링크 방식에 의한 증인신문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당사자 쌍

351) 堀江慎司, “刑事裁判例批評(7): 証人尋問における遮へい措置、ビデオリンク方式の合憲性”, 刑事法ジャーナル 2, イウス出版, 2006, 113頁。

352) 松尾浩也ほか, 条解 刑事訴訟法, 弘文堂, 2009, 247頁。

353) 裁判所職員総合研修所(監修), 犯罪被害者等の保護のための諸制度に関する書記官事務の実証的研究, 司法協会, 2005, 78頁。

354) 河上和雄/古田佑紀/原田國男/中山善房編, 前掲註342, 218頁。

방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비디오링크 방식에 의한 증인신문은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므로, 반대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족하고, 실무상으로도 대부분 반대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³⁵⁵⁾ 상대방의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신청을 한 당사자에게 석명(일본 형사소송규칙 제208조 제1항)을 요구하거나, 사실조사(일본 형사소송법 제43조 제3항)를 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사실조사의 방법도 당해 증인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증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그 활용을 자제할 것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³⁵⁶⁾

3) 비디오링크 방식의 실시

일본 형사소송법상 비디오링크 방식은 재판관과 소송관계인이 재석하는 법정(기일 외 신문의 경우는 신문실)과 증인이 재석하는 별실(법정 또는 신문실과 동일한 구내로 한정됨)에 각각 모니터와 카메라를 설치하고, 모니터에 비친 영상을 보면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때 카메라는 신문을 하는 재판관과 소송관계인 및 증인을 비출 수 있는 위치에 각각 설치된다.³⁵⁷⁾ 비디오링크 방식에 의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때에도 증인에게는 부첨인(증인의 진술 중에 증인을 돌보는 자로, 우리의 신뢰관계인에 해당한다)이 동석할 수 있고,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법정에 특정 방청인이 재석함으로써 증인이 제대로 증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방청인을 퇴정시킬 수 있다(일본 형사소송규칙 제202조).³⁵⁸⁾ 비디오링크 방식에 의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때, 그 증인이 추후에 또 다른 형사절차에서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증언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에 증인의 동의를 있다면, 재판소는

355) 河上和雄/古田佑紀/原田國男/中山善房編, 前掲書342, 221頁; 裁判所職員総合研修所(監修), 前掲書353, 33, 80頁。

356) 松尾浩也, 前掲書344, 85頁。

357) 河上和雄/古田佑紀/原田國男/中山善房編, 前掲書342, 215頁。

358) 일본 형사소송규칙 제202조(방청인의 퇴정) 재판장은 피고인,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특정 방청인의 면전(증인에 관해서는 법 제157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및 법 제157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사료될 때에는, 그 진술을 하는 동안 그 방청인을 퇴정시킬 수 있다.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해당 증인의 신문과 진술 및 그 상황을 매체(영상 및 음향을 동시에 기록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함)에 기록할 수 있고(일본 형사소송법 제157조의4 제2항), 그 기록매체는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한다(동조 제3항).³⁵⁹⁾ 한편, 감정인은 필요한 경우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으나, 일본 형사소송법 제157조의4 제3항에 의하여 조서의 일부가 된 위의 기록매체에 대해서는 등사가 허용되지 않는다(일본 형사소송규칙 제134조 제1항, 제2항).

4) 불복

비디오링크 방식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증거조사 방식을 정하는 결정(일본 형사소송법 제29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바, 이에 대해서는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동법 제309조 제1항). 그러나 증인신문 과정에서 비디오링크 방식의 활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재판소의 재량사항이다. 그러므로 재판소가 증인신문에서 비디오링크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는 이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³⁶⁰⁾

359) 일본 형사소송규칙 제38조(증인 등의 신문조서)

① (생략)

② 조서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5. (생략)

6. 법 제157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증인신문을 실시한 것

7. 법 제157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동의를 얻어 그 신문 및 진술과 그 상황을 기록매체(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기록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한 것과 그 기록매체의 종류 및 수량

③ 조서(법 제157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신문 및 진술과 그 상황을 기록한 기록매체를 제외한다. 다음 항 및 제5항에서도 같다)는 재판소 서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진술자에게 읽어주도록 하거나 또는 진술자에게 열람시켜, 그 기재가 잘못되었는지 여부를 물어야 한다.

④~⑥ (생략)

⑦ 법 제157조의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매체가 그 일부로 된 조서에 관해서는 그 취지를 조서에 밝혀 두어야 한다.

360) 河上和雄/古田佑紀/原田國男/中山善房編 前掲書342, 219頁.

다.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 현황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아동성범죄 피해자 등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진술하는 것이 정신적 평온을 현저히 침해하여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비디오링크 방식에 의한 증인신문과 차폐시설에서의 증인신문은 2000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고, 동 개정법은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표 1-2>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고등재판소, 지방재판소 및 간이재판소에서 비디오링크 방식을 이용한 증인신문과 차폐시설조치를 취한 후 증인신문을 받은 증인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³⁶¹⁾ 2001년 6월부터 2010년까지 총 1,908명의 증인이 비디오링크 방식을 이용한 증인신문을 받았고, 총 10,849명의 증인이 차폐시설 조치를 취한 후 증인신문을 받았다. 비디오링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받은 증인의 수는 2002년 122명에서³⁶²⁾ 2010년에는 261명으로 증가하였는바, 동 제도는 도입 후 2~3년이 지난 후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표 1-2 일본에서 비디오링크 방식 및 차폐시설을 이용한 증인신문 실시 횟수

연도	비디오링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받은 증인의 수	차폐시설에서 증인신문을 받은 증인의 수
2001	67	847
2002	122	912
2003	136	1,062
2004	217	1,074
2005	210	1,103
2006	234	1,233
2007	224	1,222
2008	202	1,007
2009	235	1,094
2010	261	1,295

361) 法務省法務総合研究所編 犯罪白書(平成23年版), 日経印刷, 2011, 193頁; 法務省法務総合研究所編 犯罪白書(平成18年版), 佐伯印刷, 2006, 195頁.

362) 2001년의 경우, 제도가 6월부터 시행된 관계로 연도별 비교가 적절하지 않다.

라.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에 대한 평가

(1) 헌법상 권리의 침해 여부

일본 헌법 제37조 제1항은 “모든 형사사건의 피고인은 공평한 재판소에서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형사피고인은 모든 증인에 대하여 심문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으며, 공비로 자신을 위해 강제적 절차에 의한 증인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본 헌법 제82조 제1항은 “재판의 대심 및 판결은 공개법정에서 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비디오링크 방식에 의한 증인신문은 재판관과 소송관계인이 증인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모니터를 통해 신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기의 헌법상 권리들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나 2005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비디오링크 방식이나 차폐조치를 취한 후 이루어지는 증인신문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³⁶³⁾ 즉, 동 판결에서 최고재판소는 방청인과 증인 사이에 차폐조치가 취해지거나 비디오링크 방식으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양자가 병행되더라도 심리는 변함없이 공개되고 있으므로 헌법 제82조 제1항과 제37조 제1항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인으로서의 증인의 태도를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 진술을 청취할 수는 있고, 스스로 신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증인의 진술태도 등을 관찰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으므로 동 제도가 피고인의 증인신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363) 最判(第一小)平成17(2005)年4月14日、平成16年(あ)第1618号、刑集59缶2号259頁。이 판례에 대한 평석으로는 伊藤 隆, “刑事訴訟法判例研究(4): 遮へい措置・ビデオリンク方式による証人尋問と証人審問権 最一小平成17.4.14判決”, 法律時報 第79卷 第4号, 日本評論社, 2007, 113-116頁; 稲田隆司, “遮へい措置・ビデオリンク方式による証人尋問”, 刑事訴訟法判例百選(井上正仁/大澤裕/川出敏裕編), 有斐閣, 2011, 44頁; 宇藤 崇, “遮へい措置・ビデオリンク方式による証人尋問と証人尋問の機能”, 平成17年重要判例解説, 有斐閣, 2006, 201-203頁; 眞田寿彦, “最近の判例から 刑事裁判における遮へい措置及びビデオリンク方式での証人尋問を合憲とした最高裁判決--最高裁(1小)平成17.4.14判決”, 法律のひろば 第59卷 第2号, ぎょうせい, 2006, 44頁; 堀江慎司, 前掲351, 108頁; 眞田寿彦, “最近の判例から 刑事裁判における遮へい措置及びビデオリンク方式での証人尋問を合憲とした最高裁判決--最高裁(1小)平成17.4.14判決”, 法律のひろば 第59卷 第2号, ぎょうせい, 2006, 44頁 등 참조

(2) 실무상 보완점

일본의 경우 형사절차에서 원격화상시스템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민사소송법상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증인에 대한 원격화상시스템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것과 달리 형사소송법상에는 비디오링크 방식에 의한 증인신문이 유일한 바, 이는 소송경제나 증인의 편의보다는 증인보호라는 측면이 고려된 것이다.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 과정에서 증인의 정신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원격화상시스템이 활용될 경우, 증인은 일단 재판이 이루어지는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³⁶⁴⁾ 현재까지 일본에서는 증인의 보호라는 목적 외에 소송경제나 증인 편의와 같은 목적에서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수형자 면회와 관련해서도 가족이 고령 또는 심신 장애 등으로 인해 면회가 어려운 경우에 전화통화 요건을 완화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³⁶⁵⁾ 논의의 방향이 원격화상시스템을 이용한 면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한편 일본도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제도와 유사한 재판원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는 바,³⁶⁶⁾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등이 재판원에게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비디오링크 방식이나 차폐시설을 이용하거나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증인이 과중한 심리적 부담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배려 없이 함부로 재판원에게 공개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일본의 재판원 선임방법³⁶⁷⁾에 의할 때 피해자의 거주지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자가 재판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364) 일본 형사소송법 제157조의4에서 비디오링크 방식에 의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재판관 및 소송관계인이 증인을 신문하기 위하여 재석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이지만, 동일한 구내에 위치한 장소여야 한다고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365) 日本弁護士連合会, “「刑事施設及び被収容者の処遇に関する規則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案」に関する意見”, 2011년 3월 25일, 1-5頁.

366) 2004년 5월 28일에 공포된 ‘재판원이 참가하는 형사재판에 관한 법률(裁判員の参加する刑事裁判に関する法律)’로 일본형사사법에 도입된 재판원제도는 ① 사형, 무기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와 관련된 사건, ② 재판소법 제26조 제2항 제2호에 열거된 사건으로서, 고의의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케 한 사건에 대하여 재판관 3인과 일반 국민 중에서 선임된 재판원 6인이 협동하여 심리·평결하는 제도(동법 제2조), 2009년 5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일본 최고재판소 홈페이지, 재판원제도 소개 참조, <http://www.saibanin.courts.go.jp/introduction/index.html> (2012년 10월 20일 최종접속).

바, 해당지역의 인구가 적을 때에는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실무상 개선방안의 모색이 요청되고 있다.³⁶⁸⁾



367) 재판원은 '재판원이 참가하는 형사재판에 관한 법률(裁判員の参加する刑事裁判に関する法律)'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선임된다. ① 재판원후보자명부 작성(지방법판소는 매년 9월 1일까지 다음 해에 필요한 재판원후보자의 인원수를 시·읍·면(市町村)의 선거관리위원회에 할당하여 통지하며(동법 제20조), 각 선관위는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통지받은 인원수를 추첨으로 선정하여 '재판원후보자예정자명부'를 작성하여 10월 15일까지 지방재판소에 송부한다(동법 제21, 22조). 지방재판소는 송부받은 명부를 기초로 '재판원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동법 제23조)), ② (취직 금지사유나 객관적 사퇴사유를 묻는) 조사표와 함께 재판원후보자에게 통지(동법 제25조), ③ 대상 형사사건마다 후보자명부 중에서 추첨으로 후보자 선택(동법 제26조), ④ 재판원후보자의 자격유무 등의 판단에 필요한 질문표와 함께 선임절차기일을 알리는 호출장을 발송(동법 제27조, 제30조), ⑤ 재판원선임절차(동법 제33조), ⑥ 재판원 선임(재판소는 최고재판소규칙에서 정하는 추첨이나 기타 작위가 가미되지 않는 방법으로 불선임결정을 받지 않은 재판원후보자 중에서 재판원 및 보충재판원을 선임하는 결정을 한다(동법 제37조)). 일본 최고재판소 홈페이지, <재판원 후보자 명부에 등록된 여러분께(裁判員候補者名簿に登録されたみなさまへ)> 동영상 참조. <http://www.saibanin.courts.go.jp/news/flash9.html> (2012년 10월 20일 최종접속).

368) 平野裕繁, "性犯罪と裁判院裁判", 人文社会論叢 第28号, 弘前大学人文学部 2012, 91頁.

제2절 국제적 활용에 관한 입법례

1. 국제형사사법기관에서의 활용

가.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1)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과 의의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ICTY)는 1991년 이후 구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Socialist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영토에서 자행된 전쟁범죄,³⁶⁹⁾ 대량학살,³⁷⁰⁾ 고문·강간 등의 국제인도법 위반행위³⁷¹⁾ 등을 처벌함으로써 평화구축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한시적 성격의 국제형사재판소이다.³⁷²⁾ 구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은 그리스정교, 카톨릭, 이슬람교 등 다양한 종교를 믿는 보스니아계, 슬라브계, 세르비아계, 크로아티아계를 비롯한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연방국가(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의 6개국)였으나,³⁷³⁾

369)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법령(ICTY Statute) 제2조에 규정된 1949년의 제네바 협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와 동법 제3조에 규정된 기타 전쟁관습법 및 전쟁법 위반행위 참조

370)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법령(ICTY Statute) 제4조 (Genocide). William A. Schabas, *The UN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The Former Yugoslavia, Rwanda and Sierra Leon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p. 161 ff.

371)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법령(ICTY Statute) 제5조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

372)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의 정식명칭은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Prosecution of Persons Responsible for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Committed in the Territory of the Former Yugoslavia since 1991이다. Guénaél Mettraux, *International Crimes and the Ad Hoc Tribunals*,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 3; William A. Schabas, *Id.*, pp. 3-4.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법령(ICTY Statute) 제1조 및 제8조 참조

373) 구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의 영토는 과거 오스만 투르크 제국과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제국의 지배를 받았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오스만 투르크 제국과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제국이 쇠락 및 와해의 길을 걷는 중에 당시 급부상한 민족주의 열풍의 영향으로 각 민족별로 민족국가를 수립하고자 하는 열망이 높아져, 민족 간 긴장과 적대감이 고조되었다. 1차 세계 대전 직후 체결된 베르사유 조약으로 세르비아-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왕국이 국제사회의 승인을 얻었으나, 세르비아 중심의 중앙집권제와 대세르비아주의의 표방으로 다른 민족들의 의혹과 적대감을 사게 되었으며, 이후 수립된 유고슬라비아 왕국에서도 민족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처럼 민족갈등으로 인한 분쟁과 폭동이 빈발하던 차에 2차 세계대전 직후 대안적 국가 형태로 등장한 것이 구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

1989년 세르비아에서 밀로세비치(Milošević) 대통령이 집권한 후 “대세르비아” 재건을 주창함에 따라 민족 갈등이 격화되었다.³⁷⁴⁾ 1991년 6월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의 독립을 시작으로 각 민족의 분리·독립운동이 촉발되었고, 국제사회가 슬로베니아·크로아티아·보스니아의 분리·독립을 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국 내에서 세르비아계들이 민족국가 수립을 위한 무장활동을 개시함으로써 유고슬라비아 내전이 발발하였다. 내전 중 세르비아계 무장군들은 인종청소라는 명목으로 비세르비아계 민족을 대규모로 학살하였고, 이에 국제사회는 유고사태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다.

1993년 2월 22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는 유고슬라비아 내전 중 자행된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행위들을 처벌하기 위해 국제재판소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고,³⁷⁵⁾ 1993년 5월 25일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가 설립³⁷⁶⁾되었다.³⁷⁷⁾ ICTY는 1949년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 전쟁 관련법 위반, 집단학살, 반인륜범죄 등에 관한 관할권을 행사하고, 동 죄들에 관련된 개인의 형사책임도 물을 수 있다.³⁷⁸⁾ 이후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는 동 재판소가 2004년까지 모든 수사를 마치고 2008년까지 제1심 재판을 완료한 후 2010년에는 모든 활동을 종료

국으로, 티토 대통령의 개인적 카리스마와 공산당 일당독재체제로 인해 일시적으로 과격한 민족주의의 기류가 잦아드는 듯하였다. 그러나 티토 대통령의 사망과 냉전 종식이라는 틈바구니에서 다시 민족주의가 부상하면서 구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의 붕괴가 시작되었다.

374) 밀로세비치는 1997년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로 구성된 신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며, 1999년 나토의 신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 폭격 작전 중에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로부터 전범으로 기소되었다. 밀로세비치에 대한 전범 재판은 밀로세비치가 2006년 3월 11일 감옥에서 사망함으로써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채 종료되었다.

375)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08(1993), UN Doc. S/RES/808 (22 February 1993).

376)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는 유엔 국제사법재판소가 있는 국제법의 중심지인 네덜란드 헤이그에 자리잡고 있으며, 75개국에서 파견된 1,200여 명의 인력이 일하고 있다. 3개의 제1심 재판부(Trial chamber)와 1개의 항소재판부(Appeals Chamber)를 두고 있으며, 제1심 재판부는 각각 3명의 상임재판관과 최대 6명의 비상임재판관(ad litem Judge)으로 구성되고, 항소재판부는 7명의 상임재판관으로 구성된다. 항소재판부를 담당하는 2명의 상임재판관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을 겸임하므로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의 상임재판관은 총 14명이며 각기 다른 국적을 가진 자로 임명되고, 비상임재판관은 최대 12명까지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장의 요청에 따라 유엔 사무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법령(ICTY Statute) 제12조).

377)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27(1993), UN Doc. S/RES/827 (25 May 1993).

378) 위성사진 등의 물증과 피해자 증언으로 범죄를 저지른 군부대가 확정되면 실행법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아도 지휘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할 것을 촉구하였으나,³⁷⁹⁾ 여러 법적 쟁점들에 대한 공방과 기소된 전범의 체포 지연 등으로 인하여 애초에 계획했던 기한까지 모든 재판절차를 완료하지 못하였다.³⁸⁰⁾ 이에 따라 ICTY의 남은 업무를 마무리짓기 위하여 2010년 12월 22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 형사재판소의 잔여 메커니즘(Residual Mechanism)을 위한 기구를 설립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ICTY가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모든 절차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할 것을 촉구하였다.³⁸¹⁾ 이 ‘잔여 메커니즘’ 기구에는 ICTY 업무 완료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부서를 두며, 해당 부서는 2013년 7월 1일부터 기능을 시작하게 된다. 현재 ICTY는 주요 전범이 연루되지 않은 사건은 관할 국내법원으로 이송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심 및 항소심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³⁸²⁾ 동 재판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얻은 성과는 국제인도법 및 국제형사재판소송절차법 등과 관련된 국제관습법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고, 이후 국제형사재판소(ICC)나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 및 캄보디아 특별재판소 등 다수의 국제재판소 설립에 선례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원격화상시스템 활용 관련 규정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법(Statute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Prosecution of Persons Responsible for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379)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03(2003), UN Doc. S/RES/1503 (23 August 2003).

380)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제1966호(2010)가 채택된 2010년 말까지 핵심 전범인 Ratko Mladić와 Goran Hadžić가 검거되지 않고 있었으나, Ratko Mladić는 수배된 때로부터 거의 16년이 지난 뒤인 2011년 5월 26일 세르비아 인근 라자레보 마을에서 검거되어 5월 31일 ICTY로 이송되었다. ICTY에 기소된 전범 중 마지막까지 검거되지 않고 남아 있던 Goran Hadžić는 2011년 7월 20일 세르비아 당국에 체포되어 7월 22일 ICTY로 인도되었다.

381)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966(2010), UN Doc. S/RES/1966 (22 December 2010).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Residual Mechanism for Criminal Tribunal(IRMCT, 이하 ‘잔여 메커니즘’). ‘잔여 메커니즘’ 기구에는 2부서를 두며 이 부서는 각각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의 업무 완료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TR)의 업무 완료를 담당한다.

382) General Assembly Security Council, Report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ir the Former Yugoslavia 2012, A/67/214-S/2012/592. 2012년 현재 17명이 항소중이며, 17명은 제1심 공판에 그리고 1명이 공판전 단계에 있다. 따라서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된 161명 중 126명에 대한 재판절차가 완료되었다.

Humanitarian Law Committed in the Territory of the Former Yugoslavia since 1991, ICTY Statutes)³⁸³⁾ 제15조에 의할 때, 국제재판소 재판관들은 공판전 절차, 공판 및 항소, 증거 인정, 피해자 및 증인의 보호와 기타 적절한 사안들을 수행하기 위해 절차 및 증거 규칙을 채택해야 한다.³⁸⁴⁾ 또한 동법은 피고인의 권리에 대한 규정³⁸⁵⁾과 함께 피해자 및 증인의 보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국제재판소는 절차 및 증거 규칙에서 피해자와 증인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어야 하며, 그러한 보호조치는 비공개 소송절차의 수행 및 피해자 신원 보호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나, 보호조치가 이에 국한되어서는 아니 된다.³⁸⁶⁾ 2007년 7월 12일 채택된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의 절차 및 증거 규칙 제81조의 2는 비디오컨퍼런스 링크에 의한 소송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³⁸⁷⁾ 이에 따라 재판관 또는 재판부는 사법적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소송절차를 비디오컨퍼런스 링크에 의한 방식으로 수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³⁸⁸⁾

나.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1)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과 의의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ICTR)는 르완다 및 주변국가에서 자행된 대량학살 등 심각한 국제인도법 위반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르완다에서의 국민화합은 물론이고 주변국가들 간의 평화유지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한시적인 성격의 국제형사재판소이다.³⁸⁹⁾ 르완다는 벨기에의 식민통

383) Adopted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27(1993), UN Doc. S/RES/827 (25 May 1993); As amended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877(2009), UN Doc. S/RES/1877 (7 July 2009).

384) Article 15 Rules of procedure and evidence.

385) Article 21 Rights of the accused.

386) Article 22 Protection of victims and witnesses.

387)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홈페이지 참조 <http://www.icty.org/sid/136> (2012년 10월 20일 최종접속).

388) ICTY Rules of Procedure and Evidence § 81 bis Proceedings by Video-Conference Link. http://www.icty.org/x/file/Legal%20Library/Rules_procedure_evidence/it032rev46e.pdf 참조 (2012년 10월 20일 최종접속).

389)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정식명칭은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Prosecution of

치를 받던 시절에 종족별 신분증제도를 수행함과 아울러 소수종족 위주의 정책이 실시됨으로써 종족간 이질감이 심화되었고, 이러한 갈등은 독립 이후에 격화되었다.³⁹⁰⁾ 1990년에 르완다 전체 인구의 85%를 차지하는 후투(Hutu)족과 과거 벨기에 식민시절의 지배층이었던 소수민족인 투치(Tutsi)족 사이에 내전이 발발하자,³⁹¹⁾ 1993년 8월에 국제연합과 아프리카통일기구(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OAU) 및 탄자니아가 후투족 출신의 르완다 대통령 하비야리마나에게 분쟁의 종식을 강력히 권고하여 아루샤 평화협정이 체결었다. 그러나 1994년 4월 부룬디의 임시 대통령³⁹²⁾과 르완다 대통령 하비야리마나가 탑승한 비행기가 미사일에 격추되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100일간 80만 명 정도의 투치족이 살해되었으며, 온건파 후투족 수만 명이 살해되는 대량학살 사건이 벌어졌다.³⁹³⁾ 이에 국제연합은 르완다 전범을 재판하기 위해 탄자니아

Persons Responsible for Genocide and Other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Committed in the Territory of Rwanda and Rwandan Citizens Responsible for Genocide and Other Such Violations Committed in the Territory of Neighbouring States, between 1 January 1994 and 31 December 1994이다. Guénaél Mettraux, Id., p. 4.

390) 벨기에 식민통치 시절 이전의 르완다는 투치족 출신의 세습 전제군주가 통치하는 왕국이었으며, 목축업에 종사하는 투치가 지배계층, 농업에 종사하는 후투가 예속계층을 형성하는 봉건적 신분사회였다. 벨기에에는 이 두 계층 사이에 존재하는 알력과 토지 문제를 둔 갈등을 교묘하게 조종함으로써 안정적인 식민통치를 도모하였으며, 봉건적 지배계층인 투치족을 식민지배의 중간관리자로 이용하였다. 20세기 중반 아프리카에서 반식민주의 열기가 고조되고 투치족이 벨기에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고 나서자 벨기에 정부는 후투족을 지지하는 것으로 태도를 전환하였고 후투족이 투치족에 대항하도록 선동하였다. 이에 1959년 르완다에서 반봉건주의 사회혁명의 형태로 독립운동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수만 명의 투치족이 학살되었으며 투치족의 지배적 지위도 상실되어 1962년에 르완다가 독립한 뒤 정부의 주도권은 후투족이 쥐게 되었다. 반면 르완다와 민족 구성, 사회체제 측면에서 많은 동질성을 보이는 부룬디에서는 투치족의 후투족에 대한 학살이 자행되었고, 투치족의 권력적 우위가 유지되었다.

391) 1986년 요웨리 무세베니가 쿠데타를 통해 우간다의 권력을 장악하고 대통령이 되었을 당시, 무세베니의 국민저항군에는 후투족의 학살을 피해 르완다를 탈출했던 투치족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르완다애국전선(Rwandan Patriotic Front, RPF)'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1990년 우간다를 떠나 르완다 침공에 나섰으며, 이에 당시 르완다 대통령 하비야리마나는 르완다 전역의 투치족과 자신의 정책에 동조하지 않는 후투족에 대한 학살을 자행하였다.

392) 1993년 부룬디에서는 6월 대통령 선거를 통해 부룬디 역사상 처음으로 후투족 대통령 멜키오르 은다다예가 집권하게 되었으나, 은다다예는 동년 10월 투치족 극단주의자 장교들의 쿠데타로 암살당했다. 이후 분노한 부룬디의 후투족이 투치족을 학살하였고, 투치족 또한 후투족에 대한 보복학살을 자행하는 등 유흥충돌이 빚어졌다. 이어 대통령직에 오른 후투족 출신의 부룬디 대통령 은타리 야미라도 1994년 4월 르완다의 하비야리마나 대통령과 함께 비행기 격추 사고로 사망하였다.

393) 구 르완다 형사재판소 홈페이지 참조 <http://www.unict.org> (2012년 10월 20일 최종접속).

에 있는 아루샤에 특별 국제사법기구를 설립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이다.³⁹⁴⁾

1994년 7월 1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는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설치에 관한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고,³⁹⁵⁾ 1994년 11월 8일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TR)가 설립³⁹⁶⁾되었다.³⁹⁷⁾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는 동 재판소가 2010년까지 모든 활동을 종료할 것을 촉구하였으나,³⁹⁸⁾ 계획했던 기한까지 모든 재판절차가 완료되지 못하였고, 이에 2010년 12월 22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 형사재판소의 잔여 메커니즘(Residual Mechanism)을 위한 기구를 설립하는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ICTR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판절차를 2014년까지 모두 완료할 것을 촉구하였다.³⁹⁹⁾ 이 ‘잔여 메커니즘’ 기구에는 ICTR의 재판 업무 완료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부서를 두며, 해당 부서는 2012년 7월 1일부터 기능을 시작한다. 2012년 5월 현재 ICTR은 기소된 98명 중 83명에 대한 사실심 재판을 완료하였다.⁴⁰⁰⁾ 동 재판소의 설치·운영을 통해 국제사

394) Security Council Resolution 955(1994), UN Doc. S/RES/955. 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ICTR) and adoption of the Statute of the Tribunal (8 November 1994); Security Council Resolution 977(1995), UN Doc. S/RES/977. Designation of Arusha as the seat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Rwanda (22 February 1995). 아루샤에 ICTR을 설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Victor Peskin, *International Justice in Rwanda and the Balkans: Virtual Trials and the Struggle for State Cooper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p. 165-167 참조.

395) Security Council Resolution 935(1994), UN Doc. S/RES/935. Commission of Experts to examine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committed in Rwanda (1 July 1994).

396)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는 탄자니아 공화국의 아루샤에 위치하고 있으며, 3개의 제1심 재판부(Trial Chamber)와 1개의 항소재판부(Appeals Chamber)를 두고 있다.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상임재판관은 16명으로 모두 국적을 달리 하며, 임기는 4년이고 재임도 가능하다. 또한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재판부의 기능 강화를 위해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431호(UN Doc. S/RES/1431, 14 August 2002)에 의해 18명의 비상임재판관을 두기로 결정하였다.

397) Security Council Resolution 955(1994), UN Doc. S/RES/955 (8 November 1994).

398)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03(2003), UN Doc. S/RES/1503 (23 August 2003);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34(2004), UN Doc. S/RES/1534 (26 March 2004).

399)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966(2010), UN Doc. S/RES/1966 (22 December 2010).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Residual Mechanism for Criminal Tribunal(IRMCT).

400)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port on the completion strategy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as at 11 May 2012), S/2012/349 참조. 여기에는 72명의 피고인이 포함된 52건의 제1심 판결과 관할 국내법원으로 이송된 6명의 피고인(3명은 체포되었고, 3인은

회는 21세기 국제 평화와 정의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으며, 이후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규정과 범죄구성요건은 물론이고 절차 및 증거 규칙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⁴⁰¹⁾

(2) 원격화상시스템 활용 관련 규정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법(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⁴⁰²⁾ 제14조에 의할 때, 르완다 국제재판소의 판사들은 소송진행을 위해 공판전 절차, 공판 및 항소, 증거 인정, 피해자 및 증인의 보호와 종래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재판소와 관련된 적절한 사안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절차 및 증거 규칙을 채택해야 한다.⁴⁰³⁾ 1998년 6월 8일 채택된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절차 및 증거 규칙 제65조의 2는⁴⁰⁴⁾ 절차진행 협의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⁴⁰⁵⁾ 이에 따라 제1심재판부 또는 제1심재판부 판사는 효율적인 공판진행을 위해 양 당사자간의 입장을 조율할 목적으로 공판전 준비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⁴⁰⁶⁾ 항소재판부와 항소재판부 판사 또한 공판전 준비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⁴⁰⁷⁾ 동 절차에서 변호인은 텔레컨퍼런스 또는 비디오컨퍼런스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⁴⁰⁸⁾

도주증), 기소가 철회된 2명의 피고인, 그리고 재판 중 또는 재판 전에 사망한 3명의 피고인이 포함된다. 아직 체포되지 않은 9명의 피고인 중, 3명은 앞서 말한 대로 관할 국내법원으로 이송되었으며, 남은 6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곧 이송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 3명은 체포되는 대로 “잔여 메커니즘” 기구의 ICTR 업무 완료를 위한 부서에 의해 재판받게 될 것이다.

401) 외교통상부, 알기 쉬운 국제법률기구,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 2011, 73면.

402) Adopted Security Council Resolution 955(1994), UN Doc. S/RES/955 (8 November 1994); As amended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901(2009), UN Doc. S/RES/1901 (16 December 2009).

403) Article 14 Rules of Procedure and Evidence.

404) Adopted on 29 June 1995; As amended on 8 June 1998.

405) <http://www.unict.org/Legal/RulesofProcedureandEvidence/tabid/95/Default.aspx> 참조 (2012년 10월 20일 최종접속).

406) ICTR Rules of Procedure and Evidence § 65 bis Status Conferences (A).

407) ICTR Rules of Procedure and Evidence § 65 bis Status Conferences (B).

408) ICTR Rules of Procedure and Evidence § 65 bis Status Conferences (C).

다. 국제형사재판소

(1)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과 의의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 등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설립된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이다.⁴⁰⁹⁾ 과거 국가중심의 국제법 체제 하에서는 국제법 위반에 대해 국가만이 책임을 지고 개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자행된 심각한 인권침해 및 인도법 위반은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도 물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논의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⁴¹⁰⁾ 이러한 국제사회의 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에 힘입어 1948년 12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과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이 채택되었으나⁴¹¹⁾ 상설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은 미루어졌다.⁴¹²⁾ 1990년대 탈냉전 시대에 들어서 구 유고슬라비아나 르완다에서 발생한 극악한 반인도적 범죄를 처벌하기 위하여 특별재판소의 형태로 전범재판소가 설립되었으나 이들 재판소의 활동에는 임시재판소로서의 한계가 있었다.⁴¹³⁾ 인류에 위협이 되는 범죄에 대해서 보다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근

409) 김영석, 국제형사재판소법강의, 법문사, 2003, 19면, 국제형사재판소 홈페이지 참조, <http://www.icc-cpi.int/Menus/ICC/About+the+Court/> (2012년 10월 20일 최종접속).

410) Paul G. Lauren, "From Impunity to Accountability: Forces of transformation and the chang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ntext", From Sovereign Impunity to International Accountability: The Search for Justice in a World of States, United Nations University Press, 2004 참조.

411)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약 제6조는 범인을 심리·처벌하는 기관으로 행위지의 국내재판소와 함께 체약 당사국들이 사법관할권을 인정한 국제형사재판소를 규정하고 있었던 바, UN 총회는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로 하여금 동 재판소 설립에 관하여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1950년 국제법위원회로부터 동재판소 설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설립의 당위성이 인정된다는 보고를 받은 총회는 재판소 관련규정 초안을 마련하도록 했으나, 냉전 당사국들과 강대국들의 반대에 부딪쳐 뚜렷한 결실을 거두지 못하였다.

412)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 처벌을 위해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소, 동경 전범재판소 등과 같은 국제재판소가 설립된 바 있으나 이는 모두 임시적 성격을 가지는 재판소였다.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소나 동경 전범재판소 등에 대해서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고 승자 입장에서 정의구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범죄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물어 처벌하였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

413) 사후적인 임시재판소는 잔혹한 범죄의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매번

본적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상설 국제재판소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동의하였던 바, 상설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1998년 6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국제연합전권외교 회의에서⁴¹⁴⁾ 의장단 최종제안인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이 채택되었다.⁴¹⁵⁾ 2002년 7월 1일 로마규정이 발효됨으로써 국제형사재판소가 설립되었고, 2012년 7월 기준으로 동 규정의 당사국은 전체 EU국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대부분의 인권선진국을 포함하여 121개국에 달한다.⁴¹⁶⁾ 로마규정은 자동적 관할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규정을 비준한 당사국은 동시에 자동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동 재판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국제인권 보호 및 국제범죄의 예방, 국제적·국내적 인권보호, 국내형법에 대한 보완적 역할의 수행, 범죄피해자를 위한 구제수단의 보완 등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원격화상시스템 활용 관련 규정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규정인 로마규정은 집단살해죄,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한 구체적 정의를 내리고, 죄형법정주의 등의 일반원칙과 절차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최초로 성문화된 국제형사사법체제를 구축하였다. 로마규정 제 68조에 의할 때 재판소는 피해자와 증인의 안전, 신체적·정신적 안녕, 존엄성 및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피해자와 증인 또는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절차의 일정 부분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⁴¹⁷⁾ 2002년 9월

임시적 소송절차를 마련해서 재판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예상되고 국가들의 정치적 의지에 따라 재판소 자체가 설립되지 않을 수도 있어 국제사회의 대응이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김영석, 앞의 책, 32면; 백기봉, 국제형사중거법, 박영사, 2008, 2면.

414) United Nations Diplomatic Conference of Plenipotentiaries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1998.

415) 참가국 중 120개국의 찬성, 7개국의 반대 그리고 21개국의 기권으로 채택되었다.

416) 국제형사재판소 홈페이지 참조, <http://www.icc-cpi.int/menus/icc/about%20the%20court/icc%20at%20a%20glance/icc%20at%20a%20glance?lan=en-GB> (2012년 10월 20일 최종접속).

417) 특히 이러한 조치는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 피해자가 증인인 경우에 취해진다.

9일 채택된 국제형사재판소의 절차 및 증거 규칙⁴¹⁸⁾ 제67조는 오디오 및 비디오 접속 기술을 통한 실황 증언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⁴¹⁹⁾ 이에 의하면 재판부는 오디오 및 비디오 기술 수단에 의해 증인이 재판부 앞에서 구두 증언을 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증인이 그러한 증언을 하는 바로 그 시점에 검사나 변호인 및 재판부 또한 오디오 및 비디오 기술 수단에 의해 증인을 신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⁴²⁰⁾ 오디오 및 비디오 접속 기술을 통한 증인 신문은 통상적인 증인신문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⁴²¹⁾ 또한 재판부는, 등록소의 도움을 받아, 오디오 및 비디오 접속을 통한 증언을 위해 선택된 장소가 증인이 진실되고 솔직한 증언을 하는 데 적합하고, 증인의 안전 및 육체적·정신적 복리, 품위 및 사생활보호에 적절하다는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⁴²²⁾ 한편 동 규칙 제 87조는 피해자와 증인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⁴²³⁾ 재판부는 검사나 변호인의 제의 또는 증인이나 피해자 및 그들의 법적 대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재판부 스스로가 제의한 경우, 피해자나 증인 및 그들의 증언으로 인해 위험에 처하게 된 여타의 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 이 때 재판부는 보호조치를 취하기 전에 가능한 한 보호조치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⁴²⁴⁾ 또한 이러한 제의나 요청에 대하여 재판부는 비공개 심리를 열어서 증인의 증언으로 인해 위험에 처하게 되는 피해자나 증인 및 여타의 자들의 신원이나 위치를 대중이나 언론 및 정보기관에 공개하는 것을 막는 조치를 명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때 재판부가 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명령 중의 하나가

418)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Rules of Procedure and Evidence, U.N. Doc. PCNICC/2000/1/Add.1 (2000).

419) ICC Rules of Procedure and Evidence § 67 Live testimony by means of audio or video-link technology. <http://www.icc-cpi.int/NR/rdonlyres/F1E0AC1C-A3F3-4A3C-B9A7-B3E8B115E886/284955/RPE4thENG08Feb1200.pdf> 참조 (2012년 10월 20일 최종접속).

420) ICC Rules of Procedure and Evidence § 67 Live testimony by means of audio or video-link technology 1.

421) ICC Rules of Procedure and Evidence § 67 Live testimony by means of audio or video-link technology 2.

422) ICC Rules of Procedure and Evidence § 67 Live testimony by means of audio or video-link technology 3.

423) ICC Rules of Procedure and Evidence § 87 Protective measures.

424) ICC Rules of Procedure and Evidence § 87 Protective measures 1.

바로 원격화상시스템에 의한 증언 명령이다. 즉, 사진 또는 음성의 변조가 가능한 기술적 수단, 비디오컨퍼런싱과 폐쇄회로 TV와 같은 시청각 기술 및 전용 음향매체의 이용을 포함하는 전자적 또는 기타 특별한 수단에 의하여 증언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⁴²⁵⁾ 국제형사재판소의 증인보호 체계는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TR)의 법령과 절차 및 증거규칙에서 비롯되었는바, 아래의 <표 2-1>⁴²⁶⁾에서는 국제형사사법기관에서의 증인보호 규정들을 비교하였다. 한편 국제형사재판소의 절차 및 증거 규칙 제102조는 장애 또는 문맹으로 인해, 법원에 대하여 서면 요청·신청·의견 제시 및 기타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오디오, 비디오 또는 기타 전자적 형태로 그러한 요청·신청·의견 제시 및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⁴²⁷⁾

표 2-1 국제형사사법기관에서의 증인보호 규정

국제형사재판소 (ICC) 절차 및 증거 규칙 제87조 (보호조치)	3. 제1항에 의한 제의 또는 요청에 대하여, 재판부는 비공개 심리를 열어서 증인의 증언으로 인해 위험에 처하게 되는 피해자나 증인 및 여타의 자의 신원이나 위치를 대중이나 언론 및 정보기관에 공개하는 것을 막는 조치를 명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 때 재판부가 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명령은 다음과 같다. (a) 증인의 증언으로 인해 위험에 처하게 되는 피해자나 증인 및 여타의 자의 이름이나 그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재판부의 공식 기록에서 삭제하라는 명령 (b) 검사, 변호인 또는 기타 소송참가인이 제3자에게 그와 같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막는 명령 (c) 사진 또는 음성의 변조가 가능한 기술적 수단, 비디오컨퍼런싱과 폐쇄회로 TV와 같은 시청각 기술 및 전용 음향매체의 이용을 포함하는 전자적 또는 기타 특별한 수단에 의하여 증언하도록 하는 명령 (d) 증인의 증언으로 인해 위험에 처하게 되는 피해자나 증인 및 여타의 자에 대하여 익명을 사용하라는 명령 (e) 재판부가 소송절차의 일부를 비공개로 수행하라는 명령
--	---

425) ICC Rules of Procedure and Evidence § 87 Protective measures 3(c).

426) Sylvia Pieslak, "Comment: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s Quest to Protect Rape Victims of Armed Conflict: Anonymity as the Solution", 2 SANCJIL 138, Santa Clar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04, note 45) 참조

427) ICC Rules of Procedure and Evidence § 102 Communications other than in writing.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ICTY) 절차 및 증거 규칙 제75조(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보호조치)	(B)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릴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비공개 소송절차를 열 수 있다. (i)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나 증인 또는 그들과 관련된 자의 신원 및 소재를 대중이나 대중매체에 공개하는 것을 막는 조치 (a) 재판소의 공식 기록에서 이름과 신원 정보 삭제 (b) 피해자 또는 증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의 비공개 (c) 영상-음성변조 기구 또는 폐쇄회로 tv를 통한 증언 (d) 익명 부여 (ii) 규칙 제79조에 따라 비공개 개정 조치 (iii) 취약한 피해자 또는 증인의 증언을 용이하게 하는 일방향 폐쇄회로 tv와 같은 적절한 조치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ICTY) 절차 및 증거 규칙 제75조(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보호조치)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절차 및 증거 규칙 제75조와 동일

라. 국제형사사법기관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 현황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는 비디오컨퍼런싱 기술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⁴²⁸⁾ Prosecutor v. Mucić & Landžo판결에서, 두 명의 증인이 자신들과 그 가족들이 받을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재판에서 증언을 하지 않으려 하자,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는 비디오컨퍼런싱을 활용하기로 결정하였는 바, 이는 공판재판부가 증인이 위치한 장소로 확장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⁴²⁹⁾ 이에 대해 피고인의 변호인은 비디오컨퍼런싱을 이용한 증언이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법령 제21조 제4항 제c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인과 마주할 피고인의 권리를 부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⁴³⁰⁾ 그러나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

428) Riley A. Williams, "Videoconferencing: Not a Foreign Language to International Courts", 7 Okla. J. L. & Tech. 54, Oklahoma Journal of Law & Technology, 2011, IV. B.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참조

429) Prosecutor v. Mucić & Landžo, Decision on the Motion to Allow Witnesses K, L and M to Give Their Testimony by Means of Video Link Conference, 15. (ICTY, May 28, 1997).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홈페이지 참조, <http://www.icty.org/x/cases/mucic/tdec/en/70528v12.htm> (2012년 10월 20일 최종접속).

430) Prosecutor v. Mucić & Landžo, Id., Paragraph 12-13.

판소는 획득할 수 없었던 증언을 비디오컨퍼런싱 기술을 이용하여 취득하는 것은 피고인의 증인 대면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며, 피고인으로서의 증인의 물리적 부재라는 사실로 인해 실질적으로 잃을 것이 없다고 밝히면서 피고인측의 주장을 반박하였다.⁴³¹⁾ 요컨대, 비디오컨퍼런싱 기술을 이용해서 증인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법 제21조 (4)항 e호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다.⁴³²⁾

한편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는 심각한 보복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공판에서 증언하기를 꺼려하는 증인 등에 대하여 비디오컨퍼런싱 이용 여부를 결정하는 2가지 기준을 정립하였다.⁴³³⁾ 첫째, 해당 증인의 증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불공정하게 여겨질 정도로 그 증언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⁴³⁴⁾ 둘째, 해당증인이 국제형사재판소에 올 수 없거나 오는 것을 기피한다는 한계가 수반되어야 한다.⁴³⁵⁾ Prosecutor v. Tadić 판결에서, 증인은 검사에 의해 체포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공판에서 증언하는 것을 거부하였다.⁴³⁶⁾ 이에 공판재판부는 일정한 요건 하에 증인이 비디오링크에 의한 증언을 하도록 허용하였다.⁴³⁷⁾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증언은 적절한 장소에서 행해져야 하는바, 그 장소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하고 솔직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어야 한다.⁴³⁸⁾ 또한 ① 법원은 안전과 엄숙함을 보장해야 하고, ② 움직이지 않는 소송당사자와 등록소는 그 위치에 대해 동의하

431) Prosecutor v. Mucić & Landžo, Id., Paragraph 15.

432) Prosecutor v. Mucić & Landžo, Id., Paragraph 15.

433) Prosecutor v. Tadić, Case No. IT-94-1-T, Decision on the Defence Motions to Summon and Protect Defence Witnesses, and on the Giving of Evidence by Video-Link, 2 (ICTY, June 25, 1996); Prosecutor v. Tadić, Case No. IT-94-1-T, Opinion and Judgment (inc. Separate and Dissenting Opinion of Judge McDonald) 29 (ICTY, 7 May 1997)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홈페이지 참조, <http://www.icty.org/x/cases/tadic/tjug/en/tad-ts70507JT2-e.pdf> (2012년 10월 20일 최종접속).

434) Prosecutor v. Tadić, Case No. IT-94-1-T, Decision on the Defence Motions to Summon and Protect Defence Witnesses, and on the Giving of Evidence by Video-Link, 19.

435) Prosecutor v. Tadić. Id., Paragraph 2.

436) Prosecutor v. Tadić, Id., Paragraph 19-21.

437) Prosecutor v. Tadić, Id., Paragraph 19.

438) Prosecutor v. Tadić, Id., Paragraph 22.

고, 전체 과정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③ 증인은 감독의 물리적 출석 하에 단독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④ 증인이 비디오를 통해 판사, 피고인 및 신문자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판사와 피고인 및 신문자도 증인을 볼 수 있을 것을 요구한다.⁴³⁹⁾ 나아가 선서를 하고 나서 행한 증인의 진술은 법정에서 행한 것과 같이 취급되어야 하고, 증인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증인석에서 증언한 것과 정확히 동일한 방식으로 위증죄로 기소당할 법적 책임을 진다.⁴⁴⁰⁾ Prosecutor v. Tadić 판결은 비디오컨퍼런싱을 이용한 증인의 증언을 허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획득한 증언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⁴⁴¹⁾ 요컨대,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동 재판소의 절차 및 증거 규칙뿐만 아니라 판례법에 의해 확립된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⁴⁴²⁾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에 비하여 비디오컨퍼런싱 기술 활용에 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⁴⁴³⁾ Prosecutor v. Zigiranyirazo 판결에서, 증인은 내부자 증인이라는 자신의 입장과 관련된 안전 문제로 인하여 공판에서 증언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⁴⁴⁴⁾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라면 비디오컨퍼런싱 기술 이용을 허용하였음직한 전형적인 상황이었으나,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증언 취득에 비디오컨퍼런싱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거부하였다.⁴⁴⁵⁾ 동 사건에서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종래의 판례에 따라 비디

439) Prosecutor v. Tadić, Id., Paragraph 22.

440) Prosecutor v. Tadić, Id. 22.

441) Riley A. Williams, Id., IV. B. 참조; Sanja Kutnjak Ivkovic, "Justice by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37 STJIL(Stanford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55, Board of Trustees of the Leland Stanford Junior University, 2001, p. 286. 이후 비디오컨퍼런싱 연결을 통한 증언 명령에 있어서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는 이른바 "Tadić 결정(Tadić decision: Decision on the Defence Motions to Summon and Protect Witnesses, and on the Giving of Evidence by Video-Link" issued by Trial Chamber II in Prosecutor v. Dusko Tadić, Case No IT-94-I, 25 June 1996)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다 (Prosecutor v. Krnojelac, Order for Testimony via Video-Conference Link, 25 May 2001 참조).

442) Riley A. Williams, Id., IV. B. 참조

443) Riley A. Williams, Id., IV. B.참조

444) Prosecutor v. Zigiranyirazo, Case No. ICTR-01-73-T, Decision on the Defence and Prosecution Motions Related to Witness Ade, 12 (ICTR, 31 January 2006) 참조

오링크 증언은 사법적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에 명령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⁴⁴⁶⁾ 종래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비디오링크 증언의 허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① 증언의 중요성, ② 증인의 참석 불능 및 참석 회피, ③ 참석불능 및 참석회피에 대한 타당한 이유 제시 여부 등을 고려하였다.⁴⁴⁷⁾ 또한 법원은 증언이 해당사건의 중요한 부분이어야 하고, 공판을 위해 이동하는 증인의 안전에 대한 우려나 위험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⁴⁴⁸⁾ 그러나 법원은 비디오링크 증언을 통해 증인의 태도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였고,⁴⁴⁹⁾ 이에 법원은 중요한 증인의 증언이 손상되는 형편없는 전송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증인을 직접 심문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결정하였다.⁴⁵⁰⁾

한편 국제형사재판소는 직접 증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바, 동 재판소의 절차 및 증거 규칙을 통해 피고인의 증인 대면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사건과 관련하여 진술이 요구되는 증인이 외국에 있을 경우에 형사절차에서의 비디오링크 기술 이용으로 인한 장점과 그 이익을 인정하고 있다. 동 재판소는 비디오컨퍼런싱 기술을 통한 증언의 허용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서 증인이 공판정에서 진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실하게 인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법원이 따라야 할 명백한 가이드라인은 아직 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⁴⁵¹⁾

2. 유럽연합 내 회원국 간의 활용

가. 사법분야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의 도입

2008년 11월에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는 비디오컨퍼런싱과 전자 네트워크를

445) Prosecutor v. Zigiranyirazo, Id., Paragraph 34.

446) Prosecutor v. Zigiranyirazo, Id., Paragraph 31.

447) Prosecutor v. Zigiranyirazo, Id., Paragraph 31.

448) Prosecutor v. Zigiranyirazo, Id., Paragraph 32.

449) Prosecutor v. Zigiranyirazo, Id., Paragraph 32.

450) Prosecutor v. Zigiranyirazo, Id., Paragraph 33.

451) Riley A. Williams, Id., IV. B. 참조

구축함으로써 사법부와 회원국 사이의 의사소통 구조를 간소화하고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유럽 전자 사법 실행 계획(European e-Justice action plan)을 승인하였다.⁴⁵²⁾ 유럽연합 이사회는 유럽연합 회원국 간에 국경을 넘어서 원격 화상시스템을 소송절차에서 활용하는 것이 해당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장치라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유럽연합 이사회는 “비디오컨퍼런싱의 보다 적절한 활용(Better use of videoconferencing)”을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프로젝트 중의 하나로 거론하였다.⁴⁵³⁾ 이미 일부회원국에서는 비디오컨퍼런싱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법절차에 활용하고 있지만, 유럽연합적 차원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원격화상시스템은 유럽 전자사법 포털(European e-Justice portal)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 부분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의제로 삼아서 회원국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개발을 요청하였다.

나. 사법분야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

현행 유럽연합법은 비디오컨퍼런싱을 통해 증인, 전문가 또는 피해자의 심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 회원국간 형사사법 공조 협약(The Convention on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between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⁴⁵⁴⁾ 민사 및 상사 문제에 있어서 증거 확보에 관한 회원국 법원간 협력에 관한 유럽연합 이사회규정(Council Regulation(EC) on cooperation between the courts of the Member States in the Taking of evidence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⁴⁵⁵⁾ 범죄피해자 보상에 관한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Council Directive relating to compensation to crime victims),⁴⁵⁶⁾ 유

452)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C:2009:075:0001:0012:en:PDF> (2012년 10월 20일 최종접속),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OJ) C. 75, 31. 3. 2009, p.1.

453) General Secretariat of the Council, Videoconferencing as a part of European e-Justice: the essentials of videoconferencing in cross-border court proceedings, European E-Justice, 2009, p. 7.

454) Convention of 29 May 2000, the 2000 MLA Convention, Article 10. OJ C 197, 12.7.2000, p. 24.

455) No. 1206/2001 of 28 May 2001, Article 10(4), Article 17(4). OJ L 174, 27.6.2001, p. 1.

럽 소액사건 소송 절차 확립을 위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Regulation (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 European Small Claims Procedure),⁴⁵⁷⁾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피해자 지위에 관한 유럽연합 이사회 결의안(Council Framework Decision of 15 March 2001 on the standing of victims in criminal proceedings)⁴⁵⁸⁾ 등이 그 근거가 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유럽 연합 회원국들은 이미 이러한 법적 근거들을 토대로 사법분야에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⁴⁵⁹⁾

다. 사법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의 구체적 내용

유럽연합 내 회원국들 간에 국경을 넘어선 비디오컨퍼런싱을 사법절차에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항목이 검토되어야 한다.

비디오컨퍼런싱의 신청	• 관련 당사자들 • 신청 양식 • 신청 발신 • 신청 답신
비디오컨퍼런싱의 설치	• 비디오컨퍼런싱 설비에의 접근 • 비디오컨퍼런싱에 앞선 실제 배치 • 비디오컨퍼런싱 비용
비디오컨퍼런싱을 이용한 심리	• 비디오컨퍼런싱 중에 진행되는 소송절차 • 누가 비디오컨퍼런싱에 의한 심리를 맡을 것인가 • 비디오컨퍼런싱 이후의 조치

(1) 비디오컨퍼런싱의 신청

민·형사사건에서 비디오컨퍼런싱의 신청은 표준 양식을 이용해서 이루어지고, 이 양식은 유럽 사법 네트워크(European Judicial network) 웹사이트에서 구할 수

456) 2004/80/EC of 29 April 2004, Article 9(1). OJ L 261, 6.8. 2004, p. 15.

457) No. 861/2007 of 11 July 2007, Article 8, Article 9(1). OJ L 199, 31.7.2007, p. 1.

458) 2001/220/JHA of 15 March 2001, Article 11(1). OJ L 82, 22. 3. 2001, p. 1.

459) European E-Justice portal 홈페이지, The legislative framework 참조

https://e-justice.europa.eu/content_general_policy_description-70-en.do (2012년 10월 20일 최종 접속).

있다.⁴⁶⁰⁾ 신청에 대한 답신은 다른 표준 양식을 이용해서 이루어진다. 민사사건의 경우, 2001년 증거수집 규정(2001 Taking of Evidence Regulation)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간접 증거 수집에 대한 신청이 있으면 신청을 받은 관할 법원이 7일 이내에 이를 수신하였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동 규정 제17조에 따른 직접 증거 수집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 부처 또는 관할 당국이 30일 이내에 증거 수집을 신청한 법원에게 신청을 수락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려야 한다. 한편, 형사사건의 경우에 신청을 받은 회원국은, 비디오컨퍼런스의 사용이 자국법의 기본원칙에 반하지 않고 심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을 지니고 있다는 조건 하에서, 비디오컨퍼런스에 의한 심리에 동의하여야 한다.

(2) 비디오컨퍼런싱의 설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실제로 심리를 위한 준비가 시작된다. 국경을 넘어서 민사 및 상사 소송절차에 있어서는, 신청한 법원과 신청을 받은 법원이 2001년 증거수집 규정(2001 Taking of Evidence Regulation)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신청에 동의하는 대로, 신청을 받은 법원이 증인과 연락을 취하여 편안한 장소와 심리일자를 잡아야 한다. 또한 동 규정 제17조에 따른 직접 증거 수집에 대한 신청이 신청을 받은 회원국의 중앙 부처 및 관할 당국에 받아들여지는 경우, 신청한 법원은 증거를 얻을 수 있는 일자, 시간, 장소 및 참여 여건 등을 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한편, 형사사건의 경우에 신청을 받은 회원국의 사법부는 자국법에 의거하여 대상자에게 법원에 출두하도록 소환장을 발부한다. 대상자가 법원에 출두할 것을 요청하는 방식은 국내법으로 규정된다.

(3) 비디오컨퍼런싱에 의한 심리

비디오컨퍼런싱에 의한 심리는 일반 공개 법정에서 증거가 수집되는 방식에 가

460) European Judicial Network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http://ec.europa.eu/civiljustice/evidence/evidence_gen_en.htm (증거 수집 및 증명 방식).

European Judicial Network in criminal matters

<http://www.ejn-crimjust.europa.eu/> (사법 공조 Mutual Legal Assistance).

능한 한 가깝게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그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양자 간의 차이점들도 고려되어야 한다. 비디오컨퍼런싱에 의해 증거가 수집되는 경우에는, 종래의 방법으로 증거가 수집되던 때에 당연시되던 몇 가지 사안들을 다른 관점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우선, 비디오컨퍼런싱에 의한 심리에서의 증인은 비디오컨퍼런싱 세션에 대한 실행 방식을 이해하고, 비디오컨퍼런싱의 당사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의 다양한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증인이 국외에서 비디오컨퍼런싱에 의해 질문을 받는 경우, 표준시간대의 차이가 고려되어야 한다.⁴⁶¹⁾ 한편 비디오컨퍼런싱 세션에 관련된 사람들은, 현재 이용가능한 최고 수준의 시스템에서도, 영상과 이에 수반된 음향의 수신에 약간의 지연이 있음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⁴⁶²⁾ 그러나 멀리 떨어진 장소에 있는 증인에 대한 심문은 증인이 법정에서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관행과 가능한 한 유사한 방식을 따라야 한다. 심문이 진행되는 동안, 증인은 질문을 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을 만날 수 있어야 하고, 증언을 위해 또 다른 법정대리인이나 판사 등도 만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비디오컨퍼런싱은 심약하고 겁에 질린 증인들이 외국 법원에 출석함으로써 겪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덜어주는 수단이 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증인이 외국 법원에서 증언을 하게 된다면, 법정보다는 분리된 개별 증인실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논의된다.

다음으로 전문가 증인의 이용가능성은 소송의 지연을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된다. 예컨대, 자녀 양육권 소송 등의 민사사건에서 의학 전문가 및 심리학자의 증언을 듣거나, 형사사건에서 법의학자나 컴퓨터 전문가 등의 증언을 듣기 위해서는 시간이 지체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 비디오컨퍼런싱을 이용한다면, 다른 회원국의 전문가 증인에게도 보다 융통성 있게 증언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요청에 응하여 전문가 증인이 심리를 받을 경우에는, 심리를 진행하는 동안 어떤 종류의 기술적 설비가 필요할 것인지를 점검하기 위해

461) 증인, 소송당사자들, 그들의 변호사 및 법원의 편이가 모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462) 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조바심에 증인이 화면에 나타나 말을 끝낸 뒤 얼마 안 되어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도 증인에게 “말하라”고 재근하는 경향이 있다. General Secretariat of the Council, Videoconferencing as a part of European e-Justice: the essentials of videoconferencing in cross-border court proceedings, European E-Justice, 2009, p. 17.

(예를 들어, 문서카메라, 오디오 또는 비디오 설비 등), 심리 전에 전문가와 접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역인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통역인이 신청을 한 법원의 지역 소재지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원격지(또는 다른 제3의 장소)에 있을 것인지에 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국경을 넘어서는 비디오컨퍼런싱에 있어서는 연속통역(consecutive interpretation)이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동시통역(simultaneous interpretation)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통역인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참여자를 위한 이어폰이 제공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폰의 정확한 조절 등도 점검되어야 하는 등 연속통역에 비해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통역인은 자신이 그 말을 통역해야 하는 사람과 적절하게 시각적 접촉을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될 필요가 있다.⁴⁶³⁾

한편 증인의 증언이 진행되는 적절한 시점에 추가 서면이 제출되기도 한다. 비디오컨퍼런싱을 통한 증인신문에서 서면을 제출할 때에는 문서카메라(document camera)를 활용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제출된 문서를 비공개로 논의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문서카메라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팩스로 전송된 기록의 사본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쉬운 방법으로 거론된다. 즉, 비디오컨퍼런싱을 시작하기에 앞서 공판정 담당자와 비디오로 연결된 곳의 담당자가 팩스 번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교환할 것이 권고된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공유 기록 저장소나 기록 서버 등이 비디오컨퍼런싱에 활용될 수 있다. 정보를 공유하는 데 쓰이고 있는 이러한 장치들을 사법의 영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저장소가 안전하고 사건과 관련된 권한 있는 당사자에 의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장된 것인지에 대해 별도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비디오컨퍼런싱에 관한 기술적 문제

최근 들어서 비디오컨퍼런싱 설비의 작동은 매우 손쉬워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63) General Secretariat of the Council, Id., p. 19; General Secretariat of the Council, Guide on Videoconferencing in Cross-Border Proceedings: European E-Justice, Dictus Publishing, 2011, pp. 13-14.

고, 비디오컨퍼런싱과 관련된 설비의 종류와 배치는 표준화되어야 한다. 즉 어떤 유형의 공간이더라도 동일한 종류의 설비가 동일한 방식으로 설치되었다는 것이 보증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비디오컨퍼런싱 설비는, 주문 개발형이건 일괄 시스템이건 간에, 국경을 넘어서는 연결망에서 상호정보처리운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산업 표준을 충족하여야 한다.⁴⁶⁴⁾

- **설비 배치:** 설비(특히 카메라와 마이크론)는 비디오컨퍼런싱 참여자들이 상호 오리엔테이션 과정에서 필요최소한의 조정만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배치될 필요가 있다. 또한 설비는 법원에서 비디오컨퍼런싱이 이용되지 않는 통상의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도 고려하여 배치되어야 한다.
- **명료성:** 발언은 항상 쉽게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문구도 비디오컨퍼런싱 동안 누락되어서는 안 된다. 음향의 질은 지속적이어야 하며, 주제와 관련 없는 개입이나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립싱크(lip synchronicity: 입술의 움직임에 음성을 일치시키는 것)에 관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0.15초 미만의 지연이 허용되도록 권장된다. 이에 더하여 반향을 소거하고 잡음 및 잔향은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 **마이크로폰:** 마이크로폰은 잡음에 의해 소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마이크로폰의 동시 사용은 통역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특히 동시 통역의 경우), 통역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한 번에 오직 한 개의 마이크로폰이 켜져야 한다.

한편 이동식 설비 장치의 추가(스크린+카메라+스피커+마이크로폰+부대용품)는 증인 심리에 있어서 비디오컨퍼런싱의 이용을 용이하게 해줄 수 있다. 이동식 설비는 장소 간 이동을 쉽게 해주고 그 사용 측면에서 유연성을 부여한다. 그러나

464) 산업표준은 일반적으로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의 표준을 따르며, 기술 표준 각각에 대해서는 General Secretariat of the Council, Guide on Videoconferencing in Cross-Border Proceedings: European E-Justice, Dictus Publishing, 2011, pp. 30 ff(Technical Standards) 참조.

이동식 설비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고정 설비에 비하여 더 많은 제한이 예상된다(예를 들어, 동시에 선명하게 촬영될 수 있는 참여자들의 숫자와 관련된 제한). 이동식 설비는 감옥이나 병원과 같은 특별한 장소에서 증인을 신문하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 쓰일 수 있고, 설비가 고장이 난 경우에 고정 설비에 대한 일시적 보충장비로서 이용될 수도 있다. 나아가 비디오컨퍼런싱 시스템의 작동은 가능한 한 사용자가 쉽게 조작법을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으로 단순해야 하므로 제한된 개수의 조정장치로만 구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스위치를 끄고 켤 수 있는 카메라와 마이크폰, 선택 메뉴를 통한 연결, 적용 메뉴를 통한 설정, 연결망 종료 및 로그 온/아웃 등이 그러하다.

라. 사법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 현황

유럽연합 내에서 사법절차에 비디오컨퍼런싱이 활용되고 있는 전형적인 시나리오의 다음과 같다.

유럽연합 내에서의 비디오컨퍼런싱 활용 시나리오⁴⁶⁵⁾

〈증인 심문〉

Ann은 범죄행위를 목격하였고, 용의자에 대한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두하라는 고지를 받았다. Ann은 직접적인 사건의 피해자는 아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심각한 트라우마를 입었고, 현재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의사는 Ann에게 고된 여행을 하지 않도록 권하고 있으며, Ann의 법정출두(특히, 피고인이 있는 법정으로의 출두)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Ann이 치료를 받고 있는 정신병원에는 적절한 비디오컨퍼런싱 설비가 이미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비디오컨퍼런싱 심리를 진행하는데 동의하였고, 현장에 출석할 치안판사를 지명하였다. 이리하여 Ann에 대한 증인신문은 그녀에게 친숙한 환경에서 수행될 수 있었고 그녀는 고된 여행을 하지 않게 되었다.

소송절차가 열린 법원으로부터 증인이 소재한 원격지 시설로의 직접적인 사정각 연결은 Ann의 증언 기간 동안에만 이루어졌으며, 법원과 원격지 시설 양측에 설비가 이미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소요된 전체 비용은 필요 최소한에 그쳤다.

〈전문가 증언〉

Dr. Abraham Knowell은 유전학 전문가로서 두 건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전문가 증언을 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문제는 아일랜드 더블린에 살고 있는 Knowell 박사가 독일 베를린에 있는 법정과 슬로베니아 류블라나에 있는 법정에 출석할 것을 요청받았다는 점이다. 두 사건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시간대가 동일한 일자에 겹쳐 있기 때문에 시인은 보다 더 복잡해졌다(베를린에서의 증언은 아침 일찍, 류블라나에서의 증언은 같은 날 정오로 정해졌다).

비디오컨퍼런싱 덕분에 Knowell 박사는 동일한 날짜에, 세 군데의 각기 다른 장소에 있을 수 있게 되었으며, 그의 집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 않은 더블린 중심가에 위치한 법원에 나가는 것으로 충분하였다.

8:45 더블린 법정에 출석

비디오컨퍼런싱 룸으로 안내되어 지역 차인판사를 만남.

9:00 베를린 법정과 비디오컨퍼런싱이 연결되고, 이후 독일 판사에 의한 간략한 소개가 이루어짐

Knowell 박사는 그날의 첫 번째 증인으로 세워짐

10:00 양측의 반대신문이 이어진 후 심리가 종료됨

비디오컨퍼런싱 세션도 종료됨

Knowell 박사와 아일랜드 차인판사가 이른 점심을 먹음.

11:45 Knowell 박사와 차인판사가 더블린 법원으로 돌아감.

류블라냐 법정과의 비디오컨퍼런싱 세션이 연결됨.

심리 뒤에 Knowell 박사는 연구실에 돌아와 자신의 업무를 계속할 수 있었다. 비디오컨퍼런싱 덕분에 Knowell 박사는 베를린 법정에서 1시간, 류블라냐 법정에서 1시간을 소요하였을 뿐, 더블린-베를린-류블라냐-더블린 등 여러 장소로의 출장에 소요되었을 수일간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소송 절차에 비디오컨퍼런싱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전략이 실행되었다. 첫째, 민사 및 상사 문제에 관한 유럽 사법 네트워크(European Judicial network) 웹사이트는⁴⁶⁶⁾ “증거수집 및 증명 방식(Taking evidence and mode of proof)”이라는 절의 제7항목에서, 민사사건에서 비디오컨퍼런싱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⁴⁶⁷⁾ 둘째, 형사사건에 관한 유럽 사법 네트워크는⁴⁶⁸⁾ 아틀라스(Atlas)라고 불리는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동 서비스는 비디오컨퍼런싱의 잠재적 사용자가 다른 법원에서 설비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 알아보는 것을 지원한다. 셋째, 유로저스트(Eurojust)는⁴⁶⁹⁾ 개설된

465) General Secretariat of the Council, Videoconferencing as a part of European e-Justice: the essentials of videoconferencing in cross-border court proceedings, European E-Justice, 2009, pp. 27-29.

466) http://ec.europa.eu/civiljustice/index_en.htm (2012년 10월 20일 최종접속).

467) 예를 들어, 벨기에의 비디오컨퍼런싱 이용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본 사이트의 “Taking of evidence and mode of proof”에서 유럽연합 회원국 중 벨기에를 클릭한 뒤 제7항목에 있는 “어떤 조건 하에서 증인은 텔레비전이나 비디오컨퍼런싱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통해 심리받을 수 있는가(Under what conditions can a witness be heard via new technology such as television or videoconferencing)?”에 해당하는 답변을 확인하면 된다. 벨기에의 경우, 재판규칙 제924조에 의거하여, 증인이 직접 출석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보일 수 있다면, 법원이 증인이 현재 있는 장소에서 증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468) <http://www.ejn-crimjust.europa.eu/> (2012년 10월 20일 최종접속).

이래로 지금까지 상당수 사건에 대한 국제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비디오컨퍼런싱 기술을 성공적으로 사용해오고 있다.

한편 비디오컨퍼런싱을 활용하고 있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모범사례들을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⁴⁷⁰⁾

• 비디오컨퍼런싱을 위한 예약 시스템 구축 -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비디오컨퍼런싱을 위해 국내법원에 중앙 집중형의 예약 시스템을 개설하였다. 동 시스템은 모든 국내 법원에서 이용가능하며, 법원에 직접 비디오컨퍼런싱 설비 예약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 비디오컨퍼런싱의 유연화 - 핀란드

핀란드는 각기 다른 목적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비디오컨퍼런싱 설비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공판정에는 고화질 HD 영상의 카메라와 스크린 세트가 완벽히 갖추어졌다. 예비 심문을 위해서는, 회의실마다 별도의 독립된 세트를 갖추고 있다. 증인신문을 위해서는 단말기, 카메라와 마이크로 구성된 기본적인 세트가 마련되었다. 이동식 설비(사회복지기관이나 병원 및 정신보호시설 등에서 활용될 설비)와 관련해서는 휴대용 컴퓨터(소프트웨어 사양 탑재)와 카메라를 포함한 휴대용 설비가 이용될 수 있다.

469) <http://www.eurojust.europa.eu/> (2012년 10월 20일 최종접속).

470) 그 외의 시행례에 관해서는 General Secretariat of the Council, Guide on Videoconferencing in Cross-Border Proceedings: European E-Justice, Dictus Publishing, 2011 참조.

• 취약한 증인에 대한 원조 - 영국⁴⁷¹⁾

영국에서는 중점 지원 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일부 피해자 지원센터와 경찰서 등에 원격지 증인실의 비디오컨퍼런싱 설비가 마련되었다.

• 비디오컨퍼런싱에서의 통역 활용 - 독일

독일의 경우, 동시통역 시설이 비디오컨퍼런싱 설비에 삽입됨으로써, 다수의 피고인이 외국어로 말하는 소송절차에서도 통역을 할 수 있다. 또한 행정법원에서의 소송절차에 있어서도 비용 절감을 위해 통역자는 비디오컨퍼런스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 절차의 신속화 - 영국

영국에서는 법원과 경찰서를 원격화상시스템을 통해 연결하는 가상 전자 법정(Virtual Court)이 구축되어 있다.⁴⁷²⁾ 가상 전자 법정을 통해, 간단한 사건의 경우에는 최초심리를 기소 후 2~3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상당수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절차의 신속성은 가정 폭력을 포함한 사

471) 영국은 “1999년 소년사법과 형사증거법(Youth Just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99)”을 통해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측·검찰측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17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그들이 증거를 제공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함에 있어 도움을 주기 위한 특별조치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후 법원은 최선의 증언을 들을 수 있도록 (특히 법정에서의 직접 증언을 대체하는) 비디오녹화조사 및 법정 외에서 아동으로 하여금 증언할 수 있도록 하는 생중계망을 사용한 조사방법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채택하였다. 또한 영국정부가 형사사법법의 시행을 위하여 공포한 “아동 및 취약하거나 위협받고 있는 증인을 위한 지침(Guideline for Vulnerable or Intimidated Witness, Including Children)”에서도 (a) 공판 중 법정 밖에서 법정 안으로 연결된 폐쇄회로망을 통하여 증언하는 원격지 영상증언(동법 제24조), (b) 증인에 대한 공판전의 영상녹화조사를 증언으로 채택(다만, 녹화가 이루어진 장소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녹화가 증거법칙에 대한 심각한 위반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한다, 동법 제27조), (c) 영상녹화에 대한 반대신문 허용(동법 제28조), (d) 성범죄피해아동 등 특정 유형의 취약한 증인에 대하여는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으로부터의 반대신문 불허(동법 제34조, 제35조), (e) 고소인(피해자) 측의 성적(性的) 행동에 관한 질문 및 증언에 대한 제한(강간 등 성범죄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행동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상황을 제한하려는 의도 반영, 동법 제41조) 등을 규정하여 아동증인 및 취약하거나 위협받고 있는 증인을 보호하고 있다. 영국 내무부 협의 문서 참조, <http://webarchive.nationalarchives.gov.uk/http://www.homeoffice.gov.uk/documents/ach-bect-evidence/guidance-for-witnesses?view=Binary> (2012년 10월 20일 최종접속).

472) Ministry Of Justice, Virtual Courts: Information for Defence Representatives, Office for Criminal Justice Reform, 2010, p. 2.

건들을 처리하는데 장점이 된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이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와 증인들이 보다 충분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연합 내에서 국경을 넘어 활용되는 비디오컨퍼런싱에 관한 문답 자료⁴⁷³⁾
(Cross-Border Videoconferencing -Questions and Answers)

- 1) 모든 EU 회원국 사이에 비디오컨퍼런싱이 사용될 수 있는가?
☞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EU 회원국들은 민사 및 형사 소송절차에서 동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 2) 비디오컨퍼런싱이 유럽연합 외부의 법정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가?
☞ 법적으로 가능하고, 법원이 필요한 설비를 갖추는 데 동의한다면 사용될 수 있다.
- 3) 비디오컨퍼런싱은 법원이 거절할 수 없는 제인인가?
☞ 그렇다. 요청을 받은 회원국은 비디오컨퍼런싱을 이용한 심리가 자국법의 기본원칙에 반하지 않고, 동 시스템을 활용한 심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이 있는 이상 비디오컨퍼런싱에 동의해야 한다.⁴⁷⁴⁾
- 4) 비디오컨퍼런싱 비용은 누가 충당하는가?
☞ 일반적으로 전문가 통역인에게 소요될 비용이나 통신화선 이용에 대한 비용은 신청한 회원국이 신청을 받은 회원국에게 지불할 수 있다.⁴⁷⁵⁾
- 5) 통역인이 어디에 소재해야 하는지(관할법정 혹은 원격지)에 관한 규정이 있는가?
☞ 없다. 그러나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통역인이 증인과 동일한 법정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피고인이 비디오컨퍼런싱에 의한 심리를 받는 경우, 통역인은 피고인과 동일한 법정에 있을 것이 권고된다.
- 6) 전화로도 비디오컨퍼런싱의 신청이 가능한가?
☞ 가능하지 않다. 증거 수집과 관련된 비디오컨퍼런싱의 신청은 표준 양식을 사용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표준 양식을 가져해서 우편·팩스(모든 회원국이 가능) 또는 이메일(모든 회원국에서 가능한 것은 아님)로 보낼 수 있다.
- 7) 증인은 자신의 모국어로 말할 수 있는가?
☞ 증인이 원한다면 자신의 모국어로 말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통역인이 참석할 것이다.
- 8) 비디오컨퍼런싱 심리를 담당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신청을 받은 법원의 판사가 이를 맡는다(직접 증거 수집의 경우는 예외로 하는데, 이 경우에는 신청을 한 법원의 판사가 담당한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신청을 한 법원의 판사와 검사가 비디오컨퍼런싱 심리를 맡는다.
- 9) 비디오컨퍼런싱 심리 동안에 문서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가능한가?
☞ 문서카메라(document camera)가 사용된다면 가능하다. 그러한 카메라를 이용할 수 없다면 팩스를 사용할 수 있다. 향후에는 보다 진보된 기록 서버의 사용이 보편화될 것이다.
- 10) 법정 외의 다른 곳에서 비디오컨퍼런싱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가?
☞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감옥에 있는 증인, 병원에 있는 증인,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증인 또는 외교 공관에 비디오컨퍼런싱 설비가 갖추어져 있는 경우 등에는 법정 외의 곳에서 비디오컨퍼런싱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 11) 법원 간 국경을 넘어서 비디오컨퍼런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설비를 구입해야 하는가?
 ☞ 그렇지 않다. 신청을 한 법원과 신청을 받은 법원이 동의한다면, 설비는 심리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배치될 수 있고, 다른 기관의 설비가 사용될 수도 있다.⁴⁷⁶⁾
- 12) 설비를 작동할 기술자가 필요한가?
 ☞ 그렇지 않다. 보통 법정에는 사용하기 편리한 스크린과 카메라들이 미리 정해진 위치에 놓여 있을 것이므로, 설비는 법원 서기와 판사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 13) 비디오컨퍼런싱 심리를 기록해야 하는가?
 ☞ 일반적으로 심리 기록(청각/시각/양자 모두)의 필요성은 국내법(사법절차법 등)에 의한다.
- 14) 삼악하거나 위협을 받아 겁에 질린 증인의 신원은 보호될 수 있는가?
 ☞ 있다. 예를 들어, 심리를 위해 비디오 연결이 정지될 수 있고, 증인의 얼굴을 감추기 위해 커튼이나 기타 수단이 사용될 수 있다.
- 15) 비디오컨퍼런싱에는 어떠한 보안상의 위험이 있는가?
 ☞ 그것은 비디오컨퍼런싱에 참여한 법원이나 기타 기관에 설치된 기반시설에 좌우된다. 방화벽 뒤에서 ISDN(종합정보통신망)선이나 IP주소를 사용하고 상대방의 연결상태를 확인하면서, 특정 사용자에게 한정시켜 진행된다면 비디오컨퍼런싱 과정은 충분히 통제되고 안전하게 될 것이다.
- 16) 비디오컨퍼런싱에 대한 다른 적절한 친환경적 대안이 있는가?
 ☞ 불행히도 없다.

473) General Secretariat of the Council, Videoconferencing as a part of European e-Justice: the essentials of videoconferencing in cross-border court proceedings, European E-Justice, 2009, pp. 31 ff.

474) The Convention on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between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Article 10. Hearing by videoconference 2. 참조.

475) The Convention on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between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Article 10. Hearing by videoconference 7. 1문 참조.

476) The Convention on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between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Article 10. Hearing by videoconference 7. 2문 참조.

제4장

형사절차상 원격화상 시스템의 활용 현황

형사절차상 원격화상 시스템의 활용 현황

제1절 수사과정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

1. 수사기관의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현황

가. 경찰

경찰은 2006년 1월 전용회선을 기반으로 하여 경찰청과 지방경찰청간, 지방경찰청과 경찰서간에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각 청별로 도입한 프로그램의 제조사가 상이하였던 까닭에 시스템 간 연계가 어려워지자, 2008년 일괄적으로 화상회의 패키지 솔루션⁴⁷⁷⁾을 구매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현재 경찰은 본청과 16개의 지방청에 화상회의 서버를 두고 있고, 각 지방청에 중계서버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17개의 경찰청은 물론이고 전국의 지구대까지 화상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바, 아래의 <그림 2-1>은 경찰청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원리를 간략하게 제시한 것이다. 한편, 경찰망은 10Mbps~

477) 경찰이 도입한 화상회의 솔루션은 국내 AccuZone이 개발·판매하고 있는 AccuMeet(버전2)로서, MPEG-4 기반 자체 비디오 코덱으로 운영되는 제품이다.

300Mbps까지⁴⁷⁸⁾의 대역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부고속망과는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⁴⁷⁹⁾ 정부고속망과 연계되어 있는 기관과의 실시간 통신은 어려운 실정이다.⁴⁸⁰⁾ 그러나 동 시스템의 구축으로 경찰 내 신속한 업무 처리 및 협조가 가능해짐으로써 업무효율성이 제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⁴⁸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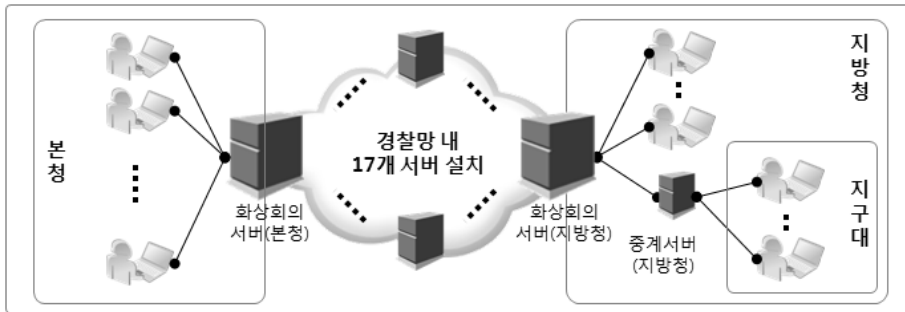


그림 2-1 경찰청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원리⁴⁸²⁾

나. 검찰

현재 검찰은 대검찰청과 42개의 지방검찰청에 다자간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⁴⁸³⁾하고 있다. 다만 속초지청과 영월지청을 비롯한 16개의 지청에는 아직까지 동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⁴⁸⁴⁾ 아래의 <그림 2-2>는 대검찰청⁴⁸⁵⁾

478) 본청과 지방경찰청 사이는 300Mbps,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사이는 100~150Mbps, 경찰서와 지구대 사이는 10~30Mbps 대역을 이용하고 있다.

479) 일부 데이터 연계가 필요한 사항은 디스크 연동방식으로 교환하고 있다고 한다.

480) 형사사법공동시스템운영단, 형사사법 전자화 현황과 과제, 법무부, 2012, 75면.

481) 경찰청, 2007년도 경찰백서, 2007, 395면 이하;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경찰 화상회의, 소통문화와 생산성 향상에 획기적 기여” 참조, <http://www.police.go.kr/announce/newspdsView.do?idx=93027&cPage=2&SK=ALL&SW=%C8%AD%BB%F3%C8%B8%C0%C7+> (2012년 10월 20일 최종접속).

482) 형사사법공동시스템운영단, 앞의 자료, 69면.

483) 검찰청 화상회의시스템은 H/W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484) 속초, 영월, 공주, 논산, 제천, 영동, 안동, 상주, 의성, 영덕, 밀양, 거창, 장흥, 해남, 정읍, 남원지청 등에는 원격화상회의 시스템이 미설치되어 있다.

과 지방검찰청의 원격화상회의 시스템이 어떠한 장비들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전국적 회의 진행시 허브 역할을 하는 대검찰청에는 회의용 코덱시스템은 물론이고, 다자간회의 시스템(Multipoint Control Unit)과 화상회의 관제시스템(Video Communication Server) 등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경찰망과 달리 검찰망은 정부고속망과 20Mbps의 대역폭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고속망과 연계되어 있는 기관과의 실시간 통신이 가능하다.⁴⁸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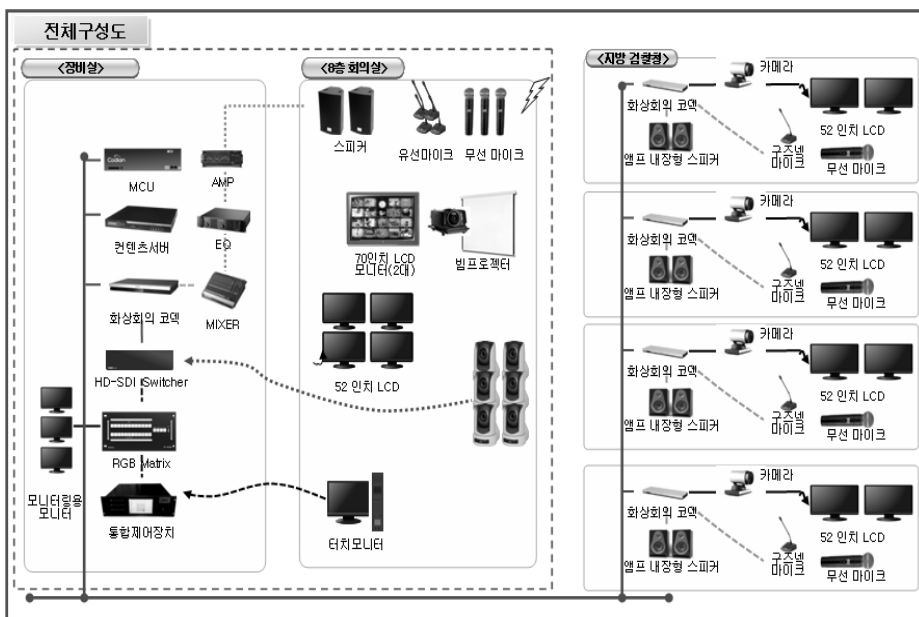


그림 2-2 검찰청 원격화상회의 시스템 구성도⁴⁸⁷⁾

2. 국내거주인에 대한 수사에서의 활용

대부분의 고소·고발사건은 피고소인의 주거지 관할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루어

485) 대검찰청 8층 회의실과 13층 전산교육장에 화상회의 설비가 마련되어 있다.

486) 형사사법공동시스템운영단, 앞의 자료, 75면.

487) 형사사법공동시스템운영단, 앞의 자료, 70면.

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관할경찰서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고소인에 대한 추가 조사나 대질 조사 및 참고인에 대한 조사에는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된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은 2004년 2월부터 자체 지침에 근거하여 원격지 화상조사제도를 도입하였고,⁴⁸⁸⁾ 곧이어 전국 경찰서에 관련 장비를 설치한 후, 2004년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피해자나 참고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만 실시되었으나,⁴⁸⁹⁾ 2005년 4월부터는 불구속이 예상되는 원거리 지명수배자로부터 그 대상이 확대되었고,⁴⁹⁰⁾ 2006년 5월에는 경미사건의 피의자로까지 그 범주가 확장되었다.⁴⁹¹⁾

〈표 3-1〉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전국 경찰관서에서 원격지 화상조사제도가 이용된 횟수이다. 제도가 도입되었던 2004년에는 총 246회의 화상조사제도가 실시되었는데, 경기 지역과 부산 지역의 경찰서가 각각 44회, 40회를 실시함으로써 이용률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전국 경찰관서에서 실시된 화상조사의 횟수는 총 226회였고, 경기 지역이 50회를 실시함으로써 동 제도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이용 횟수가 12회에 그쳤던 강원 지역이 2005년에는 45회로 증가한 것도 눈여겨 볼만 하다. 2006년에는 각 지역들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이용률을 보이면서 전국적으로 원격지 화상조사가 실시된 횟수도 총 176회로 감소하였고, 2007년 이래로는 공식적인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표 3-1 전국 경찰서의 원격지 화상조사 실시 횟수

구 분	2004	2005	2006
서울	19	20	3
부산	40	13	8
대구	2	10	3
인천	16	10	15

488) 2004년 고소사건 신속처리 지침에 화상조사제도의 도입 논의가 포함되어 있었다.

489) “경찰관서간 공조수사 강화를 위한 인터넷 화상조사제 운영지시”, 경찰청 수사과, 2004년 2월 27일자.

490) “수사상 인권침해 방지 대책”,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2005년 4월 28일자.

491) “화상조사제 운영 활성화 대책”, 경찰청 수사과, 2006년 5월 24일자.

구 분	2004	2005	2006
울 산	3	2	2
경 기	44	50	29
강 원	12	45	20
충 북	18	14	5
충 남	25	11	16
전 북	33	4	2
전 남	4	17	26
경 북	14	15	13
경 남	11	14	16
제 주	5	1	18
계	246	226	176

중죄를 저지른 용의자로서 지명수배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출석에 단순히 불응했다는 이유로 지명수배된 피의자가 수배관서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검거된 경우, 1~2시간 정도면 끝날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를 수배관서로 호송하고, 호송 전까지 피의자의 신병을 검거된 경찰관서에 유치해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원격지 화상조사를 통해 개선될 수 있었다. 요컨대 동 제도는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피의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고, 피의자의 호송이나 인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제도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전용조사실이나 전용회선이 구축되지 못한 상태에서 화상조사제도가 운영되었던 바, 화면이 끊기고 목소리만 전달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의 불편이 초래되었고, 보안상의 우려도 제기되었다. 더욱이 2006년 4월 20일 경찰청 예규 제352호로 “고소·고발사건 이송 및 수사촉탁에 관한 규칙”⁴⁹²⁾이 마련됨으로써 종래 화상조사가 요청되던 대부분의 상황이 수사촉탁⁴⁹³⁾으로 해결되고 있고,⁴⁹⁴⁾⁴⁹⁵⁾ 원격지 화상조사제도는 사실

492) 이 규칙은 경찰관이 고소·고발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그 책임수사관서를 명확히 하고 이송 및 수사촉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신속·공정한 사건 처리와 사건관계인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소·고발사건 이송 및 수사촉탁에 관한 규칙 제1조).

493) “수사촉탁”이라 함은 사건 수사의 일부분에 대하여 다른 경찰관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고소·고발사건 이송 및 수사촉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호).

상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3. 국외거주인에 대한 수사에서의 활용

가. 재외선거사범에 대한 인터넷화상조사제도의 도입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종래 주민등록 등재여부로 선거권 행사를 결정하고, 국내거주자에 한해서만 부재자신고를 허용하던 공직선거법상의 규정들이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⁴⁹⁶⁾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8년 10월 15일에 공직선거

494) 고소·고발사건 이송 및 수사촉탁에 관한 규칙 제14조(수사촉탁)

- ① 수사를 함에 있어 다른 경찰관서에 소재하는 수사대상에 대하여 수사를 촉탁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 조사는 현장진출이 곤란한 경우에 한한다.
- ② 동일 지방경찰청 내 또는 경찰청장이 별도 지정한 경찰관서에서는 구치소, 교도소, 대용감방에 수용된 자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수사촉탁할 수 없다. 다만, 울릉경찰서는 예외로 한다.

495) 고소·고발사건 이송 및 수사촉탁에 관한 규칙 제15조(수사촉탁 절차)

- ① 수사촉탁은 촉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촉탁서에 의해야 하고 수사진행사항을 알 수 있는 수사기록 원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수사를 촉탁한 수사관은 수사촉탁을 이유로 사건을 방지하여서는 안되며 수사 진행사항을 파악하여 수사보고 하여야 한다.
- ③ 수사촉탁 사건은 수사지원팀에서 접수하여 대장에 등재한 후 촉탁관서 수사팀에 대응하는 수사팀에 배당하여야 한다.
- ④ 수탁관서는 촉탁사항에 대한 수사를 완료한 후 회답서 및 관련서류 일체를 신속히 등기송달, 직접전달 등의 방법으로 촉탁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496) 헌법재판소 2007. 6. 28. 선고, 2004헌마644(헌법불합치결정). 1966년 12월 “대통령선거법”을 통해 국외부재자투표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동 제도는 1972년 12월 “통일주체국민회의법”에 의해 폐지되었다. 1997년 일본 및 프랑스 거주 재외국민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1999년에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러 차례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입법화되지 못하던 차에, 2004년 또 다시 일본과 미국 및 캐나다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07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다. 동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우선, 공직선거법 제37조(명부작성) 제1항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선거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정당한 목적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동법 제38조(부재자신고) 제1항이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에 대해서만 부재자신고를 허용함으로써 재외국민과 단기 해외체류자 등 국외거주자 전부에 대해 국정선거권의 행사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도 정당한 입법목적에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던 바, 재외국민과 단기 해외체류자 등 국외거주자의

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09년 2월 12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재외 선거제도가 도입되었다.⁴⁹⁷⁾ 이에 따라 2012년 4월에 실시되었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국외거주자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재외국민선거의 경우,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를 비롯한 해외 친북단체들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허위사실 유포나 후보 비방, 금품 살포, 후원회 부정운영 등 조직적인 선거범죄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국의 사법주권 침해 문제로 인해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 자체가 진행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입각하여 재외국민선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TF팀을 구성하였고, 서울중앙지검에는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이 설치되었으며, 교민들이 많은 미국·일본·중국·호주·베트남 등 5개국의 재외공관에는 검사를 영사 자격으로 파견하기도 하였다.⁴⁹⁸⁾ 특히, 해외에서 발생한 선거범죄의 경우에는 사건관련자들이 국내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할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증거수집에 상당한 어려움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검찰은 재외국민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나 참고인 등에 대해서는 영사조사와 인터넷화상조사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2012년 2월 29일 법률 제11374호로 공직선거법이 일부개정⁴⁹⁹⁾되면서 재외선거사범에 대한 영사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해당 조문들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497)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마지막으로 재외선거제도를 도입하였다. 재외선거제도를 통해 재외국민이 참정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국민주권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고,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게 되었으며, 재외국민의 권익신장 및 애국심 고취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제도의 이해, 2012. 10., 1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참조 http://ok.nec.go.kr/global/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171&nttId=3462&menuNo=110655&lang=ko&searchCnd=&searchWrde (2012년 10월 20일 최종접속).

498)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앞의 자료, 50면.

499)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191(병합))의 취지를 반영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의 게시물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전송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선상에서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18대 대통령선거부터 선상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며, 2013년 1월 1일부터 부재자투표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한 사전투표제도를 신설하여 선거일 전에 투표하려는 선거인이 부재자신고 없이도 부재자투표기간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표편의를 제고하고,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국외에서 중대한 선거범죄를 행한 자에 대하여 여권의 발급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국외에서 공직선거법

조사제도와 함께 인터넷화상조사제도가 도입되었다.

나. 재외선거사범에 대한 인터넷화상조사제도의 구체적 내용

2012년 국외선거법⁵⁰⁰⁾에 대하여 영사조사제도⁵⁰¹⁾와 함께 도입된 인터넷화상조사제도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33에서 규정되고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⁵⁰²⁾ 제221조⁵⁰³⁾에 따라 재외공관에 출석한 이 법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를 상대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33 제1항). 이와 같은 진술을 들을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무부 및 외교통상부를 경유하여 해당 재외공관의 장에게 조사할 사건에 관하여 통보하여야 하고, 진술을 들을 때에는 영사가 참여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진술 내용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할 수 있고, 그 과정을 영상 녹화하여야 하는데, 피의자가 아닌 자의 경우에는 동의

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선거사범 등에 대한 영사조사제도 및 인터넷화상조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보도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여론조사의 객관성·공정성을 강화하고,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인구수,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획정하여 유권자의 투표가치에 대한 평등원칙이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이 개정의 이유이다.

- 500) 국외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관할을 특정할 수 없는 자의 제1심 재판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26 제2항).
- 501) 영사는 법원 또는 검사의 의뢰를 받아 대한민국 재외공관 등에서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21조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또한 법원 또는 검사가 영사에게 진술 청취를 의뢰할 때에는 법무부 및 외교통상부를 경유하여야 하는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영사에 대한 진술 청취의 의뢰를 신청할 수 있다. 영사는 진술을 들을 경우 그 진술 내용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거나 진술서를 제출받을 수 있고 그 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는데, 피의자 아닌 자의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 영사가 작성한 조서나 진술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진술서 및 영상녹화물은 즉시 외교통상부 및 법무부를 경유하여 법원 또는 검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32).
- 502)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503)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 ③ 제163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를 받아야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동조 제3항). 또한 진술 청취의 절차 및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1조(피의자신문),⁵⁰⁴⁾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⁵⁰⁵⁾ 제243조의2부터 제245조까지(변호인의 참여 등,⁵⁰⁶⁾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⁵⁰⁷⁾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⁵⁰⁸⁾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⁵⁰⁹⁾ 수사과정의 기록,⁵¹⁰⁾ 장애인 등

504) 형사소송법 제241조(피의자신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505) 형사소송법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506)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 ③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507)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 ①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 ③ 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508)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 ①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509)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⁵¹¹⁾ 참고인과의 대질⁵¹²⁾)를 준용한다(동조 제5항). 한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작성한 조서를 재외공관에 전송하고, 영사는 이를 출력하여 진술자에게 열람케 하여야 한다(동조 제4항). 이후 영사는 완성된 조서를 외교통상부 및 법무부를 경유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는데(동조 제6항), 상기의 절차에 따라 작성된 조서는 국내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동조 제7항).

한편 재외선거사범에 대한 인터넷화상조사제도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재외공관 출석이 담보되지 않는 한 제대로 활용될 수 없다는 한계에 직면한다. 이에 공직선거법은 해당국의 사법주권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에 불응하는 자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해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⁵¹³⁾ 즉, 외교통상부장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① 국외에서 이 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하여 조사를 종결할 수 없는 사람이나 ② 국외에서 이 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기소중지된 사람에 대하여 여권법에

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510)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② 제244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조서 또는 서면에 관하여 준용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은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511)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12) 제245조(참고인과의 대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

513) 국내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외국의 시민권자 등이 재외선거에 부당하게 관여한 경우에는 외국인의 입국금지 규정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고자 한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31).

다른 여권의 발급 및 재발급을 제한하거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 218조의30 제1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는 여권발급 등의 제한 등을 요청할 때에는 그 요청사유와 제한기간 및 반납 후의 보관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동조 제2항), 제한기간 또는 보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제한기간 또는 보관기간 만료일 전 30일까지 서면으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동조 제3항). 이때 제한기간이나 보관기간은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5년 이내로 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검사는 제한기간 또는 보관기간 중이라도 요청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권발급 등의 제한 등을 해제하여 줄 것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동조 제4항), 외교통상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동조 제5항).⁵¹⁴⁾

다. 재외선거사범에 대한 인터넷화상조사제도의 운영 및 평가

2008년 외교통상부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피랍사건 등의 돌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 종합상황실과 일부 해외공관 간을 연결하는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화상연결을 위한 대역폭 지원이 가능한 주요공관은 국제전용회선인 광역외교정보망을 이용하여 유선으로 연결되고 있고, 저속회선으로 구성된 취약공관의 경우에는 위성 인터넷을 통해 연결된다. 또한 광역외교정보망은 정부고속망과 50~100Mbps의 대역폭으로 연결되어 있는 바, 정부고속망과 연계되어 있는 기관과의 실시간 통신이 가능하다. 그러나 2012년 2월 29일부터 공직선거법에 재외선거사범에 대한 인터넷화상조사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10월 초 현재 인터넷화상조사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은 물론이고 시스템조차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2012년 12월 19일에 있을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검찰은 재외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허용되는 모든 수사방법을 활용하고, 조총련 등 해외 단체의 불법 선거개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천명하면서, 2012년

514) 여권발급 등의 제한 등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권발급 등의 제한 등의 절차, 반납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여권의 효력상실과 회수,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여권법을 준용한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30 제6항).

10월 말까지 재외선거사범에 대한 인터넷화상조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⁵¹⁵⁾ 최근 일본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불응한 자에 대하여 여권 발급 제한 조치가 최초로 이루어졌다.⁵¹⁶⁾ 선거가 임박할수록 재외선거사범에 관한 수사는 본격화될 것인바, 재외선거사범에 대한 인터넷화상조사가 제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유치인에 대한 원격화상면회제도

유치장은 경찰이나 검찰에 의해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신병이 인치되는 곳이다.⁵¹⁷⁾ 교도소나 구치소가 수용을 통해 범죄인을 처벌하고 교화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면, 유치장은 일시적인 수용을 통해 범죄사실을 파악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기회를 차단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 일시적으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장소인 유치장의 경우, 그 시설은 물론이고 유치인에 대한 처우 측면에서도 보다 신중하고 세심한 접근이 이루어질 것이 요구되는 바, 2001년 경찰은 유치인에 대한 화상면회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하였다. 그러나 일반 PC의 화상채팅 기능을 활용하는 종래의 화상면회 시스템의 경우 웹 카메라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고, 접

515) 2012년 9월 22일 KBS 뉴스 참조 <http://news.kbs.co.kr/society/2012/09/22/2539956.html> (2012년 10월 20일 최종접속).

5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 9월 18일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일본에서 불법 인쇄물을 배부한 A씨에 대한 여권발급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재일단체의 간부인 A씨는 지난 7월 22일 일본 동경 소재 모 학교에서 열린 한인행사에서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특정 예비후보자와 그 소속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본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하려 했으나 A씨가 이에 불응하자 공직선거법 제218조의30에 따라 A씨의 여권 발급 및 재발급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중앙선거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9일에도 동일한 불법 인쇄물을 재외국민에게 배부한 혐의로 검찰 고발된 바 있고, 이 사건에 앞서 일본대사관 재외선거관으로부터 불법 인쇄물 배포에 대한 사전 안내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중앙선거위, 국외선거법위 혐의자에게 첫 여권발급 제한 결정” 참조, http://www.nec.go.kr/nec_new2009/BoardCotBySeq.do (2012년 10월 20일 최종접속).

517) 경찰서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기 위해서 유치장을 두며(경찰관직무집행법 제9조),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실로 본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7조).

속과정이 복잡하며, 서비스 품질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일부 경찰서에서는 몇 년째 화상면회 신청자가 전무한 상황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이에 최근 대구동부경찰서에서는 태블릿 PC의 영상통화 기능을 기반으로 한 화상면회 시스템을 도입하였다.⁵¹⁸⁾ 급변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면회실에 유치인 면회전용 태블릿 PC를 설치함으로써 면회를 원하는 유치인의 가족이나 친구 등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어디서든 쉽고 편리하게 화상면회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영상통화 화상면회 신청은 전화로 예약⁵¹⁹⁾을 받고 있고, 이후 유치인의 동의 및 면회 신청자의 신분이 확인되면 면회신청자에게 화상면회전용 전화번호와 면회시간을 고지하게 된다. 면회는 1회 10분으로 제한되고, 하루에 3회까지 가능하다.⁵²⁰⁾ 2012년 5월 14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 후 약 1달 동안 10여명의 면회자가 20회 가량 동 제도를 이용하였고, 이는 같은 기간 해당경찰서 유치인에 대한 전체 면회인수 중 36%에 달하는 수치라고 한다.⁵²¹⁾

제2절 재판과정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

1.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제도 도입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제도는 2003년 12월 11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⁵²²⁾ 개정을 통해 최초로 도입되었다. 성

518) “대구동부경찰서, 영상통화 기능 활용 화상면회 시스템...전국 최초 운영”, 헤럴드 경제 신문, 2012년 6월 13일자.

519) 대구동부경찰서는 일과 시간 중에는 유치 관리계에서 예약업무를 담당하고, 일과 시간 외에는 상황실에서 예약을 받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다.

520) 동부경찰서 홈페이지 참조, http://www.dgpolice.go.kr/dongbu/page/01_sub/06.jsp (2012년 10월 20일 최종접속).

521) “대구동부경찰서, 영상통화 기능 활용 화상면회 시스템...전국 최초 운영”, 헤럴드 경제 신문, 2012년 6월 13일자.

522)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1994년 1월 5일에 법률 제 4702호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2010년 4월 15일에 동법의 내용 중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성폭

폭력피해자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단행된 동 개정을 통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제도가 신설되었고(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동법 폐지 후에는 거의 동일한 내용의 조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마련되어 있다.⁵²³⁾ 초창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제도는 강간죄 등의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이후 동 제도의 적용대상을 성폭력 범죄 이외의 범죄 피해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즉, 성폭력 범죄 이외의 범죄 피해자도 피고인의 면전에서 증언할 경우 심리적 압박이나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과 격리시키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⁵²⁴⁾ 이에 2007년 6월 1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피고인 등과의 대면으로 인해서 정신적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형사소송법 제165조의 2).⁵²⁵⁾

2. 형사소송법상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제도의 구체적 내용

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의 대상

법원은 ①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⁵²⁶⁾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죄

력피해자 등에 대한 취학 지원,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성폭력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등을 규정하여 성폭력 방지 및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10261호로 제정되면서 동법은 폐지되었다.

5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① 법원은 제2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524) 개정 형사소송법 성과분석, 법원행정처, 2010, 116면.

525)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526)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 피해자, 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또는 피해자, ③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65조의 2).⁵²⁷⁾ 첫째, 아동복지법상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제1호),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동조 제2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동조 제3호),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동조 제4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동조 제5호),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동조 제6호),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동조 제7호),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동조 제8호),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동조 제10호),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동조 제11호)⁵²⁸⁾의 대상이었던 아동 피해자에 대해서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을 실시할 수 있다. 둘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동법 제8조), 아동·청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27) 법원은 증인신문 전 또는 증인신문 중에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또는 차폐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4 제2항).

528)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는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제9호)는 제외된다.

소년 매매행위(동법 제9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동법 제10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동법 제11조),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동법 제11조의 2), 알선영업행위(동법 제12조) 등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인 아동이나 청소년 및 그 피해자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의 대상이 된다. 셋째,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이용한 증인신문제도의 대상이 아동과 청소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닌 바,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에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심적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도 그 대상이 되는데, 이 경우 범죄의 성질이나 증인의 연령·심신상태·피고인과의 관계 및 그 밖의 사정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⁵²⁹⁾

나. 중계방법 및 증언실의 위치

법원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할 때 증인을 법정 외의 장소로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가 설치된 증언실에 출석하게 하고, 영상과 음향의 송수신에 의하여 법정의 재판장,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증언실의 증인이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증인신문을 한다(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 5 제1항 본문). 다만, 중계장치를 통하여 증인이 피고인을 대면하거나 피고인이 증인을 대면하는 것이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은 검사,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증인 또는 피고인이 상대방을 영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장치의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동항 단서). 이러한 증언실은 법원 내에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 외의 적당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동조 제2항). 또한 법원은 법원 직원으로 하여금 증언실에서 중계장치의 조작과 증인신문 절차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7 제2항).

529)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4(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신문 여부의 결정)

- ① 법원은 신문할 증인이 법 제165조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증인으로 신문하는 결정을 할 때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또는 차폐시설을 통한 신문 여부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증인의 연령, 증언할 당시의 정신적·심리적 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피고인이나 사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은 증인신문 전 또는 증인신문 중에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또는 차폐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다. 심리의 비공개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이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제1항).⁵³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법원은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 6 제1항). 이때 재판장은 비공개 결정에도 불구하고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을 허가할 수 있다(동조 제4항). 또한 증인으로 소환받은 증인과 그 가족도 증인보호 등의 사유를 들어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이때 재판장은 증인신문의 비공개 여부는 물론이고, 법정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할 것인지 여부와 같은 증인신문의 장소 및 그 방식에 관해서도 결정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라. 증인을 위한 배려

법원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의 규정⁵³¹⁾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결정하였다면, 법정 외의 장소로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가 설치된 증언실에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한다(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7 제1항). 또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530) 비공개 결정은 이유를 붙여 고지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제2항), 비공개 결정 이후에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재정을 허가할 수 있다(동조 제3항).

531)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자는 법원·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증인은 증언을 보조할 수 있는 인형, 그림 그 밖에 적절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으며(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8 제1항), 증인은 증언을 하는 동안 담요, 장난감, 인형 등 증인이 선택하는 물품을 소지할 수 있다(동조 제2항). 다만 이러한 보조도구나 위안품은 증인의 심리적 안정이나 편의를 고려하여 사용 되는 것이므로⁵³²⁾ 법관이나 배심원의 동정심을 자극하거나 그들에게 잘못된 인식이나 편견을 줄 목적으로 사용될 수는 없다.⁵³³⁾

3.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제도의 운영 및 평가

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제도의 운영

(1) 비디오 등 중계장치 구축 현황

2003년 12월 11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원은 성폭력범죄사건의 증인신문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4-3)를 제정하였고, 2004년 고등법원에 우선적으로 화상증인신문시스템이 구축된 후 2005년부터는 지방법원으로 확산되어, 현재는 18개 지방법원 모두에 동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⁵³⁴⁾ 2007년 6월 1일 형

532) 성폭력범죄 사건의 증인신문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 제8조(법정 및 증언실의 시설).

① 중계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법정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재판장, 검사, 피고인, 변호인, 참여사무관 및 방청객이 증언실의 영상과 음향을 수신할 수 있는 모니터 및 스피커
2. 재판장, 검사, 변호인, 피고인의 영상과 음향을 증언실로 송신할 수 있는 카메라, 마이크 등 장비
3. 기타 영상 및 음향의 송수신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

② 증언실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증인이 법정 내의 재판장,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영상과 음향을 수신할 수 있는 모니터 및 스피커
2. 증인의 영상과 음향을 법정으로 송신할 수 있는 카메라, 마이크 등 장비
3. 기타 영상 및 음향의 송수신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
4. 증인이 연령이나 심신의 상태 등에 비추어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피해자 등인 경우, 증인의 심리적 안정 및 증언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도구(예, 유아용 의자, 쿠션)
5. 동석하는 신뢰관계인이 앉을 수 있는 의자

533) 정웅석, 앞의 글, 40면.

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제도가 성폭력범죄 사건만이 아니라 일반형사사건에서도 이용될 수 있게 됨에 따라 2008년부터 기존 시스템의 일부 장비 및 제어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아래의 <그림 3-1>은 법원의 원격화상신문 시스템 구성도를 나타낸 것이다. 현재 화상신문이 진행될 수 있는 법정은 비디오/오디오 신호를 A/V 매트릭스 스위치를 통해 분배·공유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법망⁵³⁵⁾을 통한 타 법원 증인실과의 연결을 위해 별도의 코덱장비가 도입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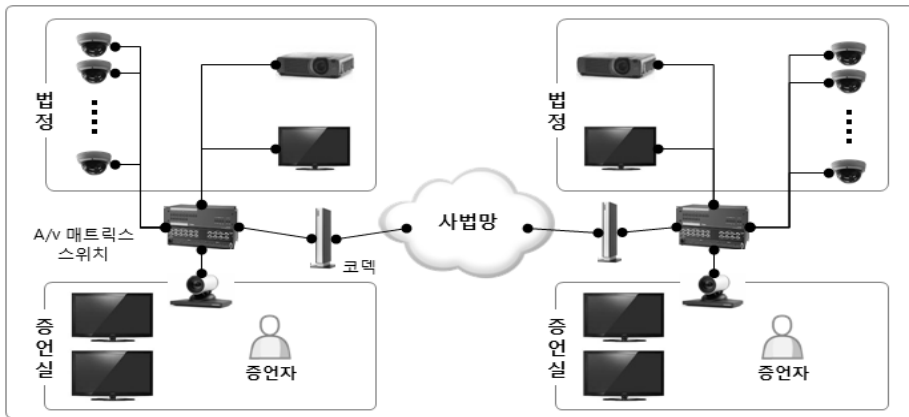


그림 3-1 법원의 원격화상신문 시스템 구성도⁵³⁶⁾

(2)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제도의 시행 현황

2010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국 법원에서 형사소송법상 비디오 등 중계방식에 의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횟수는 총 102건이었다.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실시된 비디오 중계방식 등에 의한 신문 중 아동복지법상 특정 범죄의 대상이 되었던 아동 피해자에 대해서 실시된 횟수가 9건이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특정 범죄의 대상이 되었던 아동이나 청소년 및 그 피해자

534)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앞의 자료, 73면.

535) 사법망은 정부고속망과 100Mbps의 대역폭으로 연결되어 있다.

536)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앞의 자료, 73면.

에 대하여 실시된 횡수가 42건이었다. 한편, 아동이나 청소년은 아니지만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적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수 있다고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비디오 중계방식 등에 의한 증인신문이 총 5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제도에 대한 평가

증인과 피고인 및 방청인 사이에 차단장치를 설치한 후 증인을 신문하는 방식은 증인의 프라이버시와 신변을 보호함과 동시에 증인의 원활한 진술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한걸음 더 나아가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이용하는 증인신문 방식은 증인을 법정 외에 뒤편으로써 더욱 확실하게 피고인 등과 격리시키는 한편, 피고인 등이 모니터를 통해 증인의 진술상황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폐조치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한층 더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이다.⁵³⁷⁾ 요컨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제도는 형사소송 관련자들과 방청객과의 직접적 대면으로 인해 증인이 받을 정신적 고통이나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고, 보복범죄의 우려 등으로 인해 법정 출석을 기피하는 증인의 진술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허위증언의 가능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실제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법정에서 직접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통상의 증거조사 방법에 비해 심증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취약한 부분이 있으며, 모니터의 선명도가 떨어지는 등의 기술적 문제로 인해 증인신문 과정의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신뢰관계인이 화상증언실에 동석할 경우에는 증인의 진술과정에 개입할 여지가 있는데, 이때 재판부가 신속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우며, 화상증언실에 실물화상기가 지원되지 않음으로써 서류에 대한 진정성립 및 증거제시 과정에 번거로움이 수반되고 있다고 한다.

537) 도종진,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고찰”, 피해자학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2, 188면.

제3절 교정단계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의 활용

1. 원격화상접견제도

법무부는 수용자의 가족들이 힘들게 교도소를 찾아야 하는 불편을 감소시켜주기 위해 원격화상접견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림 4-1〉과 같이 운영되는 원격화상 접견제도는 수용자의 가족이나 친지 등이 수용자가 있는 교정시설까지 직접 찾아가지 않더라도 인근 교정시설에 방문하여 교정시설 간에 설치된 전산망을 이용하여 먼 거리에 있는 수용자의 모습을 보면서 직접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접견시스템이다. 원격화상접견제도는 2000년 수원교도소와 김천소년교도소 사이에서의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01년에는 영등포 교도소와 부산교도소 등 5개 기관으로 확대·운영되었고, 2003년 3월 3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설치·운영되었다.⁵³⁸⁾ 종래 PC 기반의 화상접견시스템을 확대하는 데에는 PC는 물론이고 카메라와 캡코더 등 별도의 장비를 갖추어야 했기 때문에 영상전화기에 비해 6배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었고, 스피커를 통한 음성 울림현상이 심각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2004년 법무부는 기존의 화상접견시스템을 영상전화기⁵³⁹⁾를 이용한 시스템으로 전면 교체하였다.⁵⁴⁰⁾ 원격화상접견은 전국의 모든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동일민원인에 의한 동일수용자의 화상접견은 1일 1회로 제한되며, 1인의 민원인이 같은 날에 2명 이상의 각각 다른 수용자를 화상으로 접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화상접견도 접견횟수에 포함되며, 교도관이 참여하는 등 일반접견과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화상접견은 평일 및 토요일에 실시하고,⁵⁴¹⁾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해서 예약신청을 해야 하며,⁵⁴²⁾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근 교정시설로 직접

538)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앞의 자료, 71면

539) 영상전화기는 국내 C&S 테크놀로지가 개발·판매하고 있는 CIP-4500로서, 4인치의 디스플레이와 카메라가 통합된 제품이다.

540)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앞의 자료, 71면

541) 일요일, 국경일, 국가지정기념휴일 등의 공휴일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일반적으로 접수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받고, 접견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루어지는데, 기관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542) 전화 1544-1155 또는 인터넷(법무부 전자민원서비스)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찾아가서 신청할 수 있다. 민원인이 화상접견을 신청할 때에는 우선 접견하고자 하는 수용자가 어느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신청인은 예약된 화상접견시간 10분전까지 방문이 예정된 교정시설의 민원실에 도착해서 담당직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⁵⁴³⁾ 수용자의 조사·징벌, 이송, 검사조사, 재판, 사회견학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접견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화상장비를 파손한 경우에는 변상해야 한다.⁵⁴⁴⁾ 원격화상접견시스템은 수용자의 가족이나 친지 등이 원거리에 있는 수용자를 방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감소시켜주는 편리한 제도라고 평가된다. 이에 한걸음 더 나아가 법무부는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수용자의 가족 등이 인근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어디에서건 접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원인 인터넷접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하였다.⁵⁴⁵⁾



그림 4-1 원격화상접견 진행 모습⁵⁴⁶⁾

543) 사전에 취소하지 않고 화상접견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화상접견이 예정되어 있던 날로부터 10일간 화상접견을 예약할 수 없다.

544) 교정본부 홈페이지 참조, http://www.corrections.go.kr/HP/TCOR/cor_07/cor_7030.jsp (2012년 10월 20일 최종접속).

545) “법무부, 2012년 대통령 업무보고 ‘공정한 법집행 話頭로… 온라인 선거범죄 공감할 양형기준 마련’”, 법률신문, 2011년 12월 26일자; 법무부, “2012년 중점 추진 정책”, 대통령 업무 보고(2011. 12. 26),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법치 실현”이라는 주제 하에 수행자 재기 및 가족 지원의 일환으로 수형자 화상면회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족과의 만남에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발표.

546) 교정본부 홈페이지 참조, http://www.corrections.go.kr/HP/TCOR/cor_07/cor_7030.jsp (2012년 10월 20일 최종접속).

2. 원격화상진료제도

2005년 법무부는 외부 병원진료를 희망하는 수형자나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수형자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원격화상진료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수형자들이 외부 병원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 나갈 경우 2~3명의 교도관들이 동행해야 했기 때문에 수형자들에게 적극적인 의료처우를 제공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원격화상진료제도가 도입되면서 수형자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게 되었고 보안인력의 낭비도 막을 수 있게 되었다.⁵⁴⁷⁾ 증가하는 외부진료 수요에 대처하면서 외부의료시설 이송시 발생하는 계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원격화상진료 시스템은 2010년 기준으로 16개 교정기관에 구축되어 있으며, 동 시스템을 통해 진료를 받는 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아래의 <표 4-1>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원격화상 진료를 받은 인원과 치료비 집행내역을 나타낸 것이다. 2008년 원격화상진료를 받은 수용자는 총 3,009명이었고, 그 중에서 미결수용자는 612명, 수형자는 2,397명이었다. 2009년에는 총 4,954명의 수용자가 원격화상진료를 받았고, 이는 전년도 대비 64.6% 증가한 수치였다. 2010년의 경우, 원격화상진료 시스템을 활용한 수용자는 총 5,853명으로 증가하였고, 그 중 대부분의 치료비는 국가가 부담하였다.

표 4-1 원격화상진료를 받은 인원과 치료비 집행내역⁵⁴⁸⁾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진료	인원	3,009	4,954	5,853
	기결	2,397	3,546	4,208
관비·자비 · 무료	미결	612	1,408	1,645
	관비	2,986	4,248	5,000
	자비	21	608	784

547) “법무부, 외국인수형자 인권 ‘적극 신장’”, 경향신문, 2006년 2월 21일자. 교도소 내의 원격화상시스템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바, 법무부 주최로 열린 출소에정자 취업박람회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동 시스템이 활용되어 화상면접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취업박람회, 교도소 담장 넘다”, 동아일보, 2009년 10월 27일자.

548) 교정통계연보,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기획과, 2011, 147면.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치료비 집행내역 (원)	무료	2	98	69
	관비	146,340,320	165,605,000	214,847,000
	자비	2,100,990	26,509,000	34,128,000
	계	148,441,310	192,114,000	248,974,000

한편 <표 4-2>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원격화상진료가 이루어진 과목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다양한 과목의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신과 진료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의 경우 원격화상진료를 받은 총 5,853명의 수용자 중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람이 3,760명(64.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신경내·외과 진료를 받은 자가 554명(9.5%)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표 4-2 원격화상진료 과목별 현황⁵⁴⁹⁾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내분비과		109	165	242
비뇨기과		80	245	208
호흡기내과		20	12	27
소화기내과		199	283	227
심장내과		109	86	115
정신과		1,695	3,219	3,760
정형외과		452	184	276
신경내외과		309	460	554
피부과		3	175	329
기타		34	125	115
계		3,009	4,954	5,853

549) 교정통계연보,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기획과, 2011, 148면.

제5장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 시스템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방안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방안

제1절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을 위한 법적 정비 방안

1.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이 가능한 형사절차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의 활용은 모든 절차관계인들이 매체를 통해 대면하여 구두로 진행될 수 있고, 사전에 녹화된 영상물을 방영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는 점에서, 직접주의의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친화적이다. 그러나 형사절차에 원격화상시스템이 이용되려면 동 시스템의 활용으로 인한 이익이 직접주의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으로 인한 이익보다 커야 한다. 특히,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편의주의라는 명목 하에 사실상 무효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하므로,⁵⁵⁰⁾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을 대상으로 동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적 진실의 발견을 비롯한 증인 등의 보호나 사법

550) Thompson v. Smith, 154 S.E. 579(Supreme Court of Appeals of Virginia, 1930) at 584.

의 효율성 제고 등의 이익이 직접주의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으로 인한 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평가됨으로써 원격화상시스템의 활용이 모색될 수 있는 형사절차로는 공판전 절차와 공판과정에서의 증인신문 등을 들 수 있다.

가. 수사 단계

수사 단계에서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원거리에 있는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불편을 최소화시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보복우려 등으로 인해 수사에 협조하지 못하는 자들을 보호하여 진술을 확보함으로써 실제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 2004년 원격지 화상조사제도를 도입했던 경찰의 경우, 수사촉탁제도가 활성화되면서 더 이상 원격화상조사를 이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편의나 사법비용의 절감이라는 측면이 아닌 피의자나 참고인의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여전히 동 제도는 수사 단계에 활용될 필요가 있다. 특히, 참고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크고 참고인의 출석을 강요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참고인이 원격지나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쌍방향 비디오와 오디오 전송을 통해 동시에 소통할 수 있는 상호적 의사소통 기술인 원격화상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참고인의 시간적·정신적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직접대면과 유사한 방법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실제적 진실 발견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한편, 피의자나 참고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국의 사법주권 침해 문제로 인해 수사진행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 문제는 2009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재외국민선거제도가 도입되면서 당면과제로 떠올랐고, 자칫 법 집행의 사각지대가 될 뻔했던 재외국민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및 참고인 등에 대하여 인터넷화상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재외국민에 대한 화상조사제도가 비단 선거사범에 대해서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재외국민은 물론이고 외국인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 바, 해당국의 사법주권 침해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면서 실제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원격화상시스템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등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원격화상시스템이 이용될 수 있는데, 우선 검사는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피의자를 면담하는 과정에 동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면담제도⁵⁵¹⁾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피의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인권친화적 제도로 평가되나,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간적 한계⁵⁵²⁾와 함께 경찰관의 계호 부담 등으로 인해 대면면담이 아닌 전화면담으로 대체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⁵⁵³⁾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에 원격화상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계호 부담의 문제를 경감시키면서도 전화면담에 비해 한층 더 직접대면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원격화상시스템은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거나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를 심사하기 위해 피의자를 심문하는 과정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⁵⁵⁴⁾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가 확대될 당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는바,⁵⁵⁵⁾ 피의자의 호송문제도 그 논의의 쟁점 중 하

551)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9조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의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 구속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조사할 수 있다.

552)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553) 형사사법공동시스템운영단, 앞의 자료, 60면.

554) 판사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경우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도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555)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는 1995년의 제8차 형사소송법 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는 판사가 구속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게 한 임의적 심문제도였다. 이러한 임의적 심문제도는 1997년 제9차 형사소송법 개정에 의하여 신청에 의한 심문제도로 개정되었다. 즉 판사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는 때,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는 구속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심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대법원이 체포된 피의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피의자를 심문하면 된다고 해석함에 따라(대법원 1999. 8. 20, 99도 2029), 신청에 의한 피의자심문제도는 신청에 의한 임의적 심문제도가 되었다. 그러나 영장주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피의자의 대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가 필요적 제도가 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계속되었고, 이에 따라 2007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서 피의자의 의사나 법관의 필요성 판단과 관계없이 필수적으로

나였다. 피의자심문을 위해 법원에 피의자를 호송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적·물적 자원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도주 방지를 위해 취해지는 조치(포승이나 수갑 등)들로 인해 인권침해의 우려가 제기되며, 경찰서와 법원 간의 거리가 멀거나 교통상황이 혼잡한 때에는 정해진 시간에 피의자를 호송할 수 없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 경우 원격화상시스템을 이용한다면, 호송시 발생하는 인적·물적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신속하게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검사나 판사를 직접 대면하고자 하는 피의자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마땅하므로, 피고인이 스스로 동의한 경우에만 원격화상시스템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 증인신문

공판과정에서 증인의 증언은 형사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제공된다.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증인의 법정 출석이 용이해진 측면이 있으나, 여전히 사람들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고 정신적 부담이 수반되는 증언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공판정에서 증언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비롯한 재판 관련자들 앞에서 진술하는 것으로 인해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을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제도가 규정되어 있고, 성폭력범죄 피해자 이외의 증인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등과의 대면에서 오는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정신적 평온 상태를 현저히 잃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이 이루어지도록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다. 공판과정에서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하는 영상재판은 피고인의 호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보안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그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이후 아동학대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등이 공판과정에서 받게 될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증인이 피고인 등과의 대면으로 인해 정신적 평온 상태를 현저히 잃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로 대표되는 원격화상시스템을 통하여 신문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형사소송법에

피의자심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였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이재상, 앞의 책, 260-262면.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적정절차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은 소송의 주체로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원격화상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피고인이 증인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반대신문권 행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일정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가해지고 있는 바, 피고인의 방어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고 이익형량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요컨대, 일정한 요건 하에 증인보호라는 이익을 위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제약될 수 있으며, 차폐시설을 통한 증인신문 및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은 물론이고 피고인 퇴정후의 증인신문도 허용하고 있다. 피고인 퇴정 후의 증인신문과 비교할 때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은 원격화상시스템을 매체로 할 뿐, 피고인이 시각적·청각적으로 증인과 대면한 상태에서 반대신문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한층 더 친화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원격화상시스템은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다. 우선, 증인이 원거리에 있어서 공판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 법원 등에 설치된 원격화상시스템을 통해 증언하도록 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각적·시각적 장치를 모두 활용하여 피고인과 기타 재판관계인이 재석한 공판정이 그 외연을 증인이 위치한 장소로까지 확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피고인의 방어권 제약을 최소한에 그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증인이 피고인을 비롯한 재판관련자들과 방청객들을 대면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경우에는 증인을 공판정 외에 설치된 증언실에 두고 원격화상시스템을 이용해서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인이 자신의 얼굴이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재판부만 모니터를 통해 증언 과정을 지켜보고, 그 외 공판정에 있는 사람들은 증인의 음성만을 듣게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증인이 피고인과 마주 대하는 것만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면, 증인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하고,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이 화상증언실에서 증언을 청취하도록 할 수 있는데, 이는 법원에서의 증거조사를 통하여 태도증거에 의한 정확한 심증을 얻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직접주의에 완전히 부합한다. 이를 위해서는 구속 피고인의 경우에는 호송 교도관의 협조를 받아 화상증언실로 이동해야 하고, 불구속 피고인

의 경우에는 피고인 혼자 화상증언실로 이동한 후 증인의 진술을 듣게 된다. 이때 화상증언실에 있는 피고인은 재판부의 모습만 모니터를 통해 시청할 수 있을 뿐, 증인의 진술은 음성으로만 청취하게 된다. 물론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으로 하여금 화상증언실에 가서 피고인과 접견하도록 한 후 피고인을 대신 하여 법정에서 증인에게 추가로 신문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2012년 6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6부가 소송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이러한 방식으로 성폭력사건의 피해자 증인(성인 대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행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타나는 심증 형성의 어려움은 재판부와 증인의 직접 대면을 통해 극복되었고, 재판부와 증인의 심리적 유대감이 강화되는 부대 효과도 있었다고 한다.⁵⁵⁶⁾

형사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발견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증인이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원거리 이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원격화상시스템은 증언 확보를 위한 유용한 장치가 된다. 앞서 입법례에서 검토했던 국가들에 비해 국토면적이 좁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 필요성이 약화될 수 있으나, 외국인 관련 형사사건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유럽연합 내 회원국들이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경을 넘어서 비디오컨퍼런싱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해외도피사범들이 지리적 접근성과 경제·문화적 교류의 증대 등으로 인해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도피처로 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⁵⁵⁷⁾ 중

556) 10여건의 구속사건과 7건 가량의 불구속사건에서 피고인을 화상증언실에 두고, 증인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나 피고인 측은 물론이고 증인 등 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고, 오히려 검사는 이러한 원격화상시스템 활용 방식을 더욱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인이 낯선 법정에서 증언함으로써 느끼는 부담감은 증인지원관 제도를 통해 경감되었고, 법정에서 재판장이 추가로 증언절차를 안내하고, 심리적 안정을 취하도록 사전 설명을 매번 실시하였기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오히려 재판부가 법정에서 직접 증인을 대면한 상태에서 양측의 부적절한 질문에 대하여 사전 제한조치를 취하고, 증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소송지휘 과정을 현출시킴으로써 피해자가 재판절차를 이해하고 만족감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화상증언실을 통한 증인신문방식 개선 방안 검토: 성폭력 피해자 증인조사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해당 증거조사 관련 문건.

557)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주한 내국인들이 선호하는 도피처로는 과거 미국이 절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지금도 많은 해외도피사범들이 미국을 도피처로 선택하고 있으나, 중국 등 동남아시아로 도피하는 사례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권역으로 도피한 사례가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지역으로 도피한 사례를 숫자상으로 압도하고 있다. 김경근, “중국의 형사사법공조, 범죄인인도, 수형자이송에 관한 사례 연구”, 국

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거점으로 한 보이스피싱 및 불법온라인 도박 등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 현재의 사법공조 시스템만으로는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다.⁵⁵⁸⁾ 해당국의 협조를 얻어 수사 및 재판과정에 비디오컨퍼런싱을 활용할 수 있다면 형사사건 처리에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권 내에 새로운 사법공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국내적 상황을 고려한 정책만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보다 거시적인 관점이 반영된 정책도 적극적으로 수립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편, 과학적 지식이나 정보가 공유되면서 특정 전문분야의 이슈와 관련해서는 단지 국내적 논의로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때에는 국외의 저명한 전문가들의 증언을 직접 들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외에 있는 전문가를 불러서 국내 법정에서 진술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에 있는 자들을 출석시킬 때에 비해 훨씬 많은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소요될 것인 바, 이 경우에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한다면 소송경제적 측면에서 상당한 효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유치인과 수용자 등에 대한 접근

유치인이나 수용자 등의 접근에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유치인 또는 수용자의 가족이나 친지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다. 현재 유치인에 대한 화상면회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최근 일부 경찰서에서는 태블릿 PC의 영상통화 기능을 기반으로 한 화상면회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수용자의 가족이나 친지 등이 수용자가 있는 교정시설까지 직접 찾아가지 않더라도 인근 교정시설에 방문하여 교정시설 간에 설치된 전산망을 이용해서 먼 거리에 있는 수용자의 모습을 보면서 직접 대화할 수 있도록 원격화상접견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수용자의 가족 등이 인근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해야만 접견을 할 수 있다

위헌권검사 연구논문집 제26집, 법무연수원, 2011, 493면 참조

558) “해외도피사범은 늘어나는데 국내송환은 줄어”, 경향신문, 2011년 10월 4일자. 2011년 법무부가 발표한 국내송환 해외도피사범은 26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 하나, 전체 해외도피사범 규모와 비교하면 여전히 미진한 측면이 있다(“해외도피사범 작년 26명 국내송환… 역대 최고 기록”, 법률신문, 2012년 3월 30일자 참조).

는 점에서 유치인 화상면회제도에 비해 불편한 측면이 있다. 이에 법무부는 수용자의 가족 등이 인근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어디에서건 수용자를 접견할 수 있는 민원인 인터넷접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법원과 경찰 및 교정기관에 구축된 화상회의시스템은 변호인이 피의자나 피고인을 접견하는 과정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중요한 쟁점은 직접 대면접견을 통해 논의되었지만,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항은 화상회의시스템을 통해 논의됨으로써 변호인이 구치소나 교도소로 이동하는 시간이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원격화상시스템은 판결 전 조사과정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현재 보호관찰관은 합리적인 양형을 위해 피고인의 양형 참작사항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⁵⁵⁹⁾ 구치소마다 설치되어 있는 피고인 접견실은 그 수가 한정적이므로 접견자가 많을 경우에는 장시간 대기를 피할 수 없다. 더구나 수사접견실과 함께 있는 구치소의 경우에는 주변 소음 등으로 인해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기도 하는 바, 원격화상시스템을 이용한다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석방 대상자를 상대로 보호관찰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는 조사 과정에도 동 시스템의 활용을 고려해볼 수 있다. 즉,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광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서울에 있는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강원지역의 수용시설까지 조사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내실 있는 면담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는데, 이 과정에 원격화상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그 실익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⁵⁶⁰⁾

2. 법적 정비 방안

가.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을 위한 입법 형태

원격화상시스템과 관련해서는 1995년 12월 6일 제정된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별법이 있다. 교통이 불편한 도서·산간벽지의 주민이 원거리에 있는 법정에 직접

55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소년법(제12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1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8조) 등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560)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앞의 자료, 65면.

출석하지 아니하고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법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제정된 동법은 민사소액사건과 화해·독촉·조정사건, 즉결심판과 협의이혼사건 등을 대상으로 한다.⁵⁶¹⁾ 이에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물론이고 수사 및 공판전 과정에서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절차상의 특례를 규정하는 특별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한다.⁵⁶²⁾ 민사 전자소송에 관해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형사소송의 전자화에 관해서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과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만큼,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의 활용과 관련해서도 특별법을 마련하여 제도적 일관성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 등과의 대면으로 인해서 정신적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수 있는 자에 대한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이 규정되어 있다.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의 도입 취지를 효과적으로 반영함과 아울러 통일적인 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원격화상시스템을 입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나. 형사소송법 정비 방안

우선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원거리에 있거나 보복 우려 등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못할 경우에 이들의 동의를 전제로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재외국민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나 참고인 등에 대한 인터넷화상조사의 규정은 가능한 형사소송법에 체계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 즉, 비단 선거사범이 아니더라도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나 참고인이 해외에 있을 때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해서 이들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

561)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적용 범위)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만 원격영상재판을 할 수 있다.

1.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건(같은 항 제3호의 사건은 즉결심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원격영상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의 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시법원 또는 군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562) 형사사법공동시스템운영단, 앞의 자료, 59면.

는 것이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재외공관에 출석한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를 상대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진술을 들을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무부 및 외교통상부를 경유하여 해당 재외공관의 장에게 조사할 사건에 관하여 통보하여야 하고, 진술을 들을 때에는 영사가 참여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진술 내용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할 수 있고, 그 과정을 영상 녹화하여야 하는데, 피의자가 아닌 자의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 또한 진술 청취의 절차 및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1조(피의자신문),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제243조의2부터 제245조까지(변호인의 참여 등,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수사과정의 기록,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참고인과의 대질)를 준용한다. 한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작성한 조서를 재외공관에 전송하고, 영사는 이를 출력하여 진술자에게 열람케 하여야 한다. 이후 영사는 완성된 조서를 외교통상부 및 법무부를 경유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는데, 상기의 절차에 따라 작성된 조서는 국내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한편 재외선거사범에 대한 인터넷화상조사제도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재외공관 출석이 담보되지 않는 한 제대로 활용될 수 없다는 한계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에 해당국의 사법주권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에 불응하는 자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등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면담제도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 근거한 제도로써 현재 대면면담이 아닌 전화면담으로 대체되기도 하므로, 형사소송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지 않더라도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에 원격화상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원격화상시스템을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거나 체포 또는 구속적부를 심사하기 위해 피의자를 심문하는 과정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동 시스템 활용에 대한 피의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심문을 지체 없이 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로 하여금 피의자의 동의를 전제로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후 원격화상시스템을 통해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신설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증인신문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형사소송법이 피고인 등과의 대면으로 인해 정신적 평온 상태를 현저히 잃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증인이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원거리 이동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원격화상증언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증인의 법정외신문을 규정하고 있고(형사소송법 제165조),⁵⁶³⁾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 등을 부과시키거나(동법 제151조),⁵⁶⁴⁾ 구인할 수 있도록 규정(동법 제152조, 제166조)⁵⁶⁵⁾하고 있는 바, 정당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증인이 해당 기일에 공판정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뿐 원격화상시

563) 형사소송법 제165조(증인의 법정외신문) 법원은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법정외에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다.

564) 형사소송법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 ①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6조 제2항 제5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 ③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 ④ 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과 교도관 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 등이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 ⑤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경우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⑥ 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 ⑦ 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⑧ 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65) 형사소송법 제152조(소환불응과 구인)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66조(동행명령과 구인)

-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결정으로 지정한 장소에 증인의 동행을 명할 수 있다.
- ②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동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구인할 수 있다.

시스템을 통해 증언할 수 있다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을 전제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이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해 증언의 가능성을 상실하는 것보다 실제적 진실발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증인을 신문할 수 있는 규정(동법 제167조)⁵⁶⁶⁾도 마련되어 있지만, 화상시스템을 통해서라도 증인을 보면서 진술을 듣는 것이 재판부의 심증형성이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보다 부합할 수 있다. 특히, 증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에 출석하여 원격화상증언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국가의 법정 또한 원격화상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우리나라와의 사법공조가 전제된다면 해당국의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방안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증인보호를 위해서 신문절차에 피고인을 참여시키지 않을 수 있는데(동법 제164조), 재판 중 피고인을 퇴정시킨 후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퇴정된 피고인을 배제한 채 공판을 진행하는 것보다 피고인으로 하여금 화상증언실에서 증언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다 적절하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증인보호가 요청되는 정도에 따라 증인신문도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인 바, 원격화상시스템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66) 형사소송법 제167조(수명법관, 수탁판사)

- ① 법원은 합의부원에게 법정외의 증인신문을 명할 수 있고 또는 증인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그 신문을 촉탁할 수 있다.
- ② 수탁판사는 증인이 관할구역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 ③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증인의 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에 속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절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을 위한 제도적 정비 방안

1.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을 위한 망 구축

형사사법절차에서 원격화상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들 간에 실시간 통신이 가능한 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각 부처의 망을 연계하는 방안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으로 운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가. 관련부처의 독립망 연계 방안

현재 형사사법 관련 부처인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외교통상부가 각각 운영하고 있는 원격화상시스템은 모두 국제표준 프로토콜(H323, SIP)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간 상호 연동을 통한 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형사사법 관련 부처 간에 원격화상시스템을 연동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독립망 사이에 실시간 데이터 통신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전용회선을 구축하거나 정부고속망과 연계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외교통상부에 별도의 전용회선을 구축한 후 각 독립망을 연계한다면 매년 전용회선 유지비용으로 6,000만원⁵⁶⁷⁾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대부분의 부처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부고속망을 통해 연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평가된다.⁵⁶⁸⁾ 다만 현재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찰망과 정부고속망 사이에는 화상장비 연동을 통한 실시간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아래의 <그림 5-1>은 형사사법 관련 부처별 독립망을 정부고속망을 통해 연계하는 방안을 나타낸 것이다.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을 위해서 행정안전부가 관련부처에 정부고속망 IP를 할당하면, 각 기관들은 정부고속망을 통해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⁵⁶⁹⁾

567) 10Mbps의 전용회선 1개의 유지비로 월 100만원 가량이 소요되므로, 기관 당 1회선씩 구축된 총 5개의 전용회선을 1년간 유지하는 데에만 약 6,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568)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앞의 자료, 76면

569) 부처 간 독립망 연동을 위해 회선을 증설하거나 보안을 강화하는 것은 해당부처의 네트워크 환경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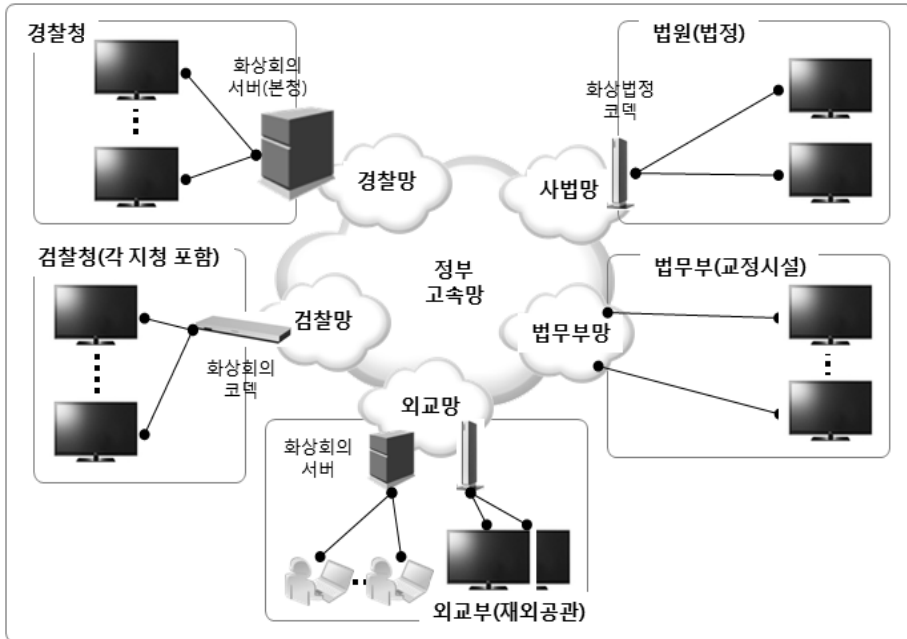


그림 5-1 형사사법 관련 부처별 독립망 연계 방안⁶⁷⁰⁾

나. 인터넷 기반 원격화상시스템 운용 방안

〈그림 5-2〉와 같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원격화상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우선, 재판 전 단계의 형사절차에서는 경찰과 법무부 및 외교통상부가 각각 구축하고 있는 화상회의시스템에 검찰을 개별 사용자로 등록시킴으로써 기존 시스템들을 활용할 수 있다. 부처별 독립망에서 운용되고 있는 화상회의시스템을 인터넷을 통해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VPN⁵⁷¹⁾ 솔루션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므로, 현재 동 솔루션이 미비되어 있는 경찰망의 보완이 전제되어야 한다. 향후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고, 이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

570) 형사사법공동시스템운영단, 앞의 자료, 76면

571) VPN(Virtual Private Network)은 인터넷과 같은 공중망(Public Network)을 사설망처럼 이용함으로써 회선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통신서비스로 암호화 기술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도입이 필요한 경찰 VPN 솔루션은 Client 보호⁵⁷²⁾는 물론이고 VPN 서비스 포털 시스템 보호 기능,⁵⁷³⁾ 인증 강화⁵⁷⁴⁾ 및 VPN 기능⁵⁷⁵⁾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검찰이 외교통상부의 VPN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법원에서 검찰청과 교정시설 및 재외공관에 설치되어 있는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하여 형사절차 관련자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인터넷 기반의 신규 화상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VPN 솔루션이 구비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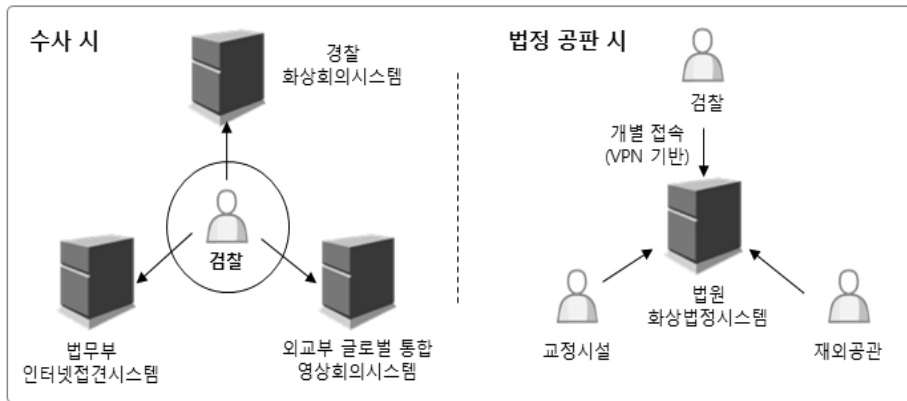


그림 5-2 인터넷 기반 원격화상시스템 운용 방안⁵⁷⁶⁾

572) 사용자 개인용 PC 보안을 위해 키보드 해킹을 방지하고, 온라인 바이러스 백신을 적용하는 기능이 갖추어져야 한다.

573) 네트워크 패킷 모니터링 시스템과 실시간 유해트래픽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서버보안 및 DB 암호화 솔루션이 운영되어야 한다.

574) 주요 업무 수행 시에 GPKI 기반의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고, ID/PW 로그인과 GPKI 인증서 로그인을 분리하여 주요 서버 접근제어를 수행하는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575) 통신구간 암호화, 통신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 유해 트래픽 탐지 및 차단 등을 통해 패킷이 암호화되므로, 통신구간 도청 등으로 통신내용 파악이 불가능하고, 전송되는 데이터의 무결성이 보장되므로 데이터의 위·변조 탐지 및 방지가 가능하다.

576)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앞의 자료, 79면.

2. 장비의 개선 및 설비의 표준화

가. 장비의 개선

종래에 민사소액사건과 즉결심판 등을 대상으로 도입되었던 원격영상재판은 동 제도에 관한 사법담당자들의 인식 부족과 함께 기술적 제약이라는 한계에 부딪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였다. 당시의 기술로는 원격화상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는 재판은 공판정에 직접 출석해서 진행하는 재판과 비교했을 때 현격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제도의 활용률이 저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시스템을 유지하는데에 과도한 운영비가 지출되고, 장비가 노후화되자 시스템을 폐기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눈부시게 발전한 과학기술은 원격화상시스템을 통해서도 생동감 있게 현장에서와 유사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저비용으로 효율성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격화상시스템 활용과 관련하여 기술적 문제는 제도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바, 종래에 노후된 장비는 새로운 기술이 반영된 장비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현재 원격접견을 위해 교정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화상전화기는 저사양의 카메라와 4인치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관계로 수사나 공판절차에 활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에 법무부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민원인 인터넷접견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 바, 동 시스템이 화상접견은 물론이고 수사 및 공판정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품질이 확보된 고급 사양의 화상회의 장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무망 내에 동 시스템을 구축한 후 국제표준(H.323, SIP)이 적용된 솔루션을 도입함으로써 검찰 및 법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인터넷접견시스템을 이용하는 별도의 공간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오디오 시스템에 음성변조의 기능을 추가시키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음성변조는 재판부의 정확한 심증 형성에 방해가 될 수 있으나, 보복의 우려 등으로 인해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하고자 하는 증인의 입장에서는 목소리를 통해 자신의 신원이 확인되는 것도 원치 않을 것이다. 물론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약하고서라도 증인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피고인을 퇴정시킨 후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성으로라도 재판진행 과정을 파악한 후 반대신문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만 헤드폰을 통해 변조된 음성을 듣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설비의 표준화

카메라나 마이크 등 장비의 질적 차이에 따라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 이용의 결과가 현격히 다르게 도출될 우려가 있는 바, 동일한 종류의 장비를 동일한 방식으로 설치하는 설비의 표준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법원에 따라서 2개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부터 법정의 다양한 조망을 보여주고자 6개의 복합 카메라 시스템을 사용하는 곳까지 다양하며, 모니터의 사이즈도 9인치에서부터 45인치까지 천차만별인 바, 이로 인해 시스템 활용의 효과가 현저히 다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⁵⁷⁷⁾ 또한 사법절차에서 비디오컨퍼런싱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유럽연합에서도 설비의 종류와 배치의 표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원격화상시스템을 본격적으로 형사절차에 활용하려면 어떤 유형의 공간에서건 동일한 종류의 장비가 동일한 방식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설비의 표준화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우선 카메라나 마이크 등의 설비는 원격화상시스템을 이용하는 형사절차 참여자들이 본격적인 절차 진행에 앞서 필요최소한의 조정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또한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을 위해 만든 전용시설(예컨대, 화상수사실이나 화상증언실)이 아닌 법정에는 통상의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도 고려하여 설비를 배치해야 한다. 또한 발언은 명료하게 전달되어야 하는 바, 일정한 음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반향을 소거해야 하며, 잡음이나 잔향을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줄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입술의 움직임과 음성을 최대한 일치시켜야 한다. 그리고 마이크는 잡음에 의해 소리가 왜곡되지 않는 방식으로 설치되어야 하고, 마이크의 동시 사용으로 인해 혼선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마이크는 한 번에 한 개만 켜져 있어야 한다. 한편 스크린, 카메라, 스피커, 마이크 및 부대용품으로 구성된 이동식 설비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원격화상시스템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동식 설비는 원격화상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교정시설이나 병원

577) Patricia Raburn-Remfry, Id. 참조

등과 같은 특별한 장소에서 증인을 신문할 때 용이하게 쓰일 수 있고, 고정 설비가 고장난 경우에 일시적인 보충장비로도 활용될 수 있다. 나아가 원격화상시스템은 사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조작법이 단순해야 한다.

3. 국제형사사법공조

형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재외국민은 물론이고 해외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 바, 이들을 국내의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직접 출석시켜 진술을 취득하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원격화상시스템의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다만, 해당국의 사법주권 침해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면서 동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제형사사법공조가 전제되어야 한다. 국제형사사법공조란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해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협력행위를 말한다.⁵⁷⁸⁾ 국제거래 및 해외교류의 확대로 범죄의 수사과 재판에도 외국과의 협조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활발하게 만들었는데, 이는 범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요컨대, 수개의 국가와 관련성이 있는 국제적 범죄가 발생하는가 하면, 범죄인이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더 이상 범죄는 특정 국가의 국내문제로만 치부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된 것이다. 종래에 범죤인인도로 시작된 사법공조는 증인이나 감정인에 대한 신문, 압수, 수색, 검증, 문서송달 등의 국제형사사법공조로 이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과 관련하여 외국과 협조하는 범위와 그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의 진압과 예방에 국가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범죄의 국제화추세에 대비하기 위해 1991년 3월 8일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을 제정하였고⁵⁷⁹⁾ 공조의 범위에 진술 청취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⁵⁸⁰⁾ 동법은 공

578) 김주덕, “형사사법공조”, 형사정책연구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219면

579) 법률 제4343호로 공포된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은 1991년 4월 8일부터 시행되었다.

580)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5조(공조의 범위) 공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에 대한 수사

조의 범위와 제한, 외국의 요청에 따른 수사에 관한 공조, 외국의 요청에 따른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 외국에 대한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 및 외국에 대한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요청 등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개별 공조조약은 동법과 다른 규정을 둘 수 있다.⁵⁸¹⁾ 2012년 3월 31일 현재, 우리나라는 28개국과 형사사법공조 양자조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20개국과 조약이 발효되어 시행 중에 있다.⁵⁸²⁾ 유럽연합은 회원국 간은 물론이고, 미국 및 일본 등과 원격화상방식에 의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수사공조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⁵⁸³⁾ 우리나라도 향후 국제사법공조 협약을 체결하거나 개정할 때 원격화상방식에 의한 수사 및 증인신문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2. 서류기록의 제공

3. 서류 등의 송달

4. 증거 수집, 압수수색 또는 검증

5. 증거물 등 물건의 인도(引渡)

6. 진술 취회, 그 밖에 요청국에서 증언하게 하거나 수사에 협조하게 하는 조치

581)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3조(공조조약과의 관계) 공조에 관하여 공조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582) 1993년 12월 호주를 시작으로 미국, 캐나다, 프랑스, 중국, 홍콩, 러시아, 몽골, 뉴질랜드,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 인도, 브라질, 멕시코, 일본, 알제리, 필리핀, 쿠웨이트, 불가리아 등 20개국과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하여 시행중에 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벨기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페루 등 8개국과 조약이 체결되어 발효될 예정이며, 캄보디아, 루마니아, 파라과이와는 협상 중에 있다.

대검찰청 홈페이지, <http://www.spo.go.kr/spo/major/network/network01.jsp> (2012년 10월 20일 최종접속).

583) 유럽연합과 미국의 원격화상시스템을 이용한 형사사법공조에 대해서는 Agreement on mutual legal assistance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OJ L181/34 of 19/07/2003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3:181:0034:0042:EN:PDF>), Council Decision 2009/820/CFSP of 23 October 2009 on the conclusion on behalf of the European Union of the Agreement on extradition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Agreement on mutual legal assistance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참조; 유럽연합과 일본의 원격화상시스템을 이용한 형사사법공조에 대해서는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Japan on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OJ L39/20 of 12/02/2010;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10:039:0020:0035:EN:PDF>), 2010/616/EU: Council Decision of 7 October 2010 on the conclusion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Japan on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참조. 유럽연합 홈페이지 참조, http://europa.eu/legislation_summaries/external_relations/relations_with_third_countries/industrialised_countries/jl0052_en.htm; http://europa.eu/legislation_summaries/justice_freedom_security/judicial_cooperation_in_criminal_matters/jl0048_en.htm (2012년 10월 20일 최종접속).

4. 가이드라인 구비

형사절차에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운용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어야 한다. 우선, 원격화상 장치를 이용한 수사 및 재판 등을 주재하는 측에서는 해당절차의 진행 과정과 유의사항 등을 적시한 서면지침을 사전에 절차 참여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수사 및 재판절차에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하기에 앞서 장비 조작에 관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한편, 원격화상시스템을 통한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사건 관련자들의 공간적 위치에 대한 지침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미국의 대다수 주 법원은 비디오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검사는 판사와 함께 법정에 있는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과 함께 비디오를 통해 참석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 법정에 참석할 것인지를 선택적으로 결정한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피고인 옆에서 비디오를 통해 소송절차에 참여할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 간의 의사소통 능력은 향상될 수 있으나 판사와의 효과적 의사소통 능력은 약화될 것이고, 피고인 측 변호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할 경우에는 이와 반대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 요컨대, 검사나 피고인 측 변호인의 공간적 위치에 따라 비디오 소송절차의 결과가 다양하게 도출될 수 있으므로 이들의 위치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법정에서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으로 하여금 화상증언실에서 증언을 청취하도록 하는 경우, 사건 관련자들의 공간적 위치는 물론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치지 않도록 이동 동선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제6장 결론

한때 미래에나 실현 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던 원격화상시스템은 오늘날 교육, 행정부문은 물론이고 민간부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다. 형사사법 분야에서도 원격화상시스템은 비용 절감과 효율성 제고에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참고인 또는 증인 등의 보호 및 실제적 진실 발견이라는 측면에서도 동 시스템의 활용이 요청되고 있다. 물론 형사절차에서 원격화상시스템이 이용될 경우, 형사소송법상 직접주의에 반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이러한 쟁점은 형사절차상 출석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데, 현행 형사소송법상 출석은 “보이거나 들리는 범위 내”가 아닌 “물리적 출석”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용어의 근본적 의미나 일반적·상식적 이해에 부합된다. 또한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의 활용은 모든 절차관계인들이 매체를 통해 시각적·청각적으로 대면한 상태에서 구두로 진행되고, 사전에 녹화된 영상물을 방영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는 점에서, 직접주의의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친화적이다. 다만, 원격화상시스템이 이용되면 동 시스템의 활용으로 인한 이익과 직접주의 내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통한 이익을 비교衡量했을 때 전자가 후자보다 우세해야 하며, 후자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되어야 한다. 이에 현행 형사소송법은 증인보호를 위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공직

선거법은 해외에서 치러지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재외선거사범에 대한 인터넷화상조사제도를 도입하였다. 나아가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물론이고 수사 및 공판전 과정에서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절차상의 특례를 규정하는 특별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의 도입 취지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통일적인 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이라는 입법방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을 위한 형사소송법 정비 방안으로는 첫째,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원거리에 있거나 보복의 우려 등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못할 경우에 이들의 동의하에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재외국민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나 참고인 등에 대한 인터넷화상조사의 규정은 가능한 형사소송법에 체계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 둘째, 구속전 피의자 심문이 지체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피의자의 동의를 전제로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후 원격화상시스템을 통해 동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증인신문과 관련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은 증인이 피고인 등과의 대면으로 인해 정신적 평온 상태를 현저히 잃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더하여 증인이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해당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원격화상증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증인이 피고인과의 대면만을 두려워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화상증언실에서 재판 과정을 청취하도록 하고,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을 것인데, 이처럼 증인보호의 요청 정도에 따라 원격화상시스템을 이용한 증인신문이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을 위한 제도적 정비 방안으로는 첫째, 관련 부처들 간에 실시간 통신이 가능한 망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현재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 부처의 망을 연계하는 방안이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운용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둘째,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에 있어서 기술적 측면은 제도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노후된 기존의 장비는 새로운 기술이 반영된 장비로 교체할 필요가 있고, 오디오 시스템에 음성변

조의 기능을 추가시키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음성변조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정확한 심증 형성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나, 증인보호를 위해 피고인을 퇴정시키는 것보다 음성으로라도 피고인이 재판진행 과정을 파악한 후, 반대신문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만 헤드폰을 통해 증인의 변조된 음성을 듣게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카메라나 마이크 등 장비의 질적 차이에 따라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의 이용 결과가 현격히 다르게 도출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종류의 장비를 동일한 방식으로 설치하는 설비의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형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재외국민은 물론이고 해외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으로 인해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이 법제화되더라도, 해당국의 사법주권 침해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면서 동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제형사사법공조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격화상방식에 의한 수사 및 증인신문이 가능하도록 국제형사사법공조 강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형사절차에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운용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구비되어야 한다. 원격화상 장치를 이용해서 수사 및 재판 등을 주재하는 측에서는 사전에 절차 참여자들에게 해당절차의 진행 과정 및 유의사항 등이 적시된 서면지침을 배부하여야 한다. 또한 수사 및 재판절차에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하기에 앞서 반드시 장비 조작에 관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나아가 원격화상시스템을 통한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사건 관련자들의 공간적 위치에 대한 지침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보다 앞서 형사절차에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해 오고 있는 서구사회에서는 동 시스템이 형사절차 관련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형사사법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키는 효율적인 장치라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을 통해 참고인이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을 보호할 수 있고, 실제적 진실 발견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으며, 사법비용이 절감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원칙이 아닌 예외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형사법정은 단순한 논의의 장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유무죄를 평가하는 엄숙한 장이고, 형사소송법상 직접주의 원칙이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은 편의주의라는 제단에 쉽사리 희생물로 바쳐질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 모색된 방안들을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국내문헌]

- 강구진, 형사소송법, 학연사, 1982
- 경찰청, 2007년도 경찰백서, 2007
- 교정통계연보,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기획과, 2011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 김기두, 형사소송법, 박영사, 1987
-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0
- 김헌진, ICC 규정과 형법, 한국학술정보, 2006
- 박미숙/도중진, 피의자·피고인·참고인 증인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 배종대/이상돈/정승환/이주원, 신형사소송법, 홍문사, 2012
- 백기봉, 국제형사증거법, 박영사, 2008
- 법무부, 개정 형사소송법, 2007
- 법무부,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선진형사사법제도 입법관련
Q&A, 법무부, 2010
- 법원행정처, 새로운 형사재판 실무, 2002
-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1
- 손동권, 형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10
-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08
- 신양균, 형사소송법, 화산미디어, 2009
-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 박영사, 1996
- 백형구 등, 주석 형사소송법(I), 한국사법행정학회, 2009

- 윤지영, 형사소송비용 부담과 절차보장, 법원행정처, 2012
- 이영관, 한국형사소송법, 나남, 2008
-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2
- 임동규, 형사소송법, 법문사, 2011
- 임상혁, 전자법정의 실현에 관한 법적 조건과 전망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부, 2005
- 정영석/이형국, 형사소송법, 법문사, 1994
- 정웅석,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화상통신 및 영상녹화 활용에 관한 연구, 법무부, 2007
- 정웅석/백승민, 형사소송법, 대명출판사, 2009
- 정진수, 형사사법분야에서 영상매체의 활용,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 차동언, 刑事證據法 : 공판증심주의와 전문법칙, 법문사, 2007
- 차용석/최용성, 형사소송법, 21세기사, 2008
- 한국유럽학회, 유럽연합의 법, 정치와 대외관계, 한국학술정보, 2011
- 형사사법공동시스템운영단, 형사사법 전자화 현황과 과제, 법무부, 2012
- 디텔름 클레스제브스키, 김성돈 역, 독일 형사소송법,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2
- 로어크 M. 리드 / 이노우에 마시히토 / 야마무로 메구미, 정 완 역, 미국의 형사 절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 강민구, “21세기 尖端 電子法廷에 관한 研究 : 21世紀 情報化 時代に 있어서 法廷 改革의 側面에서”, 법조 제51권 제1호, 법조협회, 2002
- 구태언, “첨단 전자법정을 향한 검찰업무정보화의 과제”, 정보법학 제5권, 한국정보법학회, 2001
- 금태섭, “미국 헌법상 증인대면권과 전문법칙과의 관계”, 형사법과 헌법이념 제2권, 공법연구회 편, 박영사, 2007
- 기우중, “訴訟의 새로운 틀 “電子訴訟”, 저스티스 통권 제121호, 한국법학원, 2010
- 김경근, “중국의 형사사법공조, 범죄인인도, 수형자이송에 관한 사례 연구”,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제26집, 법무연수원, 2011

- 김주덕, “형사사법공조”, 형사정책연구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 도중진,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고찰”, 피해자학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2
- 박광민,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지위강화”, 형사법연구 제10호, 한국형사법학회, 1998
- 박상식, “참고인진술의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참고인 강제구인을 중심으로”, 한양법학 제21권 제4집(통권 제32집), 한양법학회, 2010
- 안경옥, “비디오 등 영상매체를 이용한 증인신문”, 민주법학 제18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0
- 안경옥, “형사재판절차에서 테크놀로지의 활용과 형사소송법적 문제점”, 21세기 형사사법개혁의 방향과 대국민 법률서비스 개선방안[V] - 공판절차의 활성화와 과학화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 윤지영, “경미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제12권 제1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0
- 이상돈, “형사사법의 세 가지 지층과 피해자의 지위”, 피해자학연구 제17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9
- 이효원, “재외선거범죄에 대한 법적 쟁점”, 형사법의 신통향 제24호, 대검찰청, 2010
- 정용수, “독일 형사소송법상 증인보호제도 - 수사 및 공판절차에 비디오 기술의 도입문제와 관련하여 -”, 해외연수검사연구논문 제15집, 법무연수원, 1999
- 정웅석, “형사절차에서 원격영상시스템의 도입에 관한 연구”, 형사법의 신통향 제25호, 대검찰청, 2010
- 정진수, “미국의 증인보호제도”, 형사정책연구 제7권 제3호(통권 제27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131면.

[국외문헌]

〈영·미 문헌〉

- Agusti Cerrillo/Pere Fabra, E-Justice: Using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 the Court System, Information Science Reference, 2008
- Carole Basri/Irving Kagan, Corporate Legal Departments: Practicing Law in a Corporation, Practicing Law Institute, 2005
- CONSAD Research Corporation, Final Report: Evaluation of Video Conferencing Demonstration Projects, Concurrent Technologies Corporation, 2000
- Court Technology Advisory Committee, Report on the Application of Video Technology in the California Courts, Judicial Council of California,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Courts, 1997.
- Damian Chalmers/Gareth Davies/Giorgio Monti, European Union Law: Cases and Material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 Davor Raus, EU Criminal Law in the Lisbon Treaty: Judicial Cooperation in Criminal Matters in the Lisbon Treaty, LAP LAMBERT Academic Publishing, 2012
- Dory Reiling, Technology for Justice: How Information Technology can support Judicial Reform, Leiden University Press, 2010
- Guénaél Mettraux, International Crimes and the Ad Hoc Tribunals,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General Secretariat of the Council, Guide on Videoconferencing in Cross-Border Proceedings: European E-Justice, Dictus Publishing, 2011
- General Secretariat of the Council, Videoconferencing as a part of European e-Justice: the essentials of videoconferencing in cross-border court proceedings, European E-Justice, 2009

- Geoffrey C. Hazard/Colin C. Tait/William A. Fletcher/Stephen M. Bundy,
Cases and Materials on Pleading and Procedure: State and Federal,
Foundation Press, 2009
- Glenn C. Gillespie/Timothy A. Baughman, 2 Gillespie Michigan Criminal
Law and Procedure with Forms, Database updated October 2012
- G. V. Coleman, Video Technology in the Courts, National Institute of Law
Enforcement and Criminal Justice(U.S. Department of Justice), 1977
- Joseph G. Cook, 3 Constitutional Rights of the Accused 3d., Database
updated July 2012
- Karen Shastri/Holly Wald, Evaluation of Video Preliminary Arraignment
Systems in Pennsylvania Final Report, Pennsylvania Cmssn on
Crime and Delinquency, 2004
- Leonidas R. Mecham, Report to Congress on the Optimal Utilization of
Judicial Resources, Administrative Office of U.S. Courts, 2000
- Lester Bernhardt Orfield, 6 Orfield's Criminal Procedure under the
Federal Rules, Database updated June 2012
- LIS, Inc., Use of Interactive Video for Court Proceedings: Legal Status
and Use Nationwide, U.S. Department of Justice, 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 1995
- Maria Fletcher/Robin Loof/Bill Gilmore, EU Criminal Law and Justice,
Edward Elgar Publishing, 2010
- Ministry Of Justice, Virtual Courts: Information for Defence Representatives,
Office for Criminal Justice Reform, 2010
- Office of Justice Program Office for Victims of Crime, New Directions
from the Field: Victims Rights and Services for the 21st
Century, U.S. Department of Justice, 1998
- Ray Surette, The Media and Criminal Justice Policy: Recent Research
and Social Effects, Charles C Thomas Pub Ltd., 1990
- Steve Peers, EU Justice and Home Affairs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Victor Peskin, *International Justice in Rwanda and the Balkans: Virtual Trials and the Struggle for State Cooper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Wayne R. LaFave/Jerold H. Israel/Nancy J. King/Orin S. Kerr, 6 *Criminal Procedure*(3d ed.), Database Updated November 2011

William A. Schabas, *The UN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The Former Yugoslavia, Rwanda and Sierra Leon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Yale Kamisar, Wayne R. LaFave/Jerold H. Israel/Nancy J. King, *Modern Criminal Procedure*, Thomson West, 2008

A. James Kachmar, "Review of Selected 1995 California Legislation, Criminal Procedure: Arraignments - Use of Audiovideo Communications. Penal Code § 977.2 (new). SB 840 (Beverly); 1995 Stat. Ch. 367", 27 *PACLJ*(Pacific Law Journal) 606, the McGeorge School of Law, University of the Pacific, 1996

Anne Bowen Poulin, "Criminal Justice and Videoconferencing Technology: the Remote Defendant", 78 *Tul. L. Rev.* 1089, Tulane Law Review Association, 2004

Fern L. Kletter, "Constitutional and Statutory Validity of Judicial Videoconferencing", 115 *American Law Reports* 5th 509, American Law Reports, 2004

Fredric I. Lederer, "Courtroom Practice in the 21th Century", 35-JUL *Trial* 38, the Association of Trial Lawyers of America, 1999

Fredric I. Lederer, "Technology Comes to the Courtroom, and...", 43 *EMORYLJ*(Emory Law Journal) 1095, Emory University School of Law, 1994

Gerald G. Ashdown/Michael A. Menzel, "The Convenience of the Guillotine? : Video Proceedings in Federal Prosecutions", 80 *Denv. U. L. Rev.* 63,

- University of Denver College of Law, 2002
- Jeffrey M. Silbert/Una Hutton Newman/Laurel Kalser, "The Use of Closed Circuit Television for Conducting Misdemeanor Arraignments in Dade County, Florida", 38 U. Miami L. Rev. 657, University of Miami Law Review, 1984
- Jill A. Gorden/Laura J. Moriarty/Timothy J. Potts, "Videoconferencing: An Examination of Courtroom Personnel Attitudes", Criminal Justice Technology In The 21st Century, Charles C Thomas Pub., 2005
- John A. Mayers, "Coy v. Iowa: A Constitutional Right of Intimidation", 16 Pepp. L. Rev. 709, Pepperdine University School of Law, 1989
- J. Steven Beckett/Steven D. Stennett, "The Elder Witness - The Admissibility of Closed Circuit Television Testimony After Maryland v. Craig", 7 Elder L.J. 313, Board of Trustees of the University of Illinois, 1999
- L. Christine Brannon, "The Trauma of Testifying in Court for Child Victims of Sexual Assault v. The Accused Right to Confrontation", 18 Law & Psychol. Rev. 439, Law and Psychology Review, 1994
- Lisa Hamilton Thielmeyer, "Beyond Maryland v. Craig: Can and Should Adult Rape Victims Be Permitted to Testify by Closed-Circuit Television?", 67 INLJ(Indiana Law Journal) 797, Trustees of Indiana University, 1992
- Matthew J. Tokson, "Virtual Confrontation: Is Videoconference Testimony by an Unavailable Witness Constitutional?", 74 U. Chi. L. Rev. 1581, University of Chicago, 2007
- Michael D. Roth, "Laissez-Faire Videoconferencing: Remote Witness Testimony and Adversarial Truth", 48 UCLA L. Rev(UCLA Law Review) 185,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2000
- Michael E. Heintz, "The Digital Divide and Courtroom Technology: Can David Keep Up With Goliath", 54 Fed. Comm. L.J. 567, Federal Communications

- Bar Association, 2002
- Molly Treadway Johnson/Elizabeth C. Wiggins, "Videoconferencing in criminal proceedings: legal and empirical issues and directions for research", 28 Law & Policy 211, John Wiley & Sons Ltd., 2006
- Patricia Raburn-Remfry, "Due Process Concerns in Video Production of Defendants", 23 Stetson L. Rev. 805, Stetson University College of Law, 1994
- Paul G. Lauren, "From Impunity to Accountability: Forces of transformation and the chang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ntext", From Sovereign Impunity to International Accountability: The Search for Justice in a World of States, United Nations University Press, 2004
- Ray Surette/W. Clinton Terry III, "The Case for Videotaping Misdemeanor Defendants", 30 No. 3 Judges Journal 20,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1991
- Riley A. Williams, "Videoconferencing: Not a Foreign Language to International Courts", 7 Okla. J. L. & Tech.(Oklahoma Journal of Law & Technology) 54, University of Oklahoma College of Law, 2011
- Robert G. Goetsch, "Videoconferencing in Criminal Proceedings: A New Wrinkle in an Old System", 70 Wisconsin Lawyer 17, State Bar of Wisconsin, 1997
- Roland T.Y. Moon, "1995 State of the Judiciary Address", 1996-JAN Haw. B.J.(Hawaii Bar Journal). 25, Hawaii State Bar Association, 1996
- Ronnie Thaxton, "Injustice Telecast: The Illgal Use of Closed-Circuit Television Arraignments and Bail Bond Hearings in Federal Court", 79 IALR(Iowa Law Review) 175, The University of Iowa, 1993
- Sanja Kutnjak Ivkovic, "Justice by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 the Former Yugoslavia", 37 STJIL(Stanford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55, Board of Trustees of the Leland Stanford Junior University, 2001
- Shari Seidman Diamond/Locke E. Bowman/Manyee Wong/Matthew M. Patton, "Efficiency and Cost: the Impact of Videoconferenced Hearings on Bail Decisions", 100 JCRLC(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869,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2010
- Sylvia Pieslak, "Comment: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s Quest to Protect Rape Victims of Armed Conflict: Anonymity as the Solution", 2 SANCJIL(Santa Clar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38,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 2004
- W. Jeremy Counseller/Shanon Rickett, "The Confrontation Clause after Crawford v. Washington: Smaller Mouth, Bigger Teeth", 57 Baylor L. Rev., Baylor University, 2005

〈독일문헌〉

- Ali B. Norouzi, Die audiovisuelle Vernehmung von Auslandszeugen: Ein Beitrag zum transnationalen Beweisrecht im deutschen Strafprozess, Mohr Siebeck, 2010
- Claus Roxin/Bernd Schünemann, Strafverfahrensrecht, 26. Auflage, C.H. Beck, 2009
- Friedrich-Christian Schroeder, Strafprozeßrecht, C.H. Beck, 1993
- Gabriele Jansen, Zeuge und Aussagepsychologie, C.F. Müller, 2012
- Gerd Pfeiffer/Rolf Hannich(KK-StPO), Karlsruher Kommentar zur Strafprozessordnung und zum Gerichtsverfassungsgesetz, 6. Auflage, Beck Juristischer Verlag, 2008

- Jürgen Peter Graf, Strafprozessordnung (StPO): mit Gerichtsverfassungsgesetz und Nebengesetzen, C.H. Beck, 2010
- Jürgen Wolter(SK-StPO), Systematischer Kommentar zur Strafprozessordnung Band 5: Mit GVG und EMRK, Band V (§§ 246a-295 StPO), 4. Auflage, Heymanns Verlag, 2011
- Karl Heinz Gössel, Strafverfahrensrecht, Kohlhammer, 1977
- Karl Schäfer, Strafprozeßrecht: eine Einführung, Walter de Gruyter, 1976
- Klaus Volk, Grundkurs StPO, 7. Auflage, Beck Juristischer Verlag; Auflage, 2010
- Löwe-Rosenberg(StPO Grosskommentar), Die Strafprozessordnung und das Gerichtsverfassungsgesetz. Grosskommentar, Band 6/Teil 1, 26. Auflage, De Gruyter Recht, 2009
- Lutz Meyer-Goßner, Strafprozessordnung: mit GVG und Nebengesetzen, 54. Auflage, C.H. Beck, 2011
- Maike Scheumer, Videovernehmung kindlicher Zeugen: Zur Praxis des Zeugenschutzgesetzes, Universitätsverlag Göttingen, 2007
- Sabine Swoboda, Videotechnik im Strafverfahren, Duncker & Humblot, 2002
- Ulrich Eisenberg, Beweisrecht der StPO, 6. Auflage, Beck Juristischer Verlag, 2008
- Urs Kindhäuser, Strafprozessrecht, 2. Auflage, Nomos, 2010
- Werner Beulke. Strafprozessrecht, 11. Auflage, C.F. Müller, 2010
- Werner Leitner, Videotechnik im Strafverfahren: Ein Petikum für mehr Dokumentation und Transparenz, Nomos, 2012
- Ines Kilian-Herklotz, "Einsatz von Videotechnik im deutschen Strafprozess und richterliche Glaubwürdigkeitsbeurteilung: ein Paradoxon?", Der Strafprozess vor neuen Herausforderungen?: über den Sinn oder Unsinn von Unmittelbarkeit und Mündlichkeit im Strafverfahren,

Nomos, 2000

Klaus Leipold, "Die Videovernehmung ", NJW-Spezial(Heft 10), 2005

Michael Bohlander, "Der Einsatz von Videotechnologie bei der Vernehmung kindlicher Zeugen im Strafverfahren", ZStW 107, 1995

Peter Caesar, "Noch stärkerer Schutz für Zeugen und andere nicht beschuldigte Personene im Strafprozeß?", NJW(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Heft 32, 1998

Werner Beulke, "Empirische und normative Probleme der Verwendung neuer Medien in der Hauptverhandlung", ZStW 113, 2001

〈프랑스문헌〉

Annie Beziz-Ayache, Dictionnaire de droit pénal général et procédure pénale, Ellipses Marketing, 2008

Bernd Bouloc/Haritini Matsopoulou, Droit pénal général et procédure pénale, Dalloz-Sirey, 2009

Laurence Dumoulin/Christian Licoppe, Justice et visioconférence: les audiences à distance. Genèse et institutionalisation d'une innovation, Institut des Sciences sociales du Politique, 2009

Marc Janin/Laurence Dumoulin/Christian Licoppe/Jean Danet, Les Cahiers de la Justice, N° : La visio-conférence dans le prétoire, Dalloz, 2011

Marie-Louise Simoni/Martine Valdes-Boulouque/Dominique Luciani, Mission d'audit de modernisation Rapport sur l'Utilisation plus intensive de la visioconférence dans les services judiciaires, Ministère de la Justice, 2006

Roger Perrot, Institutions judiciaires, Montchrestien, 2010

Secrétariat Général du Conseil, La Visioconférence dans le Cadre de la Justice en Ligne Européenne: L' Essentiel sur la Visioconférence

dans les Procédures Judiciaires Transfrontières, Dictus Publishing, 2011

Christian Licoppe/Laurence Dumoulin, "L'ouverture des procès à distance par visioconférence: activité, per formativité, technologie", *Reseaux* Vol. 25, N° 144(De la rue au tribunal - Études sur la visiocommunication), Hermes Science Publications, 2007

Laurence Dumoulin, "Présents, distants ou absents? Les justiciables et le développement de la visioconférence dans la justice française", *Conférence des Présidents des cours d'appel de l'Union européenne: Les Technologies de l'Information et de la Communication(TIC) au service de la justice du XXIe siècle*, 2011

Laurence Dumoulin/Christian Licoppe, "Technologies, droit et justice: Quelques éléments de mise en perspective", *Droit & Cultures* vol. 61, no. 1, 2011

Laurence Dumoulin/Christian Licoppe, "Proximité ou distance? Autour du développement de la visioconférence dans la justice française", *Territoires et lieux de justice*(Collection Histoire de la justice n° 21),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11

〈일본문헌〉

芦部信喜/高橋和之, *憲法*, 岩波書店, 2011

伊藤榮樹ほか, *注釋 刑事訴訟法 第二卷*, 立花書房, 1997

兼子一ほか, *條解 民事訴訟法*, 弘文堂, 2011

河上和雄/古田佑紀/原田國男/中山善房編, *大コンメンタール刑事訴訟法 〈第3卷〉 第128條~第188條の7*, 青林書院, 2010

小林昭三(監修)/憲法政治學研究會((編集), *日本國憲法講義—憲法政治學からの接近*, 成文堂, 2009

- 後藤昭/白取祐司, 新・コンメンタール刑事訴訟法, 日本評論社, 2010
- 裁判所職員總合研修所(監修), 犯罪被害者等の保護のための諸制度に関する書記官事務の實証的研究, 司法協會, 2005
- 佐藤幸治, 日本國憲法論, 成文堂, 2011
- 白取祐司, 刑事訴訟法, 日本評論社, 2010
- 高井康行/山本剛/番敦子, 犯罪被害者保護法制解説, 三省堂, 2005
- 田口守一, 刑事訴訟法, 弘文堂, 2009
- 寺崎嘉博, 刑事訴訟法, 成文堂, 2008
- 東京弁護士會法友會新民事訴訟法實務研究部會編集, 實踐新民事訴訟法: 民事弁護の在り方とその対応, ぎょうせい, 1998
- 日本弁護士連合會, 「民事訴訟手續に関する検討事項」に對する意見書, 日本弁護士連合會民事訴訟法改正問題委員會, 1992
- 平良木登規男, 刑事訴訟法 II, 成文堂, 2010
- 法務省法務總合研究所編, 犯罪白書(平成18年版), 佐伯印刷, 2006
- 法務省法務總合研究所編, 犯罪白書(平成23年版), 日經印刷, 2011
- 法務省民事局參事官室編, 民事訴訟手續の検討課題: 民事訴訟手續に関する検討事項とその補足説明, 別冊NBL No. 23, 商事法務研究會, 1991
- 法務省民事局參事官室編, 民事訴訟手續に関する改正試案: 試案とその補足説明、検討事項に對する各界意見の概要, 別冊NBL No. 27, 商事法務研究會, 1994
- 福井厚, 刑事訴訟法, 有斐閣, 2009
- 古野豊秋, 新・スタンダード憲法, 尙學社, 2010
- 松尾浩也, 逐條解説犯罪被害者保護二法, 有斐閣, 2001
- 松尾浩也ほか, 條解 刑事訴訟法, 弘文堂, 2009
- 三井誠, 判例教材刑事訴訟法, 東京大學出版會, 2011
- 三井誠/酒卷匡, 入門刑事手續法, 有斐閣, 2010
- 渡辺直行, 刑事訴訟法, 成文堂, 2011
- 新垣剛, “ビデオリンク方式による尋問 (特集 性犯罪弁護に挑む)”, 刑事弁護 第

- 35卷, 現代人文社, 2003
- 宇藤崇, “遮へい措置、ビデオリンク方式による証人尋問と証人尋問の機能”, 平成17年重要判例解説, 有斐閣, 2006
- 伊藤睦, “刑事訴訟法判例研究(4): 遮へい措置・ビデオリンク方式による証人尋問と証人審問權[最一小平成17.4.14判決]”, 法律時報 第79卷 第4号, 日本評論社, 2007
- 稻田隆司, “遮へい措置・ビデオリンク方式による証人尋問”, 刑事訴訟法判例百選(井上正仁/大澤裕/川出敏裕編), 有斐閣, 2011
- 岩田研二郎, “犯罪被害者保護二法と刑事弁護活動--意見陳述とビデオリンク方式など(特集 被害者保護と刑事手続)”, 刑法雑誌 第42卷 第1号, 日本刑法學會, 2002
- 小田敬美, “訴訟手続における情報通信機器の利用”, 現代裁判法大系 第13卷 民事訴訟法(西口元 編), 新日本法規出版, 2000
- 川出敏裕, “刑事手続における被害者の保護(特集 犯罪被害者の保護と救済)”, ジュリスト 第1163号, 有斐閣, 1999
- 眞田壽彦, “最近の判例から 刑事裁判における遮へい措置及びビデオリンク方式での証人尋問を合憲とした最高裁判決--最高裁(1小)平成17.4.14判決”, 法律のひろば 第59卷 第2号, ぎょうせい, 2006
- 菅原郁夫, “証人尋問(その二)”, 早稻田法學 第74卷 第2号, 早稻田法學會, 1999
- 菅原郁夫/佐藤達也/村山武彦/浅井千繪, “テレビ會議システムによる証人尋問が証人の信憑性評価に与える影響”, 行政社會論集 第11卷 第4号, 福島大學行政社會學會, 1999
- 仙台地方裁判所新民事訴訟法研究會, “研究結果”, 判例タイムズ 第966号, 1998
- 清水 眞, “刑事判例研究 いわゆるビデオリンク方式、遮蔽装置を定めた刑訴法一五七條の三、一五七條の四は、憲法八二條一項、三七條一項、二項に反しない旨判示された事例”, 法學新報 第113卷 第1号, 中央大學, 2006
- 白取祐司, “「ビデオ裁判」への危惧は拂拭されたか?--和歌山毒カレー事件TVビデオ証拠採用”, 刑事弁護 第31卷, 現代人文社, 2002
- 角田正, “刑事裁判手続における被害者保護の諸問題[大阪刑事實務研究會](3)遮へ

- い措置,ビデオリンクに關する諸問題”, 判例タイムズ 第55卷 第18号, 判例タイムズ社, 2004
- 田口守一, “証人尋問の新たな形態の導入--ビデオリンク方式と遮へい措置 (特集 犯罪被害者保護關連二法の成立と展望)”, 現代刑事法—その理論と實務 第2卷 第11号, 現代法律出版, 2000
- 初又且敏, “實務刑事判例評釋(139)証人尋問における遮へい措置及びビデオリンク方式の合憲性が判斷された事例(最判平成17.4.14)”, 警察公論 第61卷 第6号, 立花書房, 2005
- 林道晴, “新民事訴訟法の施行に寄せて 新しい民事訴訟手續と情報通信機器の利用--電話會議,テレビ會議等の勧め”, 自由と正義 第49卷 第2号, 日本弁護士連合會, 1998
- 平野潔, “性犯罪と裁判院裁判”, 人文社會論叢 第28号, 弘前大學人文學部, 2012
- 堀江愼司, “刑事裁判例批評(7)証人尋問における遮へい措置、ビデオリンク方式の合憲性--最(一小)判平成17.4.14刑集59卷3号259頁”, 刑事法ジャーナル 2, イウス出版, 2006
- 山口裕之, “刑訴法157條の3、157條の4と憲法82條1項、37條1項、2項前段[最高裁平成17.4.14判決]”, 法曹時報 第60卷 第3号, 法曹會, 2008

A Study on the Effective Use of Videoconferencing System in Criminal Proceedings

YUN, JEE YOUNG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we have witnessed that plans to take advantages of advanced technologies in criminal procedures have been designed. Since the 1990s, western countries have actively grafted them onto criminal procedures. In specific, they use in criminal procedures the tele-videoconferencing system which allows two or more locations to communicate in real time by interactive video and audio transmission. Tele-videoconferencing system has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advancement in criminal justice system as it helps find the substantive truth by facilitating evidence collection, protect the testifiers or witnesses, and promote further efficiency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edings by reducing the time and costs required for conducting the procedures. Using tele-videoconferencing in criminal proceeding, however, is against the principle of immediacy of evidence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has risks of infringing the right of defense entitled to the accused and raising doubts about the effectiveness of itself.

Considering the issues over teleconferencing, it is needed to deal with legal issues on how the concept of "presence of the accused" should be interpreted under criminal law and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nciple of immediacy

of evidence and the accused's right of defense should be clarified before finding ways to take benefits of tele-videoconferencing in criminal proceedings. In general, the term, "presence of the accused" is defined as "physical presence" rather than "within sight or call" under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Also utilization of tele-videoconferencing system in criminal procedures is not against the principle of immediacy of evidence and the defense right of the accused because all parties involved at different sites face each other and necessary procedures are preceded in real time with help of telecommunication devices, rather than transmit pre-recorded video. Tele-videoconferencing is fully utilized for criminal justice system only after benefits of using tele-videoconferencing system is weight against those of ensuring the principle of immediacy of evidence or the accused' defense right and proved that the former has more benefits than the latter, in addition, the fundamental values of the latter would not be undermined by the former.

In the United States, the federal law allows children to testify outside the courtroom using video conferencing technologies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children victims and witnesses. Supporters of video conferencing in criminal proceedings advocate that not only children but also adult sexual assault victims,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shall be permitted to testify remotely in courtrooms. In principle, the defendant is required to appear at all stages of criminal proceedings, but the court permits those who commit misdemeanor offenses to be present at the arraignment, the plea, trial, and sentencing via video teleconferencing under conditions of their written consent. In Germany, if an examination of a person as a witness in the presence of the defendant poses an imminent risk of serious detriment to the interest of that person, and if there are grounds to fear that the exclusion of the defendant from the trial or limitation of the public is not sufficient to protect the interest of that person, the court may order witnesses or victims to be examined at a different location out of court. A simultaneous audio-visual transmission of the testimony shall be provided in the

courtroom. In France, tele-videoconferencing system has used during the preliminary hearings, examination of witnesses or experts, while the defendant must physically appear in trial court. However, recently those who are arrested and detained for misdemeanor offenses are permitted to appear in court via video conference instead of in a formal courtroom under the agreement of both parties and the Attorney General of the District Court. As for the Japan, the examination of witnesses using the tele-videoconferencing technologies was introduced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as a part of the victim protection legislations. With the legislation, examination of children victims or victims of sexual offences may be conducted via audio-visual technologies if it is to be feared that an examination of them in the defendant's presence may cause serious emotional disturbance and prevent them from making testimony.

Video conferencing is also utilized to deal with the criminal case across the world. The Rules of Procedure and Evidenc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and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stipulate that the court may order not to disclose personal information of victims or a witnesses to the public as well as the media, and permit them to testify via image- or voice- altering devices or closed-circuit television (CCTV). Also, the Rules of Procedure and Evidenc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provide that the court may conduct examination of witnesses and victims by audio-visual transmission technologies and not disclose their personal information. Usually their images and voices are altered concerning protection of their safety. In the European Union, the Council selected the use of video-conferencing in cross-border criminal cases among Member States as one of priorities. As most of the Member States use tele-videoconferencing in the judicial field, the European Union makes public detailed guidelines on video conferencing in criminal proceedings covering application on video conferencing, installation and the use of video conferencing equipment, expenses of operation, etc.

In Korea, the National Police Agency introduced the remote investigation system via video conferencing, subject to domestic residents, and drew up its own guidelines, but the remote investigation system was not fully used due to technical issues and security concerns. As the entrustment of investigation system has taken a root, the remote video conferencing investigation system of the police is virtually not used any more. As the Public Offices Election Law was amended on February 29, investigation of digital video conferencing system subject to election offenders staying out of the country was introduced. However, as of October, 2012, guidelines on the video conferencing investigation as well as the fundamental system had not yet established. On the other hand, examination of witness via video conferencing may be ordered at trials if there is a fear that facing the defendant could disturb the witness and make him/her felt uneasy. The examination system has received favorable evaluations; it could help lessen mental stress and burden that witnesses or victims may have caused by confronting those involved in cases face to face; contribute to find the substantial truth by reducing the possibility of making false testimony; and acquire statements of witnesses who avoid the court appearance for fear of revenge. However, video conferencing in criminal proceedings reveals drawbacks. It is harder to confirm suspicion in the process of examination of evidence via audio visual transmission than normal examination which takes place in courtroom with all involved parties present. Video conferencing also disturbs parties and people's concentration on trial because of technical problems, for example, low resolution or poor clarity of monitor. Absence of technical support in the video conferencing room causes inconvenience in confirming authentication of document or presenting evidence at times.

To fully use a video conferencing in the criminal procedure, related laws and institutions should be modified and improvement measures should be implemented. Some experts state that it is needed to enact special laws and regulations that clearly provide exceptional provisions and requisites for using

tele-videoconferencing system during investigation by law enforcement authorities as well as at pre-trial proceedings. However it is reasonable to amend Criminal Procedure Act in order to effectively reflect the purpose of introduction of tele-videoconferencing system in the criminal procedure and to build the uniform legal system.

These are suggestions to ame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to take advantages of video conferencing: First, applicable provisions should be inserted to investigate suspect at long distance or to gain statements from witness who are reluctant to do for fear of retaliation via video conferencing under their consent. In particular, it is required to establish provisions of digital video conferencing for questioning testifiers or suspects who are charged with the overseas election illegalities under the Public Offices Election Law. Second, the court may order to investigate suspects without physical detention via tele-videoconferencing with the consent of them after hearing prosecutor's and counsel's opinion in special circumstances where delay in questioning them is expected.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provides that the examination of witness shall be conducted via videoconferencing devices when witness may be deprived of mental tranquility significantly by confronting with the defendant, witnesses should be able to testify via tele-videoconferencing system. In addition to that, in cases where witnesses are not able to appear in court due to their health problems, they should be allowed to give testimony via video conferencing. Furthermore, the act should provide more legal grounds to use video conferencing in various ways.

Related institutions should be improved to use tele-videoconferencing in criminal proceedings. Recommendations are as follows. First, internet-based communication network should be built to exchange information in real time among relevant authorities. Second,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success of video conferencing highly depends on technologies; it is required to replace existing obsolete equipment with new one adopting advanced technologies. In

addition, voice-altering function should be added to the audio system to promote efficiency of video conferencing. Also, considering the fact that quality and function of audio-visual transmission devices have greatly impact on the result of trial, it is needed to establish standards on installation and quality of video conferencing equipment such as camera and microphone. Third, although legislation on tele-videoconferencing is established under the need of questioning offenders abroad, in criminal cases, mutual judicial assistance in criminal justice is an essential prerequisite so that using video conferencing does not infringe judicial sovereignty of any other countries. Therefore, measures to promote judicial assistance in criminal justice should be come up with to facilitate investigation and examination of witness via tele-videoconferencing. Last, guidelines on the operation of tele-videoconferencing in the criminal procedure should be set up and put in place. Law enforcement authorities and the court in charge of conducting video conferencing in criminal proceedings shall provide written instructions than describes processes and cautions in detail to participants in advance. Also, prior to conducting video conferencing in the investigative and judicial procedures, orientation programs on the operation of the equipment should be provided. Furthermore, the guidelines on spatial location of those involved in criminal cases should be formulated to indicate them where they should be during video conferencing.

Before putting tele-videoconferencing in the criminal procedure into practice, it should not be overlooked that video conferencing in criminal justice serves as not a principle but an exceptional mean to facilitate criminal procedures. What should be kept in mind is that the criminal court is not a physical place of discussion but it has enormous symbolic significance where judges examine evidence, decide guilty or innocent based on the law. The principle of immediacy of evidence or the accused' right of defense cannot be sacrificed on the altar of convenience.

연구총서 12-AA-03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의 활용방안

발 행 / 2012년 12월

발행인 / 김일수

발행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02)575-5282/5283

등 록 / 1990. 3. 20. 제21-143호

인 쇄 / 디자인프리즘

(02)2264-1728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정가 10,000원

ISBN 978-89-7366-946-2 93360